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39호

2020.12.31.(목)



서울특별시

목 차

자치법규

[조 례]

제77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77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8
제777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777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7772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제77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21
제77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24
제77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777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7777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77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7779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77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7781호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7782호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48
제7783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67
제7784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1
제7785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	77
제7786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78
제778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788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7789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7790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779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779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7793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7794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77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7796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7797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798호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799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일부개정조례	99
제780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7801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1
제780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803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7804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780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806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807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808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780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7810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7811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7812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78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7814호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131
제781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7816호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0

[규 칙]

제437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4
제438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6
제4381호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149

고 시

제2020-588호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5
제2020-59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63
제2020-591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66
제2020-592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2
제2020-593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259
제2020-594호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261

제2020-5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79
제2020-596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280
제2020-597호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283
제2020-59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4
제2020-599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93
제2020-601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03
제2020-60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325
제2020-603호	문정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26
제2020-6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329
제2020-608호	동명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8
제2020-611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고시	350
제2020-612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359
제2020-613호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382
제2020-61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393

공 고

제2020-3372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395
제2020-349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396
제2020-3498호	서울특별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	397
제2020-351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2
제2020-351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04
제2020-3514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05
제2020-3515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406
제2020-351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08
제2020-3520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09
제2020-3522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10
제2020-3524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11
제2020-352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12
제2020-3529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13
제2020-3534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414
제2020-353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15
제2020-3537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16

제2020-3538호	2020년도 제16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417
제2020-3539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421
제2020-3540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423
제2020-354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25
제2020-3545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26
제2020-3550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27
제2020-35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28
제2020-3552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29
제2020-3553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30
제2020-3554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31
제2020-355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32
제2020-3557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33
제2020-355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34
제2020-3560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35
제2020-356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36
제2020-356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37
제2020-3566호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 발생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공고	438
제2020-356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39
제2020-357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40
제2020-35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41
제2020-357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442
제2020-357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43
제2020-358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444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0-1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445

구 고 시

제2020-222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447
제2020-2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안)서대문구	451
제2020-217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453
제2020-2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455
제2020-2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	466
제2020-22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469
제2020-88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472

제2020-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	480
제2020-256호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487
제2020-258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	490
제2020-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승인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495

구 공 고

제2020-149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종로구)	501
제2020-13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용산구)	523
제2020-13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용산구)	525
제2020-1460호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성동구)	527
제2020-1461호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성동구)	528
제2020-14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동대문구)	529
제2020-1941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서구)	539
제2020-20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영등포구)	547
제2020-2049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를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550
제2020-1864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동작구)	554
제2020-18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동작구) ..	557
제2020-1936호	공시송달공고(말죽거리근린공원,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	558
제2020-1937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공시송달공고(서초구) ...	561
제2020-2425호	도시계획시설(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정취 열람공고 (안)(강남구)	562
제2020-2426호	도시계획시설(광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정취 열람공고 (안)(강남구)	575
제2020-2427호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정취 열람공고 (안)(강남구)	582

사업소고시

제2020-3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2
제2020-3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2

제2020-325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593
제2020-3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3
제2020-3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4
제2020-3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4
제2020-3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95

사업소공고

제2020-32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596

기 타

제2020-39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98
제2020-40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599
제2020-4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600

정 정

제2020-2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성북구)	601

자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신청사) 2021년부터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완료 기간까지 기금 존속 필요
- 나. (연수원) 입지 변경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존속 필요

2. 주요내용

- 가. 본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과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본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77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고등학생의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금은 교복,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 직·간접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내 전·입학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3.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 나. 서울특별시 중·고등학생의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규정함(제4조)
- 다. 입학준비금의 지원 방법과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7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u>1</u>
출산	배우자	<u>10</u>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u>1</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9. 12. 3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제14조의2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신설)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
 - 여성보건휴가: 매월1일(무급,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내 10일(유급, 임신검진의 사유)

나.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제14조의2제9항)

- 각급 학교 근무자와 각급 학교 외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통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

다. 특별휴가(포상휴가) 신설 (제14조의2제10항)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직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라.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확대 (제14조의2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 1일(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휴가: 2일 → 3일(확대)

서울특별시조례 제777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68교)”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69교)”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강동구(28교)”를 “강동구(29교)”로 하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고현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강빛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서울강빛초등학교	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별표 2 구분란 중 “남부교육지원청(31교)”를 “남부교육지원청(32교)”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34교)”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35교)”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영등포구(11교)”를 “영등포구(12교)”로, “강동구(12교)”를 “강동구(13교)”로 하며,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윤중중학교”란 다음에 “신길중학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한산중학교”란 다음에 “강빛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신길중학교	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강빛중학교	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별표 7 구분란 중 “동부교육지원청(17교)”를 “동부교육지원청(20교)”로, “서부교육지원청(32교)”를 “서부교육지원청(34교)”로, “북부교육지원청(19교)”를 “북부교육지원청(23교)”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27교)”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29교)”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29교)”를 “강서양천교육지원청(30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26교)”를 “강남서초교육지원청(27교)”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19교)”를 “성동광진교육지원청(22교)”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20교)”를 “성북강북교육지원청(23교)”로 하고, 자치구명란 중 “중랑구(9교)”를 “중랑구(12교)”로, “마포구(10교)”를 “마포구(12교)”로, “노원구(13교)”를 “노원구(15교)”로, “도봉구(6교)”를 “도봉구(8교)”로, “강동구(11교)”를 “강동구

(12교)”로, “송파구(16교)”를 “송파구(17교)”로, “양천구(13교)”를 “양천구(14교)”로, “강남구(15교)”를 “강남구(16교)”로, “광진구(6교)”를 “광진구(8교)”로, “성동구(13교)”를 “성동구(14교)”로, “강북구(5교)”를 “강북구(7교)”로, “성북구(15교)”를 “성북구(16교)”로 하며, 동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중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부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동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소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북부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연지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당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방학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쌍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강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송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솔밭유치원”란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신정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세명유치원”란 다음에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용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무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명칭란 중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우이유치원”란을, “서울좋은소리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동부 교육지원청	중랑구	서울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신내로15길 110
		서울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봉화산로 188
		서울중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동일로 665
서부 교육지원청	마포구	서울소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마포대로24길 42
		서울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북부 교육지원청	노원구	서울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구 한글비석로41가길 24
		서울당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구 동일로213길 52
	도봉구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봉구 노해로 179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서울쌍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봉구 우이천로 36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강동구	서울강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송파구	서울솔밭유치원	송파구 오금로24길 25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양천구	서울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양천구 오목로23길 24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강남구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구 선릉로115길 42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광진구	서울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진구 능동로 42
		서울용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진구 용마산로22길 82
	성동구	서울무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동구 무학봉15길 21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강북구	서울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북구 한천로124길 14
		서울우이유치원	강북구 삼양로99길 36
	성북구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	성북구 송인로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1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9개원 신설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별표 1)

□ 신설: 1개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빛초등학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나. 중학교 명칭 및 위치 (별표 2)

□ 신설: 2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 신길중학교(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강빛중학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다. 유치원 명칭 및 위치 (별표 7)

□ 신설: 19개원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신내로15길 110)

－ 서울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봉화산로 188)

－ 서울중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랑구 동일로 665)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소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마포구 마포대로24길 42)

－ 서울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계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한글비석로41가길 24)

－ 서울당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동일로213길 52)

－ 서울송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봉구 노해로 179)

－ 서울쌍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봉구 우이천로 36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 서울솔방울유치원(송파구 오금로24길 2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양천구 오목로23길 24)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선릉로115길 42)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능동로 42)
 - 서울용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용마산로22길 82)
 - 서울무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무학봉15길 21)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북구 한천로124길 14)
 - 서울우이유치원(강북구 삼양로99길 36)
 - 서울좋은소리유치원분원(성북구 송인로 50)

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

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지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개정(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제1조)
- 다. 조문 전단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후단 단서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대상”을 단일 조문으로 규정한 것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제2조제1항 및 제2항)
- 라. 현행 제4호와 같이 1개 호로 합쳐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를 별도의 호로 각각 구분(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 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아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해당되지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로서 설립목적에 위하여 필요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제2항제5호)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학교에서 휴업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는 대상 기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함(제3조제5항)
- 사.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동 학교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제3조)
- 아.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제4조제1항)
- 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 전출입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업무 명확화 (제4조제4항)
- 차.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아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반환방법으로 현실화(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 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 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각급 기관의 장” 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④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9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제7조, 제8조)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제9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제11조)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제1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담당자를 둔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이상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를 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 제2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규정)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징계 요구 면책, 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관련된 사항은 영 제18조, 제19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적극행정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다. 적극행정의 후속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함(제4조).

라.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마.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적극행정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의결의 근거를 규정함(제14조제3항).

사. 적극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용규정을 규정함(제19조)

자. 본 조례 제정 전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조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차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제19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17조의 "마을배움터" 및 제18조의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해오고 있음.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합리적 사업추진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마을배움터”를, 신설된 제18조에는 “마을활력소”를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 나.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민간’에서 ‘법인·단체’로 규정함(제17조제1항).
- 다. 기존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은 시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규정되어있었으나, 현실에 맞게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라.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을 규정함(제18조제5항).
- 마. 운영주체의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18조의2).
- 바.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7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시민사회단체” 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19세” 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민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을 “60일”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하되,” 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고충민원” 을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 을 “성별, 연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조계” 를 “법조계 등”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서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없음		
1. 청구(신청)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구동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에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구인명부의 표지)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 주민 수 : 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비고 (외국인은 전화번호 기재)

<뒷면>

작 성 요 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내·외국인 공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또는 날인)	시민감사 청구 자격 확인	감사종료시 까지
외국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록일자, 등록체류지, 이전의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주소, 전화번호, 동거 가족관계(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민감사 청구 자격 확인
-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서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함(제4조제2항제6호).

나. 시민감사청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연서기간 조항을 신설함(제12조제1항 및 제4항).

다.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라.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확대함(제24조제1항).

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확대함(제25조).

바.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정비하면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를 신설함(별지 서식).

서울특별시조례 제7777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4,008,550원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99,370원”에서 “4,008,550원”으로 변경함([별표 2]).

서울특별시조례 제777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하므로 조례 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를 삭제함(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79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
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대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9조 관련)

해당연도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 2021년도	16
2. 2022년도	17
3. 2023년도	18
4. 2024년도	19
5. 2025년도	20
6. 2026년도	21
7. 2027년도	22
8. 2028년도	23
9. 2029년도	24
10. 2030년도 이후	2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성별 목표 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연도별 성별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을 정함(제9조 및 별표).

※ 연도별 성별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해당연도	'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24년도	' 25년도	' 26년도	' 27년도	' 28년도	' 29년도	' 30년도 이후
목표비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나. 시립대학교 교원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함(제9조 및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노동민생정책관 표 중 공정경제담당관에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구청장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중 경제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버스정책과 제14호의 사무명란 중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를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표 주차계획과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중 건축기획과란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가목(중전의 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법 제21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5조”로 하고, 나목(중전의 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법 제28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으로 하며, 건축기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바. 처분내용의 통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별표의 □ 도시계획국 표 토지관리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구청장
가. 연수교육 실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의 □ 물순환안전국 표 물재생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함.

(1) 국가의 사무에서 시 또는 국가시 공동사무로 전환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 ▶ 물가안정과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 건축사무소의 개설신고,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시정명령, 건축사업신고부의 정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사무위임 주체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시행인가, 공사완료 확인, 사용개시 기간 지정, 시정명령 등

- 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실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 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주관부서명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7781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외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함(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의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적정성” 을 “적절성”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 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적정성” 을 각각 “적절성”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 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적정성” 을 각각 “적절성”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적정성” 을 각각 “적절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적정성” 을 “적절성”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적정성” 을 “적절성” 으로 한다.

별표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적정성” 을 각각 “적절성”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적정성” 을 “적절성”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적정성” 을 “적절성” 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 을 “법 제25조제14항”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법” 을 “「도로법」” 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 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 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 을 “영 제23조제6항” 으로 한다.

별표 도로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로 하고, 같은 표 도시철도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로 하며, 같은 표 야간경관 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빛공

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 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 을 “경제일자리기획관”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을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여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4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83조의2”를 “법 제83조의2”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1)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26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3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특별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영 별표3의2”를 각각 “영 별표 8”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 제6조”를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38조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중 “영 별표1의 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영 별표1의2를”을 “영 별표 3을”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3항”을 “법 제7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서울특

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채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한다.

제29조제9호나목, 제37조제8호나목, 제38조제9호나목 및 제55조의2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8조제5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0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의3 각 호”를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의 허가 기준란 (1)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9조제12호”를 “영 제39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 후단”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6항 중 “제1항 각 목”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채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행령 제10조”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 중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를 각각 “영 제1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

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1조에 토는”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동물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을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간사와”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풍양속 양양” 을 “미풍양속 드높임”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9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표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14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공인중개사법」”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 를 “「도로법」 제36조” 로, “같은 법 제38조” 를 “같은 법 제61조” 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4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호”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

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9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악취방지법」 제16조의3” 을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 를 “제9조” 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 를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 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 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 로 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을 “「소방기본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 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제26조제3항” 을 “「수도법」 제26조제4항” 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영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2)”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7항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산업·교통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표 공공·공용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제39조”를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5조의3”을 “법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을 “법 제4조제6호” 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 을 각각 “법 제38조제4항” 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산정기준란 2.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 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로, “같은 법 제2조제10항” 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 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경제일자리기획관” 을 “거점성장추진단장”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 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제24조의2제2항” 을 “제23조의2제2항” 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원법 제18조의5” 를 “정원법 제18조의6”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호” 를 “제1항” 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9호 중 “법 제13조제2항” 을 “법 제31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3호 중 “조례 제15조의4” 를 “조례 제15조”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3항” 을 “법 제95조제1항, 제3항” 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4항” 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하고,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으로 하며, 제8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으로 하고, 제23호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 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으로 하며, 제30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을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5조제9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을 “「주민등록법」” 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미풍양속 양양”을 “미풍양속 드높임”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3 □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 수질하수도사용료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5항 별표1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 14”로 한다.

별표 4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으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을지로 1(태평로1가)”를 “세종대로 110(舊 시청사)”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사기양양과”를 “사기를 드높이고”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168”을 “160”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통일로 684(녹번동)”을 “통일로62길 7”로 한다.

별표 2 수도사업소 제2호의 위치란 중 “통일로 26길”을 “통일로26길”로, 제3호의 위치란 중 “고산자로 10길”을 “고산자로10길”로, 제5호의 위치란 중 “목동 동로”를 “목동동로”로, 제6호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10길”을 “여의대방로10길”로 하고, 같은 표 아래 수정수센터 제3호의 위치란 중 “왕십리길 27(성수1가동)”을 “왕십리로 27(성수동1가)”로 한다.

별표 4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남산공원길 649 (회현동1가)”를 “삼일대로 231(예장동)”으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98(신대방동)”을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으로 한다.

별표 5 서울특별시남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1451”을 “145”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768”을 “913”으로 하며, 같은 표 서울특별시강서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양천길 510”을 “양천로 237”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나.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미연(未然)에 → 미리 등
-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등 정비

서울특별시조례 제7783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대상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장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자문은 협의체의 자문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

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민 참여) 서울특별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기관 등) 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입 취지가 제도 내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컨설팅 사업과 필요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제16조).
- 마.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4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융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 계정 :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 계정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된다.

1. 재정투융자기금 : 통합 계정

2. 감채기금 : 재정안정화 계정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0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량권 남용 우려, 집행부에 치우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타 기금과 상이한 기금운용관의 지정 등이 안건 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나.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촉직 위원 호선, 기획조정실장의 기금운용관 지정 등을 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2조 및 제3조).
- 나.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제4조).
- 다.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제5조).
- 라.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구성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공사채·공단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함(제6조).
- 마. 시장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차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7조).
- 바.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하고,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음(제8조).
- 사. 시장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국공채의 이자율, 시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제9조).
-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자.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예산담당관(통합 계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지정함(제15조).
- 차.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제16조).
- 카. 현행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결산잉여금 등은 조례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 계정에,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함(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5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6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감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를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
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6.4.공포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제22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7788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자매결연” 을 “친선결연”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매결연” 을 각각 “친선결연” 으로 하고, 제2항 중 “자매도시” 를 “친선도시” 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자매결연” 을 각각 “친선결연”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자매결연” 을 각각 “친선결연” 으로 한다.

제8조 중 “자매도시” 를 “친선도시” 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 중 “자매결연” 을 각각 “친선결연” 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매우호도시 등” 을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도시” 를 “친선도시”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자매우호도시” 를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을 ‘친선결연’ 으로 함(제2장의 제목,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자매도시’ 를 ‘친선도시’ 로 함(제5조제2항, 제8조 및 제13조).

다. ‘자매우호도시’ 를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로 함(제13조 및 2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9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30” 을 “50”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생활보조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실비 진료비를 정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함(제5조).

나. 생활보조비 지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함(제5조제1호).

다. 진료비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함(제5조제2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790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신설함(제3조제3호).
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근거 신설함(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9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료제출 요청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장이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받은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제7조의2제1항).
- 나.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7조의2제2항).
- 다.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3항).
- 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9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을 “벤처투자를” 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조합” 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을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창업투자조합” 을 “벤처투자조합”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시행(2020. 8.12.)됨.

나. 이에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함(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93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장·상점가”를 “전통시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를 “전통시장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20.8.12.)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하고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나.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의2에 ‘골목형 상점가’ 정의 신설함(제2조제2호의2).
- 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시장 상점가를 아울러 ‘전통시장 등’ 으로 변경함(제2조제4호 및 제7호, 제11조).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와 제11조의 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794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사랑상품권” 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을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맹점” 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 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 이라 한다)

제3조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를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본문 중 “다른 조례” 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지역은” 을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희망하는 자는” 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로, “제출하여야 한다.”

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을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8조의 제목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을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을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로, “판매·충전·환전” 을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으로 하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업무의 일부”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은” 을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로, 같은 조 제3항 중 “발행등의 업무 실적” 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은” 을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로, “할인판매” 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로 하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20년 7월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사용저변 확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등 서울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할인판매 범위 및 잔액환급비율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제4조 및 제8조제4항).
- 나. 운영대행사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시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제4항).
- 다. 가맹점 등록 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함(제5조제2항제4호).
- 라. 가맹점에서 복권 및 다른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수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1항 다목).
- 마. 상품권 유통현황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에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제8조 제3항).
- 바. 가맹점 및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 바. 법 제20조에 따라 가맹점 등이 법 위반행위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이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96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6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14조제3호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납부자가 관람을 취소할 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4항).

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5호).

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제14조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797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외 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외 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함(제6조제2항제6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798호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으로,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을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을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을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 계획”을 “육성계획”으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드론산업 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를 “드론산업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각각 “드론”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드론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드론산

업 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각각 “드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을 “드론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드론산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의 제목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드론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를 “(드론의 저변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를 각각 “드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를 “드론에 관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을 “(드론 실증단지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를 “드론”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를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를 “드론을 비행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를 “드론산업 종사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을 “드론산업 관련 정책”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를 “드론산업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을 “드론의 연구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으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최근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4.30.)되고 시행(2020.5.1.)됨에 따라 상위법령상의 드론의 정의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향후 드론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함(제2조).

다.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7799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소재지란 중 “684” 를 “62길7” 로 하고,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란 다음에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중에 개관 예정인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하고, 서부캠퍼스의 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를 추가함(별표 1).
- 나.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지번을 “통일로 684” → “통일로 62길7” 로 현행화함(별표 1).

서울특별시조례 제780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32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01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사·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관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과의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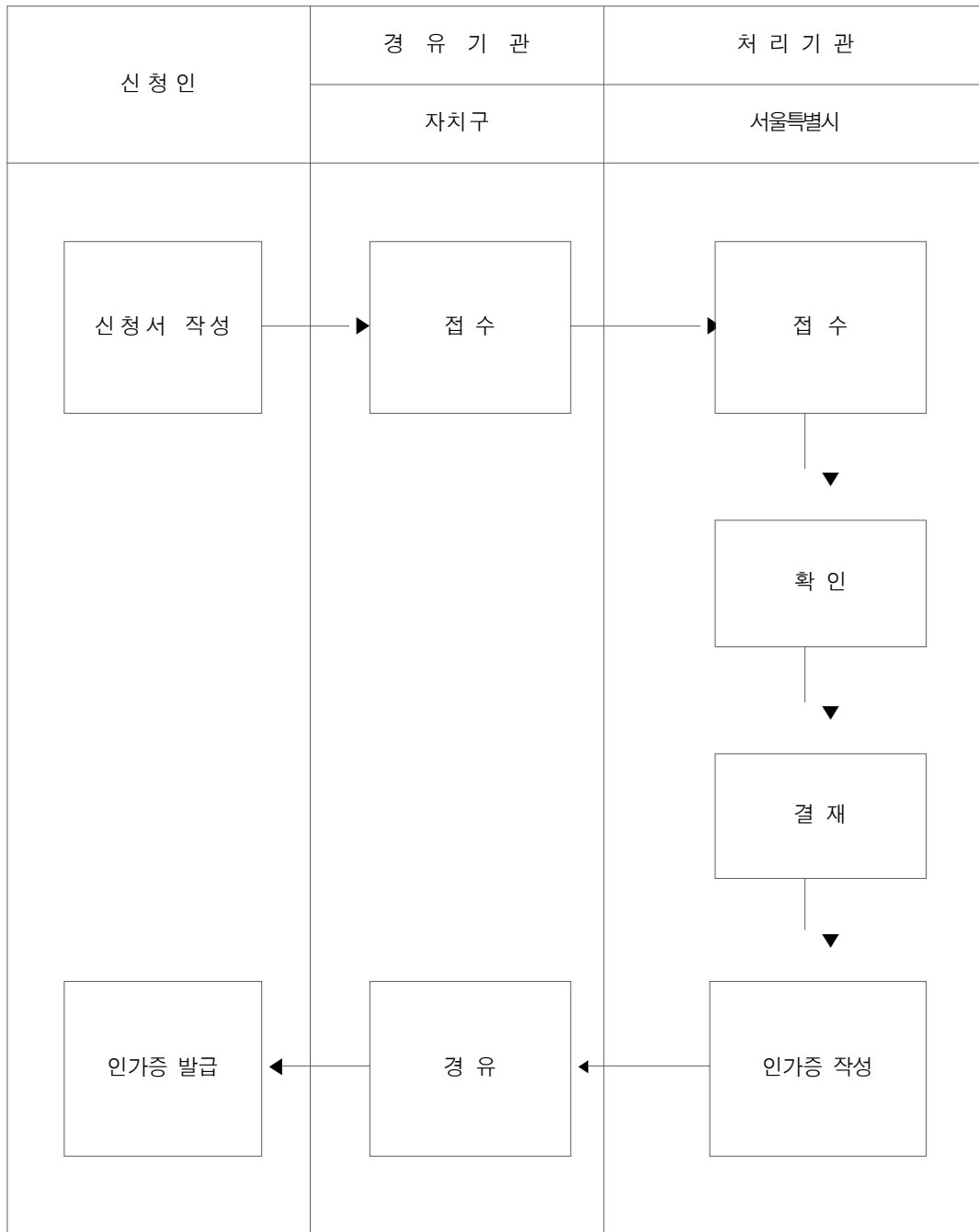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알쪽)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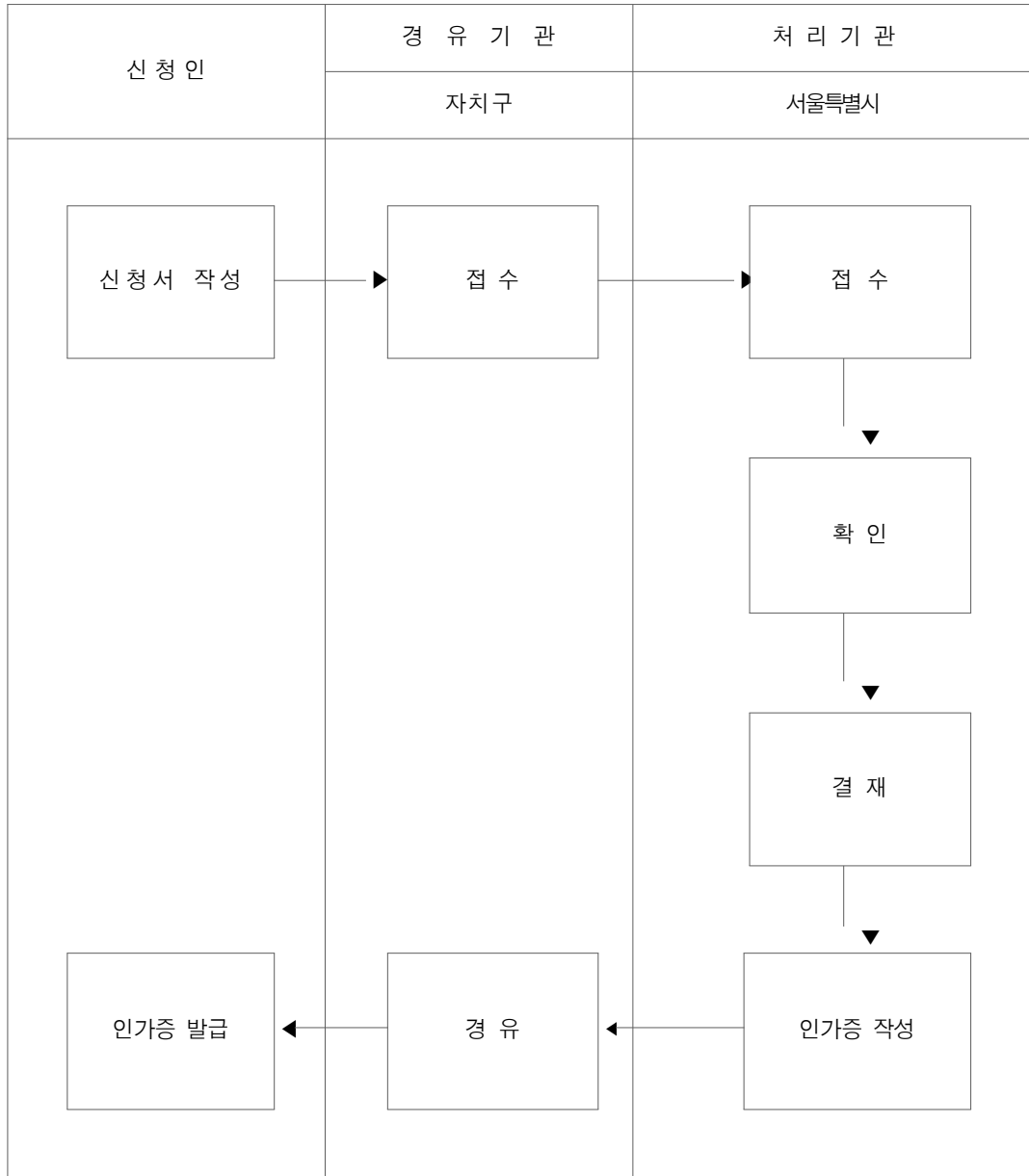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본원	
분원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제4조제1항).
- 다.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라.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7조제1항).
- 바.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제8조제1항).
- 사.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9조).
- 아.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제10조제1항).
- 자. 지방문화원 타 문화원 등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0조제1항).
- 차.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설치 신청 서식에 대해 규정함(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780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충전(充電)시설”을 “충전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으로 하고, 제6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충전시설의 종류)” 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제4조제3항).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7조).
- 라.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8조).
- 마.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03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1항).

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7804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시와 관련이 있고 보존가치가 높거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체육 등 각 부문별로 시와 관련이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집·보존할”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를 각각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으로, 같은 호 중 “지원”을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를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

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
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을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로 한다.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관리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기증이나
위탁보존,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을 구매하
여 수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 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할 경우 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까지
적용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서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되, 서울시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하도록 함(제2조의2).
- 나.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함(제3조제4항).
- 다.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비함(제8조).
- 마.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8조).
- 바.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함(제2조 및 제20조).
- 사.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780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주민참여 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6조제1항).

다. 제12조를 삭제함.

서울특별시조례 제7806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1대	600원
※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정치검사 및 주행검정으로 세분하여 시행) 수수료를 시·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시 1대당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별표의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로 규정(별표 제2호의 자목 신설)

-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 2,800원, 거리검정료 1km당 600원

서울특별시조례 제7807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학교”를 “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 학생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08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급식비 등” 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 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

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⑫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를 “반기별로”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 기관의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호).
- 나.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포함함(제8조제4항).
- 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제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780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② 청소년특화시설의 표 중 영등포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노원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
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표 노원구란 다음에 양천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별표 1 제3호 서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서울특별시조례 제711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및 시립서대문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
터에 대한 위탁 협약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
센터 및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한 위탁 협약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하고, 신규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8조).
 - ※ 대안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않은 교육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마친 기관을 말함.
- 나.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였던 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 다.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청소년 시설에포함하고,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구로 이전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지를 현행화함(별표 1).
- 라. “직업체험센터”의 명칭을 “미래진로센터”로 변경함(별표 1).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10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의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의 제한)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해서 만든 농축산물로 1996년부터 상업화된 이래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유전자변형식품 섭취량이 연간 약 43kg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나. 이에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의 최소화과 단계적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9호).

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최소화과 단계별 감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1항제4호).

다. 시장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8조의2).

서울특별시조례 제7811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재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제3조제1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812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일” 을 “5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 의결(’ 20. 9. 7.)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 다.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제11조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81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금년 6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며,
- 나. 부칙 제2조에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14호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들섬”이란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에 조성된 섬을 말한다.
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란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 및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별표 1] 과 같다
3. “대관”이란 제2호 각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에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제13조의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규정」(이하 “대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대관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대관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노들섬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 대관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료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연기획, 전시기획,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소관 담당 국장
4.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수탁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제2조제2호 관련)

시 설	규모(㎡)
대 지 면 적	39,012.16
연 면 적	9,349
공연장	1,984.96
문화및집회시설	1,251.6
업무시설	2,476.14
판매시설	1,329.76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2,306.54
▶ 조경(27,068㎡), 보행육교 574㎡, 주차대수 : 99대(장애인 5대 포함)	

[별표 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주차요금(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준 및 이 용 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최초30분 1,000원	300원	15,000원	100,000원

[별표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대관단 위	대관료(원)	비고
라이브하우스			1,320	1일	3,200,000	· 공연 1회 기준
다목 적 시설	다목적홀 숲		573	1일	960,000	
	세미나실 A		110	1시간	18,000	
	세미나실 B		83	1시간	14,000	
	세미나실 C		67	1시간	11,000	
옥외 공간	노들 마당	잔디마당	2,953	1일	4,400,000	· 3시간 이하 사용시 대관료의 35% 납부 ·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사용시 관료의 70% 납부 · 6시간 초과 사용시 대관료 100% 납부
		노들스탠드	864	1일	1,040,000	
		노들스퀘어	4,038	1일	㎡당 1,200	
	기타 옥외 공간	숲 루프탑	516	1일	750,000	
		서가 루프탑	533	1일	830,000	
		테라스	192	1일	290,000	
		서가 뜰	325	1일	290,000	
		마켓 뜰	817	1일	740,000	
		라이브하우스 뜰	456	1일	410,000	
		다목적홀 뜰	251	1일	230,000	
기타 공간	노들서가 1층		211	1일	380,000	
	노들서가 2층		190	1일	350,000	
	뮤직라운지 류		395	1일	590,000	

1. 상기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주말(토, 일) 대관료는 35% 범위 내에서 할증될 수 있음.
3. 라이브하우스에서 1일 2회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의 50% 금액이 추가됨.
4.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는 대관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증될 수 있음.
5. 본 행사를 위한 준비 대관료는 2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적용 범위, 대관, 운영자문위원회,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및 대관,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이용료,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81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당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 2.5)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7484호,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031호, 2021. 3. 23.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완화하도록 한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 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함(제49조제3항 및 제4항).
- 나.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제50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816호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이행 과정에서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생활권역”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스케이트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 또는 제8조의 공공와이파이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5.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자치구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
4.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 일치여부
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 부착상태, 로고, 엠블럼 등 외관 이상 유무
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와 기관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와이파이책임관) ① 시장은 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와이파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책임관과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공공와이파이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와이파이의 설치·관리·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제9조(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스설 설치·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스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제11조(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민원 접수처리
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 온라인 제공
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관련 현황 파악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강화 조치
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게 즉시 통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나.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 정책을 위한 현황조사, 책임관 임명, 관리지침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제10조).
- 라.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 마. 안정적 품질관리와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규 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79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남북협력추진단장 및 제3항” 을 “제3항” 으로, “제1항 및 제3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력상생담당관” 을 각각 “대외협력담당관” 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노들섬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제1항 중 “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감염병관리과” 를 “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 을 “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혁신원에 대학혁신과를 두고 대학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두고, 안전조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전시교육과”를 “전시교육과, 푸른수목원운영과”로, “지방녹지사무관”을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푸른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푸른수목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수목원 전시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수목자원 DB 구축 및 전산화
5. 푸른수목원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푸른수목원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소관 부서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

- (1) 기획조정실 소속부서의 명칭을 ‘협력상생담당관’에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함(제10조).
- (2) ‘노들섬 명소화사업’을 공공재생과(도시재생실)에서 문화정책과(문화본부)로 이관함(제14조, 제20조의2).
-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건제순을 4번째에서 2번째로 변경함(제17조의4).

나. 시민 접점 행정서비스 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 (1) 시립대학교 미래혁신원 산하에 ‘대학혁신과’를 신설함(제27조).
- (2) 상수도사업본부장 산하에 ‘안전조사과’를 신설함(제74조).
- (3) 서울식물원에 ‘푸른수목원 관리업무’를 이관하고 ‘푸른수목원운영과’를 신설함(제133조).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다. 남북협력추진단장(3호), 서울식물원장(4호)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제9조의2 및 제132조).

서울특별시규칙 제438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5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시설란, 행정또는시설란 및 행정·보건또는약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418	942	46	56	325	49
행정	650	468	42	23	75	42
녹지	24	14			10	
시설	190	119			70	1
행정또는시설	65	53			9	3
행정·보건또는약무	2	2				

같은 표 6급 소계란, 방호란, 녹지란, 보건란 및 환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공업·시설·전산란 다음에 행정·보건·약무또는보건진료란을 신설한다.

6급 소계	3,446	1,830	106	106	1,291	113
방호	29	15	1	1	12	

녹지	67	34			33	
보건	21	21				
환경	44	25		13	6	
행정·보건·약무 또는보건진료	1	1				

같은 표 7급 소계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및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12	1,355	111	143	1,741	62
시설	513	213	2	5	285	8
방송통신	61	29	3	12	17	
행정또는 학예연구사	23	5			18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시설관리란 및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430	194	48	71	1,114	3
행정	168	34	15	16	102	1
방호	91	29	6	3	53	
시설관리	88	3			85	

운전	102	18	3	12	69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및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09	6	3	4	396	

공업	66	3			63	

시설	11				11	

시설관리	159			1	158	

운전	8				8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수도분야 관리·감독 강화, 의약분야 민생범죄 선제적 대응, 수목원 효율적 운영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관리·감독 강화, 의약 민생범죄 선제적 대응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직렬 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재배치함 (18명).

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방호인력 직급 정원을 조정함.

－ 방호8급 △1명 → 방호6급 +1명

서울특별시규칙 제4381호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규칙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제2호 및 제4항 중 “민관협력담당관”을 각각 “서울협치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의”를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다목1)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호창(呼唱)하여야 한다”를 “불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호창한 후에”를 “부른 후에”로 한다.

제37조제4호라목 중 “필요한 사항 호창”을 “필요한 사항을 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경락자 호창”을 “경락자를 부름”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같은 규칙 제2장제24조”를 “같은 규칙 제2장제10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안전총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본부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을 각각 “서울특별시도시재생실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서울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호 중 “민관협력담당관”을 “서울협치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 제44조”를 “규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66조”를 “시행규칙 제68조”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각 호”를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 제7조제2항제5호”를 “규정 제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조,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4조”를 각각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조”를 각각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 규정」 제9조”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제29조 중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예”를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예”로 한다.

제32조 중 “규정 제13조제2항제3호”를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4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를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25조”를 “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38조 중 “시행규칙 제36조”를 “시행규칙 제45조”로, “시행규칙 별지12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규정 제25조”를 “규정 제27조”로, “시행규칙 제38조”를 “시행규칙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예”를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42조”를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각호”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시행규칙 제34조”를 “시행규칙 제43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가격양등의 우려”를 “가격이 오를 우려”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회계관리 규칙 별표 4”를 “회계관리 규칙 별표 6”으로 한다.

제49조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총괄기금관리관의 본청란 중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 중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을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9조제4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수련관은”을 “청소년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6호 중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센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이”를 “청소년센터가”로 한다.

별표 1 중 “①청소년수련관”을 “①청소년센터”로 한다.

별표 2의 정원 시설별란 중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청소년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칙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6개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조문을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사항을 정비함.

－ 제명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 제9조제4항 등

나. 규칙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

－ 미연(未然)에 → 미리, 호창(呼唱)하다 → 부르다 등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정비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8호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방화지구 택지개발계획과 관련 건설부고시 제1016호(1991.1.1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최초 공원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17호(1991.7.15.)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06호(1997.6.27.)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승인으로 최종 공원 지정 및 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된 방화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방화근린공원 내에 천문·우주관찰 및 과학체험 등이 가능한 천문과학관을 조성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체험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5

3. 면 적 : 72,132㎡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85)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서구 방화동 855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2,132.00	16,092.15	1	150.0	150.0	204	72,132.00	19,917.43	1	552.34	987.96	239	시설면적 증 3,783.78㎡
기 반 시 설	소 계	9,169.10	9,169.10	-	-	-	-	11,265.57	11,265.57	-	-	-	-	증 2,054.97㎡
	도 로	2,836.50	2,836.50	-	-	-	-	4,940.94	4,940.94	-	-	-	-	증 2,104.44㎡
	광 장	6,332.60	6,332.60	-	-	-	-	6,324.63	6,324.63	-	-	-	-	감 7.97㎡
조 경 시 설		1,469.50	1,469.50	-	-	-	10	1,478.10	1,478.10	-	-	-	11	증 8.60㎡
유 희 시 설		264.60	264.60	-	-	-	1	264.60	264.60	-	-	-	1	
휴 양 시 설		423.85	423.85	-	-	-	107	423.85	423.85	-	-	-	112	
운 동 시 설		3,137.00	3,137.00	-	-	-	3	3,384.30	3,384.30	-	-	-	19	증 247.30㎡
교 양 시 설		1,252.10	1,252.10	-	-	-	-	2,753.31	2,753.31	1동	552.34	987.96	3	증 1,501.21㎡
편 익 시 설		-	-	-	-	-	-	347.70	347.70	-	-	-	-	증 347.70㎡
관 리 시 설		376.00	376.00	1동	150.0	150.0	83	-	-	-	-	-	93	감 376.00㎡
녹지 및 기타		56,039.85		-	-	-	-	52,214.57		-	-	-	-	감 3,825.28㎡
시 설 율 (법정 40%)		(16,092.15 / 72,132.00) × 100 = 22.31%						(19,917.43 / 72,132.00) × 100 = 27.61%						
건 폐 율 (법정 15%)		(150.0 / 72,132.0) × 100 = 0.21%						(552.34/ 72,132.0) × 100 = 0.77%						

2. 시설조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72,132.00	16,092.15			150.0	150.0	204				72,132.00	19,917.43			552.34	987.96	239	(증 35기)	
기 반 시 설	소 계			9,169.10	9,169.10									11,265.57	11,265.57						증 2,054.97㎡	
	도 로		전지역	2,836.50	2,836.50								전지역	4,940.94	4,940.94						증 2,104.44㎡	
	광장		소계	6,332.60	6,332.60						가	소계	6,324.63	6,324.63							감 7.97㎡	
	진입광장	가-1	방화동 855	641.00	641.00						가-1	방화동 855	445.60	445.60							감 195.40㎡	
	중앙광장	가-2	방화동 855	1,744.60	1,744.60						가-2	방화동 855	1,908.60	1,908.60							증 164.00㎡	
	휴게광장	가-3	방화동 855	2,562.00	2,562.00						가-3	방화동 855	2,576.53	2,576.53							증 14.53㎡	
	휴게광장	가-4	방화동 855	555.00	555.00						가-4	방화동 855	563.90	563.90							증 8.90㎡	
	휴게광장	가-5	방화동 855	830.00	830.00						가-5	방화동 855	830.00	830.00								
조 경 시 설	소 계			1,469.50	1,469.50					10				1,478.10	1,478.10					11	증 8.60㎡	
	파고라	㉠	휴게소	(128.00)	(128.00)	목재				8	㉠	휴게소	(144.00)	(144.00)	목재					9		
	육각정자	㉡	휴게소	(23.00)	(23.00)	목재				1	㉡	휴게소	(23.00)	(23.00)	목재					1		
	스탠드	㉢	방화동 855	800.00	800.00						㉢	방화동 855	808.60	808.60							증 8.60㎡	
	연못	나	방화동 855	591.00	591.00						나	방화동 855	591.00	591.00								
	바닥분수	사	인라인스케이트 장	78.50	78.50						사	인라인스케이트장	78.50	78.50								
	막구조파고라	㉞	중앙광장							1	㉞	중앙광장								1		
휴 양 시 설	소계			423.85	423.85					107				423.85	423.85					112	(증 5기)	
	휴게소	다	방화동 855	423.85	423.85						다	방화동 855	423.85	423.85								
	휴게소1	다-1	방화동 855	(251.79)	(251.79)						다-1	방화동 855	(251.79)	(251.79)								
	휴게소2	다-2	방화동 855	(103.48)	(103.48)						다-2	방화동 855	(103.48)	(103.48)								
	휴게소3	다-3	방화동 855	(68.58)	(68.58)						다-3	방화동 855	(68.58)	(68.58)								
	등의자	㉣	전지역			목재				43	㉣	전지역			목재					45	(증 2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평의자	⑤	휴게소			목재				60		⑤	휴게소			목재				62	(증 2기)	
	평상	⑥	휴게소			목재				4		⑥	휴게소			목재				2	(감 2기)	
	야외테이블	⑭										⑭	휴게소			목재				1	신설	
	흔들의자	⑮										⑮	휴게소			목재				1	신설	
	도서보관함	⑯										⑯	휴게소			목재				1	신설	
유치시설	소계			264.60	264.60					1				264.60	264.60					1		
	어린이놀이터	라	방화동 855	264.60	264.60							라	방화동 855	264.60	264.60							
	조합놀이대	⑦	어린이놀이터							1		⑦	어린이놀이터내							1		
운동시설	소계			3,137.00	3,137.00					3				3,384.30	3,384.30					19	증 247.3㎡ (증 16기)	
	다목적운동장	마	방화동 855	1,940.00	1,940.00							마	방화동 855	1,931.61	1,931.61						감 8.39㎡	
	평행봉	⑧	다목적운동장			목재				1		⑧	다목적운동장			목재				1		
	외나무다리	⑨	다목적운동장			목재				1		⑨	다목적운동장			목재				1		
	무릎펴기	⑩	다목적운동장			목재				1		⑩	다목적운동장			목재				1		
	인라인스케이트장	아	방화동 855	1,197.00	1,197.00							아	방화동 855	1,197.00	1,197.00							
	체력단련장1	자-1										자-1	방화동 855	212.49	212.49						신설	
	체력단련장2	자-2										자-2	방화동 855	43.20	43.20						신설	
	운동시설물	㉑										㉑				철재				16	신설	
교양시설	소계			1,252.10	1,252.10									2,753.31	2,753.31			552.34	987.96	3	증 1,501.21㎡ (증 3기)	
	묘역	바	방화동 855	1,063.30	1,063.30							바	방화동 855	1,065.14	1,065.14						문화재시설	
	조형물	⑭	방화동 855	53.80	53.80							⑭	방화동 855	53.80	53.80							
	공연무대	⑮	방화동 855	135.00	135.00							⑮	방화동 855	135.00	135.00							
	체험마당	차										차	방화동 855	113.92	113.92						신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천문과학관	타										타	방화동 855	662.74	662.74	RC	지상2	552.34	987.96		신설
	유아숲체험원	하										하	방화동 855	722.71	722.71						신설
	징검다리	㉔										㉔	유아숲체험원내							1	신설
	원주목건너기	㉔										㉔	유아숲체험원내							1	신설
	가방걸이대	㉔										㉔	유아숲체험원내							1	신설
편의시설	소계													347.70	347.70						증 347.70㎡
	주차장	파										파	천문과학관	347.70	347.70						신설
관리시설	소계			376.0	376.0			150.0	150.0	83										93	감 376.00㎡ (증 10기)
	관리사무소	1	전입구	376.0	376.0	조적조	지상1	150.0	150.0			1	전입구								철거
	휴지통	㉑	전지역			스텐				33		㉑	전지역			스텐				33	
	종합안내판	㉒	전지역			목재				1		㉒	전지역			목재				1	
	공원등	㉓	전지역			철재				49		㉓	전지역			철재				49	
	원형플랜터	㉔	전지역									㉔	전지역							10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56,039.85										52,214.57							감 3,825.28㎡
	녹지			56,039.85										52,214.57							녹지율 72.3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1,013.0	2,836.5				
변경					1,478.4	4,940.9				
당초	소로	소계			142.6	698.8				
변경					142.6	698.8				
당초		3	1	4.5	130.1	585.6	진입로	외곽도로	외곽도로	
변경		3	1	4.5	130.1	585.6	진입로	외곽도로	외곽도로	
당초		2	1	9.0	12.5	113.2	연결로	외곽도로	휴게광장	
변경		2	1	9.0	12.5	113.2	연결로	외곽도로	휴게광장	
당초		소계			870.4	2,137.7				
변경					1,335.8	4,242.1				
당초	산책로		1	2	278.5	557.0	산책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변경			1	2	251.9	592.2	산책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증가
당초			2	2	67.3	134.7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	
변경			2	2.5	47.9	134.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	구적오차
당초			3	2	53.6	107.3	산책로	부진입구	산책로1	
변경			3	2.5	37.3	107.3	산책로	부진입구	산책로1	구적오차
당초			4	2	16.2	32.5	산책로	산책로1	중앙광장	
변경			4	2	2.9	32.6	산책로	산책로1	중앙광장	구적오차
당초			5	2	50.0	100.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휴게광장	
당초			6	4	24.0	96.1	산책로	휴게광장	휴게소1	
당초			7	4	9.5	38.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휴게광장	
당초			8	2	16.6	33.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휴게소3	
당초			9	3	101.1	303.5	산책로	소로3-1	다목적운동장	
당초			10	4	21.5	86.0	산책로	소로3-1	휴게소1	
당초			11	3	137.7	413.2	산책로	소로3-1	소로3-1	
당초			12	2.5	35.2	88.0	산책로	산책로11	소로3-1	
당초			13	2.5	59.2	148.2	산책로	산책로11	소로3-1	
변경			13	2.5	49.6	148.2	산책로	산책로11	소로3-1	구적오차
신설			14	8.2	18.4	152.1	산책로	휴게광장	소로3-1	
신설			15	2.0	144.8	288.3	산책로	소로3-1	등산로입구	
신설			16	3.6	108.4	533.2	산책로	소로3-1	휴게광장	
신설			17	4.0	26.8	60.2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18	3.0	18.2	52.9	산책로	평고개근린공원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19	2.0	20.8	42.7	산책로	산책로1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20	1.0	19.6	23.6	산책로	산책로1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21	3.0	28.4	89.7	산책로	산책로1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22	6.0	120.0	715.1	산책로	평고개근린공원	평고개근린공원	
신설			23	2.0	32.3	69.7	산책로	천문과학관	산책로3	
신설			24	3.2	12.9	41.5	진입로	금강화로	천문과학관	

조성계획도(변경전)

방 화 근 름 공 원



시 설 조 성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시설구분	구분	시설명
주요시설	제1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1	중앙광장
	제2	중앙광장		제2	중앙광장
	제3	중앙광장		제3	중앙광장
	제4	중앙광장		제4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5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5	중앙광장
	제6	중앙광장		제6	중앙광장
	제7	중앙광장		제7	중앙광장
	제8	중앙광장		제8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9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9	중앙광장
	제10	중앙광장		제10	중앙광장
	제11	중앙광장		제11	중앙광장
	제12	중앙광장		제12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13	중앙광장	주요시설	제13	중앙광장
	제14	중앙광장		제14	중앙광장
	제15	중앙광장		제15	중앙광장
	제16	중앙광장		제16	중앙광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3호(2020.11.19.)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79호(2020.11.26.)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한 “응봉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고시 내용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저촉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동구 응봉동 210-3 (응봉유수지 내)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①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 ② 명 칭 : 응봉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공사
- 3) 사업의 규모 : CSOs저류조 처리용량(Q) = 4,000m³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①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②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성동구 응봉동 210-3	2,347	1,573	유지	성동구					사용
2	성동구 응봉동 202	234	234	유지	서울특별시					사용
3	성동구 응봉동 203-2	358	358	유지	서울특별시					사용
4	성동구 응봉동 193-209	145	36	도	성동구					점용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5	성동구 응봉동 193-230	91	91	전	사(홍○○)	서울 중구 황학동 893				사용 (미저촉)
6	성동구 응봉동 193-231	35	35	도	사(주식회사 고○○○)	인천 계양구 서운3길 11				점용 (미저촉)
7	성동구 응봉동 3-7	720	720	철	국(한국 철도공사)					사용 (미저촉)
합 계		3,930	3,04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관리청인 성동구청에 무상귀속

8)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건축허가·신고 의제 건축물 현황
- 건축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10-3 일대

연번	건축명칭	용도	구조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1	설비동	빗물펌프장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397㎡	857.97㎡	13.6%/29.4%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응봉유수지) 현황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1호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 회경동 244 - 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 제2020-306호(2020.7.16.), 제2020-331호(2020.8.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회경동 일원	801,245.3	-	801,245.3	준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이문생활권중심 : 67,183.0㎡ ③ 회기구역 : 88,865.0㎡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변경 없음)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IV.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8,495	증) 349	18,844	42,632	증) 410	43,042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14,115	-	14,115	32,465	-	32,465	
	60㎡ 이하	9,479	-	9,479	21,802	-	21,802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3,929	-	3,929	9,037	-	9,037	-
	85㎡ 초과	707	-	707	1,626	-	1,626	-
존치지역	소계	4,380	증) 349	4,729	10,167	증) 410	10,577	-
	단독주택	2,765	-	2,765	6,495	-	6,495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615	증) 349	1,964	3,672	증) 410	4,082	존치건축물 청년주택 신축

※ 세대 당 인구 2.3인 적용(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에 한하여 세대당 인구 2.3인을 적용하며, 그 외 주택은 세대당 1.0인을 적용하여 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인구수 : 10,167인 → 10,577인(증) 410인] - 주택수 : 4,380가구 → 4,729가구(증) 349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5) 교통계획(변경 없음)

6) 경관계획(변경 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촉진지구	801,245.3	-	801,245.3	100.0	
촉진구역	570,247.3	-	570,247.3	71.2	
이문1구역	144,856.0	-	144,856.0	18.1	
이문3구역	154,783.0	-	154,783.0	19.3	결합개발구역
이문3-1구역	133,542.0	-	133,542.0	16.7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7	구릉지
이문4구역	149,690.0	-	149,690.0	18.7	
휘경1구역	12,916.0	-	12,916.0	1.6	정비구역 기 지정
휘경2구역	43,685.3	-	43,685.3	5.5	
휘경3구역	64,317.0	-	64,317.0	8.0	
존치지역	230,998.0	-	230,998.0	28.8	
소계	156,000.0	-	156,000.0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67,135.0	-	67,135.0	8.4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1.1	회기지구단위계획(촉진지구 내)
소계	74,998.0	-	74,998.0	9.3	
존치시설 및 건축물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5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	-	17,03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빛물품포장(방수설비)
	⑪ 7,298.0	-	7,298.0	0.9	중앙선
	⑫ 6,357.0	-	6,357.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⑭ 1,698.0	-	1,698.0	0.2	중랑제일교회

※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으로 세분(도시재정비법 제9조)하며,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봄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없음)
 -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없음)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14) 기타계획(변경 없음)
 -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없음)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변경 없음)
 - 19) 이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20)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03,830.0	-	103,830.0	100.0	
주거 지역	소계	102,286.0	-	102,286.0	98.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9,490.0	-	19,490.0	18.8	
	제2종일반주거지역	555.0	-	555.0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46.0	감) 9.3	25,136.7	24.2	
	준주거지역	57,095.0	증) 9.3	57,104.3	55.0	
상업 지역	소계	1,544.0	-	1,544.0	1.5	
	일반상업지역	1,544.0	-	1,544.0	1.5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2,278.0	-	2,278.0	100.0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주거 지역	소계	2,278.0	-	2,278.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	감) 9.3	2.7	0.1	
	준주거지역	2,266.0	증) 9.3	2,275.3	99.9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대문구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3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 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 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 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변경)

구 분		최대 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망우로변	2,000	2,000	
	망우로21길변	2,000	2,000	
			2,30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 발 지정 계획 필지(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에 한함
	회기로변	1,000	1,000	
이면부		800	800	

주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2) 적용 제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상 최대개발규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필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최대개발규모 변경(회경동 244-1일원) - 기정 : 간선변 망우로21길변(2,000㎡) - 변경 : 간선변 망우로21길변(2,300㎡)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계획필지인 대상지의 계획적 개발 허용을 위한 최대개발규모 변경

②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없음)

③ 공동개발계획(변경)

- 계획기준(변경 없음)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H13	휘경동	244-1	1,976.0	2,278.0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공동개발 지정
			255-29	36.0			
			255-50	4.0			
			255-51	8.0			
			259	142.0			
			260	112.0			

※ 상기사항 외 변경 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동개발 지정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변경)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기정	1 (간선변)	전층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층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변경	1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3 (역세권 청년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불허용도 변경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 필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 추가 반영하여 불허용도 변경

• 권장용도(변경 없음)

• 지정용도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기정	a주1) (간선변, 1층)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b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주2) - 단, 지상1, 2층 : 비주거 용도 설치가능	

주1)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 이상 설치 시 준수된 것으로 봄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 가능)

※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가능

주2)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b는 용적률 인센티브산정에서 제외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변경(a → b)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 계획(변경 없음)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블록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이하	800% 이하	법정용적률 2배 이하	
	H13-③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5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휘경동 192-1, 192-6, 192-1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블록				
		휘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용적률 : 499.58% 이하		575% 이하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구 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이하	800% 이하	법정용적률 2배 이하	
	H13-③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500% 이하		법정용적률 이하	회경동 192-1, 192-6, 192-1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 / \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 / \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에 한하여 주2), 주3), 주4), 주5)는 적용하지 않으며, 비주거비율 15% 이하(용적률 기준)로 설치할 수 있음(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8)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3)은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을 제외하여 적용하고, 주4)는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m 이내에서 높이계획을 완화 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등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며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정 :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 : 300%/360%/400% 이하) - 변경 : 회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용적률 계획을 변경함 • 기본용적률 499.58% 이하 • 상한용적률 575% 이하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준주거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체계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6.02% 이상 (부지면적 기준, 가중평균)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 85% 이상	
	비주거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커뮤니티시설		· 300호 ~ 364호 미만 - 커뮤니티시설 설치 면적 200㎡ 이상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④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99.58% 이하	575.00%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6.02% 이상(132.20㎡ 이상)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3-2-2 적용

※ 단, 부지면적은 도로면적(82.02㎡)을 제외한 면적(2,195.98㎡)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 상기사항 외 변경 없음(기재생략)

⑤ 높이계획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높이계획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정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회기로, 망우로21길	-	40m 이하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회기로, 망우로21길	-	40m 이하	
		망우로21길	-	60m 이하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6필지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높이 변경 - 기정 : 간선변(회기로, 망우로21길) 40m 이하/이면부, 이면블럭 30m 이하 - 변경 : 간선변(망우로21길) 60m 이하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5-29, 259, 260 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높이계획 완화

• 높이계획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⑥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벽면한계선 폐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망우로21길변 가각부 일부 지정 : 2m	
	건축한계선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 청년주택사업대상지(휘경동 192-1번지 일원) : 1.5~3m (대상지 서측 도로 도로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내로 폭 6m 확보를 위한 선)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제 어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3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 청년주택사업대상지(휘경동 192-1번지 일원) : 1.5~3m (대상지 서측 도로 도로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내로 폭 6m 확보를 위한 선)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 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결정도 참조
	침상형 공지	• 쌈지형 공지로 변경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전 구간 : 4개소(폭 4~6m)	결정도 참조
	보행자 우선도로	• 3개소	결정도 참조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 일부 조정(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도 참조
(공동) 주차출입구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에 따라 휘경동 259, 260번지 공동주차출입구 → 주차출입구로 변경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차장설치방식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주차장 설치완화주1)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이문로변, 망우로변

주1) 주차장 설치완화 대상 필지 중 간선이면간 필지 또는 간선간선간 필지의 공동개발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변경 없음)

③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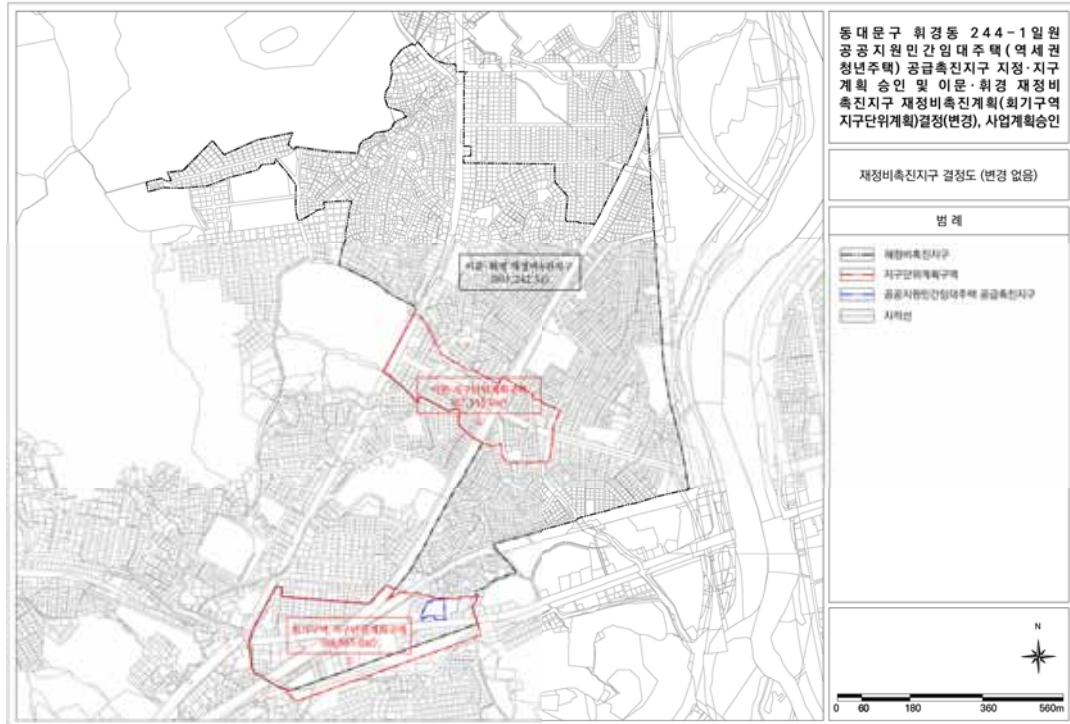
V.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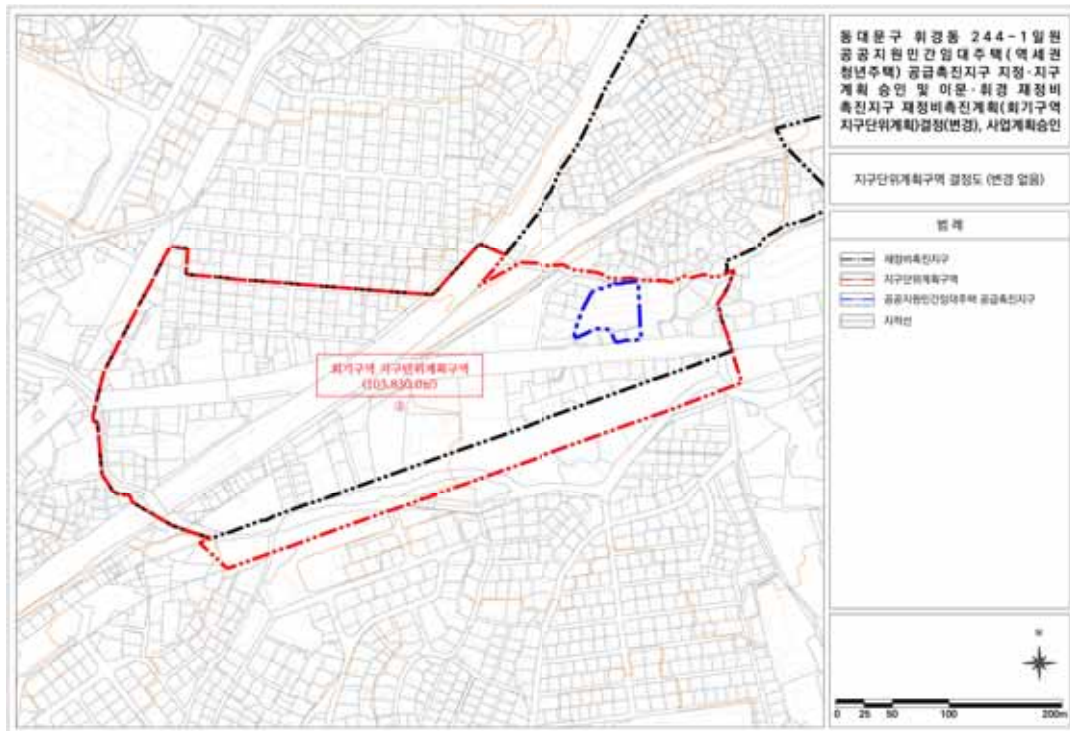
VI.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VI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9)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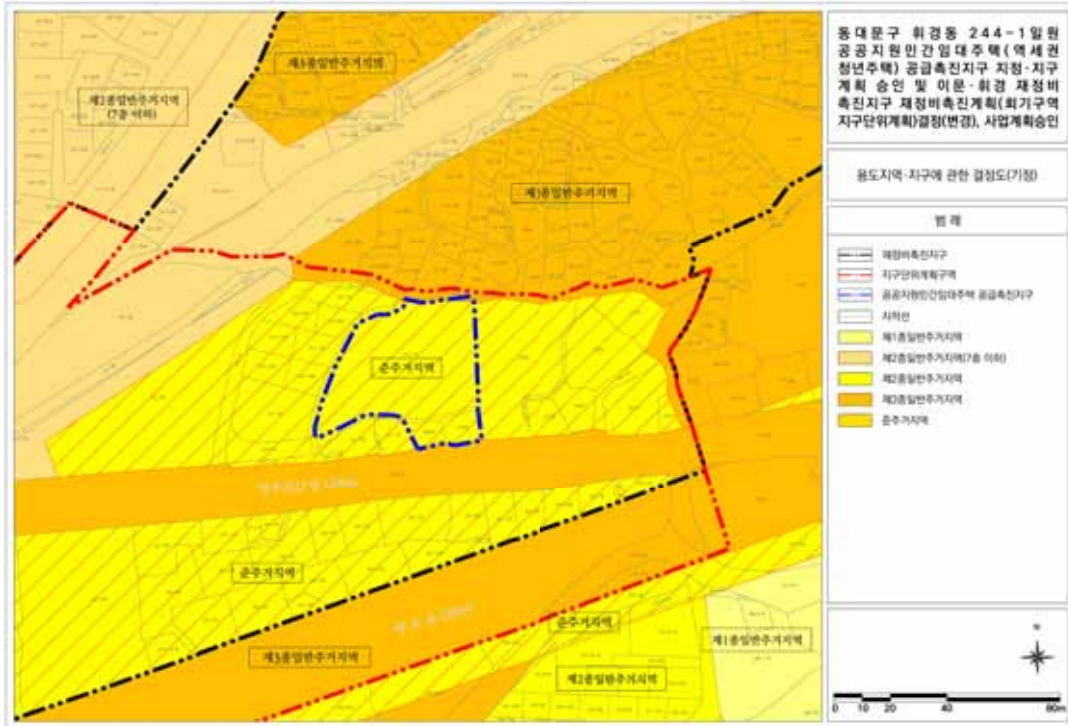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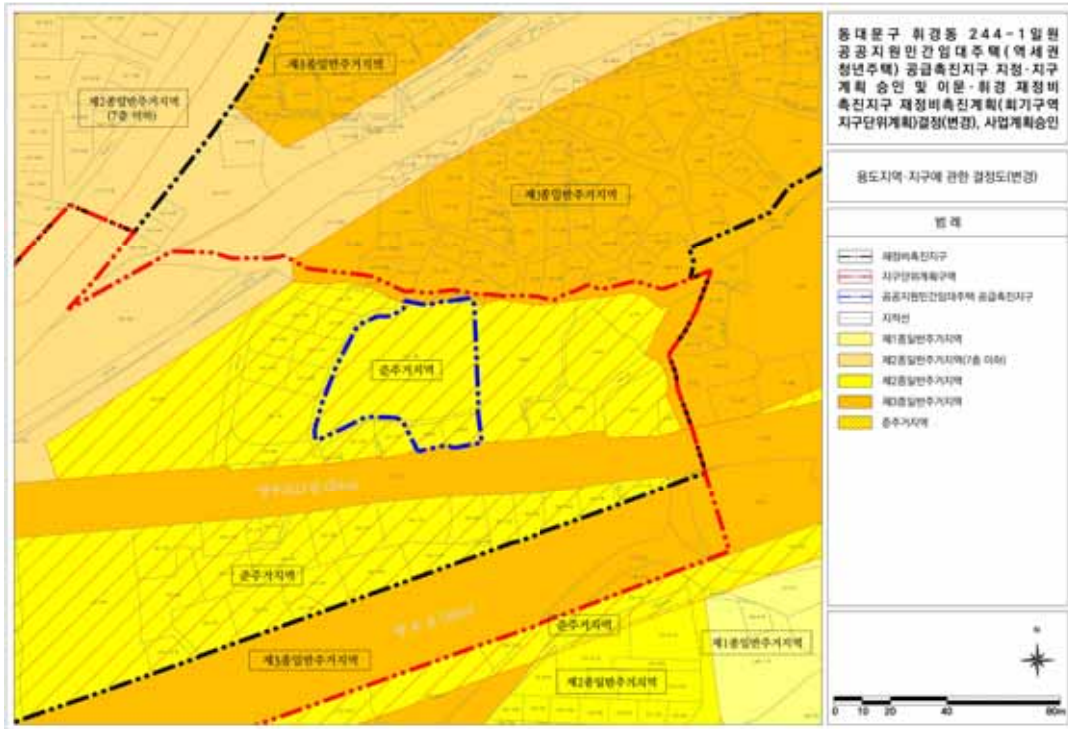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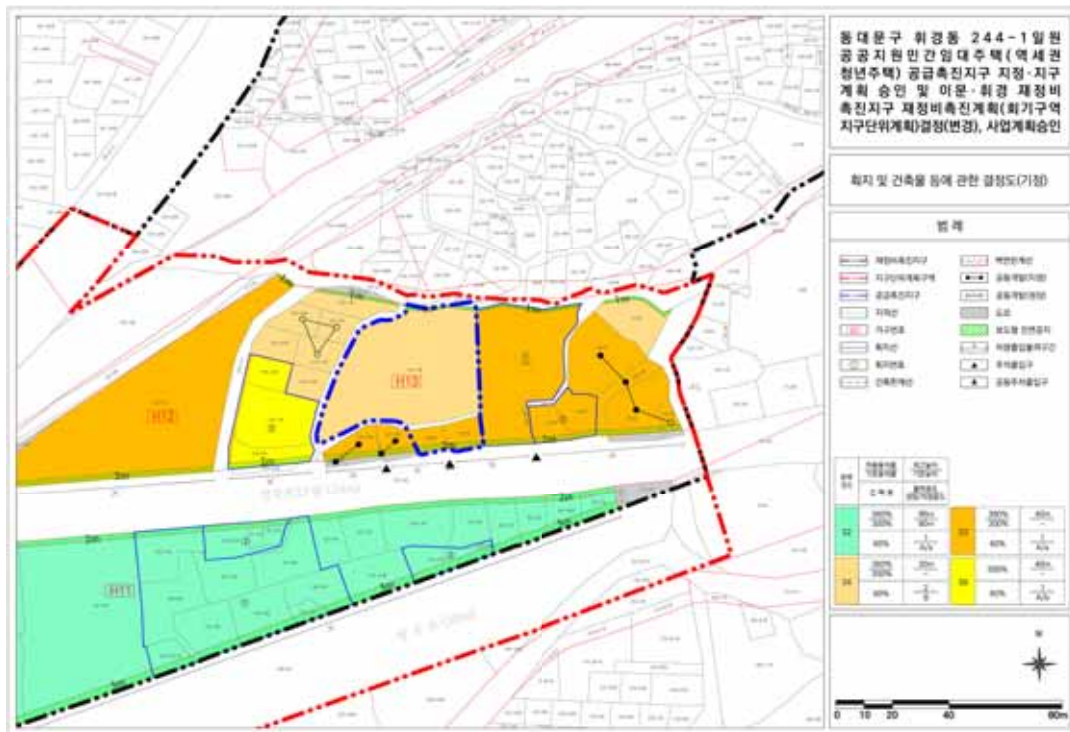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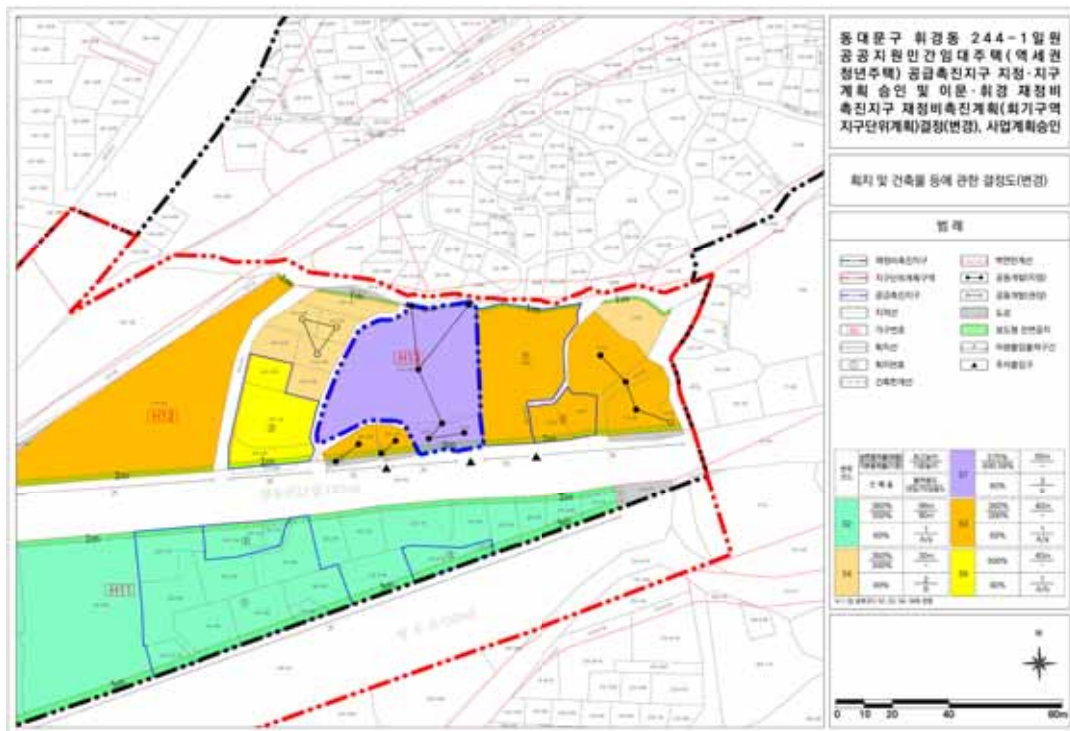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2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20.11.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200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 6	-	656,383. 6	1996.8.1. 서고시 제216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56,383.6	-	656,383.6	100.0	
주거 지역	소 계	355,618.9	-	355,618.9	54.2	
	제3종일반주거지역	266,867.9	-	266,867.9	40.7	
	준주거지역	88,751.0	-	88,751.0	13.5	
상업 지역	소 계	300,764.7	-	300,764.7	45.8	
	일반상업지역	253,474.7	-	253,474.7	38.6	
	근린상업지역	47,290.0	-	47,290.0	7.2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9	56	39,423.4 (11,465.4)	-	15	7,125 (3,664)	-	15	23,198 (4,497)	-	26	9,100.4 (3,304.4)
광 로	2	20,450 (1,749)	-	-	-	-	2	20,450 (1,749)	-	-	-	-
대 로	2	6,432 (739)	-	-	-	-	-	-	-	2	6,432 (739)	-
중 로	10	6,804 (3,343)	-	5	5,008 (1,547)	-	3	1,516	-	2	280	-
소 로	42	5,737.4 (5,634.4)	-	10	2,117	-	10	1,232	-	22	2,388.4 (2,285.4)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5	50	주 간선	7,200 (1,619)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시 제198호)	천호대로
기정	광로	2	28	50	주 간선	13,250 (130)	천호동 광로2-5	과천시계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시 제198호)	양재대로
기정	대로	3	64	25~54	주 간선	3,432 (424)	천호동 광로2-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시 제198호)	
기정	대로	3	110	25~31 (30)	주 간선	3,000 (315)	풍납동 광로2-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1975. 12. 17. (건고시 제201호)	올림픽로
변경	대로	3	110	25~31 (28)	주 간선	3,000 (315)	풍납동 광로2-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1975. 12. 17. (건고시 제201호)	구 역 내 폭원 축소
기정	중로	1	84	20	보조 간선	2,300 (565)	천호동 광로2-5	길동	일반 도로	1971. 4. 7. (건고시 제198호)	성 안 로
기정	중로	1	389	20~29	보조 간선	1,725 (400)	광장동 313-1	천호동 442-34	일반 도로	1998. 3. 7. (서고시 제72호)	구천면로
기정	중로	1	406	20	보조 간선	618 (217)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2001. 6. 2. (서고시 제177호)	구천면로
변경	중로	1	406	15~20 (15)	보조 간선	618 (217)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2001. 6. 2. (서고시 제177호)	구 역 내 폭원 축소
기정	중로	1	412	20	보조 간선	1,065	길동 413-45	천호동 419-3	일반 도로	2001. 6. 5. (서고시 제177호)	진황도로
변경	중로	2	520	12~20	보조 간선	1,065	길동 413-45	천호동 419-3	일반 도로	2001. 6. 5. (서고시 제177호)	폭원 축소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56	20	집산 도로	170	천호동 161-3	천호동 448-47	일반 도로	2009. 12. 3. (서고시 제479호)	
기정	중로	1	천호 3	20	보조 간선	195	천호동 450	천호동 166-4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97	길동 387-1	길동 387-12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354	길동 384-5	길동 412-8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8	길동 455	길동 456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22	길동 455	길동 456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중로	3	2	10	국지 도로	158	길동 424	길동 417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447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90	천호동 456-9	천호동 432-16	일반 도로	1994. 5. 21. (강고시 제28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0	천호동 457-98	천호동 461-29	일반 도로	2001. 6. 2. (강고시 제177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35	길동 453	길동 446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0	길동 453	길동 446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66	길동 414-10	길동 414-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변경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69	길동 414-10	길동 414-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130	성내동 199	성내동 450-17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19	성내동 245-40	성내동 244-3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454	성내동 199-6	성내동 379-18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1	9	12	국지 도로	135	둔촌동 426-10	둔촌동 426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93	둔촌동 436-4	둔촌동 426-10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70	천호동 457-98	천호동 457-12	일반 도로	1994. 5. 21. (강고시 제28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2020. 7. 2.)]
기정	소로	2	3	6	국지 도로	240	천호동 167-122	천호동 153-2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2020. 7. 2.)]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0	천호동 448-12	천호동 448-11	일반 도로	1993. 4. 9. (서고시 제107호)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34	길동 416-15	길동 415-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136	길동 416-15	길동 415-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3	길동 451-1	길동 454-2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07	길동 457-4	길동 456-5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2	길동 457-4	길동 456-5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65	성내동 180-13	성내동 179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2020. 7. 2.)]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20	성내동 199-30	길동 199-23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8	성내동 378-7	성내동 378-2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18	성내동 379-15	성내동 379-3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기정	소로	3	1	5	특수 도로	165	천호동 160-3	천호동 447-37	보행 자 전용	2010. 5. 6. (서고시 제166호)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52.4	둔촌동 426	둔촌동 426-11	일반 도로	2003. 7. 21. (서고시 제201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90	천호동 169-5	천호동 164-15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94	천호동 169-5	천호동 164-15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20	천호동 462-39	천호동 480-36	일반 도로	2001. 6. 2. (서고시 제177호)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6	천호동 480-43	천호동 480-36	일반 도로	2001. 6. 2. (서고시 제177호)	연장 축소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64	천호동 432-13	천호동 431-5	일반 도로	1994. 5. 16. (강고시 제28호)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64	천호동 432-13	천호동 431-5	일반 도로	1994. 5. 16. (강고시 제28호)	도로 모퉁이 조정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90	천호동 556	천호동 560-1	일반 도로	1994. 10. 5. (강고시 제47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변경	소로	3	8	6~1 5	국지 도로	93	천호동 556	천호동 560-1	일반 도로	1994. 10. 5. (강고시 제47호)	연장 및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40	천호동 167-156	천호동 167-2	일반 도로	1990. 10. 24. (서고시 제354호)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30 (70)	천호동 167-42	천호동 170-2	일반 도로	1969. 1. 18. (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기정	소로	3	15	8 미만	국지 도로	226 (183)	천호동 159-2	천호동 181-44	일반 도로	1993. 4. 9. (서고시 제107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고시 제115호 (2020. 7. 2.)]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93	길동 413-20	길동 413-1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0	길동 413-44	길동 413-29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96	길동 384-1	길동 384-5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6	길동 385-6	길동 385-10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99	길동 387-4	길동 387-7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99	길동 389-1	길동 388-6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80	길동 413-13	길동 413-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변경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82	길동 413-13	길동 413-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중로2-520 시설변경에 따른 연장 확폭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63	길동 412-12	길동 412-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28	성내동 245	성내동 245-32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62	성내동 245-12	성내동 245-8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121	둔촌동 435	둔촌동 435-5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44	둔촌동 426-17	둔촌동 425-1	일반 도로	2009. 6. 25. (서고시 제254호)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45	-	-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28	6	국지 도로	45	천호동 459-30	천호동 459-27	일반 도로	-	도로번호 및 시종점 부여

주) 폭원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10	대로 3-110	•폭원 축소 : 30m → 28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확보 및 현황 여건 고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간 폭원 축소
중로 1-406	중로 1-406	•폭원 축소 : 20m → 15~20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확보 및 현황 여건 고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간 폭원 축소
중로 1-412	중로 2-520	•폭원 축소 : 20m → 12~20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확보 및 현황 여건 고려 교통여건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폭원 축소
중로 3-1	중로 3-1	•연장 확대 : 118m → 122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1-4	소로 1-4	•연장 확대 : 135m → 140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1-5	소로 1-5	•연장 확대 : 166m → 169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2-7	소로 2-7	•연장 확대 : 134m → 136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2-9	소로 2-9	•연장 확대 : 107m → 112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3-3	소로 3-3	•연장 확대 : 90m → 94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3-4	소로 3-4	•연장 축소 : 120m → 106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확보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축소
소로 3-7	소로 3-7	•도로모통이 조정	•폭 25m 이상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 도로모통이의 필요성 및 시설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모통이 선형 조정
소로 3-8	소로 3-8	•연장 확대 : 90m → 93m •일부구간 확폭 : 6m → 15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노후청사(천호3동 주민센터)와 공공임대 주택 복합개발에 따른 주진입도로 폭원 확장
소로 3-22	소로 3-22	•연장 확대 : 180m → 182m	•중로 1-412가 중로 2-520로 폭원 축소됨에 따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소로 3-	소로 3-28	•도로번호 및 시종점 부여	•도시계획시설선으로만 존재하던 도시 계획도로에 도로번호 및 시종점 부여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	천호동 167-195	2,573	-	2,573	2002.10.10. (서고시 제363호)	공원 지상 2,409㎡ 중복결정

3) 철도 결정(변경)조서

■ 철도(본선)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규 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철 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L = 47,400m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기 정	②	철 도	도시철도 (5호선)	강동구 길동 379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일대	L = 7,500m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기 정	③	철 도	도시철도 (8호선)	강동구 암사동 504일대~ 송파구 방이동 35일대	L = 4,520m B = 10 ~ 24m	1994.3.30. (서고시 104호)	

■ 철도(정거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철도 (8호선)	도시철도 (천호정거장)	강동구 풍납동 473 일대	-	-	4,174	1994.3.30. (서고시 제1994-104호)	
기 정	②	철도 (5호선)	도시철도 (천호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55일대	24	165	8,021. 6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기 정	③	철도 (5호선)	도시철도 (강동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48일대	27	165	9,902. 3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 철도(입체적결정)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 치	길이(m)	폭(m)	높이(m)	층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철도 (5호선)	강동구 천호동 448 일대	24.3	6.5 ~ 14.6	지상 0.56 ~ 지하 13.3	지하2층 ~ 캐노피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입체적 결정 범위 - 면적 : 162.2㎡(평면투영면적) - 높이 : EL 110.2 ~ EL 134.1

(2)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천호동 472-23	2,190	-	2,190	1993.11.5. (서고시 제352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천호동 431-2	220.0	-	220.0	1977.7.4. (건고시 제125호)	화랑공원
기정	②	공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167-195 외2필지	2,409	-	2,409	2002.10.10. (서고시 제363호)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③	공원	소공원	길동 386-1	992.3	-	992.3	1983.12.23. (서고시 제693호)	성심공원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공공 공지	-	성내동 186-4외 2필지	575.0	-	575.0	-	근린상업지역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조서

■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학교	중학교	천호동 447-9 일대	5,835	-	5,835	87.2.17. (서교고시)	동신중학교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가 구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2) 획지 결정(변경)조서

1)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간선도로변 (25m이상)	3,000㎡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사항 - 공동개발이 계획된 대지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 특별계획구역
	이면도로변	1,500㎡	

2)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기 정	변 경	
A2	A2-①	천호동	459-4	83.0	442.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459-5	174.0				
		천호동	459-13	185.0				
	A2-③	천호동	458-7	116.0	223.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458-8	107.0				
A3	A3-①	천호동	432-2	465.0	795.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432-5	330.0				
B	B-①	천호동	552-1	100.0	245.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천호동	552-4	145.0				
	B-②	천호동	553-4	122.0	265.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천호동	553-5	143.0				
	B-③	천호동	551-5	106.0	222.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천호동	551-6	112.0				
	B-④	천호동	555-11	4.0	179.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541-2	84.0				
C1	C1-①	천호동	166-100	93.0	324.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167-9	231.0				
	C1-②	천호동	167-188	116.0	230.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천호동	167-47	114.0				
C2	C2-①	천호동	449-49	2,315.0	2,388.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449-50	73.0				
D1	D1-①	천호동	169-44	116.0	234.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천호동	169-47	118.0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기 정	변 경	
D1	D1-②	천호동	162-7	162.0	265.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토지합필 (162-4로 지번통합)
		천호동	162-4	155.0				
	D1-③	천호동	153-86	371.0	889.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토지합필 (155-7로 지번통합)
		천호동	155-7	313.0				
D3	D3-①	성내동	199	538.3	2,636.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성내동	199-1	163.4				
		성내동	199-2	167.3				
		성내동	199-3	223.5				
		성내동	199-9	394.5				
		성내동	199-10	1,149.0				
	D3-②	성내동	199-5	706.7	1,367.4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소유관계 고려
		성내동	199-6	660.7				
E1	E1-①	길동	384-2	196.9	434.4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384-3	237.5				
	E1-②	길동	385-1	410.6	500.9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동	385-2	90.3				
	E1-③	길동	385-6	728.7	1,436.6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385-7	707.9				
	E1-④	길동	385-4	448.1	709.1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385-5	261.0				
E2	E2-①	길동	416-1	522.7	850.6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소유관계 고려
		길동	416-2	327.9				
	E2-②	길동	416-8	299.2	936.6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416-9	299.4				
		길동	416-10	338.0				
	E2-③	길동	416-6	344.5	1,002.1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416-7	345.4				
		길동	416-18	312.2				
E3	E3-①	길동	445-3	233.0	464.2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동	445-4	231.2				
	E3-②	길동	448-1	148.0	678.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토지합필 (448-1로 지번통합)
		길동	448-2	396.0				
		길동	449	114.0				
	E3-③	길동	453-1	775.6	1,231.3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동	453-2	455.7				
E4	E4-①	성내동	245-2	168.0	336.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성내동	245-33	168.0				
F2	F2-①	길동	414-4	592.0	1,185.0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토지합필 (414-4로 지번통합)
		길동	414-16	593.0				
F2	F2-②	길동	414-9	420.1	1,343.8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동	414-14	420.2				
		길동	414-15	503.5				
	F2-③	길동	413-1	1,160.1	3,047.7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동	413-2	593.3				
		길동	413-3	1,204.1				
		길동	413-4	90.2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기 정	변 경	
F2	F2-④	길 동	413-8	425.1	648.4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13-6	96.3				
		길 동	413-5	127.0				
	F2-⑤	길 동	413-23	99.6	200.8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13-31	101.2				
	F2-⑥	길 동	413-40	92.1	241.8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13-41	149.7				
	F2-⑦	길 동	412-11	529.2	869.3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12-16	340.1				
F3	F3-①	길 동	456-2	330.5	1,656.5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 동	456-5	1,326.0				
	F3-②	길 동	458-3	772.3	1,912.7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길 동	458-4	1,140.4				
F4	F4-①	성내동	378-3	460.7	486.7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성내동	378-11	26.0				
	F4-②	성내동	379-2	412.6	710.4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성내동	379-6	19.6				
		성내동	379-5	278.2				
	F4-③	성내동	379-3	267.4	356.6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소유관계 고려
		성내동	379-38	89.2				
G1	G1-①	길 동	417	273.8	439.2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18	165.4				
	G1-②	길 동	429	568.1	981.8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길 동	430	413.7				
G2	G2-①	둔촌동	435-3	719.2	1,508.6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공동개발 지정
		둔촌동	435-9	710.6				
		둔촌동	435-10	78.8				
	G2-②	둔촌동	435-7	1,134.8	2,273.1	획지계획	획지계획 폐지	●소유관계 고려
		둔촌동	435-8	1,138.3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 변경 사유서

- 유연한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획지계획 폐지
- 기공동개발 등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필요시 공동개발(지정)계획으로 전환

3)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지정)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과소필지, 부정형필지 ●맹지 해소	●기 공동개발 필지 - 과소필지, 맹지, 간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한함	
공동개발 (권장)	-	●이면부 차량 진출입 유도 필지 ●맹지해소 ●진황도로변 과소필지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1	기정	천호동	467-16	162.0	294.0	●공동개발 지정
			467-17	100.0		
			467-18	26.0		
			467-34	6.0		
			467-66	10.0(39.0)	280.0 (309)	●공동개발 지정 ●467-66(일부편입)
			467-14	155.0		
			467-15	89.0		
			467-22	26.0		
			466-47	3.0	287.0 (297)	●공동개발 지정 ●467-66(일부편입)
			467-66	29.0(39.0)		
			467-11	169.0		
			467-13	86.0		
	변경		467-11	861.0	861.0	●토지 합필(467-11로 지번통합)
	기정	천호동	466-9	40.0(202)	246.0 (408)	●공동개발 지정 ●466-9(일부편입)
			466-18	201.0		
			466-19	2.0		
			467-12	3.0		
	변경	천호동	466-9	202.0	20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6-18	201.0	206.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6-19	2.0		
			467-12	3.0		
	기정	천호동	466-3	249.0	297.0 (451)	●공동개발 지정 ●466-9(일부편입)
			466-9	48.0(202)		
			466-3	249.0	249.0	●단독개발
	변경		466-9	202.0	20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기정	천호동	461-37	17.0	554.0 (586)	●공동개발 지정 ●465-7(일부편입)
			461-88	12.0		
			463-98	36.0		
			465-3	303.0		
			465-7	186.0(218)		
	변경	천호동	461-37	17.0	17.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1-88	12.0	1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3-98	36.0	36.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5-3	303.0	303.0	●단독개발
			465-7	218.0	218.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기정	천호동	466-9	40.0(202)	246.0 (408)	●공동개발 지정 ●466-9(일부편입)
			466-18	201.0		
			466-19	2.0		
			467-12	3.0		
	변경	천호동	466-9	202.0	20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6-18	201.0	206.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6-19	2.0		
			467-12	3.0		
	기정	천호동	466-3	249.0	297.0 (451)	●공동개발 지정 ●466-9(일부편입)
			466-9	48.0(202)		
			466-3	249.0	249.0	●단독개발
	변경		466-9	202.0	20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주 1) 일부편입 필지의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

2)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1	기정	천호동	461-61	31.0	417.0 (556.0)	●공동개발 지정 ●463-38,67(일부편입)
			461-62	68.0		
			461-113	88.0		
			463-16	114.0		
			463-38	97.0(138)		
			463-67	19.0(117)		
	변경	천호동	461-61	31.0	31.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1-62	68.0	68.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1-113	88.0	88.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3-16	114.0	114.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3-38	138.0	138.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3-67	117.0	117.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기정	천호동	461-63	167.0	430.0 (618)	●공동개발 지정 ●461-75,76,103(일부편입)
			461-75	36.0(43)		
			461-76	6.0(165)		
			461-101	142.0		
			461-103	79.0(101)		
	변경	천호동	461-63	167.0	167.0	●단독개발
			461-101	142.0	142.0	●단독개발
			461-75	43.0	43.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7-76	6.0	6.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1-103	101.0	101.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기정	천호동	461-13	125.0	274.9 (373)	●공동개발 지정 ●461-65,66(일부편입)
			461-65	132.9(136)		
			461-66	17.0(112)		
	변경	천호동	461-13	125.0	261.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61-65	136.0		
			461-66	112.0	112.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기정	천호동	461-30	100.0	257.0	●공동개발 지정
			461-64	157.0(185)	(285)	●461-64(일부편입)
	변경	천호동	461-30	100.0	285.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61-64	185.0		
	기정	천호동	461-18	84.0	354.0	●공동개발 지정
			461-48	139.0		
			461-72	131.0		
	변경	천호동	461-18	84.0	223.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61-48			139.0			
461-72			131.0	131.0	●단독개발	
기정	천호동	461-15	156.0	303.0	●공동개발 지정	
		461-16	75.0			
		461-79	72.0			
변경	천호동	461-15	156.0	156.0	●단독개발	
		461-16	75.0	75.0	●단독개발	
		461-79	72.0	72.0	●단독개발	

주 1) 일부편입 필지의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

2)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1	기정	천호동	457-29	73.0	322.0	●공동개발 지정
			457-113	106.0		
			461-3	74.0		
			461-81	69.0		
	변경		457-29	73.0	73.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57-113	106.0	106.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61-3	74.0	74.0	●단독개발
			461-81	69.0	69.0	●단독개발
A2	기정	천호동	457-3	123.0	492.0	●공동개발 지정
			457-13	117.0		
			457-96	126.0		
			457-97	126.0		
	변경		457-3	123.0	249.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7-96	126.0		
			457-13	117.0	117.0	●단독개발
			457-97	126.0	126.0	●단독개발
	기정	천호동	457-91	127.0	253.0	●공동개발 지정
			457-95	126.0		
	변경		457-91	127.0	253.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7-95	126.0		
	기정	천호동	457-94	129.0	249.0	●공동개발 지정
			457-104	120.0		
	변경		457-94	129.0	249.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7-104	120.0		
	기정	천호동	457-12	120.0	269.0	●공동개발 지정
			457-93	149.0		
	변경		457-12	120.0	120.0	●단독개발
			457-93	149.0	149.0	●단독개발
	기정	천호동	457-69	116.0	212.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7-114	96.0		
	변경		457-69	116.0	116.0	●단독개발
			457-114	96.0	96.0	●단독개발
기정	천호동	459-17	17.0	219.0	●공동개발 지정 ●459-25(일부편입)	
		459-25	93.0			
459-26		109.0				
변경		459-17	17.0	17.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59-25	93.0	93.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459-26	109.0	109.0	●특별계획가능구역 편입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2	기정	천호동	458-3	355.0	1,358.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8-4	261.0		
			458-5	182.0		
			458-10	167.0		
			458-11	119.0		
			458-12	73.0		
			458-13	153.0		
			458-14	48.0		
	신설	천호동	458-7	116.0	223.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8-8	107.0		
	신설	천호동	459-4	83.0	442.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9-5	174.0		
			459-13	185.0		
A3	기정	천호동	429-16	40.0	3,253.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32-10	3,213.0		
	기정	천호동	456	1,400.0	4,243.0	●공동개발 지정
			456-1	1,086.0		
			456-2	331.0		
			456-3	285.0		
			456-5	130.0		
			456-6	172.0		
			456-7	183.0		
			456-8	146.0		
			456-9	350.0		
			456-22	139.0		
	변경	천호동	456-24	21.0	681.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6-2	331.0		
			456-9	350.0	1,400.0	●단독개발
			456	1,400.0		
			456-1	1,086.0		
			456-3	285.0		
			456-5	130.0		
			456-6	172.0		
			456-7	183.0		
			456-8	146.0		
			456-22	139.0	21.0	●단독개발(국공유지)
			456-24	21.0		
	신설	천호동	432-11	666.0	702.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42-42	36.0		
	신설	천호동	432-2	465.0	795.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32-5	330.0		
	신설	천호동	432-7	330.0	785.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32-14	455.0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기정	천호동	550-4	122.0	360.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50-5	99.0		
			550-6	139.0		
	변경	천호동	550-4	122.0	360.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550-5	99.0		
			550-6	139.0		
	기정	천호동	550-7	200.0	200.0	●단독개발
			550-8	53.0	53.0	●단독개발
			550-7	200.0	253.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변경	천호동	550-8	53.0		
			550-10	417.0	467.0	●공동개발 지정
	기정	천호동	550-11	33.0		
			550-13	17.0		
	변경	천호동	550-10	417.0	467.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550-11	33.0		
			550-13	17.0		
	기정	천호동	551-10	238.0	311.0	●공동개발 지정
			551-11	73.0		
			551-10	238.0	311.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변경	천호동	551-11	73.0		
			555-2	223.0	282.0	●공동개발 지정
	기정	천호동	555-3	59.0		
			555-2	223.0	223.0	●단독개발
	변경	천호동	555-3	59.0	1,971.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55	1,891.0		
			555-6	21.0		
	기정	천호동	554	143.0	211.0	●공동개발 지정
			554-1	68.0		
			554	143.0	143.0	●단독개발
	변경	천호동	554-1	68.0	68.0	●단독개발
			541	97.0	196.0	●공동개발 지정
	기정	천호동	541-1	99.0		
			541-4	94.0	223.0	●공동개발 지정
			541-5	129.0		
	변경	천호동	541	97.0	537.0 (547.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41-5(구역계 일부편입)
			541-1	99.0		
			541-7	7.0		
			541-8	23.0		
			541-4	94.0		
			541-5	129.0(139)		
			541-6	10.0		
			555-7	78.0		
	신설	천호동	541-2	84.0	179.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41-3	95.0		
	기정	천호동	556-3	357.0	607.0	●공동개발 지정
			556-5	69.0		
			556-6	102.0		
			556-7	79.0		
	변경	천호동	556-3	357.0	607.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556-5	69.0		
			556-6	102.0		
			556-7	79.0		

주 1) 일부편입 필지의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

2)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기정	천호동	559-1	123.0	339.0	●공동개발 지정
	560-1		216.0			
	변경	천호동	559	223.0	562.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9-1	123.0		
	기정	천호동	560-1	216.0	430.0	●공동개발 지정
			559-2	142.0		
			559-3	152.0		
	변경	천호동	560-2	136.0	430.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9-2	142.0		
			559-3	152.0		
	기정	천호동	560-2	136.0	321.0	●공동개발 지정
			559-4	112.0		
			559-5	93.0		
			560-3	116.0		
	변경	천호동	559-6	79.0	195.0	●공동개발 지정
			560-4	116.0		
			559-4	112.0		
			560-3	116.0		
	기정	천호동	559-5	93.0	516.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9-6	79.0		
			560-4	116.0		
			559-6	79.0		
	기정	천호동	560-4	116.0	228.0	●공동개발 지정
			191-40	218.0		
	변경	천호동	191-47	10.0	228.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91-40	218.0		
	기정	천호동	191-47	10.0	374.0	●공동개발 지정
			557-3	69.0		
			557-4	229.0		
	변경	천호동	557-5	76.0	414.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7-3	69.0		
			557-6	40.0		
557-4			229.0			
기정	천호동	557-5	76.0	367.0	●공동개발 지정	
		558-8	195.0			
		558-9	99.0			
변경	천호동	558-10	73.0	453.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8-7	86.0			
		558-8	195.0			
		558-9	99.0			
기정	천호동	558-10	73.0	182.0	●공동개발 지정	
		561-1	33.0			
변경	천호동	561-2	149.0	33.0	●단독개발	
		561-1	33.0	149.0	●단독개발	
기정	천호동	561-2	149.0	189.0	●공동개발 지정	
		561-3	83.0			
변경	천호동	561-4	106.0	83.0	●단독개발	
		561-3	83.0			
		561-4	106.0	311.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61-5	147.0			
		561-6	58.0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기정	천호동	562-7	89.0	234.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62-8		145.0			
	변경	천호동	562-7	89.0	234.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562-8		145.0			
	기정	천호동	166-77	102.0	518.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91-18		155.0			
	191-19		238.0			
	191-50		23.0			
	기정	천호동	166-78	162.0	612.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6-81		450.0			
	변경		166-78	162.0	162.0	●단독개발
			166-81	450.0	450.0	●단독개발
	신설	천호동	549-2	31.3(257)	122.3 (376)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49-2,4(구역계 일부편입)
	549-4		91.0(119)			
	신설	천호동	551-7	207.0	898.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551-8		198.0			
551-9	493.0					
신설	천호동	540-5	335.5(512)	355.5 (53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40-5(구역계 일부편입)	
540-12		20.0				
신설	천호동	191-22	76.0	367.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91-23		172.0				
191-37		119.0				
신설	천호동	191-16	89.0	175.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91-73		86.0				
C1	신설	천호동	167-117	102.3(122)	239.3 (259)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7-117(구역계 일부편입)
	167-118		122.0			
	167-229		15.0			
	신설	천호동	166-8	135.0	327.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6-14		123.0			
	166-40		69.0			
	신설	천호동	165-6	208.0	215.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6-39		7.0			
	신설	천호동	163-7	175.0	301.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3-10		126.0			
	신설	천호동	165-7	132.0	256.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5-8		124.0			
	신설	천호동	167-9	231.0	353.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7-100		122.0			
기정	천호동	165-5	99.0	304.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5-12	205.0			
C2	신설	천호동	449-49	2,315.0	2,388.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49-50	73.0					
C3	신설	성내동	164-1	1,763.0	2,691.0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163-16	928.0					

주 1) 일부편입 필지의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

2)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D1	기정	천호동	162-6	60.0	235.0	●공동개발 지정
			162-13	99.0		
			162-14	76.0		
	변경	천호동	162-6	60.0	235.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2-13	99.0		
			162-14	76.0		
	기정	천호동	154-17	165.0	271.0	●공동개발 지정
			159-8	106.0		
			154-17	165.0		
	변경	천호동	157-18	165.0	584.0	●공동개발 권장(맹지해소)
			159-8	106.0		
			159-9	148.0		
	신설	천호동	163-15	149.0	624.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3-16	145.0		
			163-19	129.0		
			163-20	139.0		
			163-39	62.0		
D2	기정	천호동	161-35	154.0	297.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1-43	143.0		
	변경		161-35	297.0	297.0	●토지합필(161-35로 지번통합)
	기정	천호동	161-4	109.0	275.0	●공동개발 지정
			161-6	63.0		
			164-28	53.0		
			164-30	10.0		
			164-31	40.0		
	변경	천호동	161-4	109.0	275.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1-6	63.0		
			164-28	53.0		
			164-30	10.0		
			164-31	40.0		
	기정	천호동	161-5	126.0(145)	480.0 (751)	●공동개발 지정 ●161-5(일부편입)
			161-13	172.0		
			161-21	106.0		
			161-23	46.0		
			161-37	23.0		
			161-38	7.0		
			161-5	22.0(145)	157.0 (428)	●공동개발 지정 ●161-5(일부편입)
	변경	천호동	161-11	69.0		
			161-28	56.0		
			161-29	10.0		
			161-5	145.0	644.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161-8	10.0		
			161-11	69.0		
			161-13	172.0		
			161-21	106.0		
			161-23	46.0		
			161-28	56.0		
			161-29	10.0		
			161-37	23.0		
			161-38	7.0		

주 1) 일부편입 필지의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

2) ()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D2	기정	천호동	161-18	198.0	264.0	●공동개발 지정
			161-20	56.0		
			161-31	10.0		
	변경		161-17	185.0	449.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61-18	198.0		
			161-20	56.0		
	기정	천호동	157-3	344.0	694.0	●공동개발 지정
			158-3	350.0		
			157-3	344.0		
	변경	천호동	158-3	350.0	350.0	●단독개발
신설			천호동	447	1,360.0	4,970.8
	565	3,610.8				
D3	신설	성내동	199	538.3	2,636.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99-1	163.4		
			199-2	167.3		
			199-3	223.5		
			199-9	394.5		
			199-10	1,149.0		
E1	신설	길 동	385-1	410.6	500.9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85-2	90.3					
E2	기정	길 동	416-13	162.0	370.0	●공동개발 지정
	416-14		208.0			
	변경	416-13	370.0	370.0	●토지합필(416-13으로 지번통합)	
	기정	길 동	415-6	164.8	576.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5-7	411.2		
	변경		415-6	164.8	164.8	●단독개발
415-7			411.2	411.2	●단독개발	
E3	기정	길 동	446-2	418.2	812.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47	394.0		
	변경		446-2	418.2	418.2	●단독개발
			447	394.0	394.0	●단독개발
	기정	길 동	452-1	250.3	500.5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2-18	250.2		
	변경		452-1	250.3	250.3	●단독개발
			452-18	250.2	250.2	●단독개발
	신설	길 동	452-3	170.5	428.2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3	257.7		
	신설	길 동	454	850.0	2,162.3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4-1	1,312.3		
	신설	길 동	445-3	233.0	464.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45-4	231.2		
	신설	길 동	453-1	775.6	2,467.9	●453-1, 453-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 452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3-2	455.7		
			452	1,236.6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E4	기정	성내동	199-11	245.5	2,562.5	●공동개발 지정
			199-12	241.3		
			199-13	240.8		
			199-14	843.8		
			199-23	991.1		
	변경	성내동	199-11	245.5	727.6	●199-12, -13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199-11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199-12	241.3		
			199-13	240.8		
			199-14	843.8	843.8	●단독개발
			199-23	991.1	991.1	●단독개발
	기정	성내동	199-16	393.4	786.9	●공동개발 지정
			199-31	393.5		
	변경	성내동	199-16	393.4	393.4	●단독개발
			199-31	393.5	393.5	●단독개발
F1	기정	성내동	244-2	360.2	1,088.7	●공동개발 지정
			244-3	728.5		
			244-3	728.5		
	변경	성내동	244-2	360.2	1,088.7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244-3	728.5		
			244-3	728.5		
	기정	길 동	387-3	184.9	376.6	●공동개발 지정
			387-16	191.7		
			387-3	184.9	184.9	●단독개발
	변경	길 동	387-16	191.7	191.7	●단독개발
			387-12	209.1	410.8	●공동개발 지정
			387-15	201.7		
			387-12	209.1	209.1	●단독개발
	기정	길 동	389-3	172.5	351.2	●공동개발 지정
			389-4	178.7		
			389-3	172.5	172.5	●단독개발
	변경	길 동	389-4	178.7	178.7	●단독개발
			389-5	843.0	855.4	●공동개발 지정(소규모 부속토지)
			389-11	12.4		
			389-5	843.0	843.0	●단독개발
	기정	길 동	389-11	12.4	12.4	●단독개발
			389-5	843.0		
			389-11	12.4		
	신설	길동	389-7	674.7	1,790.1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389-9	1,115.4		
F2	기정	길 동	414-5	300.8	613.7	●공동개발 지정
			414-18	312.9		
			414-5	300.8	300.8	●단독개발
	변경	길 동	414-18	312.9	312.9	●단독개발
			413-21	95.3	390.4	●공동개발 지정
			413-22	95.1		
			413-29	99.5		
			413-30	100.5		
	변경	길 동	413-21	95.3	95.3	●단독개발
			413-22	95.1	95.1	●단독개발
			413-29	99.5	99.5	●단독개발
			413-30	100.5	100.5	●단독개발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F2	기정	길 동	413-24	86.3	513.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25	88.4		
			413-26	88.7		
			413-32	82.8		
			413-33	83.9		
			413-34	83.1		
	기정	길 동	413-37	92.0	295.9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38	101.0		
			413-39	102.9		
	기정	길 동	413-42	174.0	341.0	•공동개발 지정
			413-43	167.0		
	변경		413-43	341.2	341.2	•토지합필(413-43으로 지번통합)
	기정		412-9	396.8	880.8	•공동개발 지정
			412-15	484.0		
	변경	길 동	412-8	1,121.5	2,002.3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12-9	396.8		
			412-15	484.0		
	신설	길 동	413-1	1,160.1	3,047.7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2	593.3		
			413-3	1,204.1		
			413-4	90.2		
	신설	길 동	413-5	127.0	648.4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6	96.3		
			413-8	425.1		
	신설	길 동	413-23	99.6	200.8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31	101.2		
	신설	길 동	413-40	92.1	241.8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41	149.7		
	신설	길 동	412-7	90.5	1,151.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2-10	1,060.7		
	신설	길 동	413-45	2,003.6	2,256.1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13-46	252.5		
	신설	길 동	412-11	529.2	869.3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2-16	340.1		
	신설	길 동	413-11	155.9	695.1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3-12	467.1		
			413-15	72.1		
F3	기정	길 동	456	413.8	792.7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56-1	378.9		
	변경		456	413.8	413.8	•단독개발
			456-1	378.9	378.9	•단독개발
	기정	길 동	458-2	418.3	836.5	•공동개발 지정
			458-6	418.2		
	변경		458-2	418.3	418.3	•단독개발
			458-6	418.2	418.2	•단독개발
	신설	길 동	459	449.3	2,187.8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9-2	1,738.5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F3	신설	길 동	457-2	766.8	1,485.8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7-3	719.0						
	신설	길 동	459-3	2,172.3	3,642.9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59-4	316.6						
458-5			1,154.0							
F4	기정	성내동	378-15	186.1	551.6	●공동개발 지정				
			378-16	179.9						
			378-17	185.6						
	변경		성내동	378-15	186.1	186.1	●단독개발			
				378-16	179.9	179.9	●단독개발			
				378-17	185.6	185.6	●단독개발			
		기정		성내동	379-26	168.9	2,108.0	●공동개발 지정		
					379-27	1,287.0				
					379-28	12.2				
	379-29		205.3							
	379-30		27.1							
	379-32		173.9							
	379-33		198.1							
	379-34		35.5							
	변경		성내동		379-26	168.9			1,863.4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379-27	1,287.0				
		379-32		173.9						
		379-33		198.1						
	변경	성내동	379-34	35.5	205.3	●단독개발				
			379-28	12.2			12.2	●단독개발		
			379-29	205.3			205.3	●단독개발		
	기정	성내동	379-30	27.1	511.6	●공동개발 지정(간선변 적정개발 유도)				
			379-18	342.7						
			379-19	168.9						
			변경	성내동			379-17	405.7	917.3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79-18	342.7		
							379-19	168.9		
		기정			성내동	379-20	141.0	843.0		
			379-21	333.0						
			379-22	5.0						
			379-24	199.0						
			379-55	165.0						
변경		성내동	379-21	800.1	800.1	●토지 합필(379-21로 지번통합)				
기정		성내동	379	396.9	723.5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79-1		326.6							
신설	성내동	378-3	460.7	486.7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78-11	26.0							
신설	성내동	379-2	412.6	710.4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79-5	278.2							
		379-6	19.6							
신설	성내동	378-1	663.1	1,332.8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378-2	669.7							
신설	성내동	379-17	405.7	917.3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379-18	342.7							
		379-19	168.9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G1	신설	길동	429	568.1	2,004.0	●429, 430 공동개발 지정, 431, 419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30	413.7		
			431	463.5		
			419	558.7		
	신설	길동	417	273.8	439.2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18	165.4		
G2	신설	둔촌동	435-3	719.2	1,508.6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435-9	710.6		
			435-10	78.8		
	신설	둔촌동	436	1,599.4	5,164.4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35-4	1,155.9		
			435-5	1,274.3		
			435-7	1,134.8		
	신설	둔촌동	436-3	763.8	2,011.1	●공동개발 권장(이면부 차량출입 유도)
			436-4	1,247.3		

■ 변경 사유서

- 소유관계, 기공동개발 등 개발여건을 반영하는 공동개발계획으로 민간 개발 활성화
- 계획 기준에 적합한 공동개발(권장)계획 신설
 - 간선변 이면부 차량진출입 유도, 진황도로변 과소필지, 맹지 해소

- 이 하 여 백 -

4) 필지분할선(신설)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필지분할선	구천면로, 진향도로, 진향도로33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하	•해당 필지 내 건축시 필지분할선을 기준으로 필지 분할 •기반시설(도로) 확보 수단 활용 - 구천면로(최소 폭 20m), 진향도로(최소 폭 15m), 진향도로33길(최소 폭 6m) 도로 확보 기준

주 1) 분할된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한다.

2) 분할된 필지의 기반시설 제공시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 필지분할선 적용

가구번호	위 치		대장면적(㎡)		필지분할면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필 지	계	
B	천호동	549-2	31.3(257.0) 2)	122.3(376.0) 2)	-	0.4	공동개발 (지정)
		549-4	91.0(119.0) 2)		0.4		
	천호동	550	1,033.0	1,033.0	58.6	58.6	
	천호동	550-1	419.0	419.0	93.6	93.6	
	천호동	550-4	122.0	360.0	29.1	124.6	공동개발 (권장)
		550-5	99.0		73.7		
		550-6	139.0		21.8		
	천호동	557	252.0	252.0	1.4	1.4	
	천호동	557-1	218.0	218.0	2.3	2.3	
	천호동	557-2	274.0	274.0	6.7	6.7	
	천호동	557-3	69.0	414.0	-	19.8	공동개발 (권장)
		557-4	229.0		-		
		557-5	76.0		1.5		
		557-6	40.0		18.3		
	천호동	558-7	86.0	453.0	-	4.5	공동개발 (권장)
		558-8	195.0		-		
		558-9	99.0		2.1		
		558-10	73.0		2.4		
	천호동	561-4	106.0	311.0	5.4	10.2	공동개발 (권장)
		561-5	147.0		-		
		561-6	58.0		4.8		
	천호동	562-7	89.0	234.0	-	2.6	공동개발 (권장)
		562-8	145.0		2.6		
	천호동	166-112	668.0	668.0	7.5	7.5	
C1	천호동	166-58	212.0	212.0	5.5	5.5	
D1	천호동	162-6	60.0	390.0	-	21.1	공동개발 (권장)
		162-13	99.0		-		
		162-14	231.0		21.1		
	천호동	154-17	165.0	584	38.6	67.9	공동개발 (권장)
		154-18	165.0		29.3		
		159-8	106.0		-		
		159-9	148.0		-		
	천호동	155-30	115.0	115.0	22.0	22.0	

주 1) 필지분할 면적은 측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는 해당필지의 공부상 면적

가구번호	위 치		대장면적(㎡)		필지분할면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필 지	계	
D2	천호동	161-5	145.0	644.0	38.8	61.9	공동개발 (권장)
		161-8	10.0		10.0		
		161-11	69.0		13.1		
		161-13	172.0		-		
		161-21	106.0		-		
		161-23	46.0		-		
		161-28	56.0		-		
		161-29	10.0		-		
		161-37	23.0		-		
		161-38	7.0		-		
	천호동	157-3	344.0	344.0	113.5	113.5	
	천호동	158-3	350.0	350.0	1.2	1.2	
	천호동	161-17	185.0	449.0	38.4	67.0	공동개발 (지정)
		161-18	198.0		28.6		
		161-20	56.0		-		
		161-31	10.0		-		
	천호동	161-46	42.0	42.0	21.9	21.9	공동개발 (권장)
		161-4	109.0		27.0		
		161-6	63.0		0.01		
		164-28	53.0		-		
		164-30	10.0		-		
		164-31	40.0		-		
E2	길 양면	415-18	1,085.8	1,085.8	50.0	50.0	
	길 양면	416-15	548.1	548.1	43.2	43.2	
E3	길 양면	445	6,280.8	6,280.8	106.8	106.8	
	길 양면	446-4	199.2	199.2	53.2	53.2	
	길 양면	446-2	418.2	418.2	19.6	19.6	
	길 양면	447	394.0	394.0	19.6	19.6	
	길 양면	447-1	328.7	328.7	18.5	18.5	
	길 양면	448-1	658.5	658.5	31.8	31.8	
	길 양면	449-1	337.6	337.6	22.7	22.7	
	길 양면	413-13	532.0	532.0	30.1	30.1	
F2	길 양면	413-45	2,003.6	2,256.1	75.4	75.4	공동개발 (권장)
	길 양면	413-46	252.5		-		
	길 양면	413-51	434.6	434.6	31.7	31.7	
	길 양면	456	413.8	413.8	24.8	24.8	
F3	길 양면	456-1	378.9	378.9	18.8	18.8	
	길 양면	458대	566.5	566.5	31.7	31.7	
	길 양면	458-1대	400.1	400.1	23.0	23.0	
	길 양면	458-3대	772.3	772.3	24.9	24.9	
	길 양면	458-4대	1,140.4	1,140.4	40.4	40.4	
	길 양면	458-5대	1,154.0	3,642.9	50.7	50.7	공동개발 (권장)
		459-3대	2,172.3		-		
		459-4대	316.6		-		

주 1) 필지분할 면적은 측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경 사유서

• 교통 및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필지분할선을 활용한 현실적인 도로 확보 방안 제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지정

구 분	불 허 용 도
(1) 간선가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천호사거리] •공동주택(주거복합 포함) [1층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2) 상업지역 내 부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기존 정비공장 증축 허용
	[1층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3) 준주거 지 역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1층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4) 일반주거 지 역	•위험물 처리 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1층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2) 관계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공통 사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장례식장(병원 부속시설 제외) •1층-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1) 간선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기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
(2) 상업지역 내부 (상업기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3) 상업지역 내부 (서비스기능)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4) 준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5) 일반주거 지 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2) 관계법령(용도지역)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될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 변경 사유서

- 용도지역과 입지특성(간선/이면)을 반영하여 적합한 불허용도 지정
- 가로변 불건전용도, 가로활성화 저해용도, 지역중심 부적합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통적 불허
- 상업지역 내부 특정 블록에 한해 상업지역 고유 기능·특성을 고려하여 불허용도 계획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A) 간선가로 중심기능 지 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B) 이 면 부 지원기능지역	[이면부지원기능지역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면부지원기능지역②]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면부지원기능지역③] •저층부 1~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일반음식점 [이면부지원기능지역④] •저층부 1~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구·완구, 도·소매, 휴게·일반음식점	별도사항이 없을 경우 B-①, B-② 적용
(C) 일반주거지역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의류·완구·서적), 서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권장용도 인센티브	① 권장용도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지상층 업무시설 20%이상 설치) - 그 외 지역 권장용도 20%이상 설치 - 특별계획구역 별도운용 ② 업무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 권장용도 30% 이상 중 20%이상 설치 •특별계획구역(C2,D2) 30%이상, 특별계획구역(C3) 50%이상 배치 (단, C3특별계획구역의 경우 SHIFT 도입시 업무시설 30%이상 배치)	

■ 변경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전층	저층부(지상1~2층)	
(A) 간 선 가 로 중심기능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직업훈련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B) 이 면 부 상업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C) 이 면 부 지원기능지역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 한함)	-	
(D) 구천면로 (광진교연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E) 문구·완구 거 리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문구·완구 관련업종에 한함),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문구·완구 관련 업종에 한함)	
(F) C2, D2 특별계획구역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인정]	-	
(G) C3 특별계획구역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권장용도 인센티브	① 권장용도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 - 그 외 지역 권장용도 20%이상 설치 - 저층부 권장용도(지상1~2층)는 50% 이상 설치 - 특별계획구역 별도운용 ② 업무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특별계획구역(C2,D2) 지상층 30%이상 배치	

■ 변경 사유서

- 간선·이면, 용도지역간 구분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권장용도 계획
- 천호대로, 양재대로, 올림픽로, 성안로를 중심으로 하는 간선부 중심기능 권장 및 이면부 서비스 기능 제공 용도의 권장
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활성화 유도
- 이면부 상업지역 및 특화거리변 입지특성을 감안한 저층부 권장용도 적용

(3) 지정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비 고
(가)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비주거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설치	천호동 458-3번지 외 7필지

주1) 지정용도의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의미함(오피스텔 제외)

- 이 하 여 백 -

(4)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지역	교차로	
기정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시 건폐율 30%이하 적용
		준주거지역	60%이하	50%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이하	5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주1)	50%이하	
		학교해제지역 (D2특별계획구역)	30%이하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준주거지역	60%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이하		
		일반상업지역	60%이하주1)		
		학교해제지역 (D2특별계획구역)	30%이하		

주1) 천호동 458-3번지의 7필지 청년주택 사업지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호(2019.1.10.)에 의거 63% 이하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지역 내 형평성 및 천호대로변 현황 건축밀도를 고려하여 간선부 교차로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폐율 적용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기 정

용 도 지 역	접도조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일반상업지역	50m이상	550%	800%	
	25m이상	400%	650%	
	10m이상 20m미만	400%	600%	
		300%	600%	
	10m미만	350%	500%	
근린상업지역	-	300%	500%	
		350%	500%	
준주거지역	-	250%	360%	
		300%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	

주1)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별도로 정함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계획운영)제2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허용 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공공시설제공면적} / \text{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이하. 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주3)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부문의 용적률계획에 따른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른 다음에 기준을 적용함

- 2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487%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20~1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450%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10m 미만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 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 한 용적률	비 고 (종전 용도지역)
일반상업	간선변 (천호대로, 양재대로)		600%	8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10m이상 25m미만		500%	700%		
	10m 미만	중심가로변	450%	600%		
		그 외	400%	500%		
일반상업	-		400%	660%	800%	준 주 거
일반상업	-		300%	630%	800%	일반주거
근린상업	-		300%	500%	600%	일반주거
근린상업	-		400%	530%	600%	준 주 거
준 주 거	-		300%	360%	400%	일반주거
준 주 거	-		400%	40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제 3 종 일반주거	-		230~ 250%	250%		일반주거

- 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2)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건립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3)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4)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용적률은 별도로 정함
 5) 천호동 458-3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사업지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호(2019.1.10.)에 의거 기본용적률 680% 이하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용적률 적용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상업지역은 기반시설용량, 입지여건,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조건에 따라 용적률 적용기준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하되 과도하게 하향된 용적률 상향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지역 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용적률 운영

3) 용적률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준주거지역	●건축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 용적률의 10%이상 적용가능

※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상업지역	●건축계획용적률의 10%이상(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적용)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단,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를 감안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허용 용적률의 10%이상 적용가능

※ 용적률의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함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기정)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
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2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2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8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20~10m 이상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50%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10m 미만 도로에 접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계획(변경)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의무비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 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르되,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구 분	산 식
허용용적률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상한용적률 증가량 × (주거용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 을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text{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text{주거부문 용적률}(500\sim600\%)^* / \text{상업지역 용적률}^{**}) \times \text{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text{상한용적률} = \text{허용or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text{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times \frac{\text{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text{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text{- 환산 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 사업부지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면적 및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허용용적률 적용

4)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 기 정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단, 인센티브 적용유형 ‘역세권’의 경우 의무형 인센티브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없다.),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에 대하여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지상층 업무시설 20%이상 설치), 그 외 지역은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에 부여하며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운용 한다.
6. 획지단위개발 및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건축한계선 인센티브는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의무면적(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의 면적) 및 전면공지 조성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8. 전면공지 인센티브 부여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면적에서 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공공기여시설(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300㎡이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 현재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한다.
11.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2.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공통사항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 서 기준용적률×0.05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기정)

용도지역	공간특성	유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R1	300	60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 중심성 유도 •공동개발로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R2	400	650	
		R3	550	800	
	이면부	R7	350	500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 개방성 확대
		R8	400	600	
			550	800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P1	300	50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350	500	
준주거지역	간선변	O2	250	360	•건축한계선 확대와 공동개발로 정연한 대지규모와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이면부	O3	300	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Y1	200	250	
역 세 권		R4	300	400	•지하철 시설에 대해 대지내 설치로 가로 환경개선 및 보행환경개선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고취 •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 설치로 공공성 증대
		R5	300	600	
		R6	400	600	
		O1	260	360	

주) 천호동 458-3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사업지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호(2019.1.10.)에 의거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 적용

○ 인센티브 유형 : R1(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300/6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공동개발로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9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2(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400/65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6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3(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C2, D2, E3, F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550/8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규제형	확지계획	확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 인센티브 유형 : R7(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2, E3, F1, F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50/500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규제형	확지계획	확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 인센티브 유형 : R8(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2, E3, F1, F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400/600, 550/800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 0.35
	대지내공지	쌈지형,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P1(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C3, D3, E4, F4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300/500, 350/5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 중심성 확보,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 공간 마련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쌈지형,침상형, 공개공지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친환경계획요소
의무형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O2(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1, A2, G1, G2, G3, G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변(이면부지원기능지역(B)으로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250/36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 중심성 확보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O3(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B, C1, D1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400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가로환경 조성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Y1(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2, C1, D1, E4, F4, G3, G4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00/250
중점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확대와 공동개발로 정연한 대지규모와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기준용적률 × 0.1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37
기준용적률 × 0.1
기준용적률 × 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역세권 R4,R5,R6,O1(기정)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C2, C3, D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A3, C2, D2 / 준주거지역 C3	
위치특성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 C2, C3, D2]	
기준/허용용적률		R4: 300 / 400 R5: 300 / 600 R6: 400 / 600 O1: 260 / 460	
중점계획목표		지하철 시설에 대해 대지내 설치로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 환경개선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고취 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 설치로 공공성 증대	
항 목		세부항목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공공기여시설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해당층 바닥면적) × 0.05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47
	도시 경관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 내 설치	기준용적률 × 0.12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40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5
		쌈지형,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65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54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변 경

1. 허용용적을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최소분할면적(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미만 건축시 계획유도 요소를 준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준용적률 적용)
4.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 저층부(지상1~2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운용 한다.
5. 자주식 주차는 기계식 주차를 전체 주차대수의 20% 미만으로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건축선 등 관련 법규상 의무로 조성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다.
7. 공동개발에 의해 적용되는 인센티브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 전면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는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도로에 면할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한다.
8. 공동개발에 의해 인센티브 적용시 기공동개발(공부상 관련지번) 된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9. 건축선, 조정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0.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법적 의무설치대상인 경우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인센티브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 법적의무 인센티브)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화분설치 제외)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비건폐지)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용도지역	유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R1	600	80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변 및 상업지역 서비스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R2	500	700	
	R3	450	600	
	R4	400	500	
	R5	300	630	
		400	660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
근린상업지역	O1	400	53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변 및 상업지역 서비스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O2	300	500	
준주거지역	P1	300	36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건축물형태 제어를 통한 특화 유도
	P2	300	360	
일반주거지역	H1	230	250	
역세권	Y1	400	60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Y2	300	400	
	Y3 ¹⁾	400	40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 •대지내공지 및 통로를 통한 지하철과의 연계
		250	350	

주1) Y3 유형은 C3 특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2개의 용적률이 하나의 사업부지에 적용, 각각의 용적률별 면적 대비 가중평균을 통해 통합용적률(기준/허용)을 산출 후 인센티브 적용

주2) 천호동 458-3번지의 7필지 청년주택 사업지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호(2019.1.10.)에 의거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 적용

○ 인센티브 유형 : R1(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C2, D2, E3, F1, F2, F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용적률(기준/허용)		600/8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150~500㎡ 미만 $\alpha=0.03$ •500~1,000㎡ $\alpha=0.06$ •1,000~1,500㎡ $\alpha=0.09$ •1,500㎡ 이상 $\alpha=0.1$ •공동개발로 인해 이면부 차량출입 가능시 +0.0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7$
		저층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3$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7$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text{기준용적률} \times 0.1$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2(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E1, E2, E3, F1, F2, F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폭 10~25m 미만 도로변	
용적률(기준/허용)		500/700	
중점계획목표		개발규모 확대 및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서비스기능 강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150~300㎡ 미만 $\alpha=0.1$ •300~450㎡ $\alpha=0.12$ •450~600㎡ $\alpha=0.15$ •600㎡ 이상 $\alpha=0.18$
	건축물용도	전층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5$
		저층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2$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주차계획	자주식주차	$\text{기준용적률} \times 0.1$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3(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E1, E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10m 미만 중심가로변	
용적률(기준/허용)		450/600	
중점계획목표		개발규모 확대 및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서비스기능 강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150~300㎡ 미만 $\alpha=0.1$ •300~450㎡ $\alpha=0.12$ •450~600㎡ $\alpha=0.15$ •600㎡ 이상 $\alpha=0.18$
	건축물용도	전층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5$
		저층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2$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15$
	주차계획	자주식주차	$\text{기준용적률} \times 0.08$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4(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E1, E3, F1, F2, F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10m 미만 도로변(중심가로 외)	
용적률(기준/허용)		400/500	
중점계획목표		개발규모 확대 및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서비스기능 강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150~300㎡ 미만 $\alpha=0.1$ •300~450㎡ $\alpha=0.12$ •450~600㎡ $\alpha=0.15$ •600㎡ 이상 $\alpha=0.18$
	건축물용도	전층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3$
		저층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2$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15$
	주차계획	자주식주차	$\text{기준용적률} \times 0.06$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R5(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A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올림픽로변)	
용적률(기준/허용) ¹⁾		300/630, 400/66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times 3\alpha$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times 3$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3$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주1) 공동개발에 의해 동일 용도지역내 2개의 용적률이 하나의 사업부지에 적용, 각각의 용적률별 면적 대비 가중평균을 통해 통합용적률(기준/허용)을 산출 후 인센티브 적용

○ 인센티브 유형 : R6(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B, C1, D1, D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폭 10~25m 미만 도로변	
용적률(기준/허용)		500/700	
중점계획목표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times 1.5\alpha$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times 0.5$
	대지내공지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0.5$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O1(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C3, E4, F4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천호대로변)	
용적률(기준/허용)		400/53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1.8\alpha$ •150~500㎡ 미만 $\alpha=0.03$ •500~1,000㎡ $\alpha=0.06$ •1,000~1,500㎡ $\alpha=0.09$ •1,500㎡ 이상 $\alpha=0.1$ •공동개발로 인해 이면부 차량출입 가능시 +0.0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6$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O2(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C3, D3, E4, F4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용적률(기준/허용)		300/5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4\alpha$ •150~500㎡ 미만 $\alpha=0.03$ •500~1,000㎡ $\alpha=0.06$ •1,000~1,500㎡ $\alpha=0.09$ •1,500㎡ 이상 $\alpha=0.1$ •공동개발로 인해 이면부 차량출입 가능시 +0.0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2$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text{기준용적률} \times 0.2$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P1(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1, G2, G3, G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천호대로 및 양재대로변	
용적률(기준/허용)		300/36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간선기능 강화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개발규모 확대 주차계획,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개선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alpha$ • 150~500㎡ 미만 $\alpha=0.03$ • 500~1,000㎡ $\alpha=0.06$ • 1,000~1,500㎡ $\alpha=0.09$ • 1,500㎡ 이상 $\alpha=0.1$ • 공동개발로 인해 이면부 차량출입 가능시 +0.02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text{기준용적률} \times 0.1$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P2(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A1, A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구천면로변	
용적률(기준/허용)		300/36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건축물형태 제어를 통한 특화 유도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text{기준용적률} \times 0.6\alpha$ • 150~300㎡ 미만 $\alpha=0.1$ • 300~450㎡ $\alpha=0.12$ • 450~600㎡ $\alpha=0.15$ • 600㎡ 이상 $\alpha=0.18$ • 공동개발로 인해 이면부 차량출입 가능시 +0.02
	건축물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2$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¹⁾	$\text{기준용적률} \times 0.08$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주1) 건축물 형태는 필로티 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 경우에 한함

○ 인센티브 유형 : H1(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A2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문구·완구거리변	
용적률(기준/허용)		230/25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건축물형태 제어를 통한 특화 유도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1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1
	경관 개선	건축물 형태 ¹⁾	기준용적률 × 0.05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주1) 건축물 형태는 필로티 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 경우에 한함

○ 인센티브 유형 : Y1(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C2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용적률(기준/허용)		400/600	
중점계획목표		지하철역과의 연결 및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0.5
	대지내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0.4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 0.15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Y2(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D2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용적률(기준/허용)		300/4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5$
	대지내공지	공공보행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2.5$ •필로티형 $\alpha=1.5$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Y3(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C3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수립시)	
위치특성		간선변	
용적률(기준/허용) ¹⁾		400/400, 250/350	
중점계획목표		지하철역과의 연결 및 건축물의 권장·지정용도 수용을 통한 역세권 기능강화 및 간선변 활성화	
항 목	세 부 항 목	완 화 기 준	
계획 유도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3$
	대지내공지	침상형공지, 공개공지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침상형 $\alpha=1.5$ •필로티 $\alpha=0.8$
		공공보행통로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alpha=2$ •필로티형 $\alpha=1$
		건축한계선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4$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text{기준용적률} \times 0.1$
친환경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주1) C3 특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2개의 용적률이 하나의 사업부지에 적용, 각각의 용적률별 면적 대비 가중 평균을 통해 통합용적률(기준/허용)을 산출 후 인센티브 적용

(5)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최고높이	
구천면로 남측		30m 이하	50m 이하	40, 50m 이하	준주거
진황도로 북측 이면부		30m 이하	50m 이하	40, 50m 이하	준주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50, 60m 이하	기존 아파트
천호대로변 이면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40m 이하	제3종일반주거
		80m 이하	100m 이하	50, 60, 70m 이하	일반상업, 준주거
		60m 이하	80m 이하		
		30m 이하	50m 이하		
진황도로 전면부		60m 이하	80m 이하	60m 이하	일반상업
올림픽로		80m 이하	100m 이하	90m 이하	일반상업
		100m 이하	120m 이하		
성안로		80m 이하	100m 이하	60, 70, 80, 100m 이하	간선도로변
양재대로 서측		80m 이하	100m 이하	100m 이하	간선도로변
천호대로 남북측		100m 이하	120m 이하	100, 120m 이하	간선도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 일조권 적용		70m 이하	일반상업
천호대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40m 이하	제3종일반주거
특별계획구역	C2	100m 이하	150m 이하	150m 이하	
	C3		120m 이하	120m 이하	
	D2		130m 이하	130m 이하	
특별계획가능 구역	A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 일조권 적용		100m 이하 (문화재 양각 및 한강변 중저층 높이 규제 적용)	
길동사거리	일반상업지역	100m 이하	120m 이하	120m 이하	간선도로변
	근린상업지역			100, 120m 이하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80m 이하	100m 이하	100m 이하

주)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2020.12.31.) 이전 길동 일반상업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되는 최고높이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된 허가높이를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최고높이로 본다.

2) 높이 완화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인센티브 높이	권장용도	기준높이×(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
	공개공지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	기준높이×(제공면적/대지면적)	
	공공기여시설	기준높이×(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 결정(변경) 사유서

- 계획 적용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체계 적용
 - 블록별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주변계획, 현실적 개발여건, 개발 현황 등 고려
- 입지여건에 따라 간선·이면 필지간 높이 구분 적용
-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와의 높이 계획 형평성 및 연계성 고려
- 진황도로 북측 이면부 천호동 555번지 외 2필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천호3동주민센터 부지 높이 변경
- 상위 및 관련계획에 따른 높이규제 적용항목 명시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1)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간선교차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5m	
	간선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변경	간선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양재대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경계로부터 3m)	
	12m이상 25m미만 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10m미만 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	

주 1) 필지분할선이 계획 된 필지의 경우 필지분할선으로부터 건축선 적용

2) 4m미만 도로 및 막다른 도로에 대한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른다.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기능 개선을 위한 일관성·형평성 있는 건축한계선 적용
- 도로 폭원을 기준으로 필지여건을 반영하는 계획
- A1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또는 부분개발시를 감안한 건축한계선 계획 수립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함. 단,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포함)심의를 통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 구 부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 출입구 설치 규제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벽면 노출 불허 - 단, 벽면 조명, 벽화 장식 처리 등 허가권자가 미관상 인정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함	
	고층부 탐상형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 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함 ●고층부 탐상형 건축물은 기단부의 높이가 30m 이하이며 기단부의 끝 선에서 고층부로 5m 이상 후퇴시키도록 함	
건축물 외 관	측 면 이격거리의 처 리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 미만 및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장, 문으로 차폐	
	야간조명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10층 이상 신·개축시 가로변 외벽에 야간조명 권장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폭25m이상 도로 및 문구완구거리, 공공거리변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통 경 축	●「서울특별시 2030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중 「한강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입면폭, 저층부 높이 등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 유도 및 폐쇄적 입면계획 지양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함. 단,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포함)심의를 통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1층부 형태	•문구·완구거리 및 공구거리변에 면한 건축물은 필로티구간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40% 이상인 형태 권장, 다만, 전면부 필로티 노출을 지향하기 위해 1층부 시설을 전면부에 배치 권장	
	개 구 부	•연속성있는 가로 경관 형성을 위해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 출입구 설치 규제 •폭 25m 이상 도로 및 문구완구거리, 공구거리변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벽면 노출 불허 단, 벽면 조명, 벽화 장식 처리 등 허가권자가 미관상 인정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함	
	고층부 탐상형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 길이는 30m 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함 •고층부 탐상형 건축물은 기단부의 높이가 30m 이하이며 기단부의 끝 선에서 고층부로 5m 이상 후퇴시키도록 함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문구·완구거리 및 공구거리변에 면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저층부 및 전면부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반사, 발광소재 사용 및 과도한 철골구조 노출을 금지한다.	
	설치시설 관련	•폭25m이상 도로변 및 문구완구거리, 공구거리변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측 면 이격거리의 처 리	•폭 25m 이상 도로 및 문구완구거리, 공구거리변에 면한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 미만 및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장, 문으로 차폐	
	야간조명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기 타 사 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전면공지	●간선교차로변 - 도로결정 및 보행공간 조성에 따라 건축한계선 일부 축소 ●간선가로변 - 「디자인 서울거리 강동구 천호대로 조성계획」과 연계성을 위한 전면공지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모든 공지 전면공지로 지정 ●연접한 도로 여건을 감안, 차도부속형과 보도부속형으로 분리하여 조성지침 적용	
공개공지	●대형개발예상지(특별계획구역) 및 보행결절부 공지 지정	●대형개발예상지(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보행결절부 공지 지정 (45㎡이상, 폭 5m이상)	
쌈지형 공지	●간선가로변 및 주요보행 결절부 휴게공간 또는 보행 공간 조성 권장(45㎡이상, 폭 5m이상)	●간선가로변 및 주요보행 결절부 휴게공간 또는 보행 공간 조성 권장(25㎡이상, 폭 4m이상)	
침상형공지	●지하철·지하보도와 연계되는 보행결절부에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 조성	●지하철·지하보도와 연계되는 보행결절부에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 조성(45㎡이상, 폭 5m이상)	

주)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에 대한 조성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전면공지로 지정
- 간선가로변 및 주요 보행 결절부 오픈스페이스 조성
- 최소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의 휴게 및 보행공간 조성

(2)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동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차통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6m 이상 도로 중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지정	폭25m 이상 도로변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대규모 획지로 인하여 단절된 가로간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대지 내 보행통로 확보	구역내
		공동주차 출 입 구	•주차장 출입구의 전면부 설치로 인한 가로연속성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권장	구역내
변경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차통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이면부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와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폭25m 이상 도로변
		주차출입구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6m 이상 도로 중 좁은 도로에 주차출입구 지정	
		공동주차 출 입 구	•주차장 출입구의 전면부 설치로 인한 가로연속성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권장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대규모 획지로 인하여 단절된 가로간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대지 내 보행통로 확보	
		보차혼용통로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	
		공중연결통로	•2개 이상 개별건축된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지상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조성	

1)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A1, A2, A3, C2, C3, D2, D3, E3, E4, F3, F4, G1, G2, G3, G4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간선가로변 교통흐름 고려
주차장	주 차 출입구	A2	-	1개소	•공동개발 해제
		A3	1개소	1개소	•위치 변경
		C2	1개소	-	•이면부 해제
		C3	1개소	1개소	•위치 변경
		D2	6개소	1개소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및 이면부 해제
		E3	4개소	1개소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E4	-	2개소	•공동개발 해제
		F1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F2	1개소	-	•공동개발 해제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F3	1개소	2개소	•위치 변경 및 공동개발 해제
		F4	2개소	2개소	•이면부 해제 •공동개발 해제
		G2	2개소	1개소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공동주차 출 입 구	A2	-	1개소	•공동개발 해제
		B	3개소	-	•개발여건 고려
		D2	-	2개소	•공동개발 해제 및 차량출입구 최소화
		E3	1개소	2개소	•차량출입구 최소화
		F2	-	1개소	•공동개발 해제
		F3	1개소	1개소	•위치 변경
		F4	-	1개소	•공동개발 해제
		G1	1개소	1개소	•변경 없음
		G2	-	1개소	•차량출입구 최소화

2)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보행동선	공공보행 통 로	A1	-	1개소(8m이상)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C2	2개소(6m이상)	2개소(6m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C3	-	1개소(6m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D2	1개소(6m이상)	1개소(6m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보차혼용 통 로	F4	1개소(4m)	1개소(4m)	
	공중연결 통 로	E3	1개소	1개소	

■ 결정(변경) 사유서

-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계획, 개발현황 등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간선가로변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구 지정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접근성 강화
-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으로 간선가로변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흐름 단절 최소화
- 교통영향평가를 반영, A2가구 내 천호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신설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A1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55,448.5	감)55,448.5	-	2009.06.25. 서고시 제254호	
기 정	C2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 일대	31,760.1	-	31,760.1	2001.06.02. 서고시 제178호	
변 경	C3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대	28,742.7	-	28,742.7	2009.06.25. 서고시 제254호	획지분할 가능선 변경 (2개소→3개소)
기 정	D2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대	10,175.0	-	10,175.0	2007.04.05. 서고시 제85호	

주) 본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폐 지	A1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55,448.5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폐지
변 경	C3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대	28,742.7	●특별계획구역 개발촉진을 위한 계획 내용 변경 - 정비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획지분할가능선 신설 및 변경(2개소 → 3개소)

- 이 하 여 백 -

(1) A1 특별계획구역(폐지)

■ 기 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천호동 460번지 일대	
면 적			●55,448.5㎡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천호대로변)	
기반시설			●도로확대 및 조정(2개소) ① 4m → 12m ② 5m → 12m ●공원 및 녹지 － 한강변 녹지 폭원확대 : 15m → 30m － 구역 면적의 10%이상 설치 ●공공공지 － 천호대교변 5m ●공공기여 － 공동주택 건립시 주민공동시설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도입	
용도	권장 용도	전층 권장	●문화시설(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문화시설로 조성시 용도지역 용도완화)	
	불허 용도 (4)	전층 불허	●위험물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저층부 불 허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밀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	●200%이하	
		허용	●250%이하	
높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 일조권 적용		
건축물의 형태			●한강연접부는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경관축 조성	
기타	건축한계선		●도로변 각각 1m	
	대지 내 공지		●한강연접부 썸지형공지 마련	

주 1) 공동주택 건립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수

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중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 준수

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한강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 및 서울특별시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

4) 세부개발계획시 A2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여부 검토

(2) C2 특별계획구역

■ 기 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천호동 448번지 일대	
면 적			●31,760.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천호대로변)	
기반시설			●도로 － 구역 북측·서측·동측 20m 도로 조성	
용도	권장 용도	전층 권장	●업무시설(오피스텔불허)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 ※ 업무시설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설치	
	불허 용도 (1)	전층 불허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저층부 불 허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40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허용용적률×(1+1.3×가중치×a)	
	높이		●기준높이 100m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건축물의 형태			●고층부 탑상형 배치 －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주거기능 전면배치 불허) ●최상층 개방시설 배치(업무시설 최상층)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카페 등), 문화시설(포토존,전망존 등)	
기타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5m ●진황도로변 3m ●인접지 각각 1m	
	대지 내 공지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하여 계획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계획	
	공공보행통로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	

주 1) 인센티브 용적률은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3) C3 특별계획구역

■ 기 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성내동 19번지 일대	
면 적			●28,742.7㎡	
용도지역			●제3종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천호대로변)	
기반시설			●도로 ① 폭원확대 : 10m → 15m 조성 ② 도로 신설 : 15m	
용도	권장 용도	전층 권장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판매시설,노유자시설(300㎡이상),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50%이상 설치시 인정 ※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업무시설 지상부30%이상 설치	
	불허 용도 (1)	전층 불허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저층부 불 허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밀도	건폐율		●60%이하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완화 가능
	용적률	기준	●260% 이하	
		허용	●360% 이하	
	높 이		●기준높이 10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건축물의 형태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 / 고층부 탑상형 배치 [권장사항] ●최상층 개방시설 배치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기타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1m ●우측연접부 2m	
	대지 내 공지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	
	공공보행통로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 통로 설치	

주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

2)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3)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적용

■ 변 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성내동 19번지 일대	
면 적		●28,742.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지역에 한함 ●도로 - 획지 간 12m, 이면부 10m 도로 조성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와 협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천호대로변 및 강동역 연접지에 설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구 및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부분개발시 건축물내 공공시설 가능 - 예시용도 :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가구 및 획지		●1개 획지(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G) ※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 이상(지상층 20% 이상) 설치시 인정	
	불허용도	●불허용도 (1)	
밀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250% / 허용 350% / 상한 400%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4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면적 대비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높 이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2~3m, 우측연접부 3m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천호대로변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공공보행통로	●획지 내 6m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 타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비주거시설 상층부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주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

2)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4) D2 특별계획구역

■ 기 정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위 치			●천호동 447-17번지 일대	
면 적			●10,175.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천호대로변)	
기반시설			●도로 - 구역 서측 도로 20m 조성 - 학교연접부 보행자전용도로(5m) 조성	
용도	권장 용도	전층 권장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설치) ※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의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 ※ 공동주택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70%미만으로 제한	
	불허 용도 (1)	전층 불허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저층부 불 허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밀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	●300% 이하	
		허용	●400% 이하	
		상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높 이		●기준높이 100m 이하 ●최고높이 130m 이하		
건축물의 형태			●고층부 탑상형 배치,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주거기능 전면배치 불허) [권장사항] ●최상층 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전시장 등)	
기타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5m ●진황도길 3m ●좌측연접부 1m	
	대지 내 공지		[권장사항]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	
	차량출입 불허구간		●천호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공공보행통로		[권장사항] ●학교와 인접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주 1) 인센티브 용적률은 인센티브 완하기준 적용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A1 특별계획가능구역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	증)57,247.1	57,247.1	-	

주) 본 특별계획가능구역 면적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 설	A1 특별계획가능구역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57,247.1	개발 실현성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조속한 사업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 이 하 여 백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1)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면 적			●57,247.1㎡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재개발 등 구체적 사업 추진시 필요한 일부지역에 한하여 용도지역 상향 변경 검토
기반시설			●도로 － 구역 동측 10m, 획지 내 10m, 구천면로 이면부 6~8m ※ 통합개발시 획지내 도로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검토 ● 공공공지 : 북측 출입구변 조성
가구 및 획지			●1개 획지(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용도	불허 용도	전층 (5)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장례식장(병원 부속시설 제외) ●1층-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밀도	건 폐 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250% / 25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공동주택 건립시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 기준’ 적용
	높 이		●최고높이 100m 이하(문화재 양각 및 한강변 중저층 높이 규제 적용)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수변경관 형성을 위한 통경축 계획 － 간선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폐쇄적 입면계획 지양 ●수변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 수변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한 중·저층 계획 － 대상지 내 건축물 간 과도한 고·저차 지양 ●풍납동토성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주변지역과의 과도한 높이차에 의한 부조화 감소 － 풍납동토성 주변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 형성 ●건축물 내 전망공간 조성 권장
기타	건축한계선		●한강연접부, 동측 경계부 5m ●그 외 3m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2개소 － 한강연접부, 문구거리변
	공공보행통로		●한강연접부 ~ 문구거리 : 폭원 8m 이상
	기 타		●세부개발계획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대상)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련법 우선 적용 ●획지간 10m 도로내 단지 출입구와 연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2)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지침(신설)

1)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가 구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기존 도로 선형에 따라 A1,A2 가구 선형 변경

2)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기 준	비고
공동개발(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내 기공동개발 - 맹지 해소 및 건축불가필지	
공동개발(권장)	과소필지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1	신설	천호동	461-37	17.0	332.0	●공동개발 권장(과소필지)
			461-88	12.0		
			465-3	303.0		
	신설	천호동	461-61	31.0	187.0	●공동개발 지정(기 공동개발)
			461-62	68.0		
			461-113	88.0		
	신설	천호동	461-75	43.0	208.0	●공동개발 지정(기 공동개발)
			467-76	165.0		
	신설	천호동	461-144	129.0	172.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1-204	43.0		
	신설	천호동	461-145	132.0	245.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1-153	93.0		
			461-154	20.0		
	신설	천호동	461-149	126.0	150.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1-159	7.0		
			462-75	17.0		
	신설	천호동	461-150	102.0	202.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1-160	10.0		
	신설	천호동	462-4	90.0	116.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2-66	26.0		
	신설	천호동	462-5	139.0	311.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16	135.0		
			462-65	37.0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1	신설	천호동	462-6	166.0	333.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14	92.0		
			462-15	75.0		
	신설	천호동	462-7	159.0	179.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2-64	20.0		
	신설	천호동	462-10	57.0	126.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2-39	69.0		
	신설	천호동	462-13	152.0	173.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82	21.0		
	신설	천호동	462-17	83.0	256.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18	127.0		
			462-73	29.0		
			462-74	17.0		
	신설	천호동	462-19	106.0	143.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70	28.0		
			462-71	2.0		
			462-72	7.0		
	신설	천호동	462-20	123.0	258.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21	132.0		
			462-76	3.0		
	신설	천호동	462-22	89.0	320.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23	155.0		
			462-24	76.0		
	신설	천호동	462-25	138.0	331.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26	95.0		
			462-27	98.0		
	신설	천호동	462-28	162.0	271.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29	99.0		
			462-80	10.0		
	신설	천호동	462-35	755.0	830.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2-38	58.0		
			462-60	17.0		
	신설	천호동	463-84	132.0	165.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3-85	33.0		
	신설	천호동	463-89	106.0	215.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3-90	109.0		
	신설	천호동	465-22	169.0	171.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5-23	2.0		
	신설	천호동	466-38	20.0	181.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6-39	25.0		
			467-45	136.0		
	신설	천호동	466-40	23.0	209.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6-41	14.0		
			467-58	172.0		
	신설	천호동	467-27	112.0	129.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7-28	17.0		
	신설	천호동	467-30	142.0	192.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7-31	50.0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A2	신설	천호동	459-17	17.0	248.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59-18	33.0		
			459-25	198.0		
	신설	천호동	459-19	56.0	142.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59-24	86.0		
	신설	천호동	459-20	79.0	162.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59-23	83.0		
	신설	천호동	459-21	99.0	102.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59-58	3.0		
	신설	천호동	459-26	109.0	276.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59-27	167.0		
	신설	천호동	459-33	167.0	365.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59-34	99.0		
			459-35	99.0		
	신설	천호동	459-36	99.0	198.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59-37	99.0		
	신설	천호동	459-48	83.0	113.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59-49	30.0		
	신설	천호동	459-53	109.0	215.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0-6	106.0		
	신설	천호동	459-54	106.0	212.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0-5	106.0		
	신설	천호동	460-3	96.0	416.0	●공동개발 지정(건축불가필지)
			460-4	320.0		
	신설	천호동	460-7	102.0	254.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0-8	152.0		
	신설	천호동	460-9	96.0	205.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0-10	109.0		
	신설	천호동	460-11	136.0	752.0	●공동개발 지정(맹지해소)
			460-12	122.0		
			460-17	126.0		
			460-18	109.0		
			460-19	143.0		
			460-20	116.0		

3)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불허 응도	공통사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장례식장(병원 부속시설 제외)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5)]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권장 응도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구청면로(D)]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2) 관계법령(용도지역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4) 건축물의 개발밀도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용적률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 허용 250% /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	●기준 300% / 허용 360% / 상한 400%
높 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40m 이하(문화재 양각규제 적용)
	준주거지역	●구천면로 5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

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2)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건립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3)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기준 적용

5)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공지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천호대로변 3m, 구천면로변 2m, 이면부 1m

※ 4m 미만 또는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적용

6) 차량동선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통행구간	●구천면로변에서의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유지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씬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4.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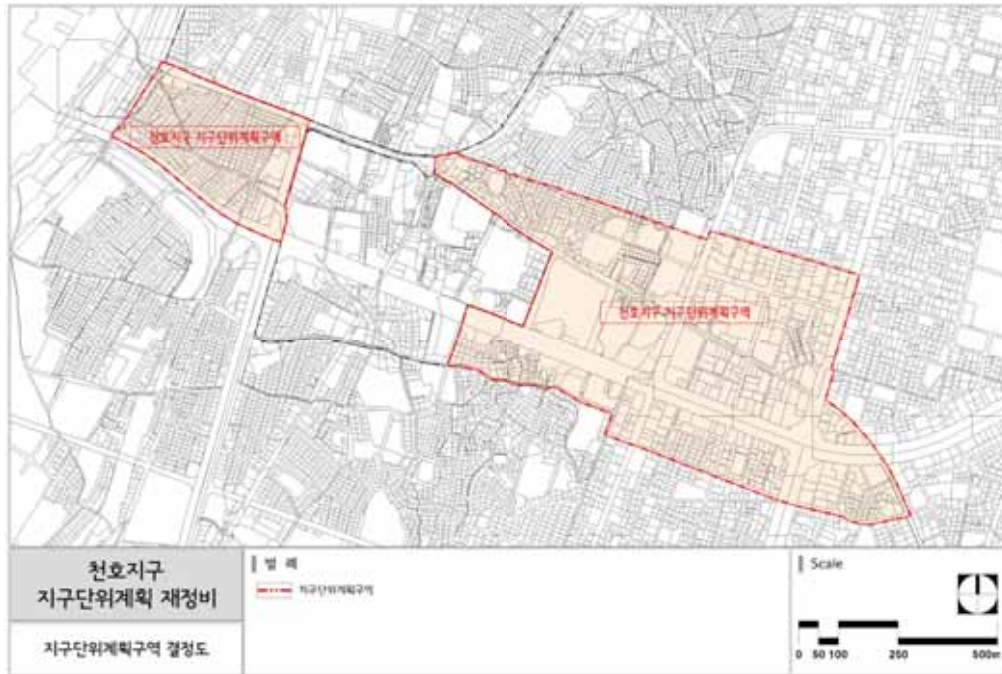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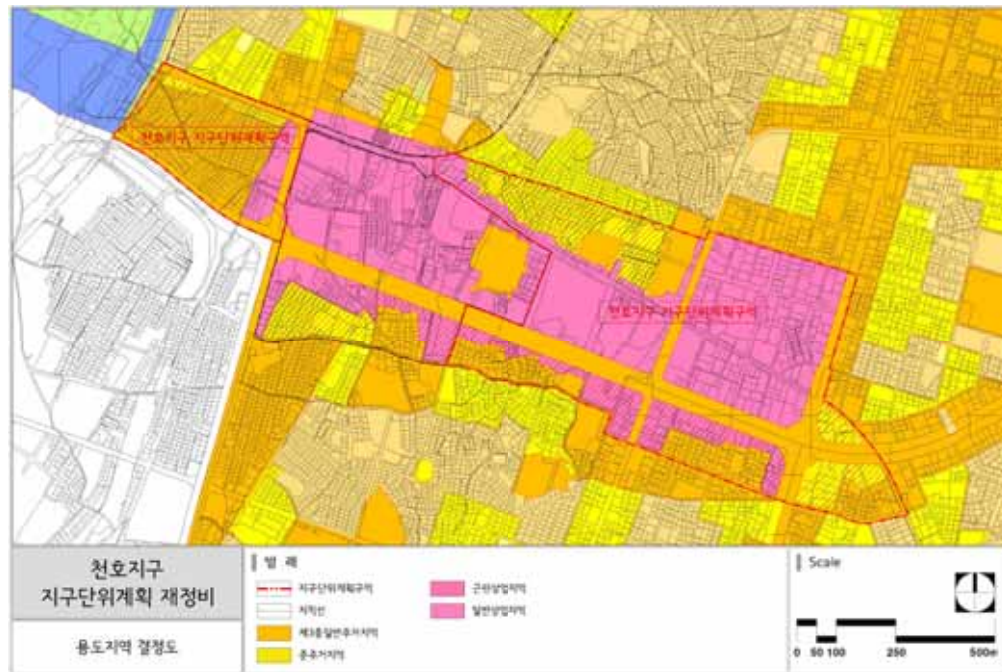
IV.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9)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3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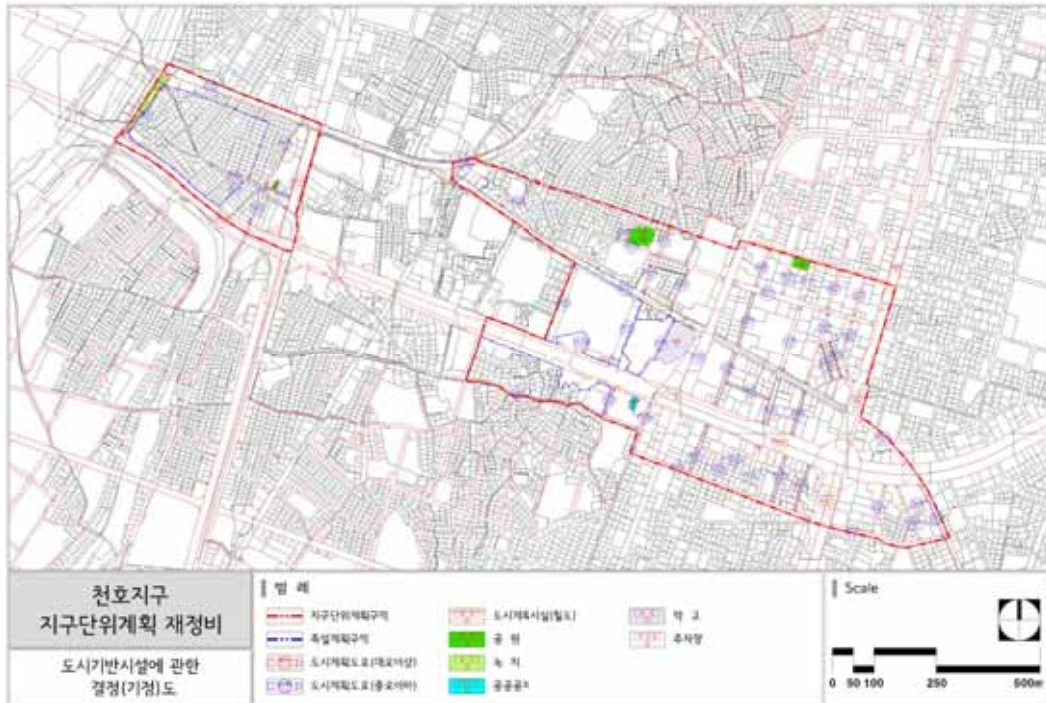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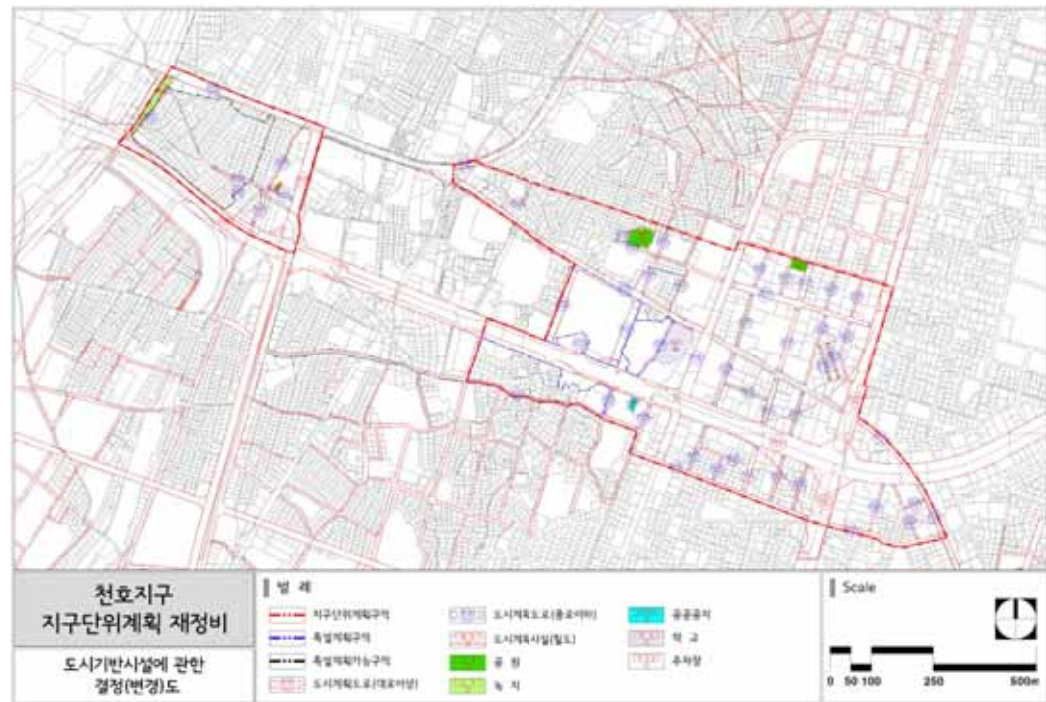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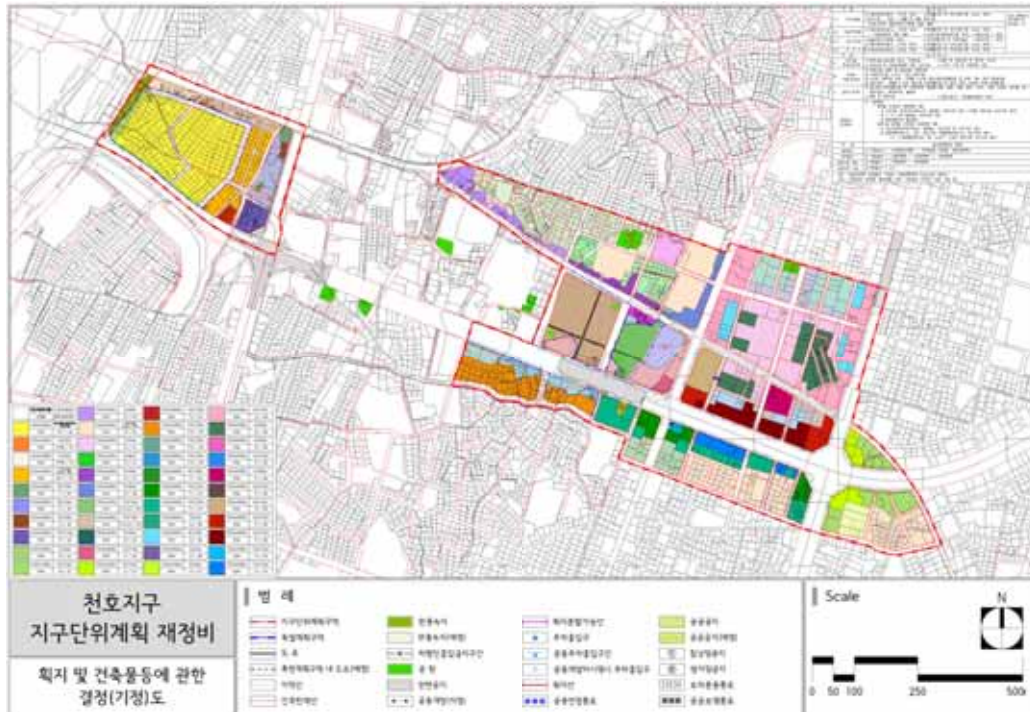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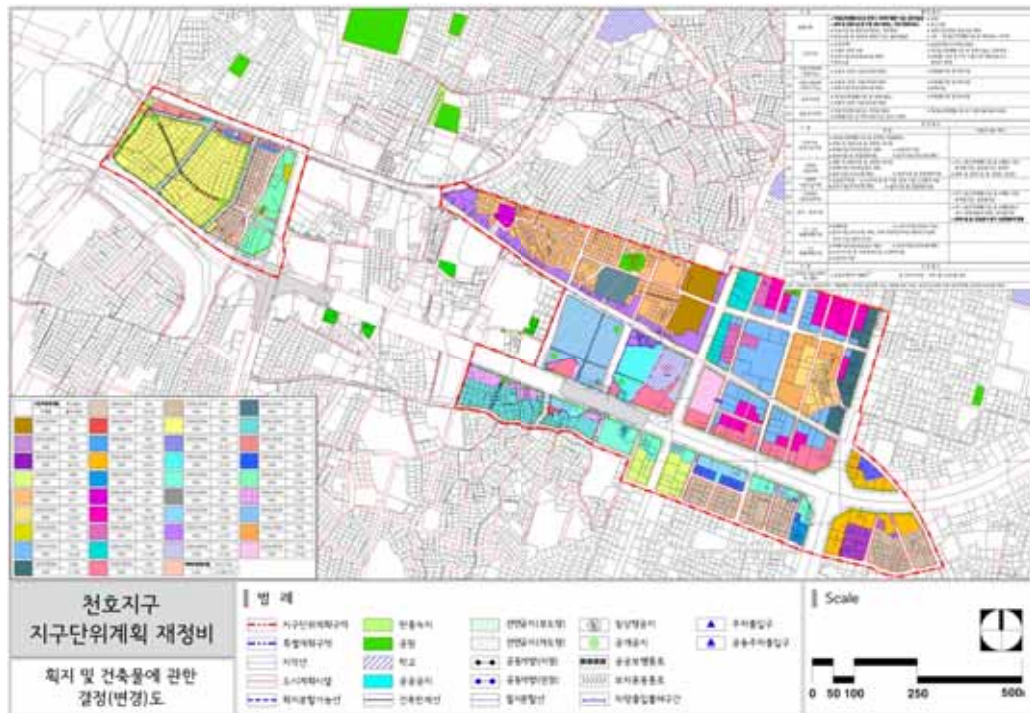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3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관리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 관리면적 : 1,123,790㎡

2. 관리권자(위탁자) : 서울특별시장

3. 관리기관(수탁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918호

4. 위·수탁 업무의 내용

- 관리기본계획 집행·변경안 수립 및 제도개선 발굴·추진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안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마곡광장(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시설 및 임대관리 포함)
- 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기관유치
-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 협의, 임대 및 입주계약 체결 관련 업무
-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입주기업 관리
-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 법령 및 입주계약 위반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제외)
- 마곡형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수립, 승인 및 관리 등 R&D센터(지식산업센터) 관련 업무
- 산업단지 내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 입주기업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지원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입주기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관리
-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사업
- R&D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촉진
- 유보지 및 미 매각부지 관리
- 기타 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요청 사업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4호

**동대문구 휘경동 244 - 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 면 적 : 2,278.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0년 12월 31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에드가
- 대표자 성명 : 정영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06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 법인등록번호 : 110111-727043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대문구 회경동	244-1	대	1,976.0	1,976.0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06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1/1	-	-	-
2		259	대	142.0	142.0			1/1			
3		260	대	112.0	112.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4		255-29	구거	100.0	36.0	서울시 동대문구	-	1/1			
5		255-50	대	4.0	4.0	서울시 동대문구	-	1/1			
6		255-51	대	8.0	8.0	서울시 동대문구	-	1/1			
합계				2,342.0	2,278.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대문구 회경동	259	대	영업	철근 콘크리트	1971.09.04.	276.1	-	2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	-	-	-	258
2		260	대	영업소	목조	-	43.5	-	1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합계							319.6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319-5번지 일대	103,830.0	-	103,830.0	서고시 제2000-242호 (2000.08.30.)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동대문구청 2층 도시계획과(02-2127-49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 면 적 : 2,278.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회기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에드가
- 대표자 성명 : 정영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06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195.98	96.4	임대주택
도로	82.02	3.6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 지정 등 ※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적용 제외
합 계	2,278.00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410인

2) 주택건설계획 : 34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1형	16	4.58	16	3.9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3형	7	2.01	7	1.71	
	43형	7	2.01	19	4.64	
	47형	6	1.72	16	3.90	
	소 계	36	10.32	58	14.1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1형	264	75.64	264	64.39	
	23형	26	7.45	26	6.34	
	43형	11	3.15	30	7.32	
	47형	12	3.44	32	7.80	
	소 계	313	89.68	352	85.85	
합 계		349	100.00	410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획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교통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37	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 번지	휘경동 255-39 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 중로1-437의 기 결정된 미개설 부분을 금회 사업시행으로 기부채납 계획함 (단, 상한용적률 산정 제외)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영업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산림지역, 조경녹지 등은 분포치 않음
-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 보전 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제생략)

[붙임]

I.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801,245.3	-	801,245.3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이문생활권중심 : 67,183.0㎡ ③ 회기구역 : 88,865.0㎡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변경 없음)

③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④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8,495	증) 349	18,844	42,632	증) 410	43,042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14,115	-	14,115	32,465	-	32,465	
	60㎡ 이하	9,479	-	9,479	21,802	-	21,802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3,929	-	3,929	9,037	-	9,037	-
	85㎡ 초과	707	-	707	1,626	-	1,626	-
존치지역	소계	4,380	증) 349	4,729	10,167	증) 410	10,577	-
	단독주택	2,765	-	2,765	6,495	-	6,495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615	증) 349	1,964	3,672	증) 410	4,082	존치건축물 청년주택 신축

※ 세대 당 인구 2.3인 적용(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에 한하여 세대당 인구 2.3인을 적용하며, 그 외 주택은 세대당 1.0인을 적용하여 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인구수 : 10,167인 → 10,577인(증) 410인] - 주택수 : 4,380가구 → 4,729가구(증) 349가구]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5) 교통계획(변경 없음)

(6) 경관계획(변경 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촉진지구	801,245.3	-	801,245.3	100.0	
촉진구역	570,247.3	-	570,247.3	71.2	
이문1구역	144,856.0	-	144,856.0	18.1	
이문3구역	154,783.0	-	154,783.0	19.3	결합개발구역
이문3-1구역	133,542.0	-	133,542.0	16.7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7	구릉지
이문4구역	149,690.0	-	149,690.0	18.7	
휘경1구역	12,916.0	-	12,916.0	1.6	정비구역 기 지정
휘경2구역	43,685.3	-	43,685.3	5.5	
휘경3구역	64,317.0	-	64,317.0	8.0	
준치지역	230,998.0	-	230,998.0	28.8	
소계	156,000.0	-	156,000.0	19.5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67,135.0	-	67,135.0	8.4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1.1	회기지구단위계획(촉진지구 내)
소계	74,998.0	-	74,998.0	9.3	
준치시설 및 건축물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5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	-	17,03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빛물품프장(방수설비)
	⑪ 7,298.0	-	7,298.0	0.9	중앙선
	⑫ 6,357.0	-	6,357.0	0.8	기타 준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⑭ 1,698.0	-	1,698.0	0.2	중랑제일교회

※ 준치지역은 준치정비구역 및 준치관리구역으로 세분(도시재정비법 제9조)하며,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의 준치지역은 준치관리구역으로 봄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없음)
-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없음)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14) 기타계획(변경 없음)
-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없음)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변경 없음)
- (19) 이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20)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03,830.0	-	103,830.0	100.0	
주거 지역	소계	102,286.0	-	102,286.0	98.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9,490.0	-	19,490.0	18.8	
	제2종일반주거지역	555.0	-	555.0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46.0	감) 9.3	25,136.7	24.2	
	준주거지역	57,095.0	증) 9.3	57,104.3	55.0	
상업 지역	소계	1,544.0	-	1,544.0	1.5	
	일반상업지역	1,544.0	-	1,544.0	1.5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2,278.0	-	2,278.0	100.0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주거 지역	소계	2,278.0	-	2,278.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	감) 9.3	2.7	0.1	
	준주거지역	2,266.0	증) 9.3	2,275.3	99.9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대문구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3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 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 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 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변경)

구 분		최대 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망우로변	2,000	2,000	
	망우로21길변	2,000	2,000	
			2,30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 개발 지정 계획 필지(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에 한함
	회기로변	1,000	1,000	
이면부		800	800	

주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2) 적용 제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상 최대개발규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필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최대개발규모 변경(회경동 244-1일원) - 기정 : 간선변 망우로21길변(2,000㎡) - 변경 : 간선변 망우로21길변(2,300㎡)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계획필지인 대상지 의 계획적 개발 허용을 위한 최대개발규모 변경

②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없음)

③ 공동개발계획(변경)

• 계획기준(변경 없음)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H13	휘경동	244-1	1,976.0	2,278.0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공동개발 지정
			255-29	36.0			
			255-50	4.0			
			255-51	8.0			
			259	142.0			
			260	112.0			

※ 상기사항 외 변경 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개발 지정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변경)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기정	1 (간선변)	전층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변경	1 (간선변)	전층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의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층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장의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3 (역세권 청년주택)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전층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불허용도 변경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 필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 추가 반영하여 불허용도 변경

• 권장용도(변경 없음)

• 지정용도

구 분	도면표시	용 도	비 고
기정	a ^{주1)} (간선변, 1층)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b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주2)} - 단, 지상1, 2층 : 비주거 용도 설치가능	

주1)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 이상 설치 시 준수된 것으로 봄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 가능)

※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가능

주2)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b는 용적률 인센티브산정에서 제외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변경(a → b)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 계획(변경 없음)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 고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블록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이하	800% 이하	법정용적률 2배 이하	
	H13-③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5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휘경동 192-1, 192-6, 192-1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이면블록				
		휘경동 24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용적률 : 499.58% 이하		575% 이하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이하	800% 이하	법정용적률 2배 이하	
	H13-③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 5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휘경동 192-1, 192-6, 192-1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 이상 설치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구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주6)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에 한하여 주2), 주3), 주4), 주5)는 적용하지 않으며, 비주거비율 15% 이하(용적률 기준)로 설치할 수 있음(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8)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3)은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을 제외하여 적용하고, 주4)는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m 이내에서 높이계획을 완화 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등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며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정 :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 : 300%/360%/400% 이하) - 변경 : 휘경동 244-1 일원 역사권 청년주택 사업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용적률 계획을 변경함 • 기본용적률 499.58% 이하 • 상한용적률 575% 이하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준주거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체계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6.02% 이상 (부지면적 기준, 가중평균)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사권 청년주택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 85% 이상	
	비주거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커뮤니티시설		• 300호 ~ 364호 미만 - 커뮤니티시설 설치 면적 200㎡ 이상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④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99.58% 이하	575.00%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6.02% 이상(132.20㎡ 이상)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사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3-2-2 적용

※ 단, 부지면적은 도로면적(82.02㎡)을 제외한 면적(2,195.98㎡)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 상기사항 외 변경 없음(기재생략)

⑤ 높이계획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높이계획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정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회기로, 망우로21길	-	40m 이하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회기로, 망우로21길	-	40m 이하	
		망우로21길	-	60m 이하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6필지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높이 변경 - 기정 : 간선변(회기로, 망우로21길) 40m 이하/ - 이면부, 이면블럭 30m 이하 - 변경 : 간선변(망우로21길) 60m 이하	• 회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5-29, 259, 260 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높이 계획 완화

• 높이계획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⑥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변 벽면한계선 폐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망우로21길변 각각부 일부 지정 : 2m	
	건축한계선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 청년주택사업대상지(회경동 192-1번지 일원) : 1.5~3m (대상지 서측 도로 도로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내로 폭 6m 확보를 위한 선)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제 어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각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3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 청년주택사업대상지(회경동 192-1번지 일원) : 1.5~3m (대상지 서측 도로 도로끝선으로부터 대상지 내로 폭 6m 확보를 위한 선)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 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결정도 참조
	침상형 공지	• 쌈지형 공지로 변경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전 구간 : 4개소(폭 4~6m)	결정도 참조
	보행자 우선도로	• 3개소	결정도 참조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 일부 조정(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도 참조
(공동) 주차출입구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 지정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에 따라 휘경동 259, 260번지 공동주차출입구 → 주차출입구로 변경 (휘경동 244-1, 255-29, 255-50, 255-51, 259, 26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차장설치방식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주차장 설치완화주1)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이문로변, 망우로변

주1) 주차장 설치완화 대상 필지 중 간선·이면간 필지 또는 간선·간선간 필지의 공동개발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변경 없음)

③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사면 및 지반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사업지구에 알맞은 지하터파기 공법 선정
 - ① 터파기 계획 : 흙막이공법 적용
 - ② 흙막이 벽체 : C.I.P 벽체 적용
 - ③ 지보재 : 강재버팀보(STRUT) 지지공법 적용
 - ④ 차수 및 지반보강 : S.G.R GROUTING(차수공) 공법 병행적용

3)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기타재해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 경계부로 가설방음벽 등 설치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및 내용		
1	동대문구 휘경동	244-1	대	1,976.0	1,976.0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06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1/1	-	-	-		
2		259	대	142.0	142.0			1/1					
3		260	대	112.0	112.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					
4		255-29	구거	100.0	36.0			서울시 동대문구				-	1/1
5		255-50	대	4.0	4.0			서울시 동대문구				-	1/1
6		255-51	대	8.0	8.0			서울시 동대문구				-	1/1
합계				2,342.0	2,278.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대문구 회경동	259	대	영업	철근 콘크리트	1971.09.04.	276.1	-	2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	-	-	-	258
2		260	대	영업소	목조	-	43.5	-	1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합계							319.6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고(관리청)
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244-1	64.24㎡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255-50	2.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259	7.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260	7.24㎡	

※ 도로 조성 후 관리청(동대문구청)에 기부채납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2,278.00	100.0	-	-	-
주택건설용지	2,195.98	96.4	자체사용	승인 후	-
도로	82.02	3.6	동대문구청	승인 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에드가	정영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06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 에드가), 수탁자(아시아신탁 주식회사)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3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44-1일원
- 나. 대지면적 : 2,195.98㎡
- 다. 건폐율 : 59.83%(건축면적 : 1,313.76㎡)
- 라. 용적률 : 574.53%(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12,616.55㎡)
- 마. 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36세대/민간임대 313세대), 근린생활시설
- 바. 규모 : 1개동, 지하 3층/지상 19층, 연면적 16,659.87㎡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6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20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0호(20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20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20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2015.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2015.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호(2017.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3호(2017.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6호(2018.4.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0호(2018.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7호(2020.2.7.)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조서

1) 본선(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237.6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 08.11.20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제외한 부분임.

2) 정거장(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268.9	24.4	7,293.3	국토부고시 758 (' 10.11.04)	

3) 변경내용 및 사유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시철도 9호선 (937 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174-1대 편입면적 변경 611.9㎡ → 636.3㎡(증 24.4㎡)	937정거장 출입구(#1) 입구부 실점용 면적 수용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3)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22)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7호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0,156,241,928	600,000,000
일 반 회 계	27,725,766,942	500,000,000
특 별 회 계	12,430,474,986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660,292,000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738,1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92,00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0,770,182,986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12,561,244	
(4) 교통사업특별회계	1,604,499,951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9,523,563	
(6) 주택사업특별회계	2,537,196,445	
(7) 도시개발특별회계	2,135,997,793	
(8) 균형발전특별회계	165,136,283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24,704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68,567,962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67,833	
(12) 소방안전특별회계	876,707,2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5호(2000.08.16.)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량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3년 (변경없음)
-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변경없음)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없음)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
-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기정										변경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 번호	위 치	용도 지역	건폐율 (%)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가구 번호	위 치	용도 지역	건폐율 (%)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준	허용	층수	높이							기준	허용	층수	높이		
A	상봉동 100-15일원	준주거	60	300	360	-	60			A	상봉동 100-15일원	준주거	60	300	360	-	60		
B	상봉동 99-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60			B	상봉동 99-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60		
C	상봉동 115-1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C	상봉동 115-1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300	500	-	70(간선부)							300	500	-	70(간선부)		
D	상봉동 113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D	상봉동 113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300	500	-	70(간선부)							300	500	-	70(간선부)		
E	상봉동 92일원	일반상업	60	600	800	-	90			E	상봉동 92일원	일반상업	60	600	800	-	90		
F	상봉동 89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F	상봉동 89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G	상봉동 89-3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G	상봉동 89-3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H	망우동 563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80(우측부)			H	망우동 563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80(우측부)		
				600	800	-	90(좌측부)							600	800	-	90(좌측부)		
I	망우동 506-1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90			I	망우동 506-1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90		
J	망우동 506-3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이면부)			J	망우동 506-3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이면부)		
							90(간선부)										90(간선부)		
K	망우동 508-1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K	망우동 508-1일원	일반상업	60	500	700	-	80		
L	상봉동 101	근린상업	60	300	500	-	70			L	상봉동 101	근린상업	60	300	500	-	70		
M	상봉동 108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M	상봉동 108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60(간선부)										60(간선부)		
N	상봉동 101-2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N	상봉동 101-2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300	500	-	70(간선부)							300	500	-	70(간선부)		
				300	360	-	48							300	360	-	48		
O	상봉동 91-1일원	일반상업	60	400	680	-	80(좌측부)			O	상봉동 91-1일원	일반상업	60	400	680	-	80(좌측부)		
				600	800	-	90(우측부)							600	800	-	90(우측부)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500	700	-	80(우측부)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500	700	-	80(우측부)		
				기본	상한	-	80							기본	상한	-	80		
Q	망우동 564 일원	일반상업	60	600	800	-	96			Q	망우동 564 일원	일반상업	60	600	800	-	96		
R	상봉동 50-1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R	상봉동 50-1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S	상봉동 10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S	상봉동 10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T	상봉동 103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			T	상봉동 103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		
U	상봉동 8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U	상봉동 87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V	상봉동 84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V	상봉동 84일원	준주거	60	300	360	-	48(이면부)		
W	망우동 490-1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W	망우동 490-1일원	근린상업	60	250	450	-	60(이면부)		
				300	500	-	70(간선부)							300	500	-	70(간선부)		

주1) 공동개발 해제 시 이면부 접도조건에 따른 용적률·높이 기준 적용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항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 용적률 완화

○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3항[별표3] 제2호나목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다음의 산식 이하로 적용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서 권장용도 면적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 중 임대주택 확보 면적'을 부족한 권장용도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주거부분 용적률(500~600%) / 상업지역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상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기준”을 적용하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19.03.28~ '22.03.28 3년 한시 적용) 주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된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19.03.28~ '22.03.28 3년 한시 적용)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없음)

17) 기타(광고물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정보화계획, 방재계획, 에너지 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4)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III.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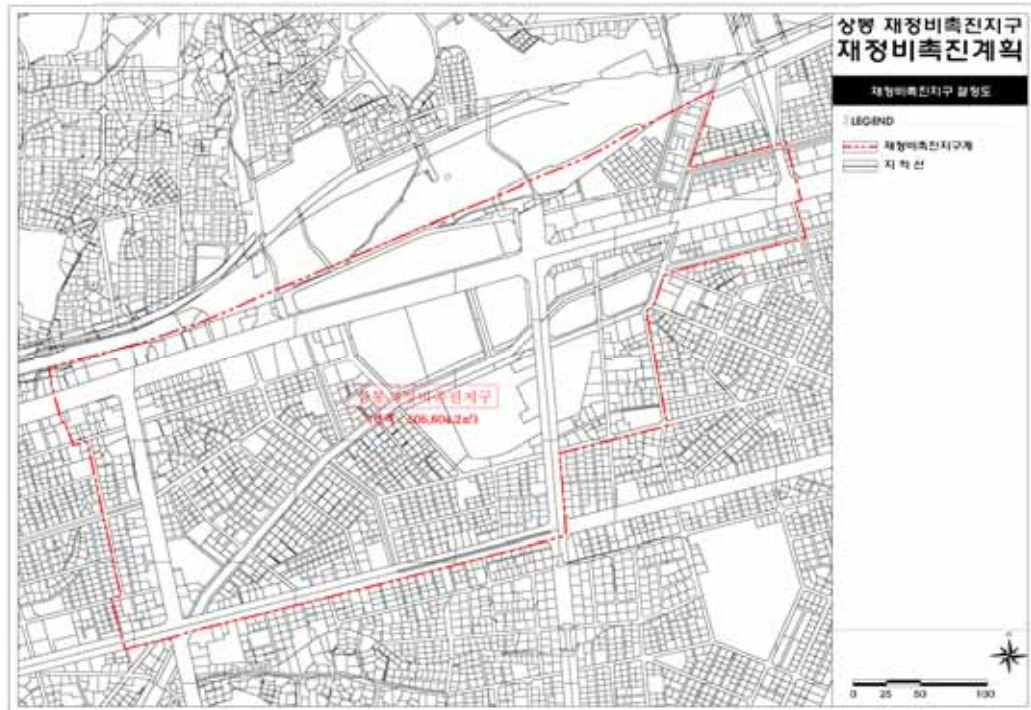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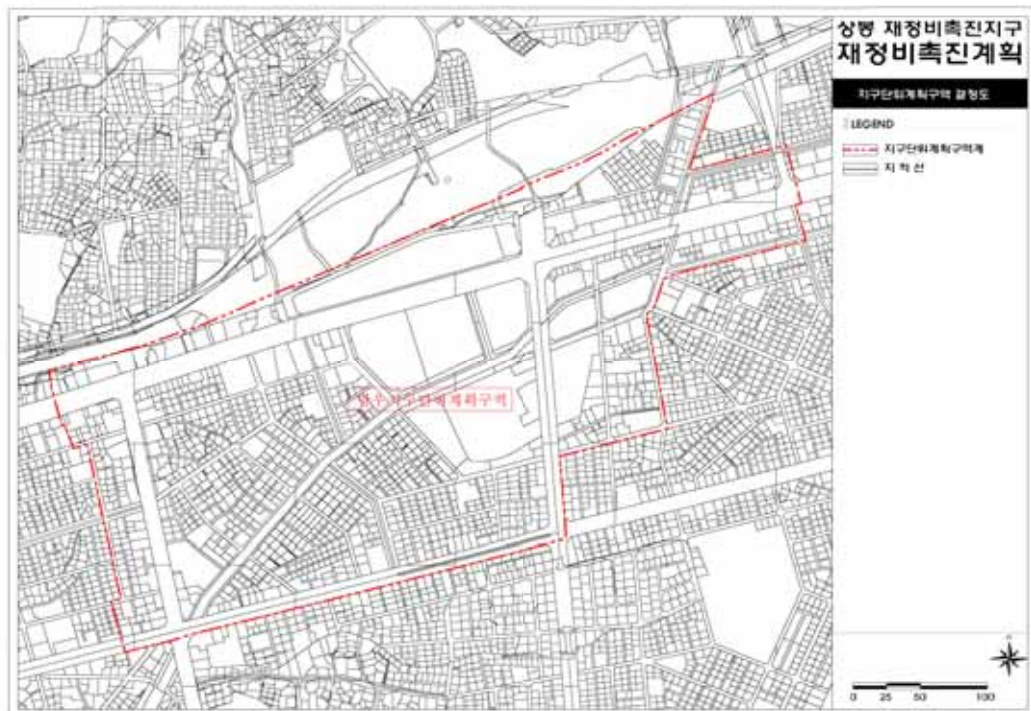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8),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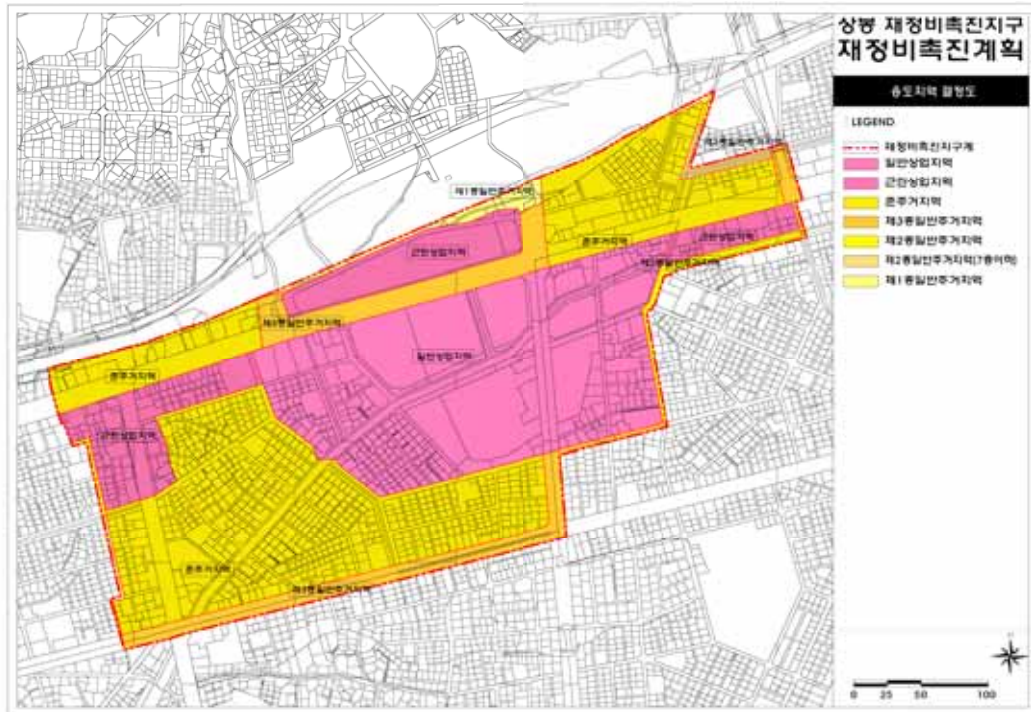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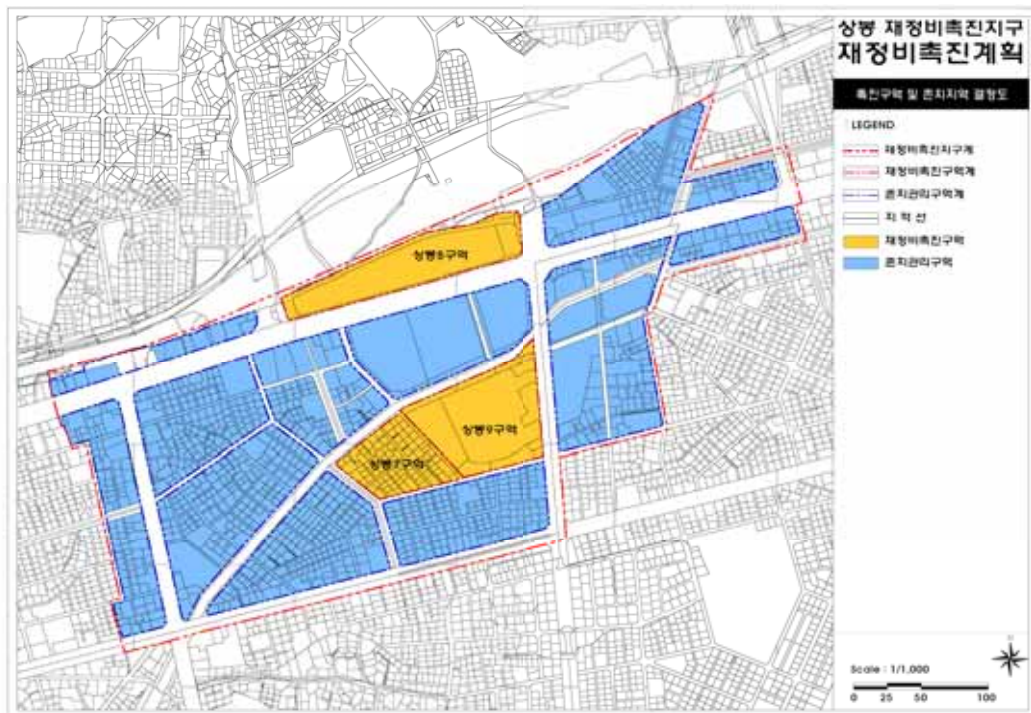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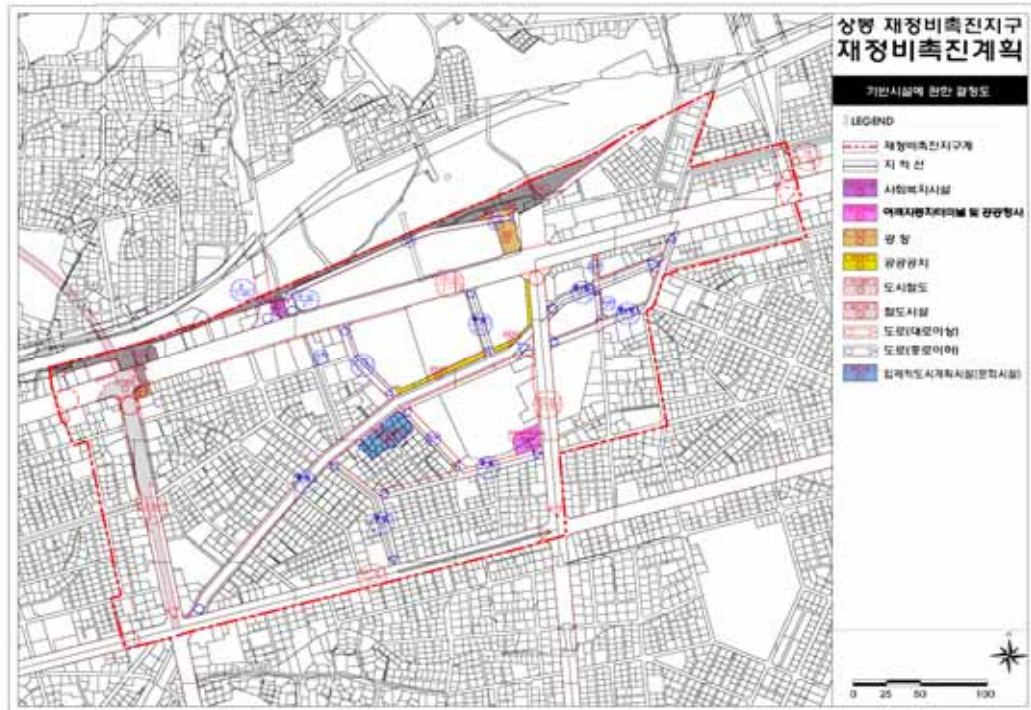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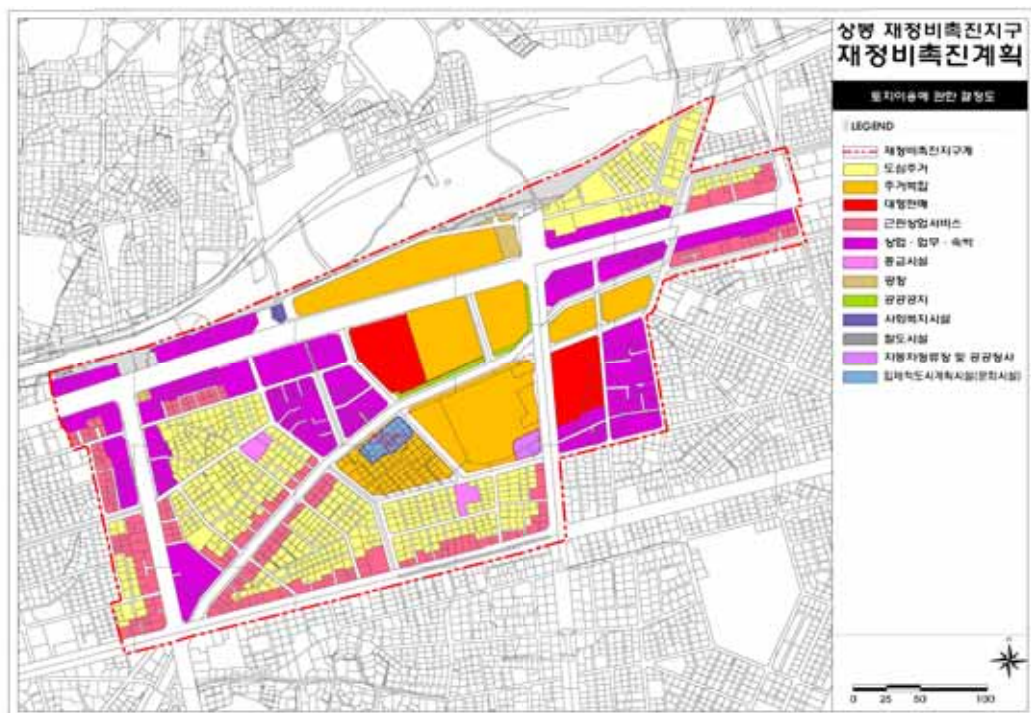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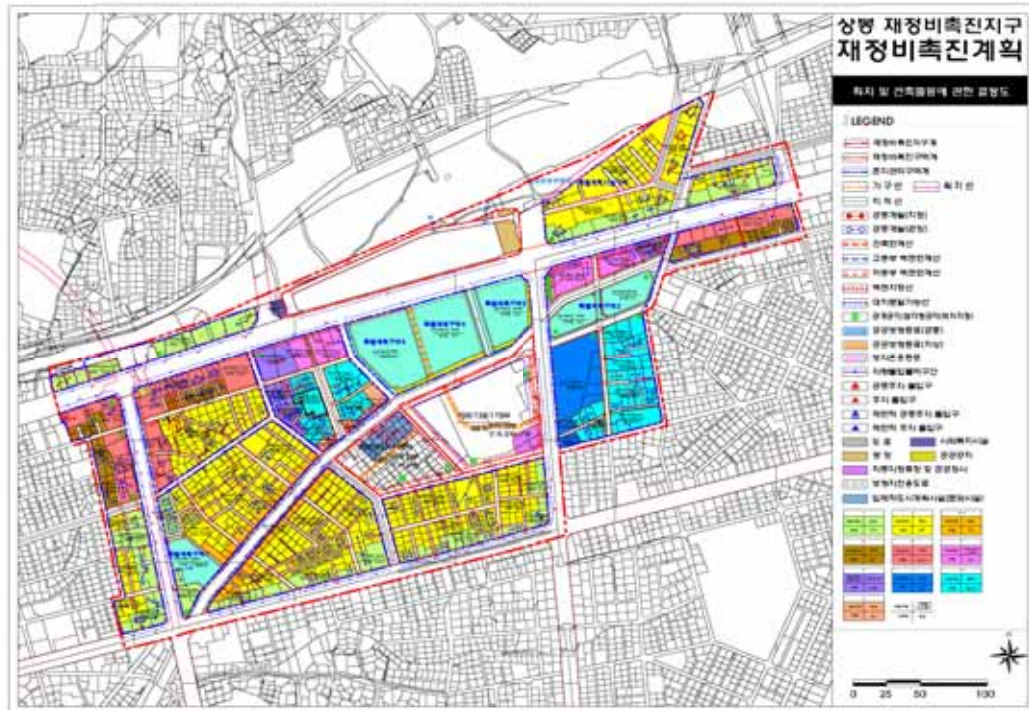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99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된 중랑구 중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II.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중랑구 중화동 일원	510,711.5	-	510,711.5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변경없음)
- 7)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0)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 11)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 12)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 1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없음)
-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15)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18) 기타계획 (변경없음)
- 19)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없음)
- 20)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 21) 사업시행지침 (변경없음)
- 22) 기타사항 (변경없음)
- 23)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변경없음)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기정				변경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구분		계획내용	
간선변	동일로변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70m 이하		간선변	동일로변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70m 이하	
	봉화산로변	•기준높이 4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봉화산로변	•기준높이 4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이면부주1)	증량역로변 동일로129길변	•기준높이 30m 이하 •최고높이 50m 이하		이면부주1)	증량역로변 동일로129길변	•기준높이 30m 이하 •최고높이 50m 이하	
	10m이상 도로변	•최고높이 25m 이하			10m이상 도로변	•최고높이 25m 이하	
	10m미만 도로변	•최고높이 20m 이하			10m미만 도로변	•최고높이 20m 이하	
특별계획 (가능)구역	1,2구역	•기준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특별계획 (가능)구역	1,2구역	•기준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중화동 306-19, 306-38, 306-48주2)		•최고높이 56m 이하		중화동 306-19, 306-38, 306-48주2)		•최고높이 56m 이하	
주1) 이면부는 사선제한 동시 적용 주2)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돌이상의 대지간 공동개발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주1) 이면부는 사선제한 동시 적용 주2)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최고높이 계획기준 완화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돌이상의 대지간 공동개발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음 (유효기간은 용적률 완회기간('19.03.28~ '22.03.28 3년 한시 적용)과 동일하게 적용)			

- 높이 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마) 공공기여 계획 (변경없음)

24)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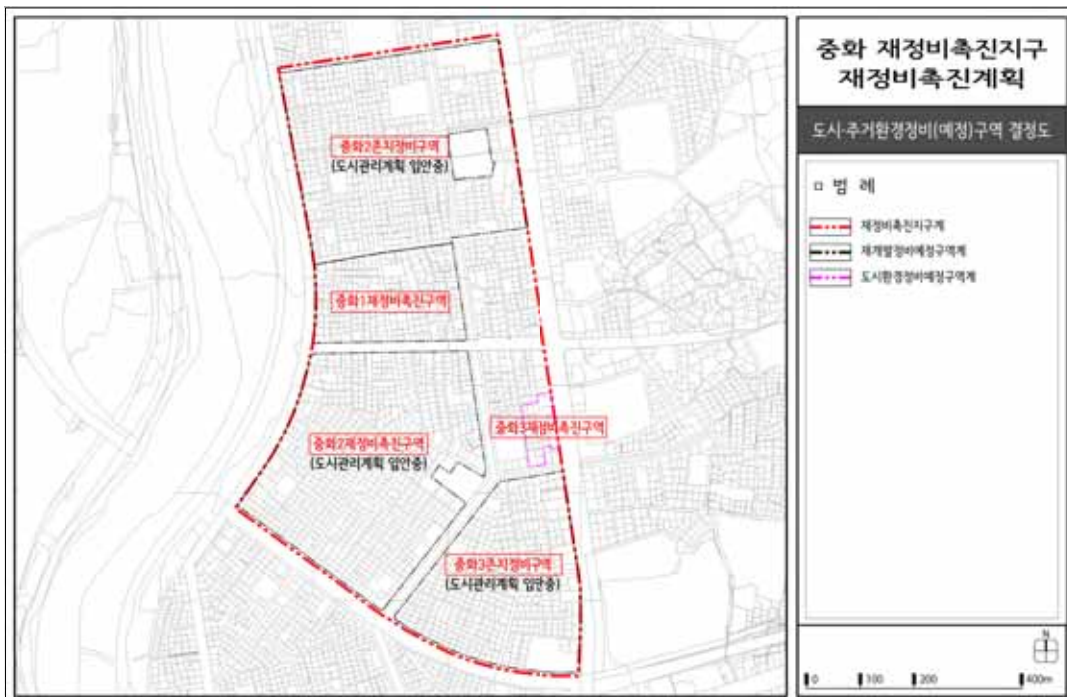
Ⅳ.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 도서로 같음)

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중랑구 도시계획과(☎02-2094-21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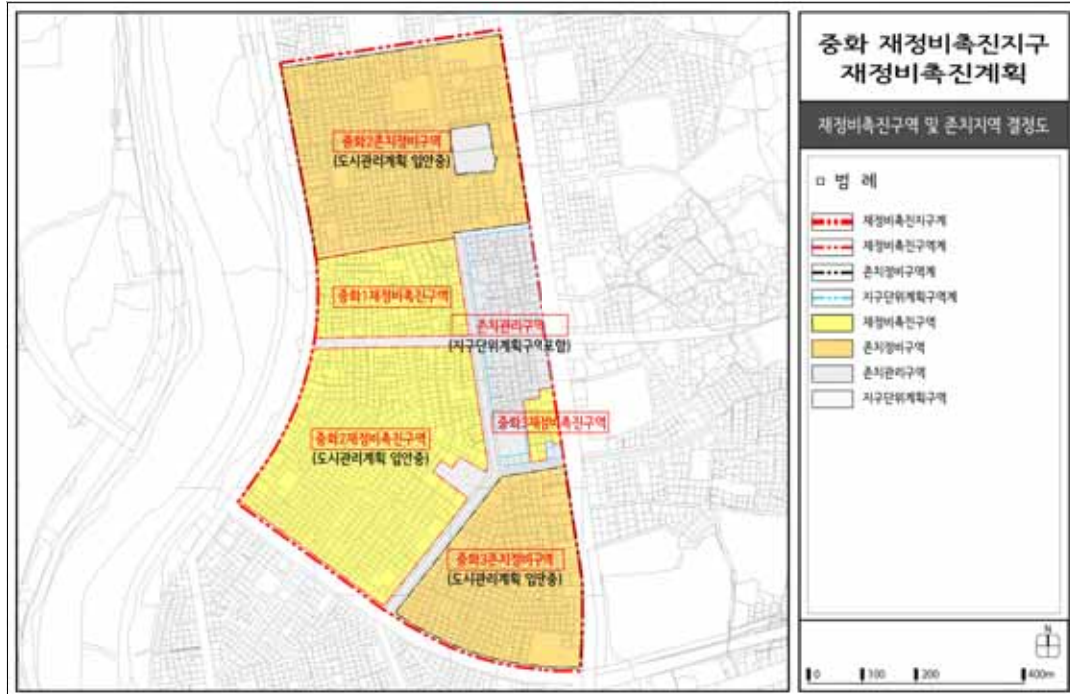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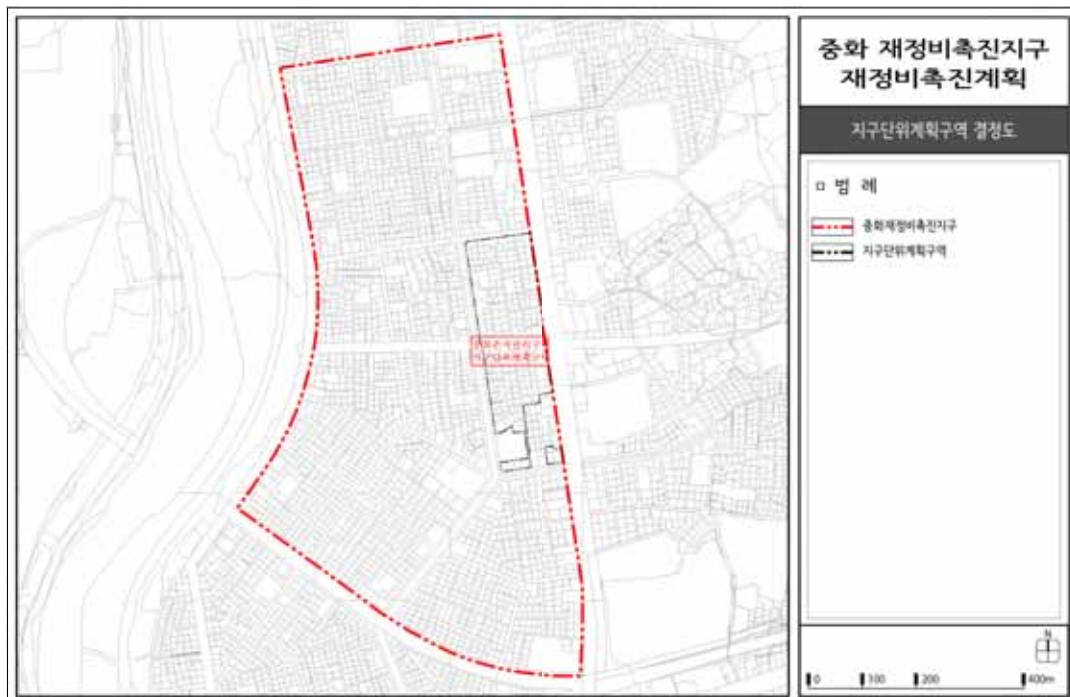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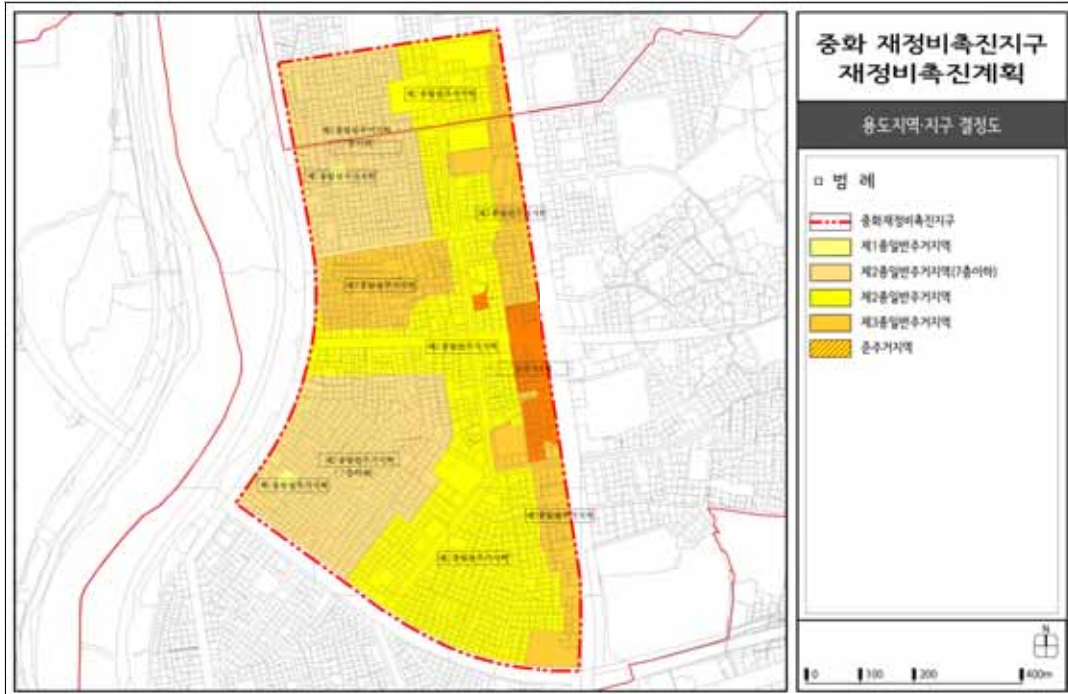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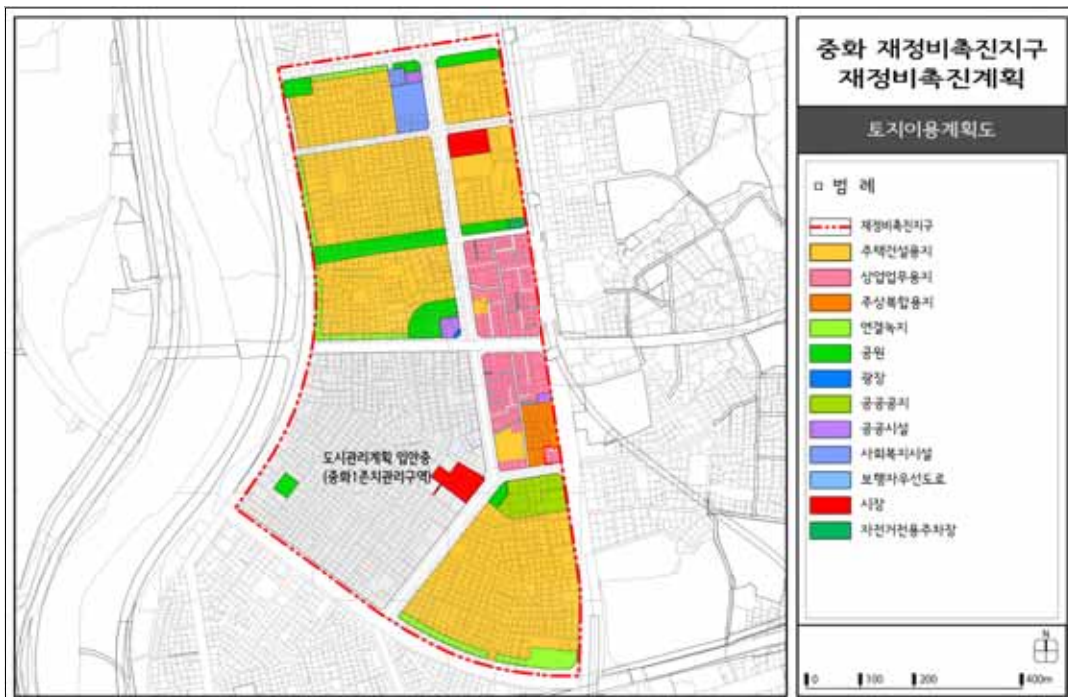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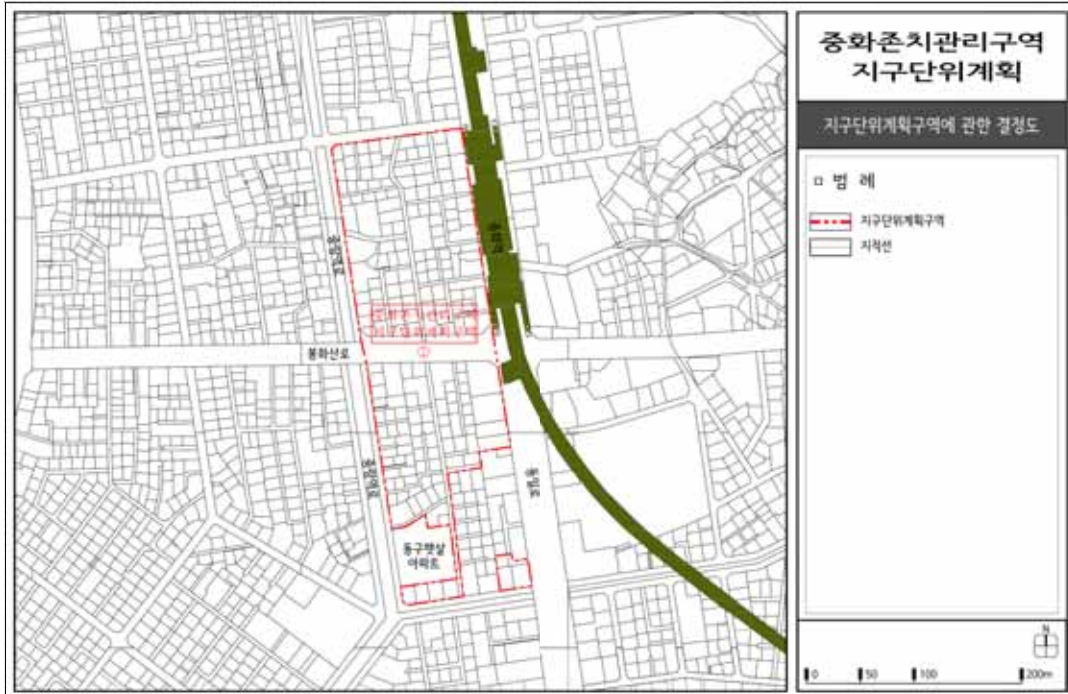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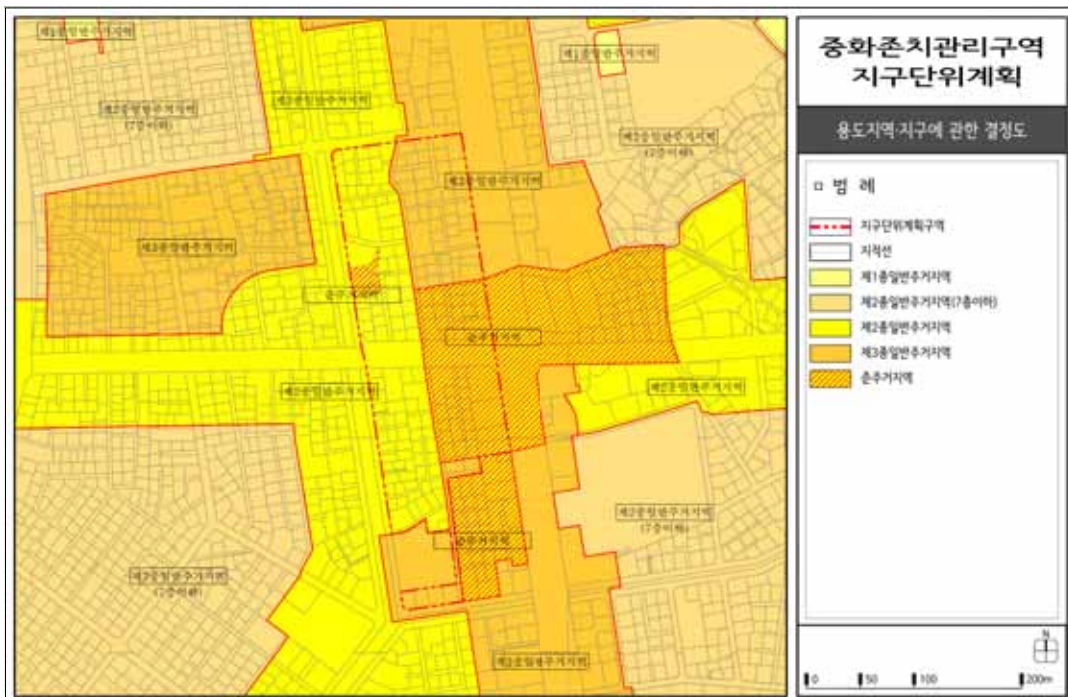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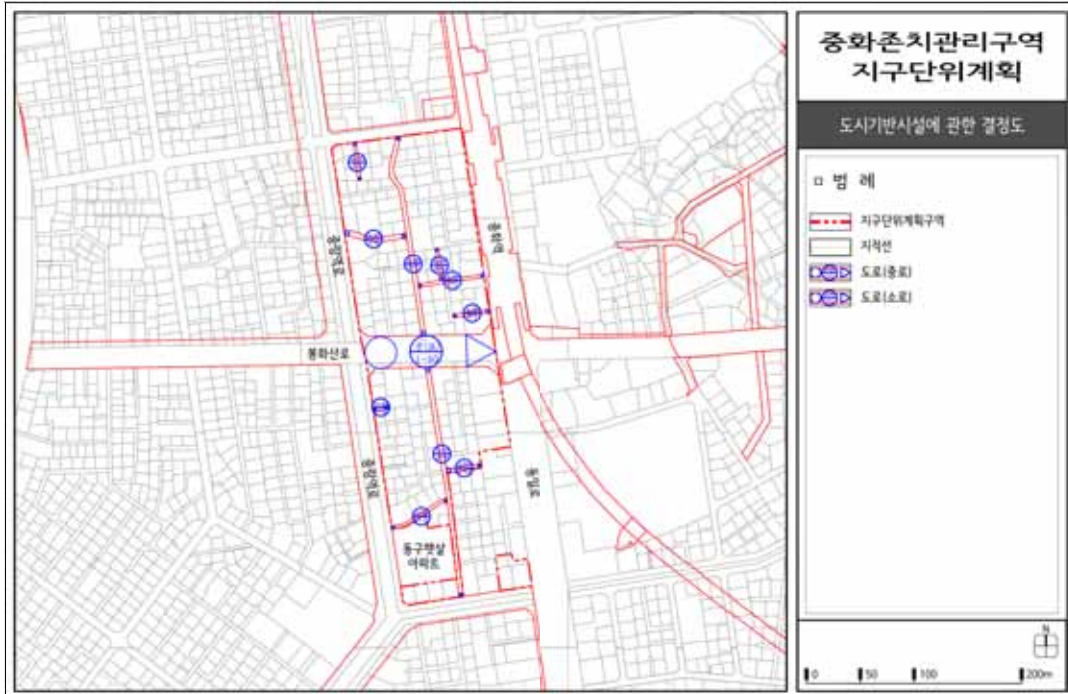
○ 중화촌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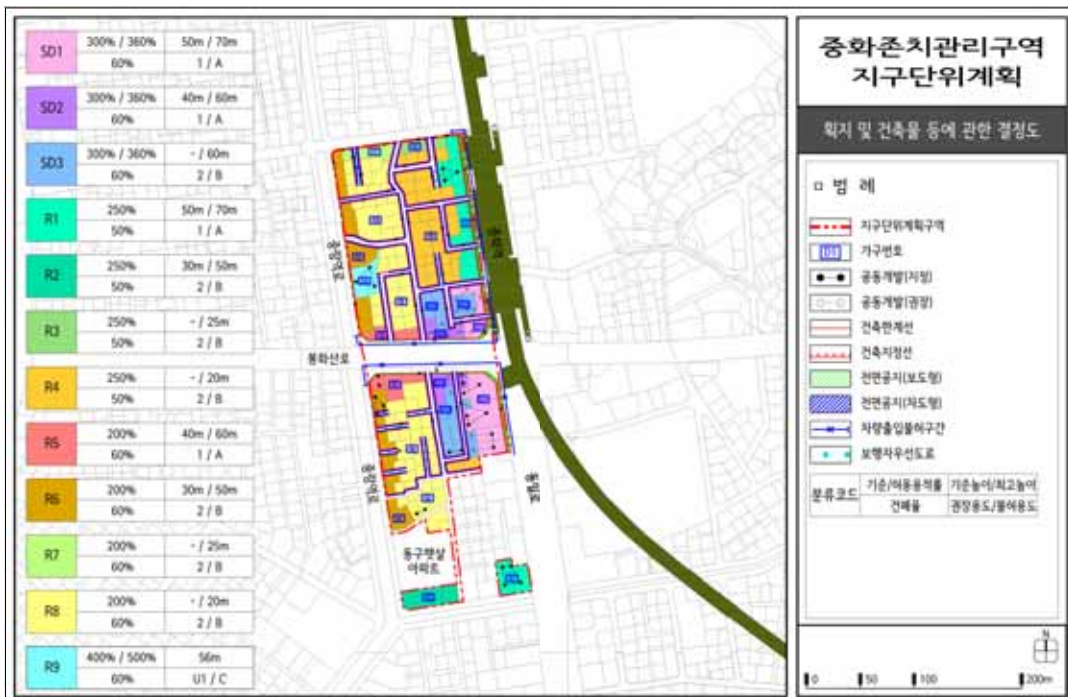
○ 중화촌치관리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중화촌치관리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중화촌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01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㉔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변경 결정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134,212	서고시 제1997-136호 (1997.5.6)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212.0	-	134,212.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주1)	125,406.0	감) 2,227.1	123,178.9	91.8	
	준주거지역	8,806.0	증) 2,227.1	11,033.1	8.2	

주1) 특별계획구역 가능지가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공공기여 포함)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구로구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227.1	•역세권 중심의 복합용도(도시형 주거, 공공임대주택, 상업 등) 도입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4	2,369	19,922	7	733	7,709	17	1,636	12,213
중로	6	803	10,671	2	240	3,765	4	563	6,906
소로	18	1,566	9,251	5	493	3,944	13	1,073	5,30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23	기정					국지 도로	67	개봉동 171-18	개봉동 170-54	일반 도로	서고시 2001-31호 (2001.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18-1	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8-1	좌동	도로 선형 조정	특별계획구역 ㉠ 신설 및 구역계 조정으로 인해 도로 선형 조정

2) 철도 : 변경없음

3)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가구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가구	④	개봉동 171-1번지 일대	3,830.0	3,944.4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도로변경에 따른 일부 면적변경
	⑥	개봉동 171-2번지 일대	2,338.0	2,227.1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도로변경에 따른 일부 면적변경

※ 상기 가구 외 변경사항 없음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도면 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④	1	170-1	658	1,137	공동개발 권장	
			170-15	479			
		2	170-45	1,079	1,350	공동개발 권장	
			170-53	271			
		3	170-29	397	741	공동개발 지정	
			170-32	344			
		4	170-17	602	602	단독개발	
			170-54	55.0			
변경	④	1	170-1	658	1,137	공동개발 권장	
			170-15	479			
		2	170-45	1,079	1,410	공동개발 권장	면적 변경
			170-53	331			
		3	170-29	397	741	공동개발 지정	
			170-32	344			
		4	170-17	601.4	656.4	공동개발 권장	170-54 포함 및 면적 변경
			170-54	55.0			
기정	⑥	1	171-2	1,971	2,338	공동개발 지정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71-24, 171-53, 171-54 포함)
			416-141	103			
			416-186	264			
변경	⑥	1	171-2	1,859.1	2,227.1	특별계획구역 (171-24 포함)	171-2 중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416-141	103			
			416-186	264			
			416-224	1			

※ 상기 가구 외 변경사항 없음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가구	④	• 가구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 ㉠ 지정 및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일부 면적 변경	-
	⑥			

다. 최대개발규모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가구면적 변경에 따른 결정도 변경)
☐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가구면적 변경에 따른 결정도 변경)
☐ 지정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결정도 변경)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결정도 변경)

구 분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기 정	변 경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 210% 이하 허용 : 250% 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5조
	준주거지역	기준 : 300% 이하 허용 : 360% 이하 상한 : 400% 이하	-	
		기본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이내(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적용)

☐ 상한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용 도 지 역	용 적 률		비 고
		일 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기준 : 250% 이하 허용 : 450% 이하 상한 : 500% 이하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 시프트 밀도체계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계획지침 적용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 가능 (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높이

- 최고높이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결정도 변경)

적용 대상	높이 계획	비고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팔아파트)	70m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④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가구경계 변경에 따른 높이계획 적용
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	65m	-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	60m	-
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50m	-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40m	-
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63m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1.5D)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개발 시행시 사선제한 적용)
-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계획지침에 따름
-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건축 한계선	• 이면부 보행자 편의	•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3m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건축선 변경
	•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한 전면 공지 확보	• 간선가로변 • 특별계획구역	도로경계선에서 3.0m	-
	• 도로(차도 및 보행공간) 일정 폭원 확보 를 전면공지 확보	•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	도로경계선에서 2.7~3.7m	주1)
건축 지정선	• 개봉역 남측 도로 정연한 상점가 조성	• 개봉역 남측 15m 도로 변	도로경계선에서 1.0m	-
벽면 지정선	• 광장 활성화	• 개봉역광장 인접필지	대지경계선에서 1m, 3m	-

주1)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개봉로24길)는 일정 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2.7~3.7m로 계획함
 차도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 목적	적용 대상	적용 기준	비고
전면 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도로 일정폭원 확보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조성지침 제시 •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 특별계획구역㉠ 동측도로 (개봉로24길)의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 차도 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폭원의 보행공간 조성함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전면공지 일부 변경 대상지 동측도로 (개봉로24길) 조성단면 세부개발계획 참조
공개 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 위치 지정	•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 건축법 상 대상 획지	
공공보행 통로	• 공지와 연계 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 및 공지변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 필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 높이 6m 이상	

나. 교통처리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계 획 내 용	비 고
전체구역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일부 변경

☐ 공동주차출입구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	개봉동 170-35 번지 일대	5,008	-	5,008	
신설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증)2,637.0	2,637.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특별계획 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 구역 ㉠	• 위치 : 개봉동 170-35번지 일대 • 면적 : 5,008.0㎡ - 170-35, 170-36, 170-37, 179-14, 179-24, 179-26, 179-36, 170-34, 179-23, 179-28, 0-94 (11개 필지)	• 개봉역 진입 도로(보도) 확보 및 서민·중산층 장기전세주택 확보
신설	특별계획 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 구역 ㉡	• 위치 :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면적 : 2,637.0㎡ - 171-2, 171-18, 171-24, 416-141, 416-186, 416-276, 416-224(7개필지)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④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도입 • 역세권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면적 : 2,637.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 이상 기부채납 -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가구 및 획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	
용도 계획	권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불허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밀도	기준/허용/상한	• 250% / 350% / 400% • 공공용지 부담률 : 15% 이상	• 용도지역 상향시
최고높이		• 7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 대상지 동측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7m~3.7m(주1)	• 공개공지를 연계하는 가로 건축선 확대
기타사항	차량출입불허구간	• 가각부 지정	
	자전거편의시설	•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의시설(보관소 등) 개방	
	생태면적률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이상 확보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공개공지	• 개봉역 주변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개공지 조성	• 개봉역 접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 대상지 동측도로(개봉로24길)의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전면공지로 조성하고, • 차도 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함	• 대상지 동측도로 (개봉로24길) 조성단면 세부개발계획 참조
	장애인 주차장	•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상부에 장애인 주차 2면 이상 설치	
운영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법적절차에 의거 조정 가능	

※ 상기 지침 이외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부문별 계획내용을 준수함

주1) 대상지 동측 도로(개봉로24길)는 일정 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2.7~3.7m로 계획함

차도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 소공원을 공개공지로 전환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공공성 확보
- ☐ 보행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개공지 연계가로의 건축선 확대 조정 (2m▷3m)
- ☐ 이면가로의 가로연속성을 위해 건축선 축소 (3m▷2m)
- ☐ 대상지 동측도로 일정 폭원확보를 위한 건축선 조정 (2.7m~3.7m)
- ☐ 대상지 동측도로(개봉로24길)의 일정 폭원 확보를 위해 전면공지 조성(세부개발계획 참조)

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개봉동 170-33 번지 일대	4,584	-	4,584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개봉동 171-1 번지 일대	3,452	-	3,452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개봉동 208-3 번지 일대	3,983.7	-	3,983.7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2,635.0	감) 2,635.0	-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개봉동 181-1 번지 일대	2,763	-	2,763	

※ 특별계획구역가능지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 위치 :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 면적 : 4,584㎡ - 170-23, 170-25, 170-33, 170-56, 170-57, 178-13, 178-19, 179-17 (8개 필지)	• 역전길 도로 확폭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상업, 문화 등 복합용도의 전략적 도입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 위치 : 개봉동 171-1 번지 일대 • 면적 : 3,452㎡ - 171-1, 171-4, 171-6, 171-7, 171-10, 171-12, 171-13, 171-14, 171-15, 173-1, 173-3, 174-7, 416-183, 417-1, 417-6 (15개 필지)	• 역전길 도로 확폭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광장과 연계한 휴게공간 조성 •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 위치 : 개봉동 208-3 번지 일대 • 면적 : 3,983.7㎡ - 207-1, 208-3, 208-4, 208-5, 353-34, 353-35, 416-144 (7개 필지)	• 역사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 운동시설 유도 • 부족한 기반시설(주차장) 확보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 위치 :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면적 : 2,635.0㎡ - 170-53, 170-54, 171-2, 171-24, 416-141, 416-186 (6개 필지)	• 특별계획구역 ㉠ 지정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폐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 위치 : 개봉동 181-1 번지 일대 • 면적 : 2,763㎡ - 181-1, 181-5, 181-6, 181-7, 181-15, 416-99 (6개 필지)	• 역사권 활성화를 위해 광장 규모 확대 • 개봉역과 연계한 상업용도 계획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계획지침 : 폐지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인센티브 운영계획

가.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④ 특별계획구역㉔ 세부개발계획 결정 : 신설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㉔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㉔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증) 2,637.0	2,637.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 정 내 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 구역 ㉔	개봉역 특별계획 구역 ㉔	• 위치 :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 면적 : 2,637.0 - 171-2, 171-18, 171-24, 416-141, 416-186, 416-276, 416-224 (7개 필지)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④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입 • 역세권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④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2,635.0	감) 2,635.0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주1)	2,637.0	감) 2,227.1	409.9	15.5	
		준주거지역	-	증) 2,227.1	2,227.1	84.5	

주1) 특별계획구역 가능지가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공공기여 포함)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함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23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67	개봉동 171-18	개봉동 170-54	일반 도로	서고시 2001-31호 (2001.2.7)	선형 변경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소로 3-18-1)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조성하여 공공기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18-1	좌동	도로 선형 조정	특별계획구역 © 신설 및 구역계 조정으로 인해 도로 선형 조정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특별계획구역©	가 구	1	개봉동 171-2 일대	2,227.1	

☐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설	1	171-2	1,859.1	특별계획구역 (171-24 포함)	171-2 중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416-141	103		
		416-186	264		
		416-224	1		

☐ 결정사유서 : 특별계획구역 내 규모있는 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하나의 획지로 결정

5.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권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지정 용도	-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 자재 제외)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2층 :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좌등	

☐ 결정사유서 : 향후 계획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권장용도를 지정용도로 변경 관리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1)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준주거지역	60% 이하	좌등

☐ 결정사유서 :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 적용

2) 용적률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250% 이하	좌등	
허용용적률	350% 이하	좌등	
상한용적률	400% 이하	좌등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 가능 (서고시 제 2019-313호, 2019.09.19.)			

- ※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산정함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이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적용)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계획지침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 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계수(a)값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개방형구조	1.0	좌동
	건축물용도 (지정)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면적) × a	해당층 연면적 40% 이상 준수시	0.4	-
유도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a	의무설치면적 제외	0.5	좌동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0.0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필로티구조 : 1 개방형구조 : 1.4	비고	-
	건축물 용도(권장)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면적) × a	건축면적 20% 이상 준수시 특정층과 구분하여 계수적용 (특정층 : 해당층 연면적 40% 이상 준수시)	0.5	-
	자전거 편의시설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면적) × a		0.5	좌동
	꼭대기층 (특정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당층면적) × a		0.5	-
	옥외광고물 및 간판설치	기준용적률 × a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적용	0.02	좌동

구 분		원 화 기 준	비 고	계수(a)값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a		0.2	좌동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a	서울시 녹화기준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	0.1	좌동
	중수도시설	기준용적률 × a		0.04	-
	빗물이용시설	기준용적률 × a		0.05	좌동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a		0.05	-
	신·재생에너지	기준용적률 × a		0.05	좌동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용적률 × a	1등급 : a = 0.08 2등급 : a = 0.05	비고	좌동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최고높이	70m 이하	좌동	

라.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 대상지 동측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7m~3.7m	좌동	주1)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재료 / 색채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좌동	
	가로환경의 연속성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좌동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 투시된 셔터설치	좌동	
	옥외광고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기준" 을 준수	좌동	
	야간 조명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좌동	

주1) 대상지 동측 도로(개봉로24길)는 일정 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2.7~3.7m로 계획함
 차도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 조성지침 제시 -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 대상지 동측도로(개봉로24길)의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 차도 폭원 (현황) 6.8m~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 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함	-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도록하며, 단차는 최소화하고 가로지장물로 인한 보행불편이 없도록 함 - 건축물 저층부에 개방적 상업시설 계획 시,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입체적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함	대상지 동측도로 (개봉로24길) 조성단면 하단 참조
공개공지	개봉역 주변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개공지 조성	좌동	

□ 결정사유서

-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 위해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공개공지) 조성
- 전면부 보행환경 개선을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보도기능, 일부 차도기능)으로 조성
- 대상지 동측도로(개봉로24길)의 일정 폭원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면공지 조성

위치	구분	C1 - C1'	C2 - C2'	C3 - C3'
	현황			
	조성단면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각부 지정	좌동	
자전거 편의시설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의시설(보관소등) 개방	좌동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상부에 장애인 주차 2면 이상 설치	좌동	

7. 공공시설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공시설계획	- 위치 : 도시계획도로(소로 3-18-1)(면적:409.9㎡/구역면적의 15.54%) - 내용 : 특별계획구역©사업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로 3-18-1)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구 분	면 적 (㎡)	비 율 (%)
특별계획구역 ㉔	2,637.0 ㎡	100.00 %
공공시설 (도로)	409.9 ㎡	15.54 %
획지	2,227.1 ㎡	84.46 %

8.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임대주택계획	· 市 조례 제55조 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설치(서고시 제2019-313호 적용) · 평면 및 건물 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 ·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산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0.28.) 심의결과에 따라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결정한 용적률(61.72%) 이상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 설치계획 내용

대지면적 : 2,227.1㎡ / 지상층연면적 : 11,122.77㎡ / 용적률 : 499.43%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1,374.52㎡ 이상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61.72% 이상

6개 타입 21세대		
구분	유형	세대수
임대주택	39	8
	44	7
	59A	1
	59B	1
	59C	2
	59D	2
합계		21



[기준층 평면도]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 수는 향후 건축계획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市 관련부서(공공주택과)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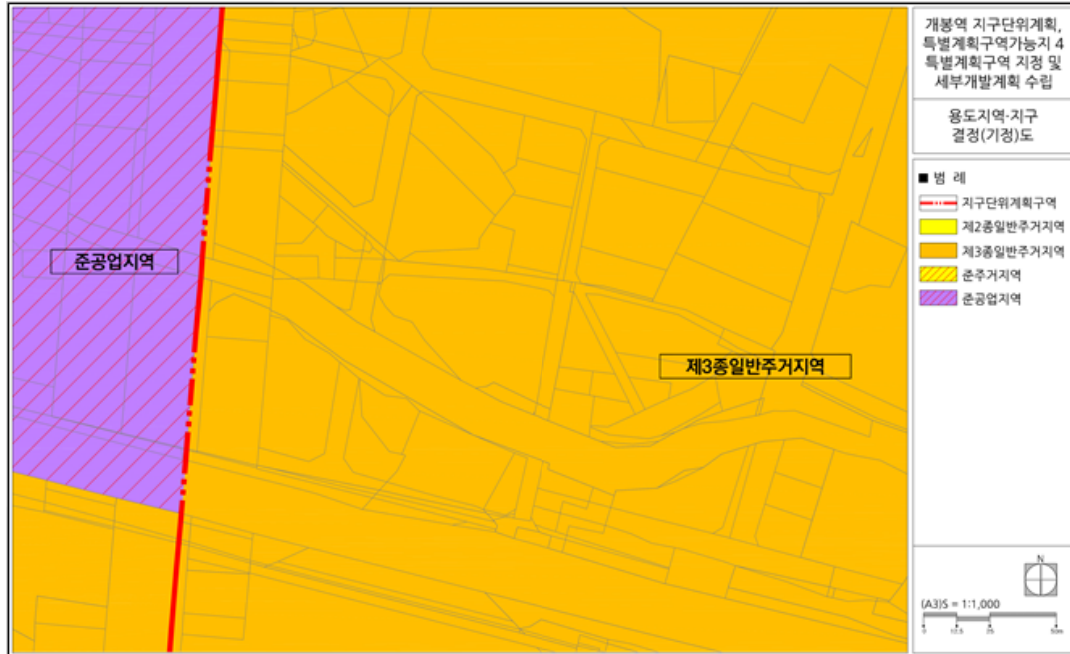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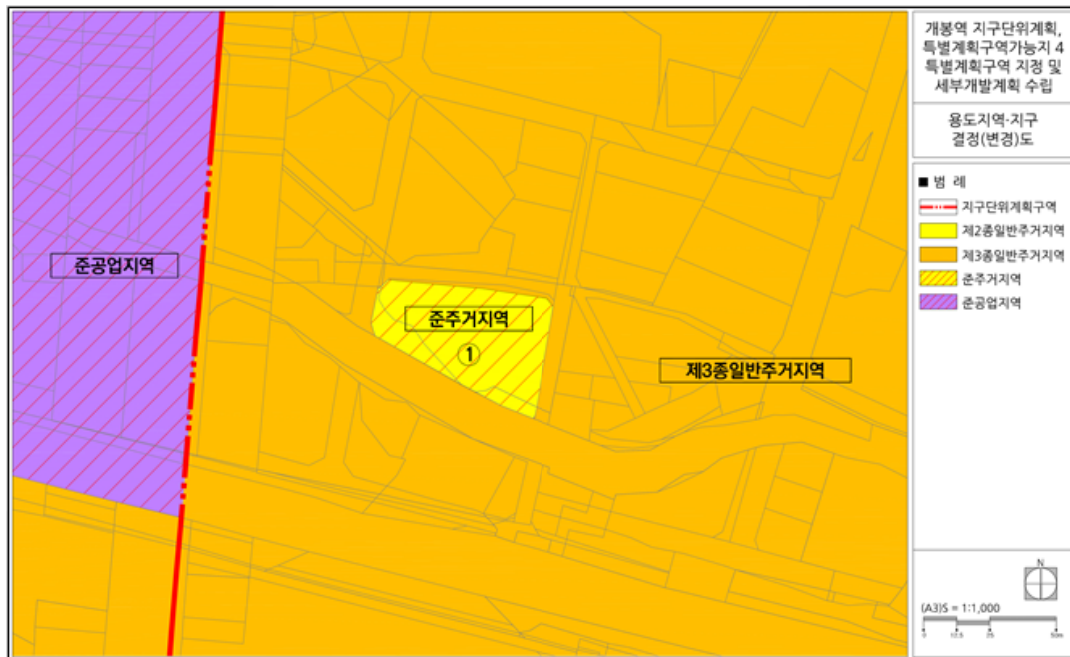
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7)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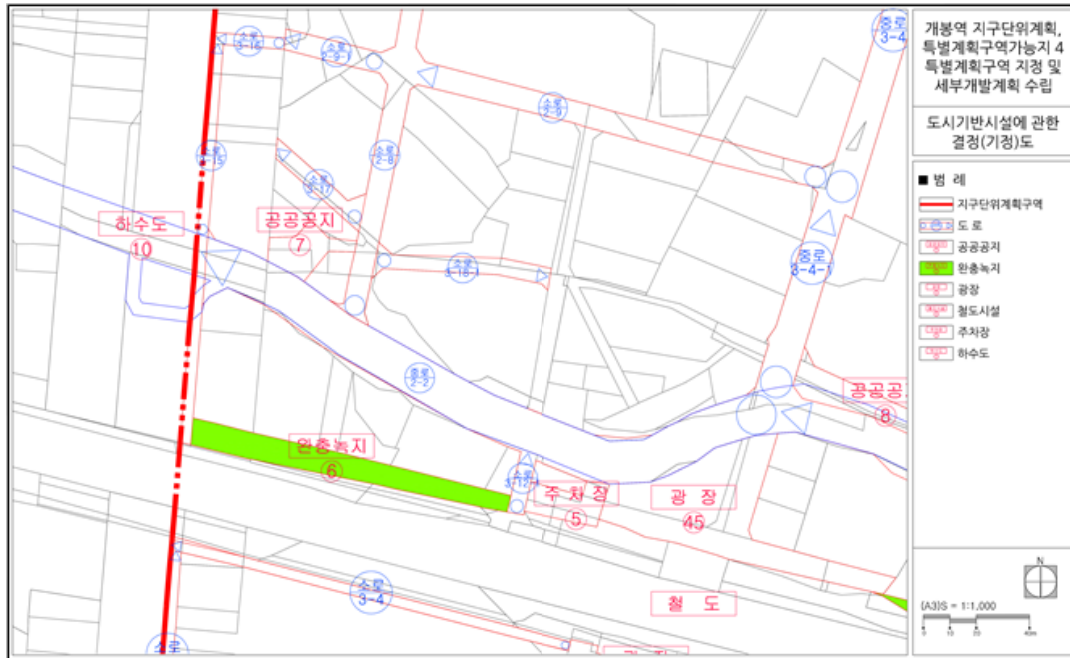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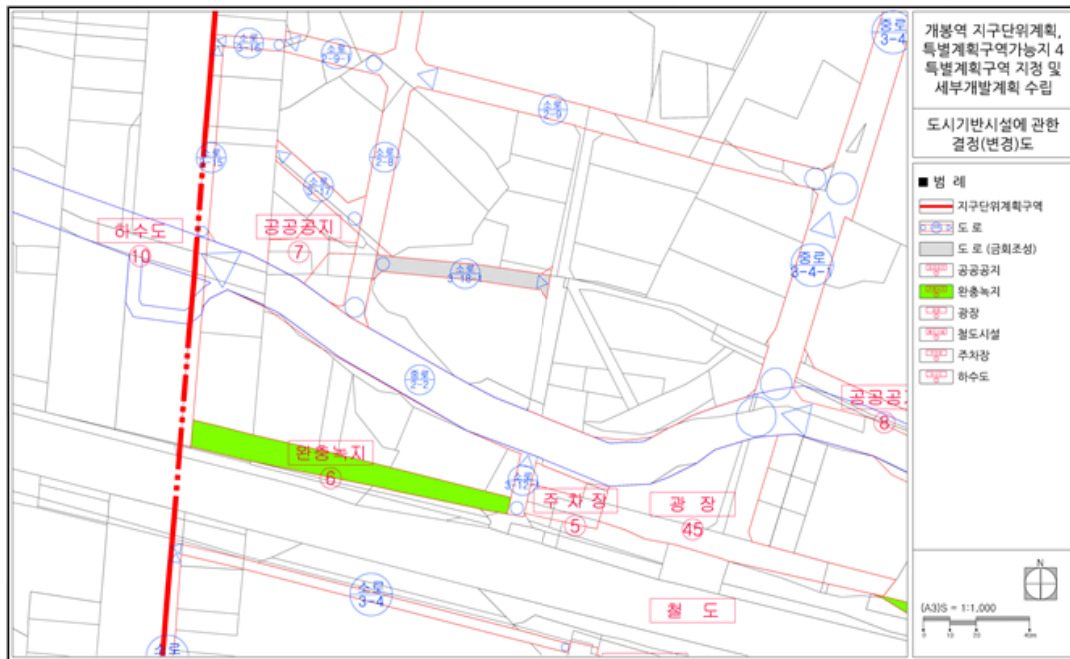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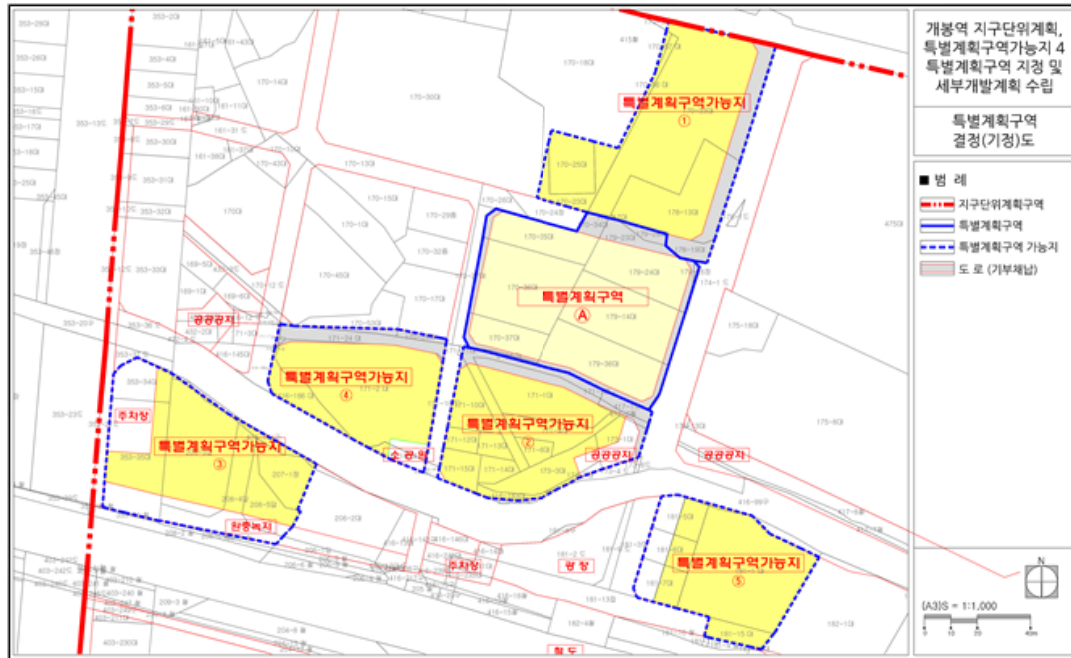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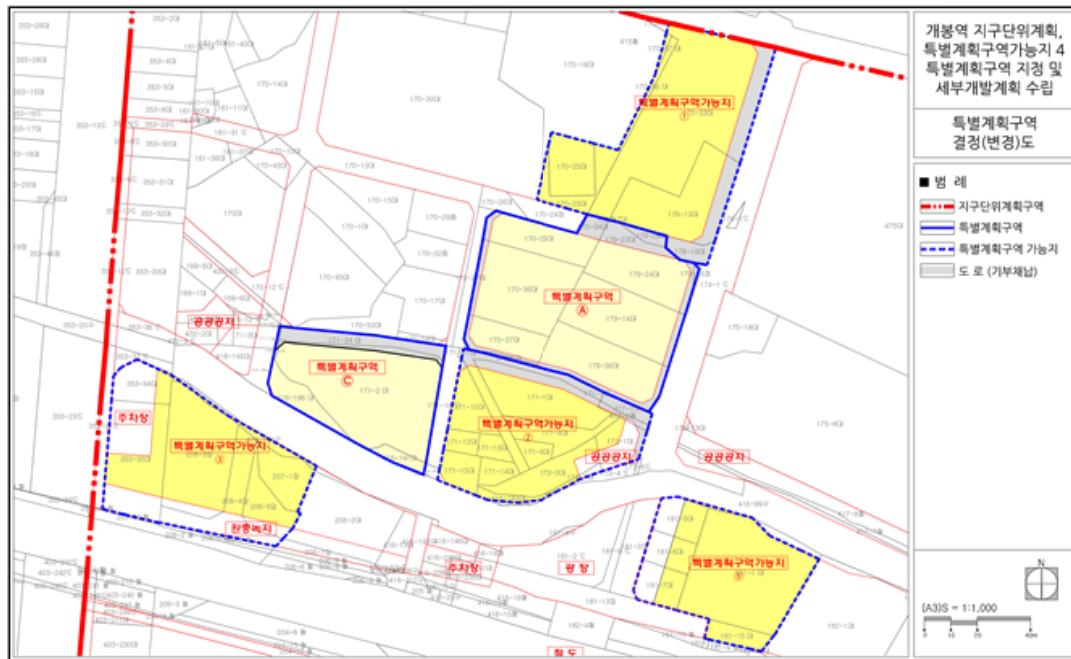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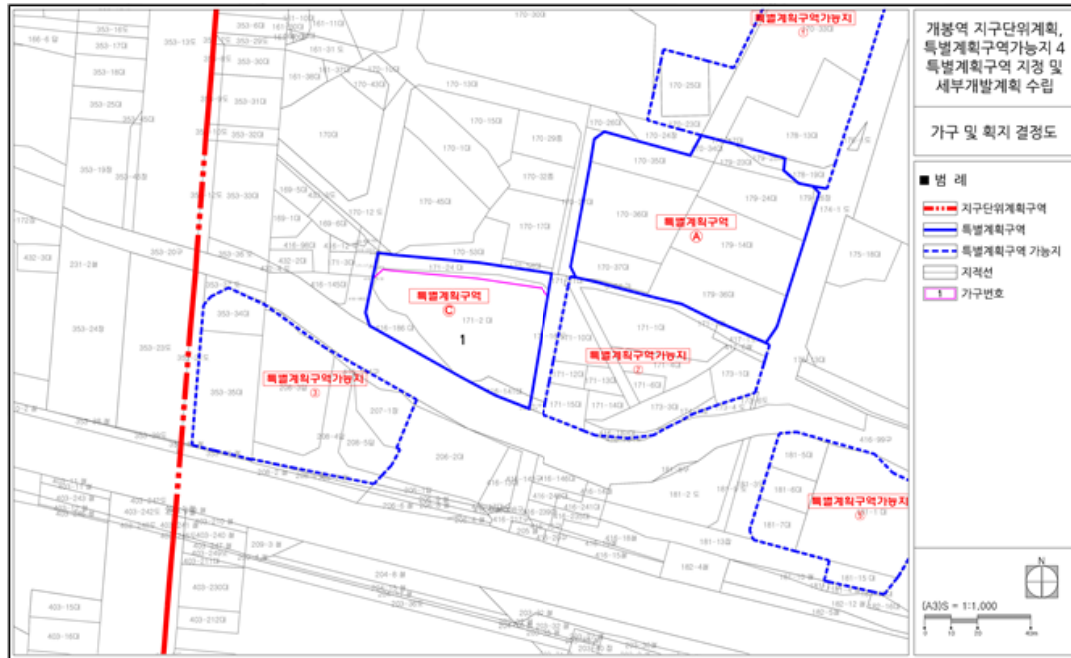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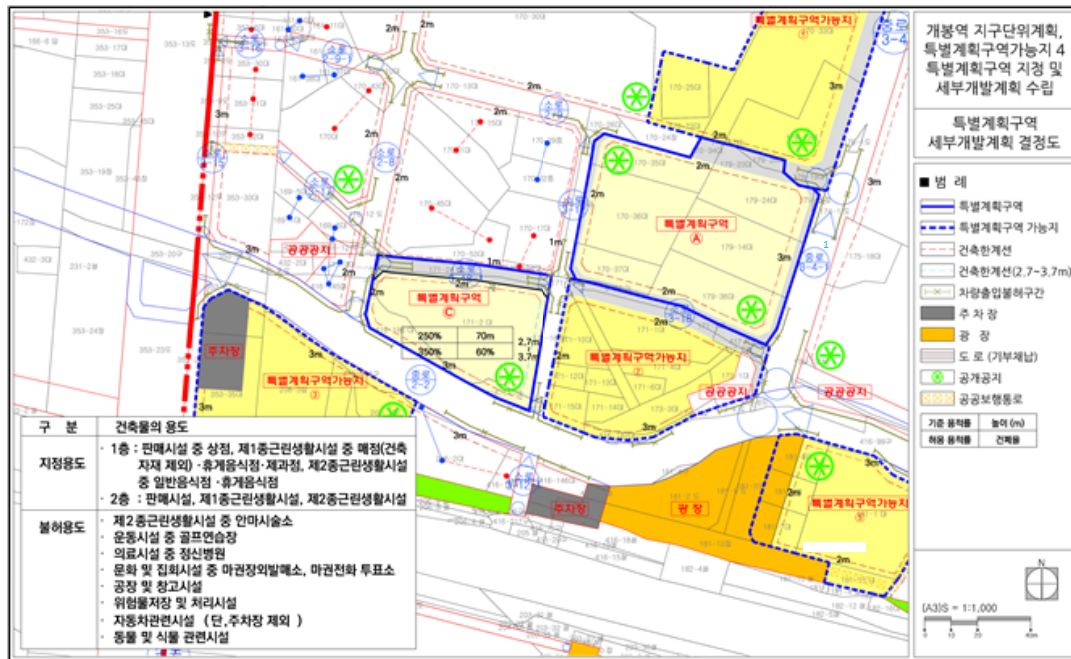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0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해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방배2동 제1경로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7길 17	서초구청장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방배3동 제2경로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17-4	서초구청장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03호

문정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0호(2008.12.26.)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2호(2011.6.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1호(2012.10.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6호(2013.8.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7호(2013.11.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4호(2013.12.2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4호(2014.3.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7호(2014.3.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8호(2014.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2호(2014.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5호(2014.9.2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9호(2015.6.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9호(2015.10.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7호(2015.12.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17호(2016.12.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0호(2017.1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8호(2018.09.0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77호(2019.12.26)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9호(20.11.12)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문정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년 06월 28일 ~ 2022년 06월 30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2
- 송파구청 혁신도시계획과 ☎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1

II.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9m²

4. 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5.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 2007.06.28.~2022.06.30. - 1공구 : 2007.06.28.~2017.05.18. - 2공구 : 2007.06.28.~2020.12.31. - 3공구 : 2007.06.28.~2022.06.30.	· 2007.06.28.~2022.06.30. - 1공구 : 2007.06.28.~2017.05.18. - 2공구 : 2007.06.28.~2021.12.31. - 3공구 : 2007.06.28.~2022.06.30.	2공구 증)12개월

- 변경사유: 문정지구 2공구에 대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한 추가 사업기간 필요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 생략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2
 - 송파구청 혁신도시계획과 ☎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9-88호(2019.09.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성동구공고 제2020-1185호(2020.10.22.)로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완료한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금호동4가 1435-1 ~ 1389-3)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 및 열람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35-1 ~ 1389-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2) 명 칭: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사업(금호동4가 1435-1~1389-3)

다. 사업의규모: 도로확장 폭8m→15.7m, 연장 7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2. 6. 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및 성동구청 토목과(☎2286-5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금호동4가 1435-1 (분할전 1435)	대	67.7	67.7	서*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3가 ***** **아파트 *****	1/2				
					송*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4가 ***** *층	1/2				
2	금호동4가 1434-1 (분할전 1434)	대	60.4	60.4	박*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동 *****호	-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근저당권	
3	금호동4가 1433-1 (분할전 1433)	대	0.3	0.3	김*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	-	-	-	-
4	금호동4가 1391-3	대	37.7	37.7	안*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	-	-	-	-
5	금호동4가 1391-8 (분할전 1391-2)	대	8.1	8.1	안*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	-	-	-	-
6	금호동4가 1391-7 (분할전 1391-1)	대	91.5	91.5	이*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가 ***	근저당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	금호동4가 1393-1 (분할전 1393)	대	55.3	55.3	국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층	-	-	-	-	-
8	금호동4가 1389-3 (분할전 1389-1)	대	50.9	50.9	이*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	서울시 성동구	-	압류	1987.5.16.
								서울시 성동구	-	압류	세일-1798
								서울시 성동구	-	압류	세무2과- 7929
9	금호동3가 1392-1 (분할전 1392)	대	5.5	5.5	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3/7	-	-	-	-
					김*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2/7				
					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2/7				
10	금호동3가 1389-3 (분할전 1389-2)	대	6.9	6.9	정*학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동 ***호	-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근저당권	-
11	금호동3가 1388-1 (분할전 1388)	대	11.2	11.2	재단법인***** **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	-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근저당권	-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	금호동3가 1387-11 (분할전 1387-7)	대	4.2	4.2	김*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동***호	-	-	-	-	-
13	금호동3가 1387-12 (분할전 1387-8)	대	3.2	3.2	조*천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동***호	-	-	-	-	-
14	금호동3가 1387-13 (분할전 1387-9)	대	2.1	2.1	이*기	서울특별시 **로 **길**, ***동***호	-	-	-	-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편입지번)
					성 명	주 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금호동4가 1435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36.7	서*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1/2				금호동4가 1435-1
		건물(1층)		16.8							
		건물(2층)		26.9							
		건물(3층)		26.9	송*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4가 **** *층	1/2				
		건물(4층)		26.9							
		건물(옥탑)		5.9							
2	금호동4가 1434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15.0	박*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등 *****호	1/2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근저당권	금호동4가 1434-1
		건물(1층)		14.7							
		건물(2층)		19.0							
		건물(3층)		19.0	전*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등 *****호	1/2				
		건물(4층)		19.0							
		기타(지층통로)		0.9							
3	금호동4가 1391-2외2필 지	건물(1층)	세멘블럭조	54.1	안*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				금호동4가 1391-8외 2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편입지번)
					성 명	주 소	소유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금호동4가 1391-1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연와조	79.5	이*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아파트 *****	-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가 ***	근저당권	금호동4가 1391-7
		건물(1층)		79.5							
		건물(2층)		79.5							
		건물(3층)		79.5							
		건물(옥탑)		25.7							
5	금호동4가 1393	건물(지하)	철근 콘크리트	19	국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층(**동)	-	-	-		금호동4가 1393-1
		건물(1층)		5.6							
		건물(2층)		18.0							
		건물(3층)		18.0							
		건물(4층)		18.0							
6	금호동4가 1389-1외2필 지	건물(1층)	세멘벽돌조	69.1	이*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 ****	-	-	-		금호동4가 1389-3

영업권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금호동4가 1435	지상 2층	맥주집	1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정*	
2	금호동4가 1435	지상 1층	좋은이름, 좋은카페	1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변*섭	
3	금호동4가 1435	지상 1층	커즈펫	1식	소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이*훈	
4	금호동4가 1435	지하 1층	진 색소폰 동호회	1식	음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김*진	
5	금호동4가 1434	지하 1층	먼치스	1식	음식점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최*근	
6	금호동4가 1434	지상 1층	살롱드 프롬 금호점	1식	일반미용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임*현	
7	금호동4가 1434	지상 3층	해랑디자인	1식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민*기	
8	금호동4가 1391-2 외 2필지	지상 1층	우리공인중개사무소	1식	부동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양*종	
9	금호동4가 1391-2 외 2필지	지상 1층	하리룸	1식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유*석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0	금호동4가 1391-1	지하 1층	스페인 음악무용 아카데미	1식	음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이*세	
11	금호동4가 1391-1	지상 1층	동호문구완구할인랜드	1식	소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박*순	
12	금호동4가 1391-1	지상 1층	금호동 Sool Jip(술집)	1식	음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유*민	
13	금호동4가 1391-1	지상 2층	머리하는날	1식	미용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김*경	
14	금호동4가 1393	지하 1층	파스텔 스튜디오	1식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박*호	
15	금호동4가 1393	지상 1층	민속떡집	1식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최*창	
16	금호동4가 1393	지상 2층	주식회사 정연씨앤디	1식	부동산 매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김*태	
17	금호동4가 1393	지상 4층	조안디자인	1식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조*자	
18	금호동4가 1389-1	지상 1층	메이퀸 침구	1식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서*나	

연번	소재지 지 번	세부 구분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9	금호동4가 1389-1	지상 1층	브랜드 할인 매장	1식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박*희	
20	금호동4가 1389-1	지상 1층	에소	1식	소매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	방*영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08호

동명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79호(1982.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강동구 고시 제 2005-41호(2005.6.30.)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강동구 고덕동 229번지 일대 동명근린 공원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동명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상부복구와 순환형 산책로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숲에서 즐기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29번지 일대

3. 면 적: 95,753.4㎡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5) 및 강동구 푸른도시과
(☎02-3425-64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동구 고덕2동 229번지 외 1필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9,599.90	16,196.70	1	92.00	92.00	200	95,753.40	23,210.99	5	280.76	424.00	132	시설면적 증 7,014.29㎡
기 본 시 설	소계	2,717.30	2,717.30	-	-	-	-	9,589.98	9,589.98	-	-	-	-	증 6,872.68㎡
	도로	2,379.50	2,379.50	-	-	-	-	8,651.96	8,651.96	-	-	-	-	증 6,272.46㎡
	광장	-	-	-	-	-	-	938.02	938.02	-	-	-	-	신설 938.02㎡
	주차장	337.80	337.80	-	-	-	-	-	-	-	-	-	-	감 337.80㎡
	계단	(78.70)	(78.70)	-	-	-	-	-	-	-	-	-	-	-
조경시설		(82.5)	(82.5)	-	-	-	9	-	-	-	-	-	14	증 5기
휴양시설		499.60	499.60	-	-	-	55	559.30	559.30	-	-	-	64	증 59.70㎡
유흥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12,623.80	12,623.80	-	-	-	123	9,496.46	9,496.46	-	-	-	21	감 3,127.34㎡
교양시설		-	-	-	-	-	-	2,887.93	2,887.93	2	140.61	283.85	11	증 2,887.93㎡
편익시설		(6.00)	(6.00)	-	-	-	-	250.93	250.93	-	-	-	6	증 250.93㎡
관리시설		356.00	356.00	1	92.00	92.00	13	426.39	426.39	3	140.15	140.15	16	증 70.39㎡
녹지 및 기타		83,403.20	-	-	-	-	-	72,542.41	-	-	-	-	-	감 10,860.79㎡
시설율 (법정 40%이하)		(16,196.7㎡ ÷ 99,599.9㎡) × 100% = 16.26%						(23,210.99㎡ ÷ 95,753.40㎡) × 100% = 24.24%						
건폐율 (법정 20%이내)		(92.00㎡ ÷ 99,599.9㎡) × 100% = 0.001%						(280.76㎡ ÷ 95,753.40㎡) × 100% = 0.29%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	99,599.90	16,196.70	-	-	92.00	92.00	200	-	-	95,753.40	23,210.99	-	-	280.76	424.00	132	증 7,014.29㎡	
기 반 시 설	소 계	-	-	2,717.30	2,717.30	-	-	-	-	-			9,589.98	9,589.98						증 6,872.68㎡	
	도 로	-	전지역	2,379.50	2,379.50	-	-	-	-	-	-	전지역	8,651.96	8,651.96	-	-	-	-	-	증 6,272.46㎡	
	광장	-	-	-	-	-	-	-	-	-	가	-	938.02	938.02	-	-	-	-	-	증 938.02㎡	
		-	-	-	-	-	-	-	-	-	가-1	교덕2동 229번지	(570.37)	(570.37)	-	-	-	-	-	-	
		-	-	-	-	-	-	-	-	-	가-2	교덕2동 215번지	(31.20)	(31.20)	-	-	-	-	-	-	
		-	-	-	-	-	-	-	-	-	가-3	교덕2동 215번지	(74.31)	(74.31)	-	-	-	-	-	-	
		-	-	-	-	-	-	-	-	-	가-4	교덕2동 215번지	(262.14)	(262.14)	-	-	-	-	-	-	
	주차장	가	교덕2동 229번지	337.80	337.80	-	-	-	-	-	-	-	-	-	-	-	-	-	-	감 337.80㎡	
	계단	나	교덕2동 229번지	(78.70)	(78.70)	-	-	-	-	-	-	-	-	-	-	-	-	-	-	-	폐지
		나-1	교덕2동 229번지	(13.90)	(13.90)	-	-	-	-	-	-	-	-	-	-	-	-	-	-	-	-
		나-2	교덕2동 229번지	(15.20)	(15.20)	-	-	-	-	-	-	-	-	-	-	-	-	-	-	-	-
		나-3	교덕2동 229번지	(16.80)	(16.80)	-	-	-	-	-	-	-	-	-	-	-	-	-	-	-	-
		나-4	교덕2동 229번지	(21.60)	(21.60)	-	-	-	-	-	-	-	-	-	-	-	-	-	-	-	-
		나-5	교덕2동 229번지	(11.20)	(11.20)	-	-	-	-	-	-	-	-	-	-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소계	-	-	(82.5)	(82.5)	-	-	-	-	9	-	-	-	-	-	-	-	-	-	14	증 5기
	파고라	①	-	(70.50)	(70.50)	-	-	-	-	-	①	전지역	-	-	-	-	-	-	-	13	-
		①-1	고덕2동229번지	(5.00)	(5.00)	-	-	-	-	1	-	-	-	-	-	-	-	-	-	-	-
	-	①-2	고덕2동229번지	(6.00)	(6.00)	-	-	-	-	1	-	-	-	-	-	-	-	-	-	-	-
	-	①-3	고덕2동229번지	(6.00)	(6.00)	-	-	-	-	1	-	-	-	-	-	-	-	-	-	-	-
	-	①-4	고덕2동229번지	(4.00)	(4.00)	-	-	-	-	1	-	-	-	-	-	-	-	-	-	-	-
	-	①-5	고덕2동215번지	(3.00)	(3.00)	-	-	-	-	1	-	-	-	-	-	-	-	-	-	-	-
	-	①-6	고덕2동229번지	(15.50)	(15.50)	목조	-	-	-	1	-	-	-	-	-	-	-	-	-	-	-
	-	①-7	고덕2동229번지	(15.50)	(15.50)	목조	-	-	-	1	-	-	-	-	-	-	-	-	-	-	-
	-	①-8	고덕2동215번지	(15.50)	(15.50)	목조	-	-	-	1	-	-	-	-	-	-	-	-	-	-	-
	장미 트렐리스	②	고덕2동229번지	(12.00)	(12.00)	-	-	-	-	1	②	고덕2동 229번지	-	-	-	-	-	-	-	1	-
휴 양 시 설 휴 양 시 설	소계	-	-	499.60	499.60	-	-	-	-	55	-	-	559.30	559.30	-	-	-	-	-	64	증 59.70㎡ (증 9기)
	휴게소	다	-	499.60	499.60	-	-	-	-	-	나	-	559.30	559.30	-	-	-	-	-	-	증 59.70㎡
	-	다-1	고덕2동229번지	(83.50)	(83.50)	-	-	-	-	-	나-1	고덕2동229번지	(80.40)	(80.40)	-	-	-	-	-	-	(감3.10㎡)
	-	다-2	고덕2동215번지	(182.10)	(182.10)	-	-	-	-	-	나-2	고덕2동229번지	(194.90)	(194.90)	-	-	-	-	-	-	(증 12.80㎡)
	-	다-3	고덕2동229번지	(142.00)	(142.00)	-	-	-	-	-	나-3	고덕2동229번지	(128.60)	(128.60)	-	-	-	-	-	-	(감 13.40㎡)
	-	다-4	고덕2동215번지	(49.00)	(49.00)	-	-	-	-	-	나-4	고덕2동 215번지	(155.40)	(155.40)	-	-	-	-	-	-	(증 106.40㎡)
	-	다-5	고덕2동215번지	(43.00)	(43.00)	-	-	-	-	-	-	-	-	-	-	-	-	-	-	-	(감 43.00㎡)
	장의자	③	전지역	(120.00)	(120.00)	-	-	-	-	55	-	-	-	-	-	-	-	-	-	-	감 55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앞음벽	④	고덕2동229번지	(15.20)	(15.20)	-	-	-	-	-	-	-	-	-	-	-	-	-	-	(감 1 기)
	휴게스탠드	-	-	-	-	-	-	-	-	③	고덕2동 215번지	-	-	-	L=117m	-	-	6	증 6 기	
	등의자	-	-	-	-	-	-	-	-	④	전지역	-	-	-	-	-	-	45	증 45기	
	평상데크	-	-	-	-	-	-	-	-	⑤	고덕2동 215번지	-	-	-	-	-	-	13	증 13기	
철도시설 여객단	소계	-	-	12,623.80	12,623.80	-	-	-	-	123	-	-	9,496.46	9,496.46	-	-	-	-	21	감 3,127.34㎡ (감 102기)
	배드민턴장	라	-	1,364.80	1,364.80	-	-	-	-	-	다	고덕2동 215번지	352.00	352.00	-	3면	-	-	-	감 1,012.80㎡
	-	라-1	고덕2동215번지	(438.80)	(438.80)	-	-	-	-	-	-	-	-	-	-	-	-	-	-	(감 438.80㎡)
	-	라-2	고덕2동215번지	(680.20)	(680.20)	-	-	-	-	-	-	-	-	-	-	-	-	-	-	(감 680.20㎡)
	-	라-3	고덕2동229번지	(245.80)	(245.80)	-	-	-	-	-	-	-	-	-	-	-	-	-	-	(감 245.80㎡)
	게이트볼장	마	고덕2동229번지	520.00	520.00	-	-	-	-	-	-	-	-	-	-	-	-	-	-	감 520.00㎡
	족구장	바	고덕2동229번지	717.00	717.00	-	-	-	-	-	-	-	-	-	-	-	-	-	-	감 717.00㎡
	축구장	사	고덕2동229번지	8,986.00	8,986.00	-	-	-	-	-	라	고덕2동229번지	8,430.26	8,430.26	-	-	-	-	-	감 555.74㎡
	체력단련장	아	고덕2동215번지	1,036.00	1,036.00	-	-	-	-	-	마	-	114.20	114.20	-	-	-	-	-	감 921.80㎡
	-	-	-	-	-	-	-	-	-	-	마-1	고덕2동229번지	(18.60)	(18.60)	-	-	-	-	-	-
	-	-	-	-	-	-	-	-	-	-	마-2	고덕2동229번지	(18.30)	(18.30)	-	-	-	-	-	-
	-	-	-	-	-	-	-	-	-	-	마-3	고덕2동229번지	(18.30)	(18.30)	-	-	-	-	-	-
	-	-	-	-	-	-	-	-	-	-	마-4	고덕2동215번지	(59.00)	(59.00)	-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목적구장	-	-	-	-	-	-	-	-	-	바	고덕2동229번지	600.00	600.00	-	-	-	-	-	증 600.00 ㎡
	평행보	⑤	전지역	(120.00)	(120.00)	-	-	-	-	60	-	-	-	-	-	-	-	-	-	감 60 기
	철 보	⑥	전지역	(126.00)	(126.00)	-	-	-	-	63	-	-	-	-	-	-	-	-	-	감 63 기
	체력단련 시설	-	-	-	-	-	-	-	-	-	⑥	전지역	-	-	-	-	-	-	20	증 20 기
	복합운동 시설	-	-	-	-	-	-	-	-	-	⑦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증 1 기
교 양 시 설	소개	-	-	-	-	-	-	-	-	-			2,887.93	2,887.93			140.61	283.85	11	증 2,887.93㎡
	밤송이 유아숲 체험장	-	-	-	-	-	-	-	-	-	사	고덕2동 215번지	1,538.23	1,538.23	-	-	-	-	-	증 1,538.23㎡
	통나무 스파이럴	-	-	-	-	-	-	-	-	-	⑧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나무놀이집	-	-	-	-	-	-	-	-	-	⑨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블럭놀이함	-	-	-	-	-	-	-	-	-	⑩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나이테놀이	-	-	-	-	-	-	-	-	-	⑪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나무 올라타기	-	-	-	-	-	-	-	-	-	⑫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숲속데이블	-	-	-	-	-	-	-	-	-	⑬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경사놀이	-	-	-	-	-	-	-	-	-	-	⑭	고덕2동 215번지	-	-	-	-	-	1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통나무의자	-	-	-	-	-	-	-	-	-	㉔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잔디썰매장	-	-	-	-	-	-	-	-	-	㉔	고덕2동 215번지	-	-	-	-	-	-	1	-
	대피소	-	-	-	-	-	-	-	-	-	1	고덕2동 215번지	66.20	66.20	목조	지상 1층	21.11	21.11	-	증 66.20㎡
	민속문화 체험관	-	-	-	-	-	-	-	-	-	2	고덕2동 215번지	1,283.50	1,283.50	연와조	지상 2층	119.50	262.74	-	증 1,283.50㎡
	야외책장	-	-	-	-	-	-	-	-	-	㉔	고덕2동 215번지	-	-	-	-	-	-	2	증 2 기
편의시설	소계	-	-	(6.00)	(6.00)	-	-	-	-	-	-	-	250.93	250.93	-	-	-	-	6	증 250.93㎡
	주차장	-	-	-	-	-	-	-	-	-	아	고덕2동 229번지	136.53	136.53	-	(4면)	-	-	-	증 136.53㎡
	음수대	㉔	-	(6.00)	(6.00)	-	-	-	-	-	㉔	전지역	-	-	-	-	-	-	3	-
	-	㉔-1	고덕2동229번지	(2.00)	(2.00)	-	-	-	-	-	-	-	-	-	-	-	-	-	-	-
	-	㉔-2	고덕2동229번지	(2.00)	(2.00)	-	-	-	-	-	-	-	-	-	-	-	-	-	-	-
	-	㉔-3	고덕2동215번지	(2.00)	(2.00)	-	-	-	-	-	-	-	-	-	-	-	-	-	-	-
	이동식 화장실	-	-	-	-	-	-	-	-	-	자	-	114.40	114.40	-	-	-	-	3	증 114.40㎡
	-	-	-	-	-	-	-	-	-	-	자-1	고덕2동215번지	(29.50)	(29.50)	-	-	-	-	1	(증 29.50㎡)
	-	-	-	-	-	-	-	-	-	-	자-2	고덕2동215번지	(24.70)	(24.70)	-	-	-	-	1	(증 24.70㎡)
	-	-	-	-	-	-	-	-	-	-	자-3	고덕2동215번지	(60.20)	(60.20)	-	-	-	-	1	(증 60.2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소계	-	-	356.00	356.00	-	-	92.00	92.00	13	-	-	426.39	426.39	-	-	140.15	140.15	16	증 70.39㎡
	관리사무소, 화장실	1	고덕2동229번지	356.00	356.00	조적조	지상 1층	92.00	92.00	-	3	고덕2동229번지	411.70	411.70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25.46	125.46	-	증 55.77㎡
	ghk환기구 (DA)	-	-	-	-	-	-	-	-	-	4	고덕2동229번지	13.63	13.63	-	-	13.63	13.63	-	증 13.63㎡
	캐노피	-	-	-	-	-	-	-	-	-	5	고덕2동229번지	1.06	1.06	-	-	1.06	1.06	-	증 1.06㎡
	장식벽	㉔	고덕2동229번지	(78.00)	(78.00)	-	-	-	-	-	-	-	-	-	-	-	-	-	-	폐지
	안내판	㉕	전지역	(10.00)	(10.00)	-	-	-	-	5	㉕	전지역	-	-	-	-	-	-	7	증 2 기
	휴지통	㉖	전지역	(5.00)	(5.00)	-	-	-	-	8	㉖	전지역	-	-	-	-	-	-	8	-
	축구장웬스	-	-	-	-	-	-	-	-	-	㉗	고덕2동229번지	-	-	-	-	-	-	1	증 1기
녹 지 및 기 타	소계	-	-	83,403.20	-	-	-	-	-	-	-	-	72,542.41	-	-	-	-	-	-	감 10,860.79㎡
	녹지 및 기타	자	-	83,403.20	-	-	-	-	-	-	-	-	72,542.41	-	-	-	-	-	-	감 10,860.79㎡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	-	-	-	-	-	-	-	차	고덕2동229번지	(7,517.3)	(7,517.3)	-	-	-	-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609.9	2,379.50	-	-	-	-
변경					3,616.2	8,651.96	-	-	-	-
당초		소 계			105.6	574.40	-	-	-	-
변경					719.7	2,246.04	-	-	-	-
당초	소로	3	1	7.5	64.4	483.00	진입로	공원경계	축구장	
변경		3	1	5.0	66.7	333.50	진입로	공원경계	축구장	
당초		3	2	3.0	9.0	27.00	연결로	소 3-1	휴게소	
변경		3	2	2.0	16.4	32.80	부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당초		3	3	2.0	19.5	39.00	연결로	휴게소	배구장	
변경		3	3	2.0	16.88	33.76	부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당초		3	4	2.0	12.7	25.40	연결로	계단	배구장	
변경		3	4	5.0	9.0	45.00	부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신설		3	5	2.3	11.7	26.98	부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신설		3	6	1.5	8.0	12.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7	
신설		3	7	2.0	5.0	1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1	
신설		3	8	1.5	4.0	6.00	부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1	
신설		3	9	3.0	582.0	1,746.00	연결로	산책로 26	공원경계	
당초		소 계			1,504.3	1,805.10	-	-	-	-
변경					2,896.4	6,405.92	-	-	-	-
당초	산책로	-	1	1.2	322.3	386.80	산책로	소 3-1	산책로 4-2	
변경		-	1	1.5	334.8	502.23	순환로	축구장	소로 3-1	
당초		-	2	1.2	132.0	158.40	산책로	공원경계	소 3-1	
변경		-	2	3.0	11.5	34.50	산책로	소로 3-1	다목적구장	
당초		-	3	1.2	72.0	86.40	산책로	공원경계	휴게소	
변경		-	3	3	9.95	29.85	산책로	축구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당초		-	4	1.2	113.0	135.60	산책로	공원경계	배드민턴장	
변경		-	4	1.5	3.0	4.50	산책로	관리사무소, 화장실	산책로 7	
당초		-	5	1.2	38.0	45.60	산책로	배드민턴장	휴게소	
변경		-	5	1.5	3.0	4.50	산책로	관리사무소, 화장실	산책로 7	
당초		-	6	1.2	57.3	68.80	산책로	배드민턴장	산책로 4-5	
변경		-	6	1.5	126.82	190.23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	7	1.2	140.6	168.70	산책로	대양교회	휴게소	
변경		-	7	2.3	17.9	41.17	산책로	축구장	산책로 5	
당초		-	8	1.2	91.4	109.70	산책로	공원경계	휴게소	
변경		-	8	1.5	95.0	142.47	산책로	산책로 7	공원경계	
당초		-	9	1.2	112.7	135.20	산책로	휴게소	체력단련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	9	2.0	62.5	125.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5	
당초		-	10	1.2	102.0	122.40	산책로	산책로 4-11	체력단련장	
변경		-	10	2.0	23.87	47.74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11	
당초		-	11	1.2	87.6	105.10	산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변경		-	11	2.0	102.5	205.00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35	
당초		-	12	1.2	103.0	123.60	산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변경		-	12	2.0	44.0	88.0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당초		-	13	1.2	132.4	158.80	산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변경		-	13	2.0	27.94	55.88	산책로	이동식화장실-2	산책로 35	
신설		-	14	2.0	127.0	254.0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35	
신설		-	15	2.0	44.0	88.0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35	
신설		-	16	2.0	20.0	40.00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4	
신설		-	17	2.0	54.86	109.72	산책로	산책로 35	광장-2	
신설		-	18	2.0	60.72	121.44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35	
신설		-	19	2.0	33.85	67.7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35	
신설		-	20	2.0	21.42	42.84	산책로	산책로 35	민속문화체험관	
신설		-	21	2.0	8.5	17.00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22	
신설		-	22	2.0	180.5	361.00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신설		-	23	2.0	9.0	18.00	산책로	산책로 22	휴게소-4	
신설		-	24	2.0	17.0	34.00	산책로	휴게소-4	산책로 35	
신설		-	25	2.0	27.5	55.00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27	
신설		-	26	2.0	12.0	24.00	산책로	산책로 27	공원경계	
신설		-	27	2.0	117.5	235.00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0	
신설		-	28	2.0	5.5	11.00	산책로	휴게소-4	산책로 35	
신설		-	29	2.0	40.5	81.00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27	
신설		-	30	2.0	33.43	66.86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 35	
신설		-	31	2.0	69.5	139.00	산책로	산책로 22	산책로 35	
신설		-	32	2.0	37.0	74.00	산책로	산책로 22	산책로 35	
신설		-	33	1.5	13.0	19.50	산책로	산책로 35	산책로 34	
신설		-	34	1.5	19.0	28.50	산책로	산책로 35	밤송이유아숲체험장	
신설		-	35	3.0	926.5	2,779.80	순환로	산책로 31	산책로 31	
신설		-	36	2.0	69.0	138.00	산책로	산책로 35	밤송이유아숲체험장	
신설		-	37	1.5	86.3	129.50	산책로	산책로 8	휴게소-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11호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11.0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1호(2017.12.28)로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I.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신정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 면적 : 33,788.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노후주택 및 영세공장이 밀집된 신정 지역은 다년간 미개발지로 남아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기 정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웅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시행방식(변경)

-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0.12.31)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1.06.30)

- 변경사유 : 환지처분계획 및 사업준공 절차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사업 시행방식 : 환지방식(집단환지) (변경없음)

II.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주요 내용

1. 개발계획 (변경)

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①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23,597.9	457	1,129	
공동주택	20,067.0	356	940	
임대주택	3,530.9	101	189	

② 공동주택용지계획

- 총 457호 : 일반분양 356호, 임대주택(행복주택) 101호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총계	23,597.9	-	457	100.0	1,129	-	
	공동주택	20,067.0	-	356	81.2	940	-	일반분양
B1	60~85㎡	-	84	347	72.9	916	200	
	85㎡초과	-	114	9	1.9	24	200	
	임대주택	3,530.9	26/36/41	101	18.8	189	-	공공임대
B2	60㎡이하	-	26/36/41	101	18.8	189	170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3,788.6	100.0	
주거용지	소 계	20,067.0	59.4	
	공동주택용지	20,067.0	59.4	체비지 포함(2,719.1㎡)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8,624.6	25.6	
	도 로	4,323.0	12.8	
	공 원	3,907.1	11.6	
	주차장	208.3	0.6	
	공공공지	186.2	0.6	
기타시설용지	소 계	5,097.0	15.0	
	임대주택용지	3,530.9	10.4	
	문화복합시설용지	1,566.1	4.6	

주1) 공공기여시설용지(도시기반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 13,721.6㎡(40.6%)

주2) 체비지는 감정평가하여 매매각된 사항으로 사업 정산에 따라 변경 가능

3)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지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안)
환지지정용도		· 주거용도 ·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한 용도에 따름
사업 기간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0.12.31)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1.06.30)
사업비	기정	· 10,457백만원
	변경	· 8,996백만원(감 1,461백만원)
환지 규모	기정	· 33,844㎡ (공동주택용지 20,067㎡, 공공기여용지 13,777㎡)
	변경	· 33,788.6㎡ (공동주택용지 20,067㎡, 공공기여용지 13,721.6㎡)
평균 부담률	기정	· 평균 부담률 10.01%(2015년 기준)
	변경	· 평균 부담률 8.24%

- 변경사유 :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환지계획 변경

5)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457	8,996	1,130	1,013	4,289	4,025	1,827	-	737	
조사비	598	274	214	-	-	384	-	-	60	
보상비	1,000	-	-	-	-	1,000	-	-	-	
설계비	615	681	300	315	-	-	-	-	66	
공사비	5,065	4,251	-	329	3,723	1,013	199	-	-	
기타	3,179	3,790	616	369	566	1,628	1,628	-	611	

* 본 사업비는 환지 처분에 따라 정산처리할 예정임

- 변경사유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

6)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항 목	세 항 목	금액(천원)		비고
		기정	변경	
조사비	측량비, 기타조사비	597,986	274,446	
설계비	설계비	615,000	680,563	
보상비	소 계	1,000,000	-	
	토지매입비	-	-	
	지장물보상비	-	-	
	권리보상비	-	-	
	이주대책비	-	-	
	기타 보상비	1,000,000	-	
공사비	소 계	5,065,024	4,250,985	
	재료비	1,967,918	1,638,939	
	노무비	872,260	981,581	
	경비	420,827	672,132	
	일반관리비	201,207	130,992	
	이윤	237,787	258,057	
	기타경비	1,365,025	569,284	이설비, 환경관리비, 감리비 등
기타	소 계	3,179,080	3,789,961	
	제세공과금 (세금, 공과금, 법정부담금)	1,768,274	2,411,280	세부항목별 추정 - 생태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외 7개소
	이자(시행기간자본비용)	-	-	체비지 구매각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부대비용 (일반관리비, 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공사 보험료, 재원조달 금융부대비용, 기타 비용)	338,441	411,289	영향평가비 : 설계비 포함 감리비 : 공사비에 포함 사업타당성분석 : 체비지로 충당 건설공사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름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 규정에 따름
	위탁수수료	1,072,365	967,392	사업비 × 7.0% (현금청산에 대한 위탁수수료 별도 계산)
합 계		10,457,090	8,995,955	

■ 변경사유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

2) 환지계획 (변경)

① 환지계획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사업 기간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0.12.31)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21.06.30)
사업비	기정	· 10,457백만원
	변경	· 8,996백만원(감 1,461백만원)
환지 규모	기정	· 33,844㎡ (공동주택용지 20,067㎡, 공공기여용지 13,777㎡)
	변경	· 33,788.6㎡ (공동주택용지 20,067㎡, 공공기여용지 13,721.6㎡)
평균 부담률	기정	· 평균 부담률 10.01%(2015년 기준)
	변경	· 평균 부담률 8.24%

② 환지계획 변경 후 토지이용 현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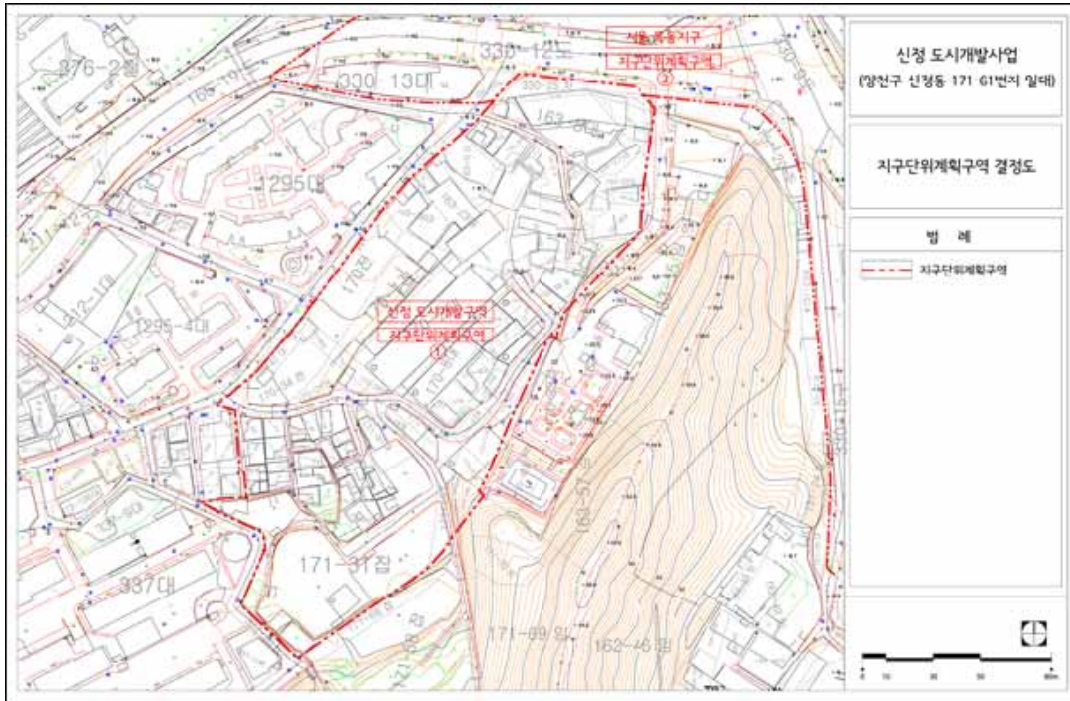
환 지 전					환 지 후					
구분	소유자별		지목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비 고
	기정	변경				당 초	증·감	변경		
집단 환지 토지	사 유 지		대	18,356.0	62	17,051.4	△ 296.5	17,347.9	1	공동주택
			잡	7,584.0	8	3,015.6	▽ 296.5	2,719.1	1	채비지
			전	4,479.0	10					
			임	645.0	6					
			도	28.0	2					
계				31,092.0	88	20,067.0	-	20,067.0	2	
금전 청산 토지	사유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임	1,158.0	6					
			잡	47.0	1					
			도	3.0	(1)					
			대	51.0	(2)					
			도	465	2					
			공	91.0	(2)					
			잡	111.6	1					
			차	183.5	(1)					
	계			2,110.1	10(6)					
합 계				33,202.1	98	20,067.0	-	20,067.0	2	
도시 기반 토지	양천구					4,374.0	▽ 51.0	4,323.0	3	도로
						3,968.0	▽ 60.9	3,907.1	2	공원
						210.0	▽ 1.7	208.3	1	주차장
						195.0	▽ 8.8	186.2	1	공동주택
						1,500.0	△ 66.1	1,566.1	1	공공공지
	서울특별시					3,530.0	△ 0.9	3,530.9	1	문화복합 임대주택
계					13,777.0	▽ 55.4	13,721.6	9		
법33조 토지 (무상 귀속 토지)	기획재정부		대	40.0	2					
	국토교통부		도	77.0	2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서울 주택 도시 공사	대	22.0	2					
			차	210.0	1					
			공	138.0	2					
			임	121.0	1					
	계			608.0	10					
합 계				608.0	10	13,777.0	▽ 55.4	13,721.6	9	
지적 불부합 감소 면적				- 21.5						
총 계				33,788.6	108	33,844.0	▽ 55.4	33,788.6	11	

■ 변경사유 :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환지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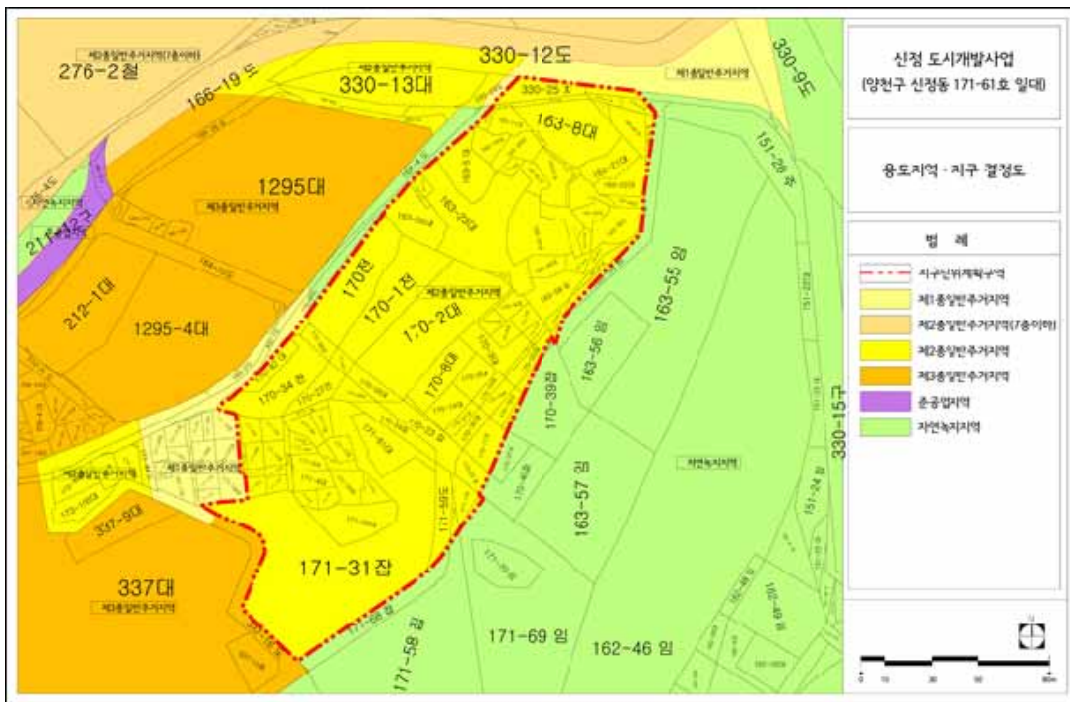
Ⅲ. 구역내 토지명세 및 공람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3.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
4. 조건부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인가된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과 (☎ 02)2133-4642)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 02)2620-3521)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 (☎ 02)3410-7344)
6. 관계도면 : 별첨 1

- 별첨 1 :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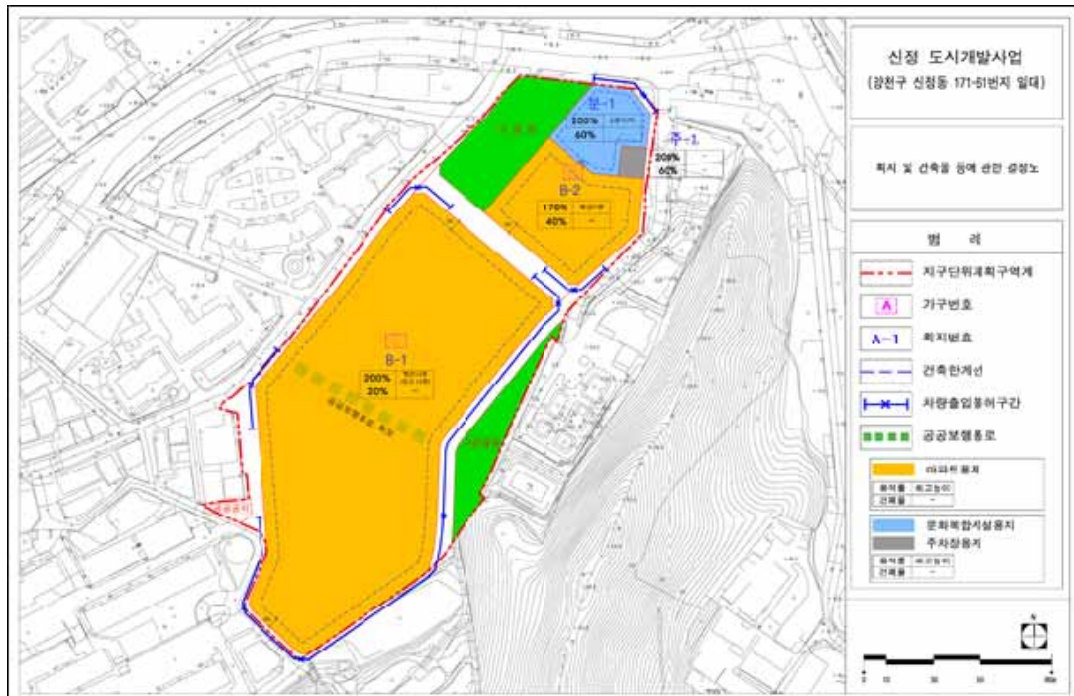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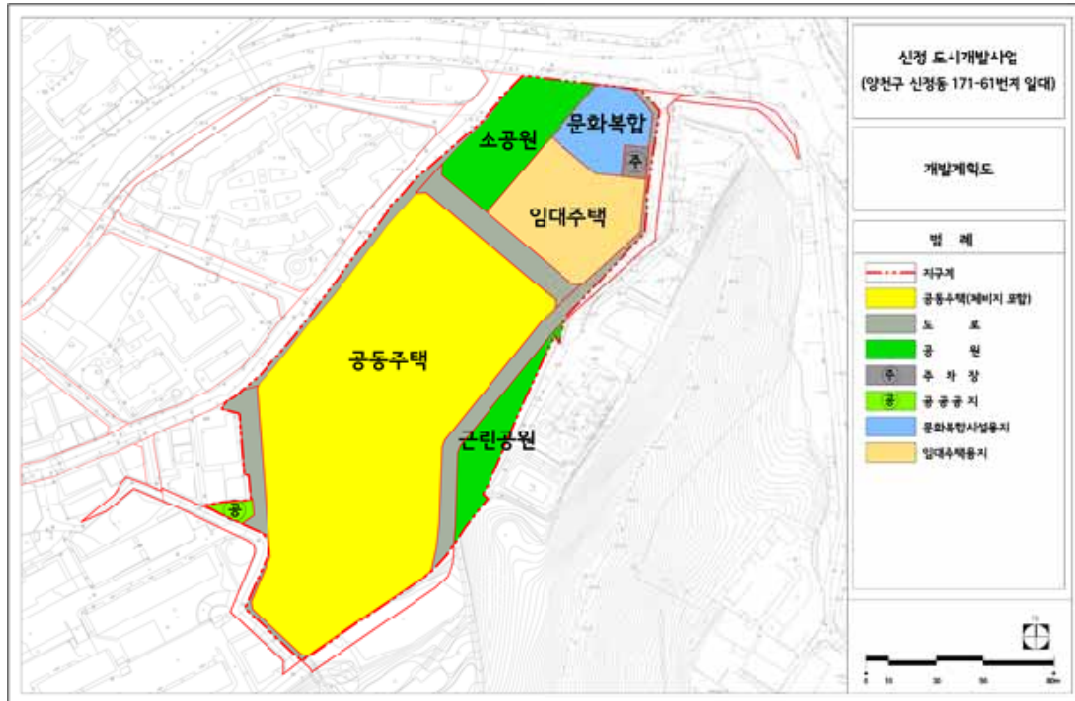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도



※ 붙임도면은 참고용이며,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구역 전체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활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12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8호(2020.06.1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나. 면적 : 266,5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나.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구역지정일 ~ 2020.12.31

－ 변경 : 2016.12.08. ~ 2025.12.31.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변경) : 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 포함)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변경없음)

2) 용도지구(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양재IC ~수서IC	150,000 (4,454)	6,250 (216)	12	서울시고시 제373호 (90.11.07)	

주1) ()는 대상지내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미관 지구	· 미관지구 폐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29, 2019.04.18.)”를 반영한 미관지구 폐지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10. 관계도서(지형도면 고시 사항 포함)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2)
 - 강남구청 공공주택과 (☎ 02)3423-6985)
 -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미래도시부 (☎ 02)3410-7615~8)

II.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나. 면적 : 266,502㎡

4. 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5. 시행기간(변경)

- 지정 : 구역지정일 ~ 2020.12.31

- 변경 : 2016.12.08. ~ 2025.12.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변경없음)

2) 용도지구(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양재IC ~수서IC	150,000 (4,454)	6,250 (216)	12	서울시고시 제373호 (90.11.07)	

주1) ()는 대상지내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미관 지구	· 미관지구 폐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29, 2019.04.18.)”를 반영한 미관지구 폐지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교통시설(변경없음)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4) 방재시설(변경없음)
-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3) 의료, 연구 등(변경없음)
 - (4)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5)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2) 주상복합용지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
 - (3)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
 - (4) 의료, 연구시설용지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
 - (5) 공공복합시설용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6) 교육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7) 편익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8) 주차장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보행 및 차량 진출입,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2)
 - 강남구청 공공주택과 (☎ 02)3423-6985)
 -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미래도시부 (☎ 02)3410-7615~8)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0.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가. 사업계획서(변경)
 -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 면적 : 266,50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개발사업
- 명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4)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구역지정일 ~ 2020.12.31.까지
(변경) 2016.12.08. ~ 2025.12.31.

6) 자금계획서(변경)

(1)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사업비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의 개략적인 추정치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달리하거나 항목의 변동(추가·삭제)이 발생할 수 있음
- 2017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근간으로 함(향후 변경예정)

항목		총항목	소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사업비	용지비	보상비 (용지부대비 포함)	-	434,447	
		소 계		434,447	
	부지조성비	조성비	-	82,227	
		조사설계감리비	-	4,947	
		소 계		87,174	
	건축비	건축공사비	-	299,359	
		설계비	-	11,986	
		감리비	-	9,115	
		소 계		320,460	
	기타비용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	58,816	
		예비비	-	88,786	
		소계		147,602	
임대운영비(수선유지비)				107,480	

항목	중항목	소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금융비용	금융비용		77,883	
법인세	법인세		132,455	
임대보증금반환	영구임대주택		1,095	
	국민임대주택		87,129	
	소계		88,224	
합계			1,395,725	

(2) 재원조달계획(변경)

- 본 사업의 재원은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함
- 연차별 집행계획
- 기정

(백만원)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2~' 60	2061
합계	1,395,725	-	435,522	173,671	212,456	215,204	235,267	123,605
사업비	989,683		430,148	161,528	197,663	200,344		
임대운영비	107,480						102,299	5,181
금융비용	77,883		5,374	12,143	14,793	10,467	35,106	
법인세	132,455					4,393	97,862	30,200
임대보증금반환	88,224							88,224

• 변경

(백만원)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5~' 64	2065
합계	1,395,725	65,000	370,522	173,671	212,456	215,204	235,267	123,605
사업비	989,683	65,000	365,148	161,528	197,663	200,344		
임대운영비	107,480						102,299	5,181
금융비용	77,883		5,374	12,143	14,793	10,467	35,106	
법인세	132,455					4,393	97,862	30,200
임대보증금반환	88,224							88,224

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필 지 수	기정	154	7	6	38	25	2	1	4	71
	변경	169	7	8	40	35	2	1	4	72
면적(㎡)		27,299.5	3,183.0	1,211.0	4,547.0	4,681.5	484.0	1,089.0	5,512.0	6,592.0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편입토지조서와는 상이하며, 향후 측량(지적분할 등)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26,704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용지	도로	28,958	
	공원	88,235	
	근린공원	77,166	
	소공원	11,069	
	녹지	1,446	
	연결녹지	1,446	
	공공공지	594	
	광장	513	
	저류지	6,958	공원내 중복결정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1) 시행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2) 시행방법 : 도시개발사업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시장 · 강남구청장

마.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1) 유 · 무상 국 · 공유지 현황(변경)

(1) 총괄표(변경)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합계	필지수	기정		154	7	6	38	25	2	1	4	71
		변경		169	7	8	40	35	2	1	4	72
	면적(㎡)	기정		27,299.5	3,183	1,211	4,547	4,681.5	484	1,089	5,512	6,592
		변경		27,299.5	3,183	1,211	4,547	4,681.5	484	1,089	5,512	6,592
국토 교통부	소계	필지수	기정	8	4	2	1	-	1	-	-	-
		면적(㎡)	기정	1,440	664	360	218	-	198	-	-	-
	국토 교통부	필지수	기정	1	-	-	1	-	-	-	-	-
		면적(㎡)	기정	218	-	-	218	-	-	-	-	-
	기획 재정부	필지수	기정	7	4	2	-	-	1	-	-	-
		면적(㎡)	기정	1,222	664	360	-	-	198	-	-	-
공	소계	필지수	기정	146	3	4	37	25	1	1	4	71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유지	서울특별시	면적(㎡)	변경	161	3	6	39	35	1	1	4	72
			기정	25,859.5	2,519	851	4,329	4,681.5	286	1,089	5,512	6,592
		필지수	변경	25,859.5	2,519	851	4,329	4,681.5	286	1,089	5,512	6,592
			기정	21	-	2	2	15	1	-	-	1
		면적(㎡)	변경	35	-	4	4	25	1	-	-	1
			기정	5,611.5	-	311	966	4,044.5	286	-	-	4
	강남구	필지수	변경	5,611.5	-	311	966	4,044.5	286	-	-	4
			기정	125	3	2	35	10	-	1	4	70
		면적(㎡)	변경	126	3	2	35	10	-	1	4	71
			기정	20,248	2,519	540	3,363	637	-	1,089	5,512	6,588
		면적(㎡)	변경	20,248	2,519	540	3,363	637	-	1,089	5,512	6,588
기정			20,248	2,519	540	3,363	637	-	1,089	5,512	6,588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편입토지조서와는 상이하며, 향후 측량(지적분할 등)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1) 무상귀속분 총괄표(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소유)(변경)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합계	필지수	기정	71	-	2	38	25	1	1	4	-	
		변경	85	-	4	40	35	1	1	4	-	
	면적(㎡)	기정	15,923.7	-	282.0	4,172.0	4,582.7	286.0	1,089.0	5,512.0	-	
		변경	15,598.7	-	282.0	4,023.0	4,582.7	110.0	1,089.0	5,512.0	-	
	기타지역	소계	필지수	기정	1	-	-	1	-	-	-	-
변경				1	-	-	1	-	-	-	-	
면적(㎡)			기정	163.0	-	-	163.0	-	-	-	-	-
			변경	74.0	-	-	74.0	-	-	-	-	-
국토 교통부		필지수	기정	1	-	-	1	-	-	-	-	
			변경	1	-	-	1	-	-	-	-	
		면적(㎡)	기정	163.0	-	-	163.0	-	-	-	-	-
			변경	74.0	-	-	74.0	-	-	-	-	-
기획 재정부		필지수	기정	-	-	-	-	-	-	-	-	
		면적(㎡)	기정	-	-	-	-	-	-	-	-	
광역시	소계	필지수	기정	70	-	2	37	25	1	1	4	-
			변경	84	-	4	39	35	1	1	4	-
		면적(㎡)	기정	15,760.7	-	282.0	4,009.0	4,582.7	286.0	1,089.0	5,512.0	-
			변경	15,524.7	-	282.0	3,949.0	4,582.7	110.0	1,089.0	5,512.0	-
	서울 특별시	필지수	기정	20	-	2	2	15	1	-	-	-
			변경	34	-	4	4	25	1	-	-	-
		면적(㎡)	기정	5,159.7	-	282.0	646.0	3,945.7	286.0	-	-	-
			변경	4,923.7	-	282.0	586.0	3,945.7	110.0	-	-	-
	강남구	필지수	기정	50	-	-	35	10	-	1	4	-
			변경	50	-	-	35	10	-	1	4	-
		면적(㎡)	기정	10,601.0	-	-	3,363.0	637.0	-	1,089.0	5,512.0	-
			변경	10,601.0	-	-	3,363.0	637.0	-	1,089.0	5,512.0	-

※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필지수는 한필지내 무상귀속 및 유상귀속이 중복된 경우, 무상귀속분 및 유상귀속분에 중복하여 산정 됨

(2) 유상귀속분 총괄표(공공시설 외)(변경)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합계	필지수	기정	89	7	5	3	2	1	-	-	71
		변경	95	7	6	5	3	2	-	-	72
	면적(㎡)	기정	11,375.8	3,183.0	929.0	375.0	98.8	198.0	-	-	6,592.0
		변경	11,700.8	3,183.0	929.0	524.0	98.8	374.0	-	-	6,592.0
한·일·지	소계	필지수	기정	8	4	2	1	-	1	-	-
			변경	8	4	2	1	-	1	-	-
		면적(㎡)	기정	1,277.0	664.0	360.0	55.0	-	198.0	-	-
			변경	1,366.0	664.0	360.0	144.0	-	198.0	-	-
	국토 교통부	필지수	기정	1	-	-	1	-	-	-	-
			변경	1	-	-	1	-	-	-	-
		면적(㎡)	기정	55.0	-	-	55.0	-	-	-	-
			변경	144.0	-	-	144.0	-	-	-	-
	기획 재정부	필지수	기정	7	4	2	-	-	1	-	-
		면적(㎡)	기정	1,222.0	664.0	360.0	-	-	198.0	-	-
한·일·지	소계	필지수	기정	81	3	3	2	2	-	-	71
			변경	87	3	4	4	3	1	-	72
		면적(㎡)	기정	10,098.8	2,519.0	569.0	320.0	98.8	-	-	6,592.0
			변경	10,334.8	2,519.0	569.0	380.0	98.8	176.0	-	6,592.0
	서울 특별시	필지수	기정	6	-	1	2	2	-	-	1
			변경	11	-	2	4	3	1	-	1
		면적(㎡)	기정	451.8	-	29.0	320.0	98.8	-	-	4.0
			변경	687.8	-	29.0	380.0	98.8	176.0	-	4.0
	강남구	필지수	기정	75	3	2	-	-	-	-	70
			변경	76	3	2	-	-	-	-	71
		면적(㎡)	기정	9,647.0	2,519.0	540.0	-	-	-	-	6,588.0
			변경	9,647.0	2,519.0	540.0	-	-	-	-	6,588.0

※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필지수는 한필지내 무상귀속 및 유상귀속이 중복된 경우, 무상귀속분 및 유상귀속분에 중복하여 산정 됨

(3)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산153-1	구거	306	218	국(국토교통부)	163	55	
	변경	개포동	산153-1	구거	306	218	국(국토교통부)	74	144	
합계				기정	306	218	-	163	55	
				변경	306	218	-	74	144	

－ 기획재정부(변경없음)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118-21	전	433	433	국(기획재정부)	-	433	
2	기정	개포동	118-24	전	177	177	국(기획재정부)	-	177	
3	기정	개포동	118-53	전	21	21	국(기획재정부)	-	21	
4	기정	개포동	583	전	33	33	국(기획재정부)	-	33	
5	기정	개포동	617	답	215	215	국(기획재정부)	-	215	
6	기정	개포동	618	답	145	145	국(기획재정부)	-	145	
7	기정	개포동	산154-4	임야	198	198	국(기획재정부)	-	198	
합계					1,222	1,222	-	-	1,222	

－ 서울특별시(변경)

● 공공주택과(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569-16	도로	102	102	공공주택과	102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9-16	도로	17	17	공공주택과	102	-	
	변경	개포동	569-24	도로	85	85	공공주택과			
2	기정	개포동	569-17	도로	14	14	공공주택과	14	-	
3	기정	개포동	569-18	답	208	208	공공주택과	179	29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9-18	답	8	8	공공주택과	179	29	
	변경	개포동	569-25	답	200	200	공공주택과			
4	기정	개포동	569-20	도로	90	90	공공주택과	90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9-20	도로	4	4	공공주택과	90	-	
	변경	개포동	569-26	도로	86	86	공공주택과			
5	기정	개포동	569-21	도로	198	198	공공주택과	198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9-21	도로	1	1	공공주택과	198	-	
	변경	개포동	569-27	도로	197	197	공공주택과			
합계					612	612	-	583	29	

※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하천관리과(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568-9	구거	922	922	하천관리과	620	302	
	변경	개포동	568-9	구거	896	896	하천관리과	560	362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8-37	구거	26	26	하천관리과			
2	기정	개포동	589-22	구거	44	44	하천관리과	26	18	
	변경	개포동	589-22	구거	9	9	하천관리과	26	18	
	변경	개포동	589-54	구거	35	35	하천관리과			
합계				기정	966	966	-	646	320	
				변경	966	966	-	586	380	

● 공원조성과(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산53-44	임야	2,000	286	공원조성과	286	-	
	변경	개포동	산53-44	임야	2,000	286	공원조성과	110	176	
합계				기정	2,000	286	-	286	-	
				변경	2,000	286	-	110	176	

● 도로계획과(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128-4	도로	133	133	도로계획과	99	34	
2	기정	개포동	565-1	도로	31	31	도로계획과	31	-	
	변경	개포동	565-1	도로	3	3	도로계획과	31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5-6	도로	28	28	도로계획과			
3	기정	개포동	567-17	도로	335	335	도로계획과	335	-	
	변경	개포동	567-17	도로	174	174	도로계획과	335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7-36	도로	161	161	도로계획과			
4	기정	개포동	567-20	도로	92	92	도로계획과	92	-	
	변경	개포동	567-20	도로	1	1	도로계획과	92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7-37	도로	91	91	도로계획과			
5	기정	개포동	567-21	도로	217	217	도로계획과	217	-	
	변경	개포동	567-21	도로	174	174	도로계획과	217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7-38	도로	43	43	도로계획과			
6	기정	개포동	567-22	도로	481	481	도로계획과	481	-	
	변경	개포동	567-22	도로	285	285	도로계획과	481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7-39	도로	196	196	도로계획과			
7	기정	개포동	568-29	도로	101	101	도로계획과	101	-	
8	기정	개포동	568-30	도로	69	69	도로계획과	69	-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변경	개포동	568-30	도로	18	18	도로계획과	69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8-40	도로	51	51	도로계획과			
9	기정	개포동	568-31	도로	44	44	도로계획과	44	-	
10	기정	개포동	569-22	답	103	103	도로계획과	103	-	
	변경	개포동	569-22	답	23	23	도로계획과	103	-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569-28	답	80	80	도로계획과			
11	기정	개포동	589-19	도로	20	20	도로계획과	20	-	
12	기정	개포동	589-53	잡	4	4	도로계획과	-	4	
13	기정	개포동	647-3	도로	31,133.3	2,117.5	도로계획과	2,052.7	64.8	
	변경	개포동	647-3	도로	24,197.0	1,703.1	도로계획과	2,052.7	64.8	지적 분할
	변경	개포동	647-11	도로	414.4	414.4	도로계획과			
합계					26,241.4	3,747.5	-	3,644.7	102.8	

- 강남구(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개포동	118-32	답	272	272	강남구	-	272	
2	기정	개포동	118-33	답	268	268	강남구	-	268	
3	기정	개포동	121-1	구거	241	241	강남구	241	-	
4	기정	개포동	121-4	구거	84	84	강남구	84	-	
5	기정	개포동	121-5	잡	15	15	강남구	-	15	
6	기정	개포동	121-6	잡	7	7	강남구	-	7	
7	기정	개포동	121-7	잡	38	38	강남구	-	38	
8	기정	개포동	121-8	구거	5	5	강남구	5	-	
9	기정	개포동	121-9	잡	60	60	강남구	-	60	
10	기정	개포동	121-10	잡	157	157	강남구	-	157	
11	기정	개포동	121-11	잡	190	190	강남구	-	190	
12	기정	개포동	121-12	잡	3	3	강남구	-	3	
13	기정	개포동	121-13	잡	3	3	강남구	-	3	
14	기정	개포동	121-14	잡	341	341	강남구	-	341	
15	기정	개포동	121-15	구거	32	32	강남구	32	-	
16	기정	개포동	121-16	구거	136	136	강남구	136	-	
17	기정	개포동	121-17	잡	188	188	강남구	-	188	
18	기정	개포동	121-18	잡	7	7	강남구	-	7	
19	기정	개포동	126-2	주차장	2,744	2,744	강남구	2,744	-	
20	기정	개포동	128-3	구거	268	268	강남구	268	-	
21	기정	개포동	128-10	구거	37	37	강남구	37	-	
22	기정	개포동	128-11	구거	269	269	강남구	269	-	
23	기정	개포동	128-12	구거	43	43	강남구	43	-	
24	기정	개포동	128-13	구거	73	73	강남구	73	-	
25	기정	개포동	128-14	구거	112	112	강남구	112	-	
26	기정	개포동	128-15	잡	3	3	강남구	-	3	
27	기정	개포동	128-16	잡	62	62	강남구	-	62	
28	기정	개포동	128-17	잡	73	73	강남구	-	73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29	기정	개포동	128-18	구거	346	346	강남구	346	-	
30	기정	개포동	128-19	잡	7	7	강남구	-	7	
31	기정	개포동	128-20	잡	15	15	강남구	-	15	
32	기정	개포동	128-21	잡	40	40	강남구	-	40	
33	기정	개포동	128-22	잡	11	11	강남구	-	11	
34	기정	개포동	567-5	공원	1,089	1,089	강남구	1,089	-	
35	기정	개포동	567-23	주차장	2,553	2,553	강남구	2,553	-	
36	기정	개포동	567-29	도로	356	356	강남구	356	-	
37	기정	개포동	567-33	잡	32	32	강남구	-	32	
38	기정	개포동	567-34	잡	24	24	강남구	-	24	
39	기정	개포동	568-10	잡	118	118	강남구	-	118	
40	기정	개포동	568-36	잡	283	283	강남구	-	283	
41	기정	개포동	573	전	2,083	2,083	강남구	-	2,083	
42	기정	개포동	573-1	구거	18	18	강남구	18	-	
43	기정	개포동	573-2	구거	219	219	강남구	219	-	
44	기정	개포동	573-10	잡	35	35	강남구	-	35	
45	기정	개포동	573-11	잡	180	180	강남구	-	180	
46	기정	개포동	573-12	구거	24	24	강남구	24	-	
47	기정	개포동	573-20	잡	75	75	강남구	-	75	
48	기정	개포동	573-3	주차장	205	205	강남구	205	-	
49	기정	개포동	573-4	전	3	3	강남구	-	3	
50	기정	개포동	573-5	구거	44	44	강남구	44	-	
51	기정	개포동	573-6	구거	643	643	강남구	643	-	
52	기정	개포동	573-7	구거	42	42	강남구	42	-	
53	기정	개포동	573-8	구거	98	98	강남구	98	-	
54	기정	개포동	573-9	주차장	10	10	강남구	10	-	
55	기정	개포동	573-13	잡	82	82	강남구	-	82	
56	기정	개포동	573-14	잡	11	11	강남구	-	11	
57	기정	개포동	573-15	잡	20	20	강남구	-	20	
58	기정	개포동	573-16	잡	18	18	강남구	-	18	
59	기정	개포동	573-17	잡	9	9	강남구	-	9	
60	기정	개포동	573-18	잡	14	14	강남구	-	14	
61	기정	개포동	573-19	잡	11	11	강남구	-	11	
62	기정	개포동	573-21	구거	39	39	강남구	39	-	
63	기정	개포동	573-22	잡	206	206	강남구	-	206	
64	기정	개포동	573-23	잡	756	756	강남구	-	756	
65	기정	개포동	573-24	구거	42	42	강남구	42	-	
66	기정	개포동	573-25	잡	349	349	강남구	-	349	
67	기정	개포동	573-26	잡	107	107	강남구	-	107	
68	기정	개포동	573-27	잡	18	18	강남구	-	18	
69	기정	개포동	573-28	잡	11	11	강남구	-	11	
70	기정	개포동	573-29	잡	17	17	강남구	-	17	
71	기정	개포동	574	전	433	433	강남구	-	433	
72	기정	개포동	582-1	잡	208	208	강남구	-	208	
73	기정	개포동	582-5	도로	35	35	강남구	35	-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74	기정	개포동	582-6	잡	20	20	강남구	-	20	
75	기정	개포동	582-7	도로	67	67	강남구	67	-	
76	기정	개포동	582-8	도로	19	19	강남구	19	-	
77	기정	개포동	582-9	잡	74	74	강남구	-	74	
78	기정	개포동	582-10	잡	4	4	강남구	-	4	
79	기정	개포동	582-11	잡	2	2	강남구	-	2	
80	기정	개포동	582-12	잡	35	35	강남구	-	35	
81	기정	개포동	582-13	잡	11	11	강남구	-	11	
82	기정	개포동	582-14	잡	12	12	강남구	-	12	
83	기정	개포동	582-15	잡	19	19	강남구	-	19	
84	기정	개포동	589-4	구거	88	88	강남구	88	-	
85	기정	개포동	589-5	잡	24	24	강남구	-	24	
86	기정	개포동	589-6	구거	39	39	강남구	39	-	
87	기정	개포동	589-7	구거	18	18	강남구	18	-	
88	기정	개포동	589-8	구거	212	212	강남구	212	-	
89	기정	개포동	589-9	구거	9	9	강남구	9	-	
90	기정	개포동	589-10	잡	419	419	강남구	-	419	
91	기정	개포동	589-14	도로	123	123	강남구	123	-	
92	기정	개포동	589-17	잡	14	14	강남구	-	14	
93	기정	개포동	589-18	잡	101	101	강남구	-	101	
94	기정	개포동	589-20	도로	24	24	강남구	24	-	
95	기정	개포동	589-23	도로	4	4	강남구	4	-	
96	기정	개포동	589-27	잡	210	210	강남구	-	210	
97	기정	개포동	589-28	구거	13	13	강남구	13	-	
98	기정	개포동	589-29	잡	87	87	강남구	-	87	
99	기정	개포동	589-30	구거	15	15	강남구	15	-	
100	기정	개포동	589-31	구거	33	33	강남구	33	-	
101	기정	개포동	589-32	잡	2	2	강남구	-	2	
102	기정	개포동	589-33	도로	3	3	강남구	3	-	
103	기정	개포동	589-34	잡	24	24	강남구	-	24	
104	기정	개포동	589-35	도로	5	5	강남구	5	-	
105	기정	개포동	589-36	잡	15	15	강남구	-	15	
106	기정	개포동	589-37	도로	1	1	강남구	1	-	
107	기정	개포동	589-38	잡	18	18	강남구	-	18	
108	기정	개포동	589-39	잡	74	74	강남구	-	74	
109	기정	개포동	589-40	구거	16	16	강남구	16	-	
110	기정	개포동	589-41	잡	29	29	강남구	-	29	
111	기정	개포동	589-42	구거	4	4	강남구	4	-	
112	기정	개포동	589-43	잡	1	1	강남구	-	1	
113	기정	개포동	589-44	구거	32	32	강남구	32	-	
114	기정	개포동	589-45	잡	9	9	강남구	-	9	
115	기정	개포동	589-46	잡	265	265	강남구	-	265	
116	기정	개포동	589-48	잡	353	353	강남구	-	353	
117	기정	개포동	589-49	잡	230	230	강남구	-	230	
118	기정	개포동	589-50	구거	14	14	강남구	14	-	
119	기정	개포동	589-51	잡	89	89	강남구	-	89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20	기정	개포동	589-52	잡	420	420	강남구	-	420	
121	기정	개포동	589-47	잡	14	14	강남구	-	14	
	변경	개포동	589-47	잡	7	7	강남구	-	14	지적분할
	변경	개포동	589-55	잡	7	7	강남구			
	기정	개포동	619-1	잡	31	31	강남구	-	31	
122	기정	개포동	619-2	구거	17	17	강남구	17	-	
123	기정	개포동	619-3	잡	178	178	강남구	-	178	
124	기정	개포동	619-4	구거	38	38	강남구	38	-	
합계					20,248	20,248	-	10,601	9,64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하여분(변경없음)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계	전	답	구	도	임	공	차	잡		
합계	필지수	기정	154	7	6	38	25	2	1	4	71		
		변경	169	7	8	40	35	2	1	4	72		
		면적(㎡)	기정	27,299.5	3,183	1,211	4,547	4,681.5	484	1,089	5,512	6,592	
			변경	27,299.5	3,183	1,211	4,547	4,681.5	484	1,089	5,512	6,592	
국·도·시·구·군·자치단체	소계	필지수	기정	8	4	2	1	-	1	-	-	-	
		면적(㎡)	기정	1,440	664	360	218	-	198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기정	1	-	-	1	-	-	-	-	-	
		면적(㎡)	기정	218	-	-	218	-	-	-	-	-	
	기획재정부	필지수	기정	7	4	2	-	-	1	-	-	-	
		면적(㎡)	기정	1,222	664	360	-	-	198	-	-	-	
	서울특별시	소계	필지수	기정	146	3	4	37	25	1	1	4	71
				변경	161	3	6	39	35	1	1	4	72
면적(㎡)			기정	25,859.5	2,519	851	4,329	4,681.5	286	1,089	5,512	6,592	
			변경	25,859.5	2,519	851	4,329	4,681.5	286	1,089	5,512	6,592	
서울특별시		필지수	기정	21	-	2	2	15	1	-	-	1	
			변경	35	-	4	4	25	1	-	-	1	
		면적(㎡)	기정	5,611.5	-	311	966	4,044.5	286	-	-	4	
			변경	5,611.5	-	311	966	4,044.5	286	-	-	4	
강남구		필지수	기정	125	3	2	35	10	-	1	4	70	
			변경	126	3	2	35	10	-	1	4	71	
		면적(㎡)	기정	20,248	2,519	540	3,363	637	-	1,089	5,512	6,588	
			변경	20,248	2,519	540	3,363	637	-	1,089	5,512	6,588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편입토지조서와는 상이하며, 향후 측량(지적분할 등)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이용상태

-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 도로 : 도로, 구거
- 구거 : 도로, 하천, 구거
- 임야 : 임야
- 공원 : 공원
- 주차장 : 주차장

사.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 · 무 : 없음

아.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분(변경없음)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26,704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용지	도로	28,958	
	공원	88,235	
	근린공원	77,166	
	소공원	11,069	
	녹지	1,446	
	연결녹지	1,446	
	공공공지	594	
	광장	513	
	저류지	6,958	공원내 중복결정

1) 시설이용계획

○ 도로

- 주간선도로 : 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
- 집산도로 :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
- 국지도로 : 도로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거리가 짧은 하위도로

○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 녹지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과 하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 광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 저류지
 -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11.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별첨2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별첨1.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및 위탁자		이해관계인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5-1도	31	31	서울특별시		지상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3가 80-2	주식회사 삼일사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3가 80-1	주식회사 삼일사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5-1도	3	3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80-1	주식회사 삼일사
										지상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0-2	주식회사 삼일사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5-6도	28	28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80-1	주식회사 삼일사
										지상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0-2	주식회사 삼일사
2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답	437	437	김영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12동 1106호(대치동, 선경아파트)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답	416	416	김영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12동 1106호(대치동, 선경아파트)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35답	21	21	김영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12동 1106호(대치동, 선경아파트)			
3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7도	335	335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7도	174	174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36도	161	161	서울특별시				
4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0도	92	92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0도	1	1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37도	91	91	서울특별시				
5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1도	217	217	서울특별시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1도	174	174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및 위탁자		이해관계인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관리구분	주소	성명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38도	43	43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종로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6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2도	481	481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22도	285	285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39도	196	196	서울특별시				
7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9구	922	922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9구	896	896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37구	26	26	서울특별시				
8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30도	69	69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30도	18	18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8-40도	51	51	서울특별시				
9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8답	488	488	김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109-702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8답	463	463	김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109-702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3답	25	25	김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109-702			
10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16도	102	102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16도	17	17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4도	85	85	서울특별시				
11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18답	208	208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18답	8	8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및 위탁자		이해관계인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관리구분	주소	성명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5답	200	200	서울특별시				
12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0도	90	90	서울특별시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0도	4	4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6도	86	86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13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1도	198	198	서울특별시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1도	1	1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7도	197	197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안국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상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14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2답	103	103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2답	23	23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9-28답	80	80	서울특별시				
15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22구	44	44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22구	9	9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54구	35	35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및 위탁자		이해관계인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관리구분	주소	성명
16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47잡	14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47잡	7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89-55잡	7	7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91-1전	78	78	황철환	경기도 양평군강하면 항금리 427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91-1전	66	66	황철환	경기도 양평군강하면 항금리 427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91-3전	12	12	황철환	경기도 양평군강하면 항금리 427			
18	기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7-3도	31,133	1,454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7-3도	24,197	1,040	서울특별시				
	변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7-11도	414	414	서울특별시				

※ 토지는 개발계획 수립 제안(2018.09.)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유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6.12.)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토지보상은 별도 물건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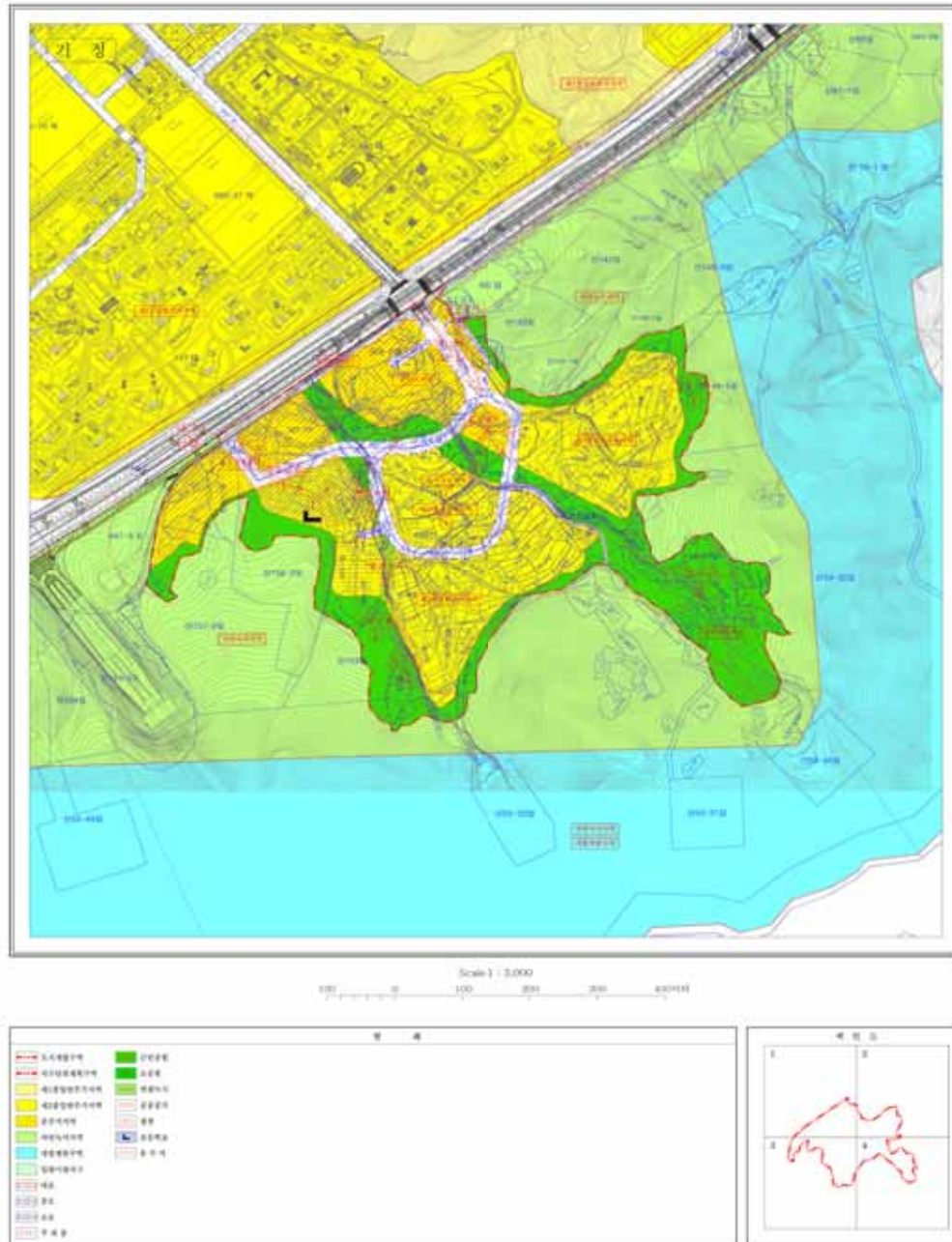
※ 양재대로변 필지분할 사항만 반영(2019.09.16.). 그 외 필지는 계재생략

※ 측량(지적분할 등) 결과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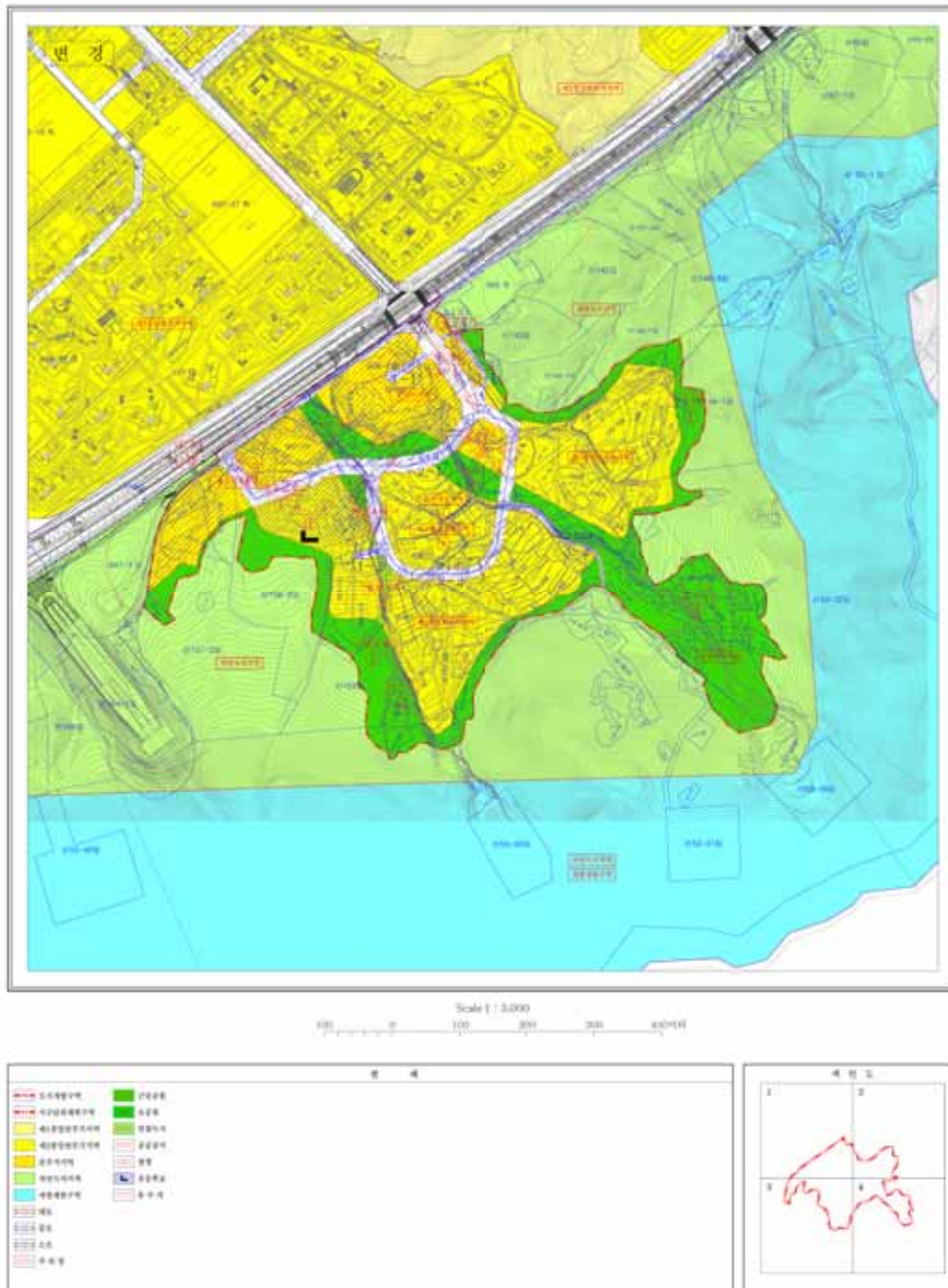
- 기정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변경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13호

은평구 불광동 302 - 1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은평구 불광동 302-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 면 적 : 2,05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0년 12월 31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에이치앤비개발
- 대표자 성명 : 이하나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출동)
- 법인등록번호 : 175611-0022455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동의 여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외 권리내용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	대	1,967	1,903	주식회사에이 치앤비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일산금융센터)	근저당권 설정	동의 (시행자 소유)
2		290-12	대	156	156	주식회사에이 치앤비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수협 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일산지점)	근저당권 설정	동의 (시행자 소유)
계				2,123	2,059	-	-	-	-	-	-	동의율 100%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노후도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지분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	대	관광 숙박 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69. 12.25	5,203.5	1	8	주식회사 에이치앤비 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충족
2		290-12	대	단독 주택	연와조	1991. 11.27	233.46	1	2	주식회사 에이치앤비 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충족
계				-	-	-	-	-	-	-	-	-	노후도 10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2,05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구 역 명	면적(㎡)	결 정 사 유
-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05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 관계서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20-2133-6294)와 은평구청 4층 건축과(02-351-7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은평구 불광동 302-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 면 적 : 2,059㎡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연신내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에이치앤비개발
- 대표자 성명 : 이하나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줄동)
- 법인등록번호 : 175611-0022455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983.0	96.3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76.0	3.7	도 로
합 계	2,059.0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461인
- 2) 주택건설계획 : 299세대

구 분	세 대 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임대	민간임대	소 계				
A	17type	25	75	100	33.4	100	21.7
B	35type	14	46	60	20.1	159	34.5
C	35type	9	25	34	11.4	91	19.7
D	17type	17	63	80	26.8	80	17.3
E	17type	4	15	19	6.3	19	4.1
F	34type	2	4	6	2.0	12	2.6
합 계	71	228	299	100.0	461	100.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종합사회복지관	-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전용면적 : 288.85㎡ 연면적 : 459.80㎡	관리청에 기부채납

* (관리청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 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면적 확보계획을 수립
- 대지내 공지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옥상녹화를 도입함

나) 일조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 현재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3개동이 일조피해를 받고있으며, 대상지 개발시 2개동은 일조수인한도가 개선되나 서측 1개동은 일조피해가 예상됨
- 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에 영향을 받는 세대 총 4세대 중 2세대는 신축에 동의
- 미동의 세대 2세대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하며, 협의 불발 시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설치, 협의보상, 토지매입 등을 피해주민과 협의 할 계획임

다) 오염물질 최소화

- 저감시설 설치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4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축 건물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단계별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시 대기오염 저감방안 이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명시된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할 계획임

라) 소음 및 진동 저감방안

- 공사시 소음저감대책
: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토록 함
- 공사시 진동저감대책
: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강도를 조정토록 하되, 가능한한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
- 운영시 소음저감대책
: 본 계획구역 사업시행시 계획건축물의 주요 용도에 따라 미국냉동공조기술자협회

(ASHRAE)의 용도별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차음설계(창호 및 외벽 계획)를 통해 이용객에 대한 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2)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대상지는 노후한 숙박시설과 저층주택이 위치하고있는 부지로서, 청년주택 개발과 더불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3)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대상지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하고,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탄소저감 및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친환경 운영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평지붕의 옥상녹화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 과도한 난방연료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관류율이 낮고 단열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이하여백)

[붙임]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59.0	-	2,059.0	100.0	불광동 302-13번지 290-12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59.0	감) 1,983.0	76.0	3.7	
일반상업지역	-	증) 1,983.0	1,983.0	96.3	

■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983.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2,059.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구 역 명	면적(㎡)	결 정 사 유
-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059.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59.0	-	2,059.0	100.0	불광동 302-13번지 290-12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76.0	-	76.0	3.7	
일반상업지역	1,983.0	-	1,983.0	96.3	

②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3류	-	4~5	국지 도로	178	불광동 301-3	불광동 290-58	일반 도로	-	'74.04.04	•기부채납 7㎡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획 지	A-1	불광동 290-12번지	1,983.0	-
			불광동 302-13번지		

■ 가구 및 획지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결 정 사 유
A-1	은평구 불광동 290-12번지, 302-13번지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대지에 대하여 획지 지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4)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신 설	지정용도(I) •공동주택(주거복합)*
	불허용도(A)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중·일·반숙박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아영장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있다고인정하 는 시설

*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임(오피스텔 제외)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 면 번 호	위 치	결 정 사 유
— 용도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지정	•청년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적용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설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높 이	●80m 이하	●청년주택 대상필지에 한하여 연접부 경관계획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 면 번 호		위 치	결 정 사 유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기준 적용 ●높 이 : 동일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60m, 최고70m)를 완화하여 최고높이 계획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함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신 설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3m(보도부속형) ●서측도로변 2m(차도부속형)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건축한계선 신규 지정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라)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계 획 내 용(안)	비 고
신설	공공기여율	●25% 이상	●25.20%(499.80㎡)	모 함 충족
	비주거비율	●용적률 기준 10% 이상 20% 미만 (지하2층~지상2층에 설치)	●비주거 : 12.74%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 및 민간임대 : 전용 17.19㎡, 17.68㎡, 34.50㎡, 35.01㎡, 35.91㎡	
	건축물형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이상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150㎡ 이상	●171.72㎡	

-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향후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①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치	조성방법
신설	쌈지형공지		•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휴식공간 및 보행통로로 이용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쌈지형공지 신설 - 위치 및 조성방법 지정	•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쌈지공원 형태의 공지를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공공기여 계획 결정 : 신설

구 분		면 적(㎡)	공공기여율(%)	비 고
신 설	공공임대주택	397.86	20.06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공공시설	101.94	5.14	건축공사비 환산면적 + 대지지분
	합 계	499.80	25.20	-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향후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5)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내수재해

- 개발 후, 홍수유출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및 옥상저류시설 등 침투/저류형 시설을 계획하여 홍수유출 저감 도모 제안
- 계획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를 위한 우수관로(D=450mm이상) 계획 수립 제안

2) 지반재해

- 굴착으로 인해 지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막이 공법, 계측기기설치(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율계, 지표침하계 등),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 대책 수립 제안

3) 지진재해

- 실시시설제시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제안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동의 여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외 권리내용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	대	1,967	1,903	주식회사에이치앤비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일산금융센터)	근저당권 설정	동의 (시행사 소유)
2		290-12	대	156	156	주식회사에이치앤비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일산지점)	근저당권 설정	동의 (시행사 소유)
계				2,123	2,059	-	-	-	-	-	-	동의율 100%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노후도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지분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	대	관광 숙박 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69. 12.25	5,203.5	1	8	주식회사 에이치앤비 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충족
2		290-12	대	단독 주택	연와조	1991. 11.27	233.46	1	2	주식회사 에이치앤비 개발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96(상죽동)	1/1	충족
계				-	-	-	-	-	-	-	-	-	노후도 100%

3) 토지취득방법 - 사업대상지 내 토지는 100% 사업시행자 소유임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은 전면 철거 예정임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도로 (도로명 : 소로3-)	-
위 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
규 모	•7㎡	편입면적
계획기준 및 근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최초결정일:1974.04.04.)	-
관리처분계획	•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합 계	2,059.0	100.0	-	-	-
주택건설용지	1,983.0	96.3	자체사용	건축허가 이후	-
기반시설용지	76.0	3.7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61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 가. 명 칭 :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45번지 외 59필지
 다. 면 적 : 12,382.6㎡

2. 권리기준산정일 : 2021. 1. 1.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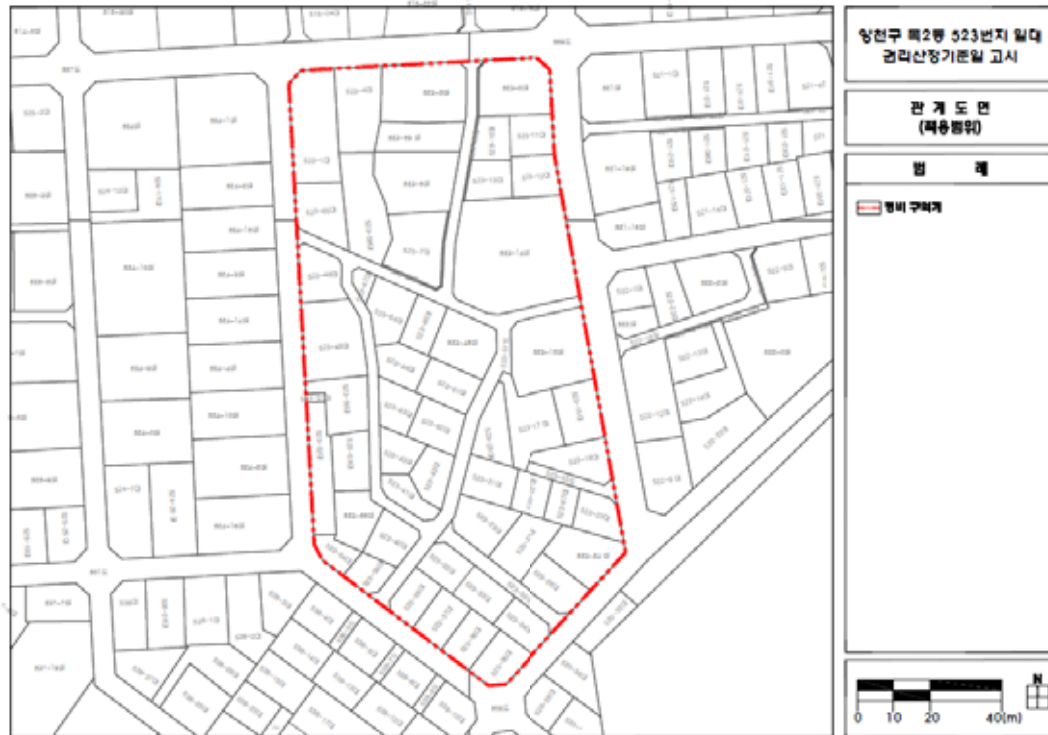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451)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3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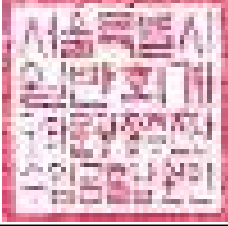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세외수입 징수관 업무 개선을 위해 비징수관 부서를 징수관 부서로 지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0.12.3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광화문광장추진단 본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0.12.3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광화문광장추진단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4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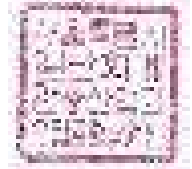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분임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을 등록하고자 함.
2. 직인 등록일자 : 2021.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광산업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1.1.1.	정수관 부서로 지정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관광산업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498호

서울특별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다. 사업구간 : 과천시 과천동 ~ 동작구 동작동 및 서초구 방배동

라. 사업규모 :

① 연장 및 차로 수 : 5.4km, 왕복 4차로(전차중도로)

② 출입시설 : 2개소

③ 영업소 등 : 본선 영업소 1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④ 수자원시설 : 복합터널을 포함한 30년빈도, 95mm/hr의 방재성능목표를 만족하며 사당천 유역 배수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침수해소가 가능한 저류배수시설 (복합터널, 저류배수터널, 수직구, 펌프장 등)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바.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 ~ 동작구 동작동(사평대로) 및 서초구 방배동 (동작대로)

나. 사업규모 :

① 연장 및 차로 수 : 5.4km (왕복 4차로)

② 출입시설 : 2개소 (동작IC, 과천IC)

③ 영업소 등 : 본선 영업소 1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④ 수자원시설 : 복합터널 1.5km, 빗물저류배수터널 2.3km, 유입/유출 수직구 3개소

다. 제안자 : (가칭)이수과천복합터널(주)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추정건설사업비의 35% 이내에서 건설보조금 요청 가능

사. 시공능력을 만족하는 건설출자자가 최소 1개사 이상 출자하여야 함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

- 변경제안서를 제출 시 최초제안서의 제안 내용 중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 그 외는 1%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21.01.11(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21.01.21(목)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21.02.15(월) 09:00 ~ 18:00
- 2단계 평가서류 : 2021.04.30(금) 09:00 ~ 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33-8075(장익검) / FAX : 02-2133-076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20 - 3498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Multi Purpose Double - deck Tunnel (Isu ~ Gwacheon)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Isu ~ Gwacheon).

December 31, 2020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 a. Project Name :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Isu ~ Gwache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 b. Project Scheme : Build Transfer Operate ("BTO")
- c. Sections :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 Dongjak-dong, Dongjak-gu, and Bangbae-dong, Seocho-gu, Seoul
- d. Project Scale :
 - Total 5.4km and two-way with four lanes (Road for all vehicles classes)
 - Two(2) entrance/exits
 - A toll plaza(smart tolling system) and a maintenance office
 - Stormwater storage and drainage facilities capable of drainage improvement measures in Sadangcheon area, satisfying the performance target for disaster prevention of 95mm/hr, with a frequency of 30 years including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a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drainage tunnels, drop shafts, pump stations, etc.)
- e. Construction Period : 60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 f. Operation Period : 3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

2. Original Project Proposal

- a. Proposed Project Sections :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Nantaeryeong Underground Roadway) ~ Dongjak-dong, Dongjak-gu, Seoul (Sapyeong Dae-ro) and Bangbae-dong, Seocho-gu, Seoul (Dongjak Dae-ro)
- b. Project Scale :
 - Total 5.4km and two-way with four lanes
 - ※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1.5km), stormwater storage and drainage tunnel (2.3km),
three(3) inlet/outlet drop shafts

- Two(2) entrance/exits (Dongjak IC, Gwacheon IC)
- A toll plaza(smart tolling system) and a maintenance office
- c.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Isu Gwacheon Multi Purpose Double-deck Tunnel Corporation"

3.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 a. The proposal must be submitt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ject company or an entity expected to be the project company.
- b. If an proponent or proponent's consortium is comprised of more than five(5) equity investors, three(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jointly hold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hold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 c. The proponent must hold the its equity ratio at least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Cost during construction period.
- d. Minimum Revenue Guarantee : None
- e. Proponents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ly announced project cost.
- f. Proponents may request the contracting authority for a subsidy for construction of which amount is less than 35% of the construction cost.
- g. At least one(1) construction investor must participate in the proponent consortium.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investor shall be satisfied with the construction capability.
- h. Incentive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nent : one(1) % of the total score will be given as an incentive. However, no incentive will be given if an amendment of proposal is submitted and the said amendment is disadvantageous to the Contracting Authority which for instance is increase in the toll fee or a subsidy request.

4. Perusal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 a. Publish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or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Seoul City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PIMAC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Project Proposal Submission Guide

- a. Due date for queries submission : 18:00 on Monday, January 11, 2021 (By written submission)
 -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 b. Response Date : Thursday, January 21, 2021
 - ※ Post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6.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Due date for submission

-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 Monday, February 15, 2021 between 09:00~18:00
-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Friday, April 30, 2021 between 09:00~18:00
- Only the proponents who passed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b. Place of Submission : Road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th Floor,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7.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posals submitted by the proponent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 First stage : Pre-qualification ("PQ")
- Second stag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financial proposal documents

b. A proponent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8. Others

a. Contact the Road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 Person in charge : IkGyeom Chang
- Phone : +82-2-2133-8075
- Fax : +82-2-2133-076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1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주)현암도시개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호(한강로3가, ****)	일시: 2020-10-08 07:20 장소: 노량진동 청년주택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0. 11.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1. 31.
엄장선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12, ***동 ***호 (중산동,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일시: 2020-10-18 05:56 장소: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입구 내용: 제한 축하중 1.7톤 초과	처분일: 2020. 11.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1. 31.
오재영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399번길 **~**, ***호 (덕계동, *****)	일시: 2020-11-02 16:17 장소: 외발산동 216-85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0. 11.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1.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기정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 ***호(예산읍, *****)	일시: 2020-08-08 09:47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26톤 초과	처분일: 2020.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1. 30.
김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 ***호(화곡동)	일시: 2020-09-04 11:45 장소: 반포고등학교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0.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1.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1.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1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을 등록하고자 함.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주거사업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4.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주거사업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14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보육담당관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0. 12. 1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보육담당관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0.12.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보육담당관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15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취지 및 목적

「시민신고제」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5분을 인정(1일 최대 1시간 인정)했던 보상을 2021.1.1.(금)부터 폐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8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
 - 평일 08:00~20:00
(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4. 신고방법

-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5. 신고대상

-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라. 전용차로 :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에서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사.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한함.
- 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신고 보상 폐지

가.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5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하던 보상안을 2021.1.1.부터 폐지(2020.12.31.신고건까지 부여)

※ 폐지근거 : 공간정보담당관-13107(2020.11.16.)호

9. 시행일자 : 2021.1.1.(금)

10.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4, E-emil : emfmae@seoul.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1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2021.1.1. 字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빅데이터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빅데이터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20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통지도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4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통지도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22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갈등조정담당관 분임장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갈등조정담당관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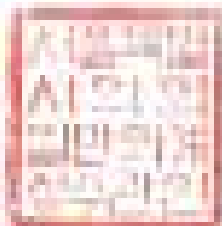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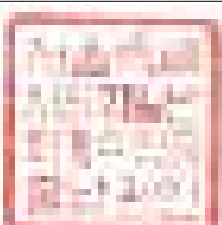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개선계획』(세무과-20346/ 2020.9.23.) 에 의한 징수관부서 지정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일반회계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 1. 1.	
	서울특별시의회 일반회계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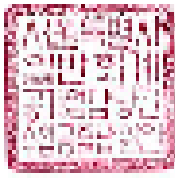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2021.1.1.字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기업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기업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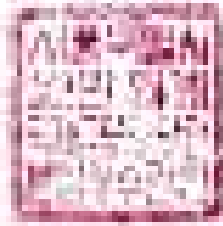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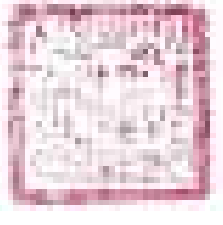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국제 교류담당관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국제 교류담당관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34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역

연번	자치구	공원명	위 치 (소재지)	지목	부지사용 계약면적 (㎡)
		용마산근린공원	2필지		385
1	중랑구	용마산근린공원	망우동 389-5	대지	284
2	중랑구	용마산근린공원	망우동 389-8	대지	101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0. 12. 18.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0. 12. 18. ~ 2023. 12. 1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8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3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37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개선계획[세무과-20346('20.9.23.)호]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38호

2020년도 제16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2020. 12. 17.(목) ~ 12. 21.(월)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사유: 코로나19)

다. 심의대상: 일반안전 총 19건 21작품

라. 심의결과: 승인 10작품, 부결 1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조각	하늘 숲	0		
2	강서구 등촌동 631-5, 6 서울축산농협종합시설신 축공사	조각	담다. 품다. 함께 어울리다		0	
3	양천구 신정3동 1150-41번지 일원 호반써밋목동	조각	Voyage(항해)	0		
4	은평구 통일로934 (불광1동500번지) 불광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조각	Shine	0		
5	중랑구 망우동 서울 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 서울양원 주거 복합신축공사	조각	아이스크림을 옮기는 방법		0	
6-1	구로구 신도림동 433-24번지 외39필지 신도림동 오피스텔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	조각	Nature 1	0		
6-2		조각	Nature 2		0	
7	강동구 고덕동 343-2 일원고덕강일 자족6BL 지식산업센터	조각	무한궤도	0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8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대치동구마을 제2지구 아파트	조각	Entropy-977	0		
9-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DMC 금호리첸시아	조각	ASMR:SANDFLOW	0		
9-2		조각	서클_Hopeful		0	
10	강남구 삼성동 19-1, 19-4 상아아파트2차	조각	수직의정원 부제1.13개의수직정원 부제2.정원의단면		0	
11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꿈의숲 한신더휴	조각	내리사랑- 사랑의 형상		0	
12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 (사당3주택재건축신축공 사)	조각	구축과 해체- 영원한 순환		0	
13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힐스테이트 녹번역	조각	자연과의 교감- Communion		0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4	동대문구 장안동 345-7,12,18 장안 현대썬앤빌 시그니처	조각	고요한 힘		0	
15	강동구 고덕동 93-2번지 일원 고덕강일1지구고덕 상업업무복합시설자족2- 3블럭	조각	233개의 수평정원 (233 Horizontal Gardens)		0	
16	강서구 등촌동 656-35외11필지 등촌동세림연립재건축신 축공사	조각	미래를 위한 한걸음 (Step by step for Future)		0	
17	용산구 한강로3가 65-9번지 용산트레이드센터	조각	心鏡 : 마음의 거울 Reflection of mind	0		
18	도봉구 창동 1-28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각	공간과 단상-Ⅱ	0		
19	종로구 서린동 99 SK 서린동 빌딩	조각	Deep Space	0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39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1.01.01. ~ 2021.01.14.)

나.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33-8398)
- 용 산 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02-2199-7363)
- 도시계획과 (☎02-2199-7412)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	증) 853,744.4	853,744.4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이촌동 415번지 일원	-	증) 27,629.5	27,629.5	
신설	특별계획구역②	이촌동 399-1번지 일원	-	증) 7,437.0	7,437.0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③	이촌동 404번지 일원	-	증) 60,998.0	60,998.0	
신설	특별계획구역④	이촌동 412번지 일원	-	증) 27,572.0	27,572.0	
신설	특별계획구역⑤	이촌동 402번지 일원	-	증) 31,820.3	31,820.3	
신설	특별계획구역⑥	이촌동 418번지 일원	-	증) 13,298.0	13,298.0	
신설	특별계획구역⑦	이촌동 430번지 일원	-	증) 48,557.4	48,557.4	
신설	특별계획구역⑧	이촌동 300-157번지 일원	-	증) 84,096.8	84,096.8	
신설	특별계획구역⑨	이촌동 300-301번지 일원	-	증) 17,191.1	17,191.1	
신설	특별계획구역⑩	이촌동 426번지 일원	-	증) 15,104.3	15,104.3	
신설	특별계획구역⑪	이촌동 300-11번지 일원	-	증) 17,621.5	17,621.5	
신설	특별계획구역⑫	이촌동 301-170번지 일원	-	증) 16,369.0	16,369.0	
신설	특별계획구역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원	-	증) 114,256.0	114,256.0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40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1.01.01. ~ 2021.01.14.)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98)
- 서 초 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02-2155-7348)
- 도시계획과(☎02-2155-6793)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758번지 일대	-	증) 81,643.2	81,643.2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방배동 760-1일원	-	증) 43,558.2	44,558.2	
신설	특별계획구역 2	방배동 772-13일원		증) 11,668.8	11,668.8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송파동 776-3일원	-	증) 11,757.7	11,757.7	

라. 관계도서 :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4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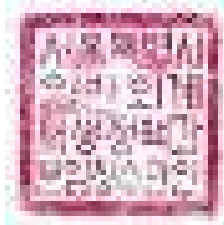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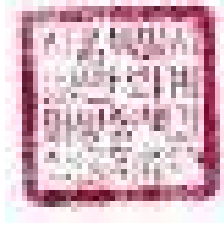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세외수입 비정수관 업무개선계획’ (세무과-20346, ’ 20.9.23)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재생정책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재생정책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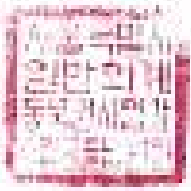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동북권사업과 분임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4.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동북권사업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0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1.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 1. 1.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 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육정책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0.12.23.	징수관 지정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육정책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2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택시물류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택시물류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3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가족담당관 분임징수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8.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가족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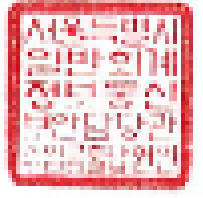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2021.1.1.字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남북협력담당관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4.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남북협력담당관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7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 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지역돌봄복지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0.12.28.	징수관 지정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지역돌봄복지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5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3.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60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개선계획」에 따른 징수관 지정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식품정책과 분임징수관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0.12.28.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식품정책과 수입금출납원	1.8cm × 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6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통정보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28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교통정보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6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등록사유: 『징수관 지정 및 회계관계 업무 정비요청』
(2020. 12. 03.)으로 인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0.12.2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66호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 발생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공고**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 발생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 부과하는 과징금) 제1항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서울-6110000 -1-00호	오티스E/V(유) (조익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층 (여의도동, 국제금융 투아이에프씨빌딩)	서울국제금융 센터(호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지관리를 잘못 하여 중대고장 발생 (법 제44조제1항 제8호)	과징금 1,350만원 부과 (2020.12.24.)
			마포태영아파트 (서울 마포구 소재)		과징금 1,200만원 부과 (2020.12.24.)
서울-6110000 -414-00호	하나로엠지엠(주) (박순봉)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1,601호 (번동, 서울빌딩)	상계주공11단지 아파트 제23호기 (서울 노원구 소재)	유지관리를 잘못 하여 중대고장 발생 (법 제44조제1항 제8호)	과징금 450만원 부과 (2020.12.24.)
			상계주공11단지 아파트 제11호기 (서울 노원구 소재)		과징금 450만원 부과 (2020.12.24.)
서울-6110000 -397-00호	서린E/V(주) (최성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13, 5층 (거여동, 대화빌딩)	위례경서프라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유지관리를 잘못 하여 중대고장 발생 (법 제44조제1항 제8호)	과징금 300만원 부과 (2020.12.24.)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6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 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 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시민봉사담당관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0.12.28.	징수관 지정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시민봉사담당관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7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1. 1.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 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올림픽추진과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1. 1. 1.	징수관 지정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올림픽추진과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7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친환경급식과 분임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0.12.30.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친환경급식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7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아이돌봄담당관 징수관 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1.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 1.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5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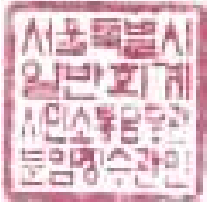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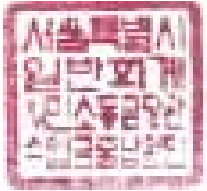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회계직인 등록
2. 직인 등록일자 : 2020.12.15.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 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분임징수관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0.12.15	징수관 지정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수입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0 - 1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2020.12.16.)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과목		2021년도 예산 (A)	2020년도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합 계		9,741,993,876	10,084,660,721	△342,666,845	△3.4
이전 수입	소계	9,363,171,630	9,379,777,687	△16,606,057	△0.2
	중앙정부이전수입	5,748,654,785	5,911,403,372	△162,748,587	△2.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05,550,292	3,458,475,868	147,074,424	4.3
	기타이전수입	8,966,553	9,898,447	△931,894	△9.4
자체 수입	소계	98,218,246	181,533,700	△83,315,454	△45.9
	교수-학습활동수입	2,140,684	106,412,926	△104,272,242	△98.0
	행정활동수입	4,900,646	5,321,044	△420,398	△7.9
	자산수입	11,891,892	15,261,694	△3,369,802	△22.1
	이자수입	7,693,431	7,100,677	592,754	8.3
	금융자산회수	19,190,620	22,010,292	△2,819,672	△12.8
	기타수입	52,400,973	25,427,067	26,973,906	106.1
차입	소계	0	0	0	-
	지방교육채	0	0	0	-
기타	소계	280,604,000	523,349,334	△242,745,334	△46.4
	전년도이월금	280,604,000	523,349,334	△242,745,334	△46.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2021년도 예산 (A)	2020년도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9,741,993,876	10,084,660,721	△342,666,845	△3.4
1. 유아및초중등교육	9,433,593,128	9,785,174,400	△351,581,272	△3.6
가. 인적자원운용	5,059,174,446	4,755,614,869	303,559,577	6.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441,004,093	507,032,348	△66,028,255	△13.0
다. 교육복지지원	1,221,456,353	1,355,253,171	△133,796,818	△9.9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87,871,865	130,938,893	△43,067,028	△32.9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169,899,510	2,245,096,899	△75,197,389	△3.3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54,186,861	791,238,220	△337,051,359	△42.6
2. 평생·직업교육	31,018,031	28,910,876	2,107,155	7.3
가. 평생교육	30,098,493	28,099,238	1,999,255	7.1
나. 직업교육	919,538	811,638	107,900	13.3
3. 교육일반	277,382,717	270,575,445	6,807,272	2.5
가. 교육행정일반	113,723,357	107,261,659	6,461,698	6.0
나. 기관운영관리	36,063,521	43,667,795	△7,604,274	△17.4
다.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17,530,709	109,645,991	7,884,718	7.2
라. 예비비및기타	10,065,130	10,000,000	65,130	0.7

구 고 시

용산구고시 제2020 - 222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2호(2011.09.08.)로 결정(변경)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용 산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남동 76-6호와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의 저촉되는 면적이 매우 경미하여 측량으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지적선과 도시계획시설(도로)선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01	12	국지도로	330	한남동 704-19	한남동 622-4	일반도로	서고제188호 (78.05.01.)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501	12	국지도로	330	한남동 704-19	한남동 622-4	일반도로	서고제188호 (78.05.01.)	

※ 상기시설 외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변경사유서

- 한남동 76-6호와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이 저촉되어 있으나, 저촉면적이 매우 경미하여 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선형변경을 통해 지적선과 도시계획시설(도로)선을 일치시키고자 함.

③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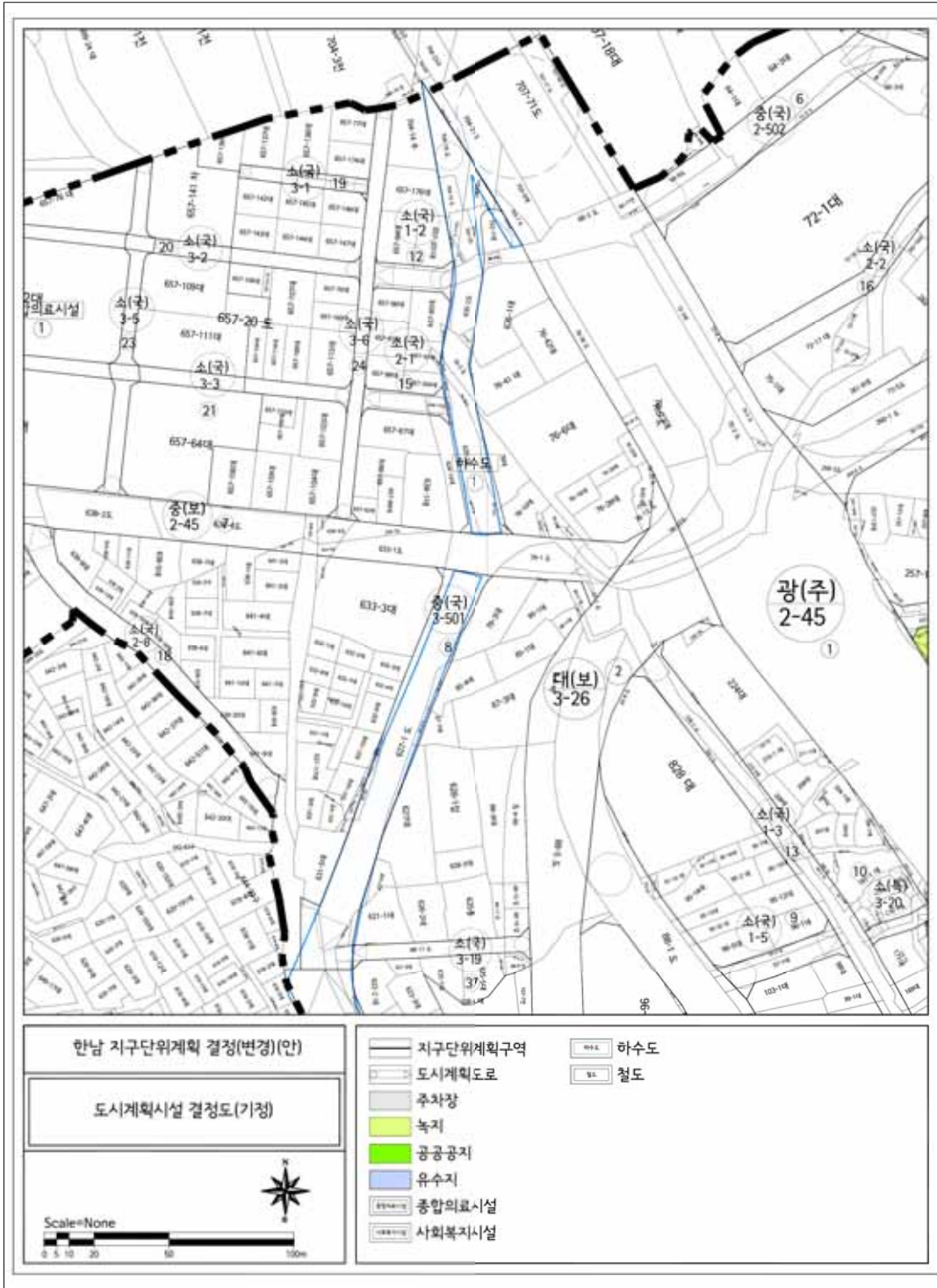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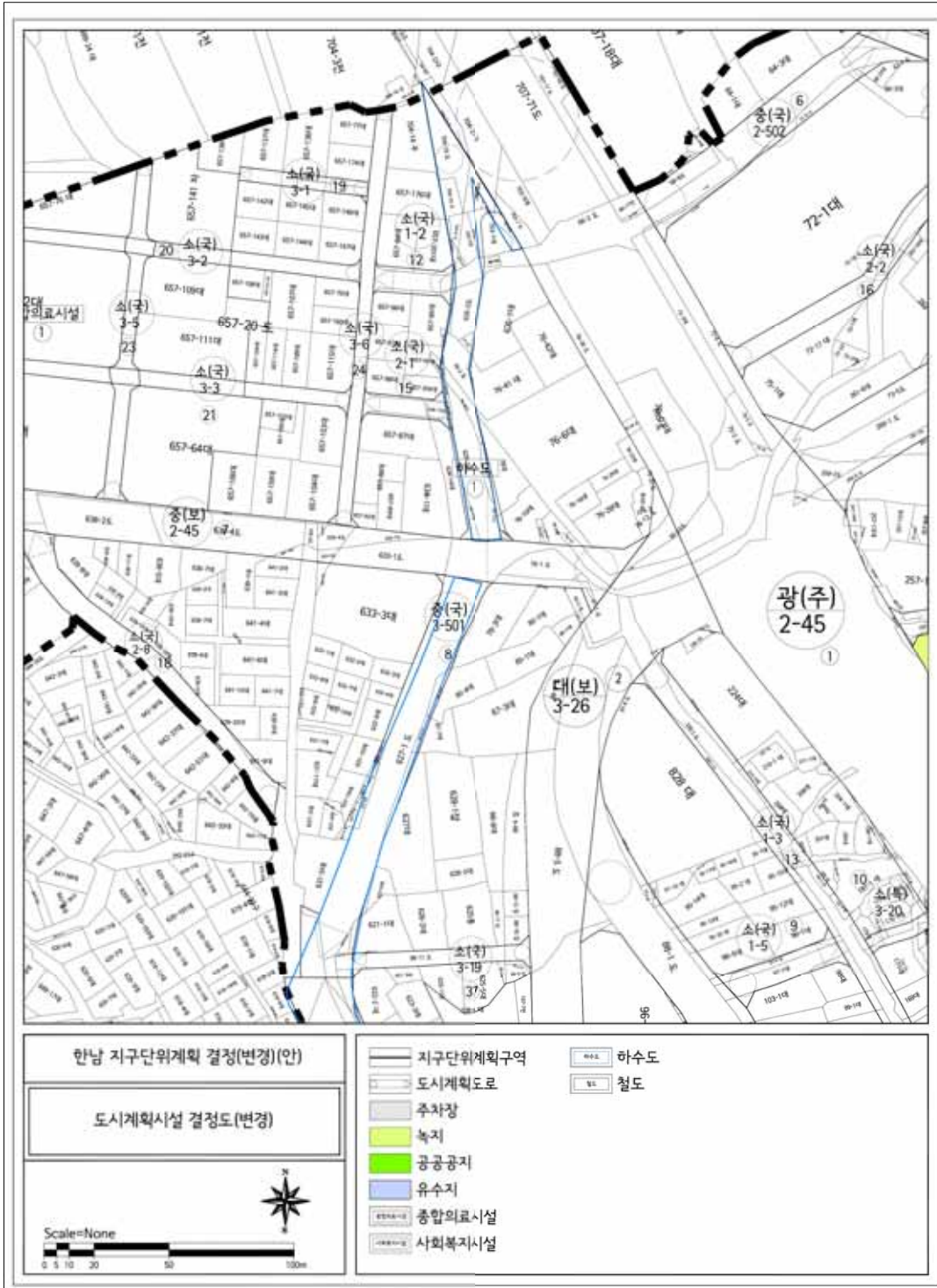
I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V.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20 - 2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안)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 및 서울시고시 제251호(2016.8.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56호(2012.3.15.)로 공원조성계획(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8-187호(2018.12.27.)로 변경 인가 고시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및 준공예정일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41-29번지 등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안산도시자연공원(송죽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의 면적 : 5,791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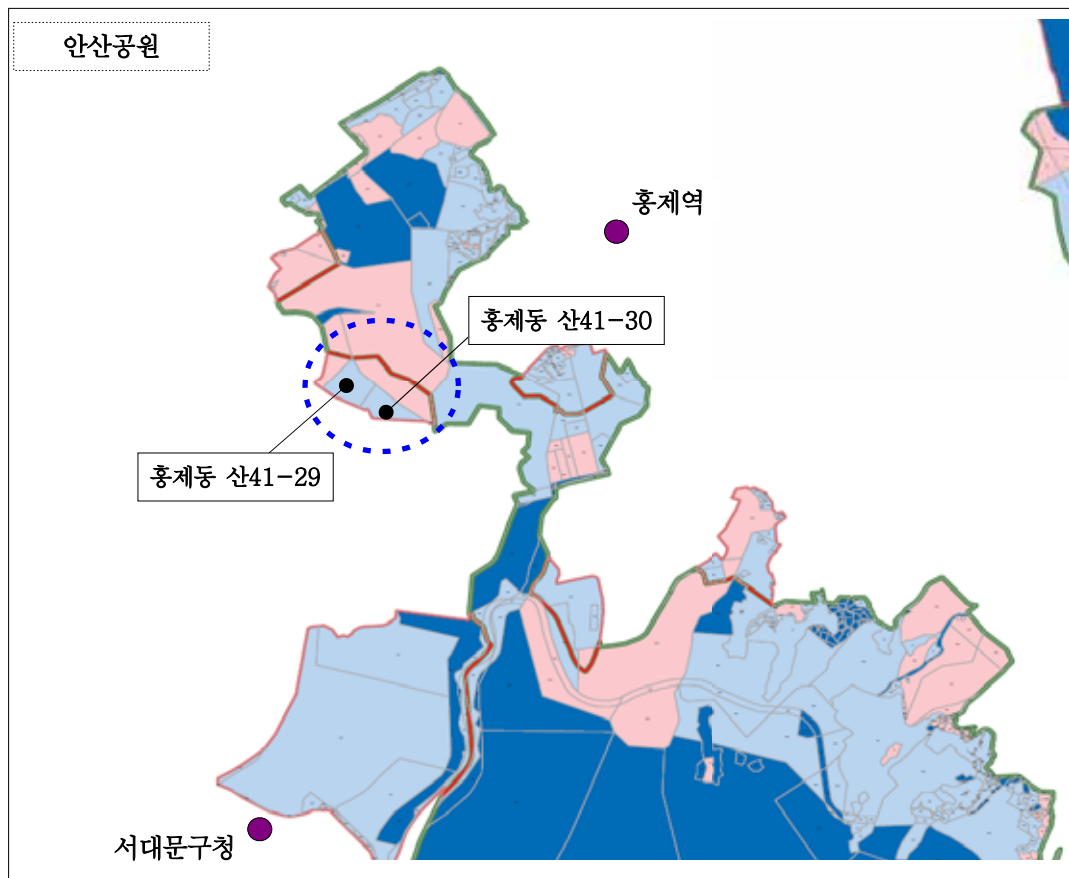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사. 사업의 주요내용 : 공원 조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39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홍제동 산41-29	임	3,236	3,236	서울 특별시					
홍제동 산41-30	임	2,555	2,555	서울 특별시					

☐ 토지위치 및 지도


마포구고시 제2020 - 217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9호(1976.3.24.)로 도시계획시설(녹지)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20-66호(2020.5.28.)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성산녹지에 대하여,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20-1490호(2020.12.10.)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마포구 성산동 산4-212 외 3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성산완충녹지 보상

다. 사업의 규모: 3,258㎡(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비치장소: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3153-95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지분)
	동	번지					성명	주소(등기)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3,258	3,258							
1	상암	산4-212	임야	618	618	월드컵대로 변 녹지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곡1로 *** (덕은동)				1/6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 (덕은동)				1/6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 (덕은동)				1/6
							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 (덕은동)				3/6
2	성산	산53-18	임야	450	450	산책로	서울특별시					
3	성산	산53-63	임야	800	800	산책로	서울특별시					
4	성산	산53-64	임야	1,390	1,390	산책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0 - 2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4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49호(2020.5.14.)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74호(2020.11.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54 등 16필지
- 면 적 : 5,990㎡
- 내 용 : 토지보상 5,990㎡, 지장물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물건조서 변경)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5,990	5,990							
1	상도동 산65-25 4	임야	1,547	1,54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000	1/1				
2	상도동 산64-36 1	임야	87	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파스빌딩 0층	상도00 00지역 주택조합	1/1			신탁	
3	상도동 산57-11 6	임야	215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0	대한00 공사	1/1				
4	상도동 산57-11 7	임야	1,861	1,8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0000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000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0000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5	상도동 산57-11 9	임야	487	4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0000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000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0000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6	상도동 산57-11 8	임야	120	1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000호(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일로 100, 303동 0000호(식사동, 은행마을)	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000호(심미아파트)	최○수	1/5				
7	상도동 산65-25 3	임야	393	393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000	1/1				
8	상도동 산80-33	임야	57	57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9	상도동 산80-34	임야	54	54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상도동 산65-18 3	임야	96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7 현대주택디-○	백○치	1/8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신용회복관리부)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 ○○○상호저축 은행의파산관재 인○○○○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	가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60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2-○○○○	백○숙	16950 /16200 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3-○○○○	백○숙	2268.7 5 /16200 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백○정	2268.7 5 /16200 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지주공아파트 109-○○○	백○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55, ○○○호(탄방동, 위즈아파트)	백○희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39-2, ○○○호(논현동)	백○희	1/8	국가	처분청 : 서울중앙지방법 찰청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7-18 비○○호	유○욱	87/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김○아	87/9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3길 24, ○○○호(상도동, 두양빌라)	백○우	9900/ 162000				
11	상도동 산65-15 1	임야	43	43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83-○○○	김○석	1/1				
12	상도동 산57-10 5	임야	135	135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3	상도동 산57-10 6	임야	207	2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4	상도동 산65-25 5	임야	424	42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	재단법인 ○○○	1/1				
15	상도동 산65-25 6	임야	253	253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	재단법인 ○○○	1/1				
16	상도동 산64-36 0	임야	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층	상도○○ ○○지역 주택조합	1/1			신탁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8)	건물	10㎡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김○숙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노○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8㎡	1							
		담장	14.5m	1							
		담장	38.3m	1							
		벚나무	B17	1							
		수목	B4	1							
		수목	H1.2	2							
		염나무	H1.0~1.5	4							
		살구나무	B8~15	2							
		영산홍	H0.3	2							
		라일락	B13~16	2							
2 (당초)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김○분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이○분	거주자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8㎡	1							
		화장실	2㎡	1							
		벚나무	H1.5~2.0	10							
		수목	H1.0	1							
		개나리	H1.0	20							
2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김○분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이○분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6㎡	1							
		화장실	2㎡	1							
		벚나무	H1.5~2.0	10							
		수목	H1.0	1							
		개나리	H1.0	20							
3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11)	건물	19㎡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	김○찬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감나무	R6	1							
		수목	R3	1							
		아사히베리	H1.2~2.0	20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염나무	H1.5~2.0	6							
		사철나무	H1.0~3.0	60							
		모과나무	H5.0	1							
4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23)	건물	1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28㎡	1							
		담장	44.8m	1							
		수국	H0.3	10							
		남천	H1.0	15							
		사철나무	H1.0~1.5	210							
		벗나무	B9~21	7							
		동백나무	H1.0	2							
		자두나무	H0.8	2							
		대추나무	H0.8	1							
		주목	H1.2	1							
		영산홍	H0.2~0.3	20							
		남천	H1.0	5							
		키위	H1.0	2							
		공작단풍	H1.0	1							
		화양목	H0.4~0.5	100							
		개나리	H1.0	20							
		대문	3.3m	1							
		촉백나무	H0.3~0.5	20							
		장미		50							
		능소화		1							
		나무화분		9							
		화단수석		5							
		적벽돌		200							
		흰벽돌		50							
		태양광등불		6							
5 (당초)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5)	건물	43㎡	1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0000호	이○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2㎡	1							
		창고	13㎡	1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5 (변경)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5)	건물	43㎡	1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0000호	이○현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수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2㎡	1							
		창고	13㎡	1							
6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7)	건물	49㎡	1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36, 107동 000호(용두동)	윤○열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7㎡	1							
		사철나무	H0.3~1.0	10							
		회양목	H0.3	1							
		항매화	H0.8	30							
7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9)	건물	51㎡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3㎡	1							
		창고	13㎡	1							
		창고	9㎡	1							
8	상도동 산57-118 (상도로 60길 49-3)	건물	23㎡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임○수				무허가 건물
		창고	25㎡	1							
		창고	9㎡	1							
		창고	10㎡	1							
		탱자나무	H2.0	3							
		수목	H0.8	1							
		수목	R10	1							
		회양목	H0.4	1							
		개나리	H1.0	1							
9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0)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윤	동작구 상도동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부속건물	4㎡	1							
		창고	3㎡	1							
		창고	3㎡	1							
		사철나무	H0.8~1.5	270							
		라일락	H1.5	7							
		목란	H1.0	2							
		산수국	H0.8	1							
		영산홍	H1.0	8							
		능소화	H4.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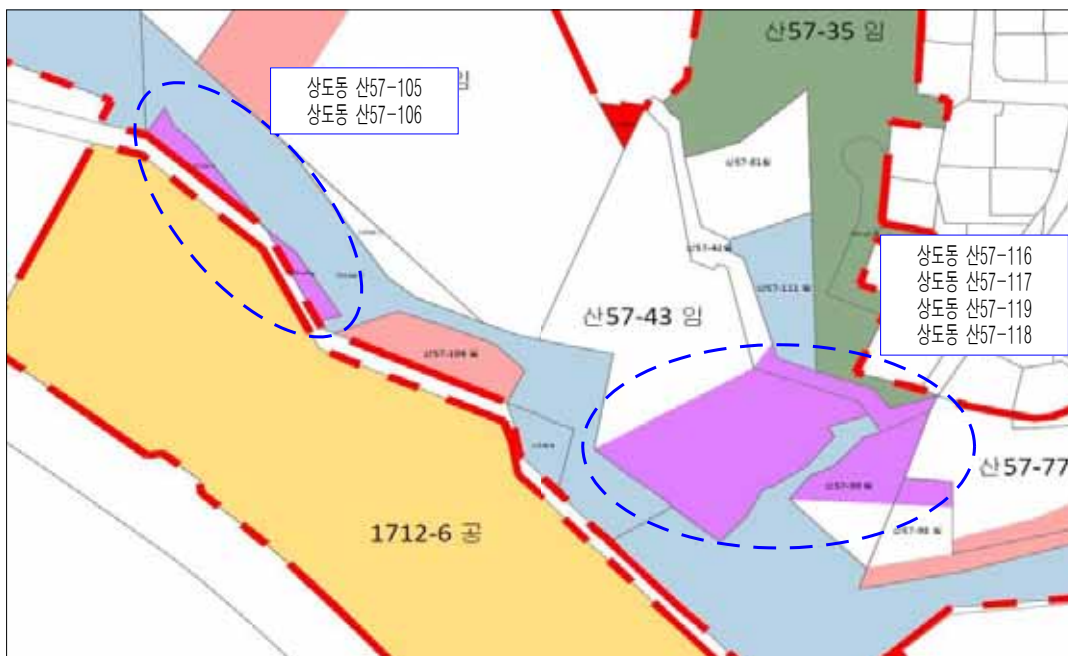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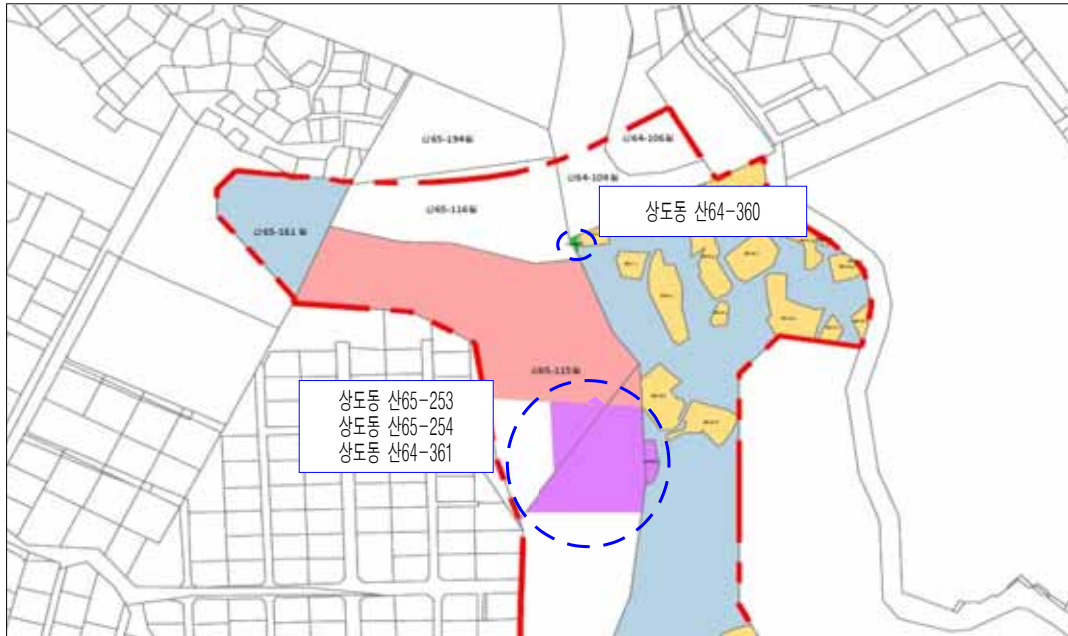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매자나무	H0.4	5								
		뽕나무	R11	4								
		아로니아	H0.5	1								
		보리수나무	R17	2								
		주목	R13	1								
		앵두나무	H1.0	1								
		밤나무	B22	5								
		감나무	R15	1								
		포도나무	H2.0	2								
		단풍나무	R8	4								
		두릅나무	H0.3~1.0	80								
		향나무	R15	2								
		황매화	H1.0~1.5	70								
		회양목	H0.5	23								
		앵두나무	R10	2								
		단풍나무	R10	1								
		구지뽕	H1.5~2.0	4								
		매실나무	R20	1								
		가시오가피	H1.5	5								
		골담초	H1.5	2								
		개나리	H1.5	20								
		인동초		2								
		대추나무	H2.5	1								
		황매화	H1.0	10								
		장미	H1.5	4								
		회양목	H0.5	10								
		은행나무	B30	1								
10 (당초)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	김○수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1								
		주목	H0.5	3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향나무	H4.0	1			동작구 상도로 60길 ○○	김○숙	거주자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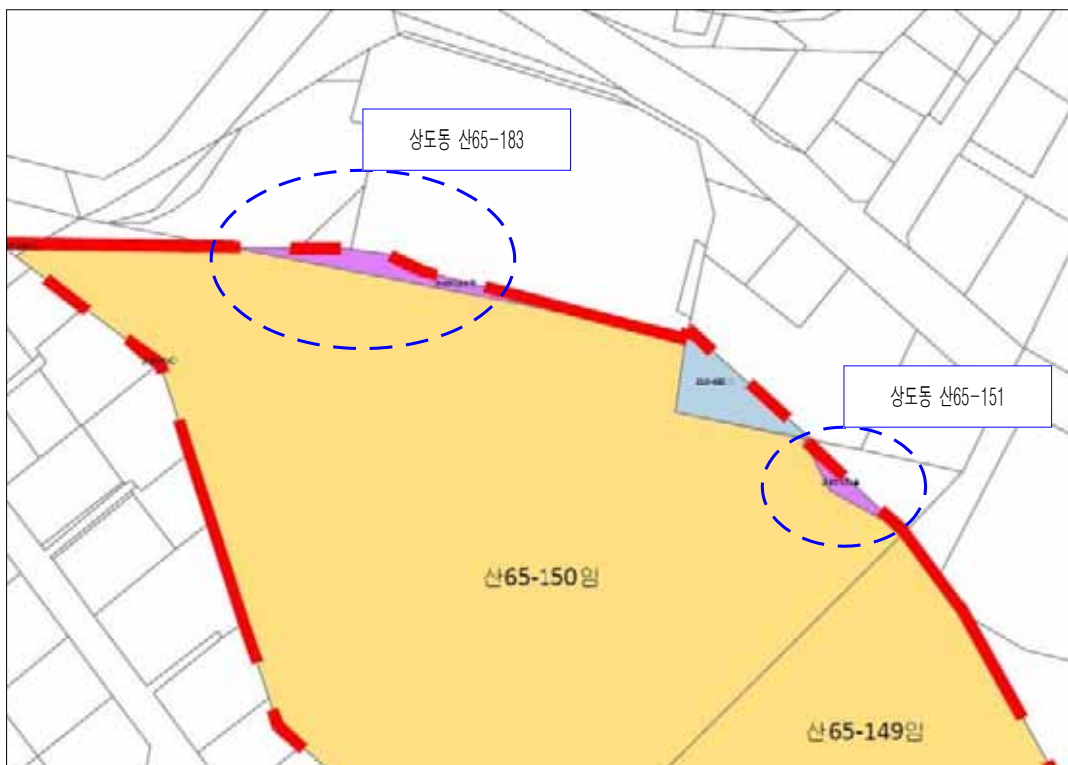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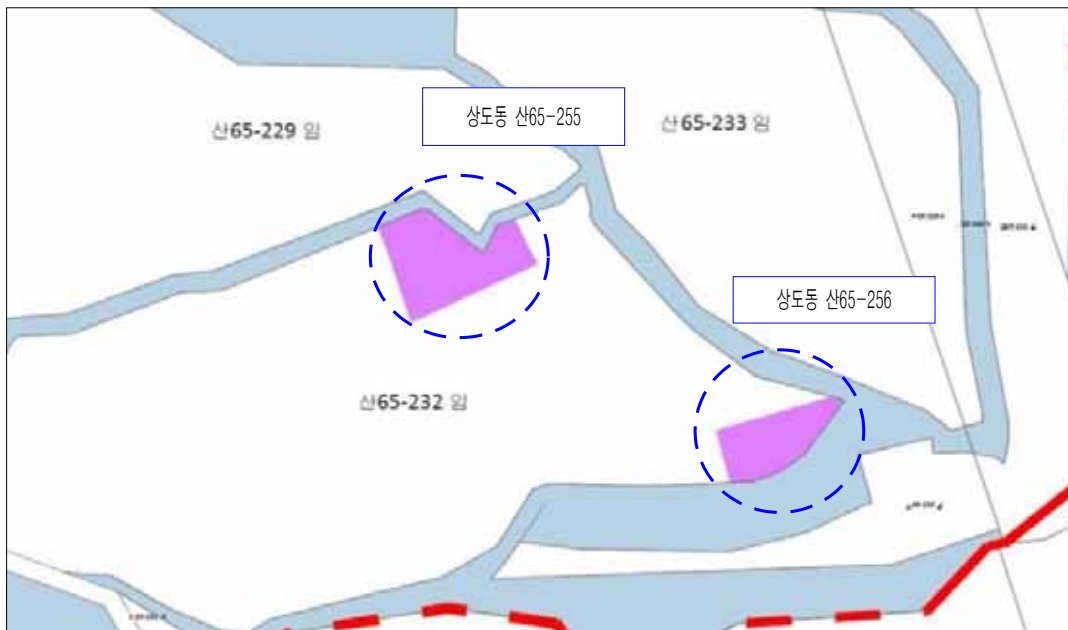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산수국	H0.8	2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박○철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이○임	거주자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	1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1							
		살구나무	R5~15	2							
		보리수나무	H3.0	1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2							
		건물	25㎡	1							
		창고	5㎡	1							
10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1							
		주목	H0.5	3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향나무	H4.0	1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산수국	H0.8	2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	1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1							
		살구나무	R5~15	2							
		보리수나무	H3.0	1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2							
11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25㎡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박○철				무허가 건물
		창고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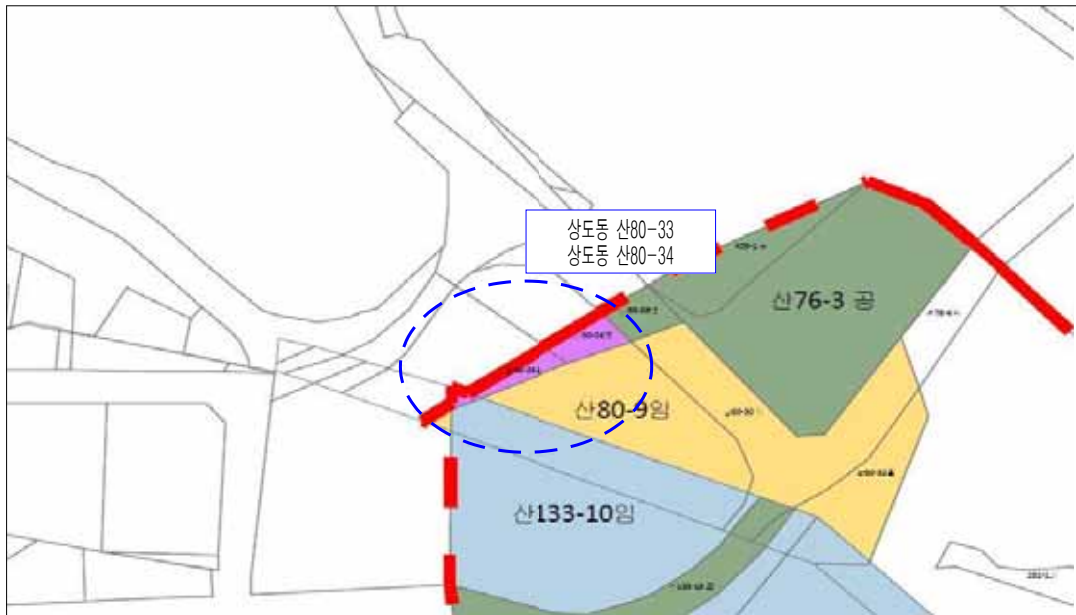
영업권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상호	수량	영업권의 종류	영업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7)	건물	동아기업사	1	제조업 (제조, 도매)	관악구 성현로 80, 127동 0000호	김○수				물건조서 연번6번 기존 무허가 건물

사업 위치도







관악구고시 제2020 - 2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관악구고시 제2020-48호(2020.4.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관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분할 변경코자 관악구공고 제2020-2009호(2020.12.10.)로 (변경)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647-20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2지역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 4) 면 적 : 156㎡(1필지)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변경내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역 및 실시계획인가 분할(1지역, 2지역)

바. 사업기간 : 2020. 4. 9.~2025. 4. 8.(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아.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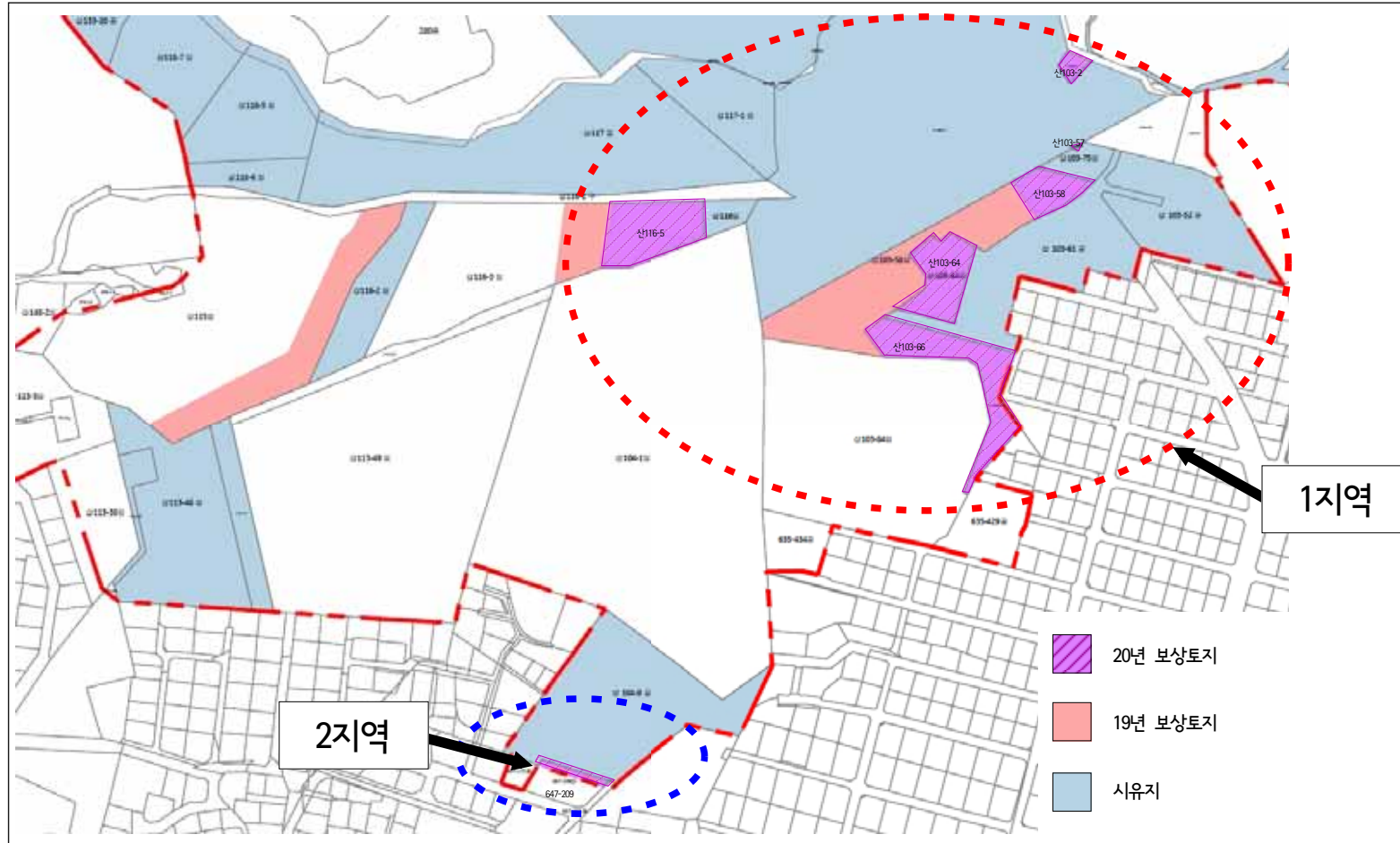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2지역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실이용사 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필지		837	156								
1	봉천동 647-209	대지	837	156	대지	박성림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A동 ***호				대지권
						이남례	23.25/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호				
						고영달	23.25/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호				
						정순덕	46.50/74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가길**, ***호(사당동)				
						하순옥	46.50/744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조령서로73번길***				
						이성관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윤영부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호				
						장이순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호				
						배종례	23.25/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김오랑	23.25/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조미자	46.50/74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동 ***호				
						이기찬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방승연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호				
						조성팔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조상현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배수연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2길**, ***동 ***호				
						김소연	46.50/74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4길**, ***호(응암동)				
						이상선	46.50/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바길***, *동 ***호				

※ 변경 : 당초 관악구고시 제2020-48호(2020.4.9.) 사업구역 내 편입필지인 봉천동 647-209번지를 별도 실시계획인가(2지역)로 분할 시행

보상토지 용지도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관악구고시 제2020 - 22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관악구고시 제2020-48호(2020.4.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관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분할 변경코자 관악구공고 제2020-2009호(2020.12.10.)로 변경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116-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1지역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 4) 면 적 : 6,044㎡(6필지)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변경내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역 및 실시계획인가 분할(1지역, 2지역)

바. 사업기간 : 2020. 4. 9.~2025. 4. 8.(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변경)

아.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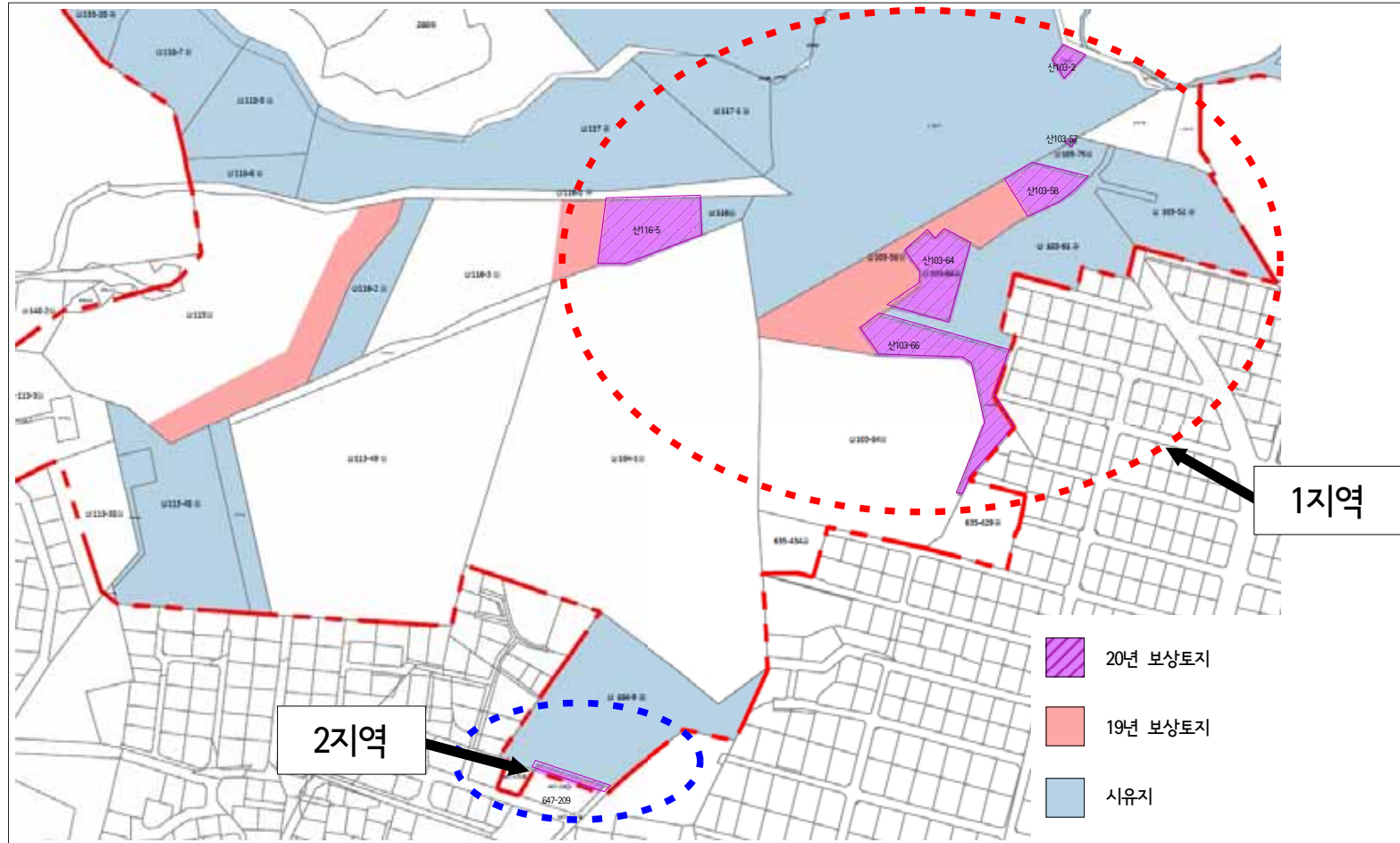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1지역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실이용사 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6필지		6,044	6,044								
1	봉천동 산116-5	임야	1,660	1,660	임야	조은숙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 ***동 ****호				
						재단법인한국기독교 예덴성회선교재단	1/3	경기 가평군 청평면 예덴벚꽃길 ***				
2	봉천동 산103-64	임야	1,412	1,412	임야	송백수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	봉천동 산103-57	임야	7	7	임야	송백채	1/4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미사동)				
						송대용	1/4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미사동)				
4	봉천동 산103-58	임야	764	764	임야	송달용	1/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 ***동 ****호				
5	봉천동 산103-66	임야	2,003	2,003	임야	송백수	1553/2003 중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송백채	1553/2003 중1/4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미사동)				
						송대용	1553/2003 중1/4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미사동)				
						송달용	1553/2003 중1/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 ***동 ****호				
						강태석	450/2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봉천동)				
6	봉천동 산103-2	임야	198	198	임야	이용구	단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길 **, ***호				

※ 변경 : 당초 관악구고시 제2020-48호(2020.4.9.) 사업구역 내 편입필지인 봉천동 647-209번지를 별도 실시계획인가(2지역)로 분할 시행

보상토지 용지도

○ 사 업 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상도근린공원(관악)



서초구고시 제2020 - 88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77번지 일대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0-1496호(2020.10.15.)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변경)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4번지 등 18필지
-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4번지 등 1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서리풀근린공원)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경 전: 7,132㎡
- 2) 변경 후: 6,791㎡

라. 주요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2020-254호, 2020.06.29.)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내 면적 보상

마.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귀속결정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	귀속결정
공원	서리풀	근린공원	서초동 산177번지 일대	6,79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30조에 근거함

－ 귀속토지조서 :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7필지		18,511	6,791						
1	반포동 505-4	대지	417.0	275	학교법인 ***학원	서울 중구 명동2가 *	1			
2	서초동 산180	임	776.0	776.0	이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081번길***, ***동 ****호	4/18			
					이옥*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	1/18	박영*	충북 괴산군 증평읍 중동 **	가압류
								한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아파트 ***동 ****호	가압류
								한양*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아파트 ***동 ****호	가압류
								안정*	충북 괴산군 증평읍 ***	가압류
					정영*	서울 동작구 서대로14길 **	1485/5400			
					박숙*	서울 서초구 효령로 ***-*, *동 ***호	48/5400			
					이종*	서울 서초구 도곡로1길 ***-*, ***호	32/5400			
					이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호	32/5400			
					이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25길 **, ***호	32/5400			
					이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번길 ***, ***호	126/5400			
					이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동 ****호	45/5400			
3	서초동 산177	임	12,775.0	1,197.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 ***호	1/18	****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	근저당권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1/3			
					이선*	서울 서초구 방배동 ****-**	1/18			
					이옥*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	1/18	박영*	충북 괴산군 증평읍 중동 **	가압류
								한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아파트 ***동 ****호	가압류
								한양*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아파트 ***동 ****호	가압류
								안정*	충북 괴산군 증평읍 ***	가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정영*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길 **	1485/5400			
					박숙*	서울 서초구 효령로***-, *동 ***호	48/5400			
					이종*	서울 서초구 도곡로1길 **-, ***호	32/5400			
					이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호	32/5400			
					이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25길 **, ***호	32/5400			
3	서초동 산177	임	12,775. 0	1,197.0	이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7번길 ***, ***호	126/5400			
					이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동 ***호	45/54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 ***호	1/18	****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	근저당권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1/3			
4	서초동 산183-7	임	147.0	147.0	정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동 ***호	1/4			
					정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아파트 *동 ***호	1/4			
					정두*	서울 강남구 논현동 ***-** **빌라 ***호	4/200			
					정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	18/200			
					정혜*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아파트 *-***	8/200			
					정위*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아파트 *-***	12/200			
					정혜*	과천시 중앙동 ** **아파트 ***-***	7/200			
					정은*	평택군 오성면 양교리 산***-*	7/200			
					안재*	서울 마포구 창전동 *-***	20/200			
					안재*	서울 양천구 목동 *** **아파트 ***-***	10/200			
					엄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 ***동 ***호	14/200			
5	반포동 산94-9	임	35.0	35.0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	1			
6	방배동 산17-2	임	111.0	111.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이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	근저당권
								이재*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 **아파트 *-***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방배동 산17-25	임	97.0	97.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근저당권
8	방배동 산17-47	임	88.0	88.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근저당권
9	방배동 산17-4	임	608.0	608.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10	방배동 산17-41	임	1,373.0	1,373.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11	방배동 산18-4	임	107.0	107.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근저당권
12	방배동 산18-5	임	2.0	2.0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층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근저당권
13	방배동 167-32	대지	145.0	145.0	심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길 **	1			
14	방배동 167-33	대지	136.0	136.0	김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길 **	1			
15	반포동 산94-13	임	34.0	34.0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	1			
16	방배동 176-1	전	1,408.0	1,408.0	윤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아파트 ***동 ****호	1/3			
					윤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 ***아파트 *동 ***호	1/3			
					윤희*	서울 강남구 일원동 *** **아파트 ***동 ****호	1/3			
17	반포동 550-36	대지	252.0	252.0	이평*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길 **, ***호	1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호	근저당권
								임희*	서울 서초구 서운로*길 ***-**, ***동 ***호	근저당권 부질권
								권교*	서울시 중구 퇴계로 **, ***동 ****호	근저당권

※ 지적분할 등으로 지번 및 면적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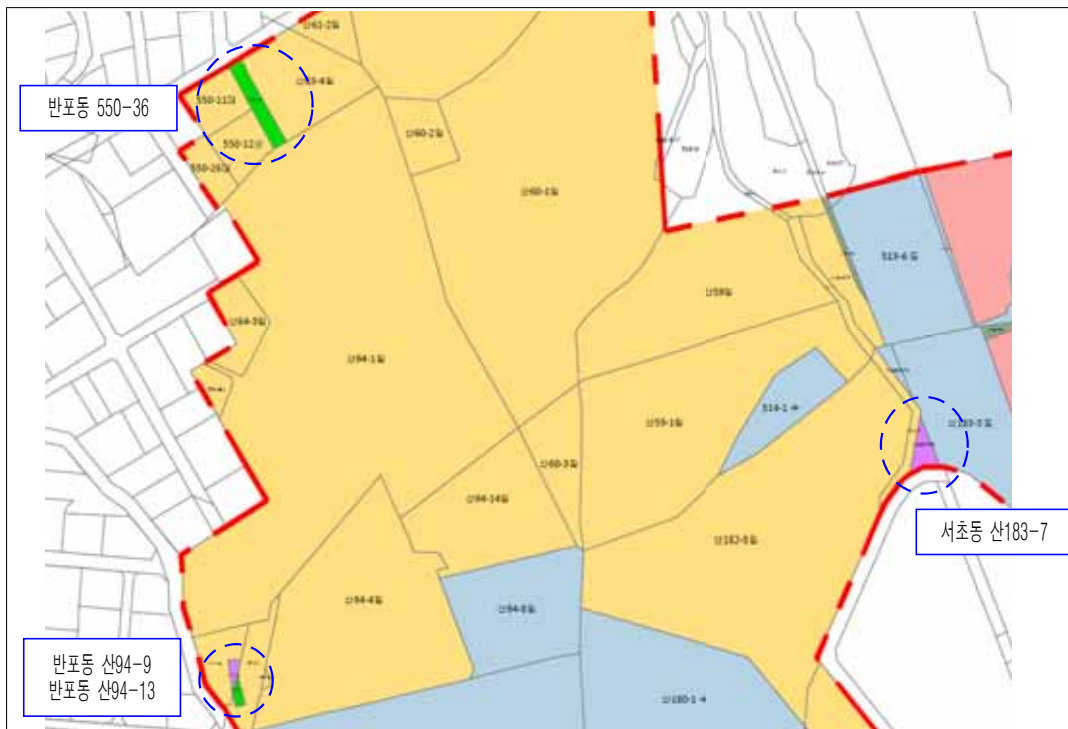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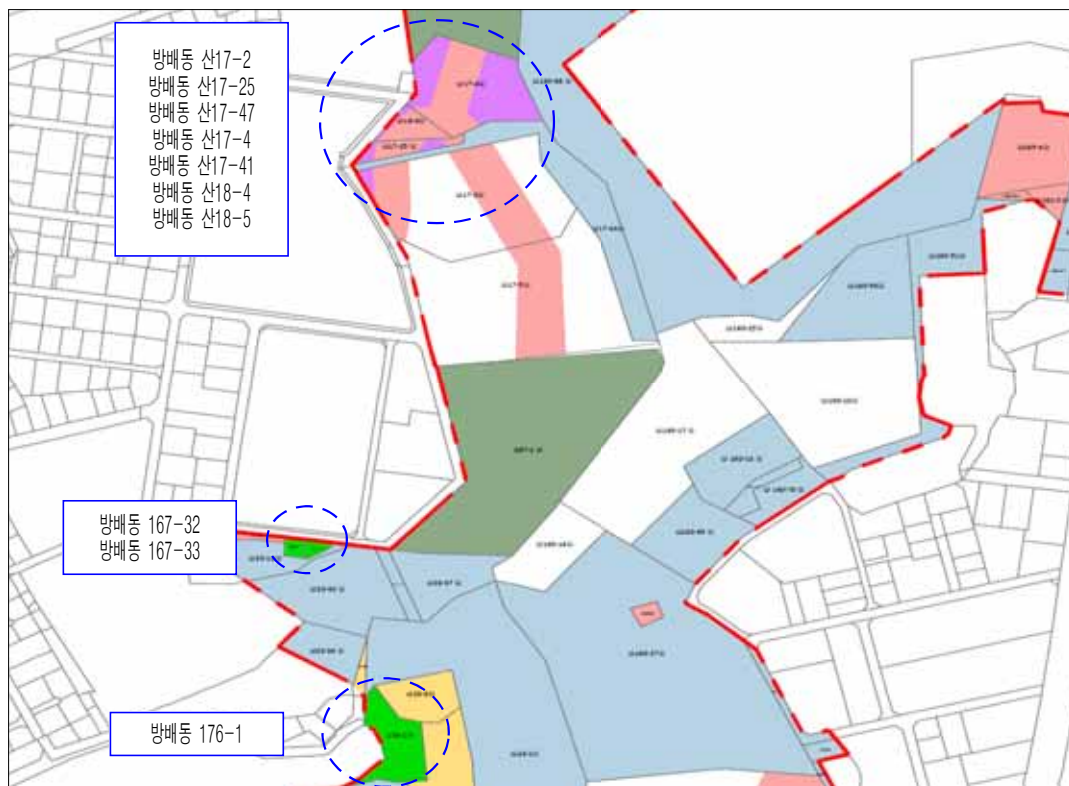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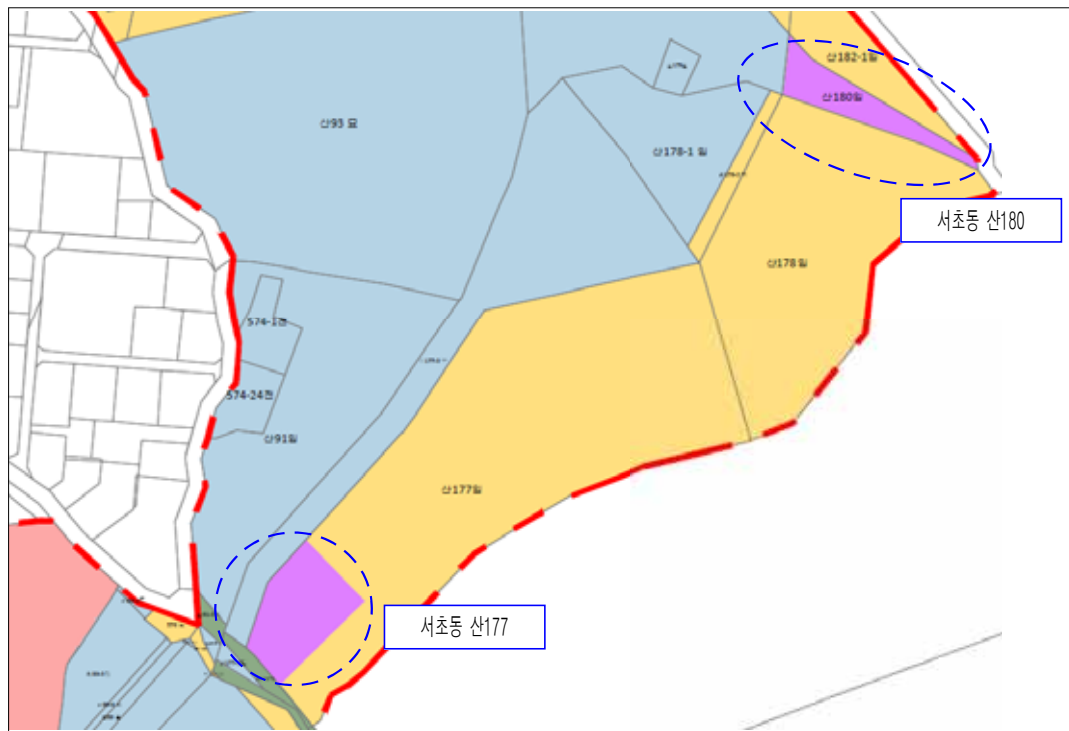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방배동 167-32 (방배로18길 66)	건축물 (지층)	연와조	15.86	주택	심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길 **			
		건축물 (1층)	연와조	66.12						
2	방배동 167-33 (방배로18길 70)	건축물 (지층)	연와조	14.21	주택	김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길 **			
		건축물 (1층)	연와조	59.51						

법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토지 등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소 유 자(귀속 전)		소 유 자(귀속 후)	
					성 명	면적(㎡)	성 명	면적(㎡)
1	서초동 산180	임	776.0	776.0	경찰청	258.7	서울특별시	258.7
2	서초동 산177	임	12,775.0	1,197.0	교육부	399	서울특별시	399

보상토지 용지도





서초구고시 제2020 - 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호(2014.4.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148-1번지 일대의 청계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0-1858호(2020.12.17.)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148-1번지 등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 경 전: 10,377㎡
- 2) 변 경 후: 9,536㎡

라. 주요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공원) 부분의 실측결과 반영(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에 의한 변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차.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청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변경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0,377	10,377						
1 ~ 2	원지동 산4-83	임	1,546	1,5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	오정*				
	원지동 산4-84		254	254						
3	원지동 산117-2	임	1,200	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박춘*	317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7 소만마을 6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41-14 일우테라스 102동 ***호	김영*	7735/25785			
4	원지동 148-1	답	694	694	8727 우드워드 코트 랜초 쿠팡가 캘리포니아 91730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207등 ***호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안규*				
5 ~ 6	원지동 산44-1 원지동 산44-2	임	450	45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4558 나파 이스트힐드아베뉴41**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2604 일빈 크로브 부로슴 *번지	선우 **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2101 산디아고 웨스트 하버 드라이브 700번지 아파트 ****	선우 **	1/6			
			3,750	3,750	미합중국 뉴저지주07078 인벨니스 코트쇼트힐스 *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마릴랜드주 21202 벨터모아 사우스 프리지덴트-가 250번지 유니트***	선우**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4552 카사-트로벨리 파인빌 서클****번지	선우*	1/6			
7	원지동 421	전	83	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이용*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대*	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원*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건*	2/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춘*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훈*	2/16			
8	원지동 산33-2	임	1,400	1,400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56*	최명*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2길 *	정승*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호* 개발 주식회 사	3/5			
9	원지동 산4-86	임	1,000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이상*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김연*	1/2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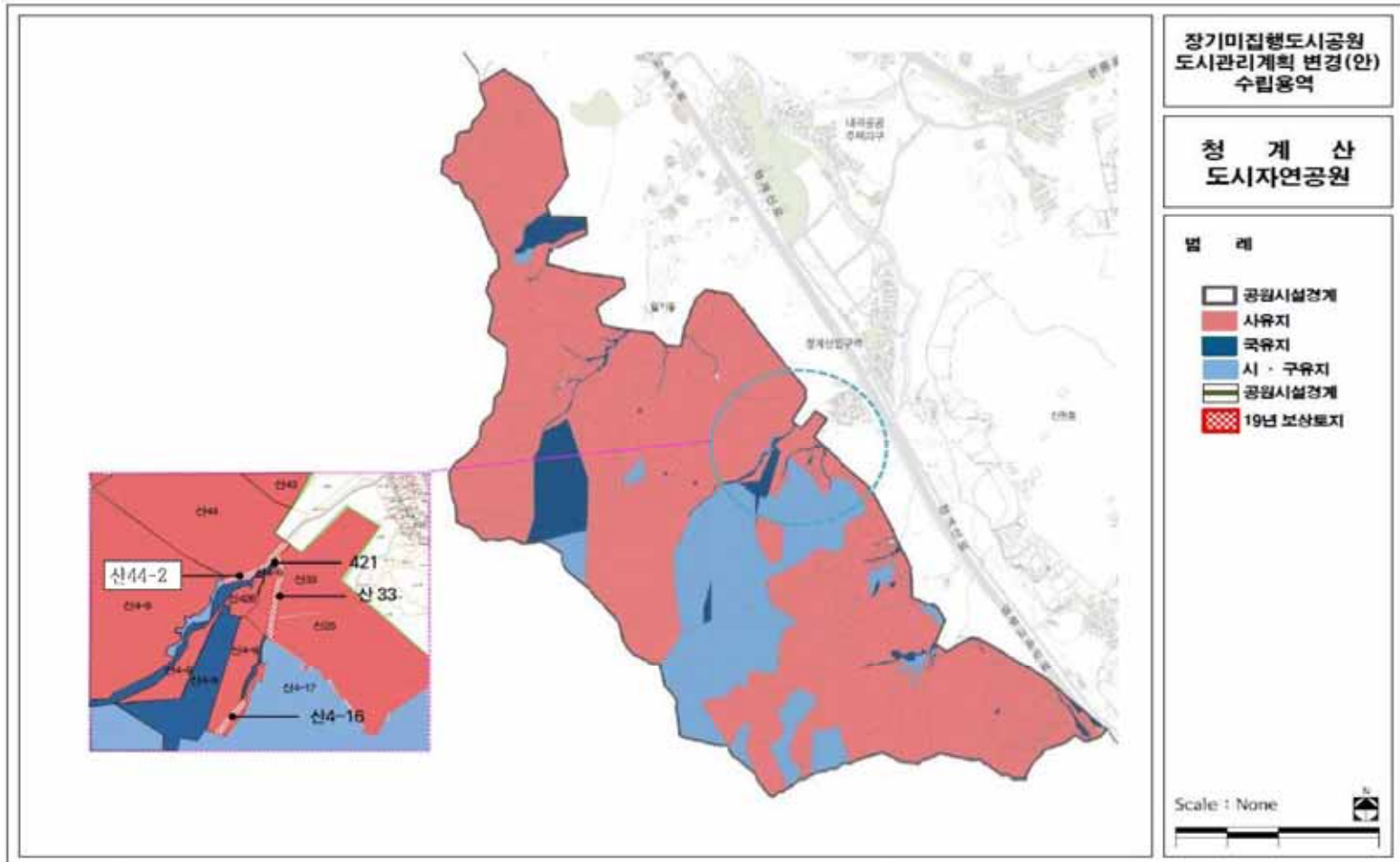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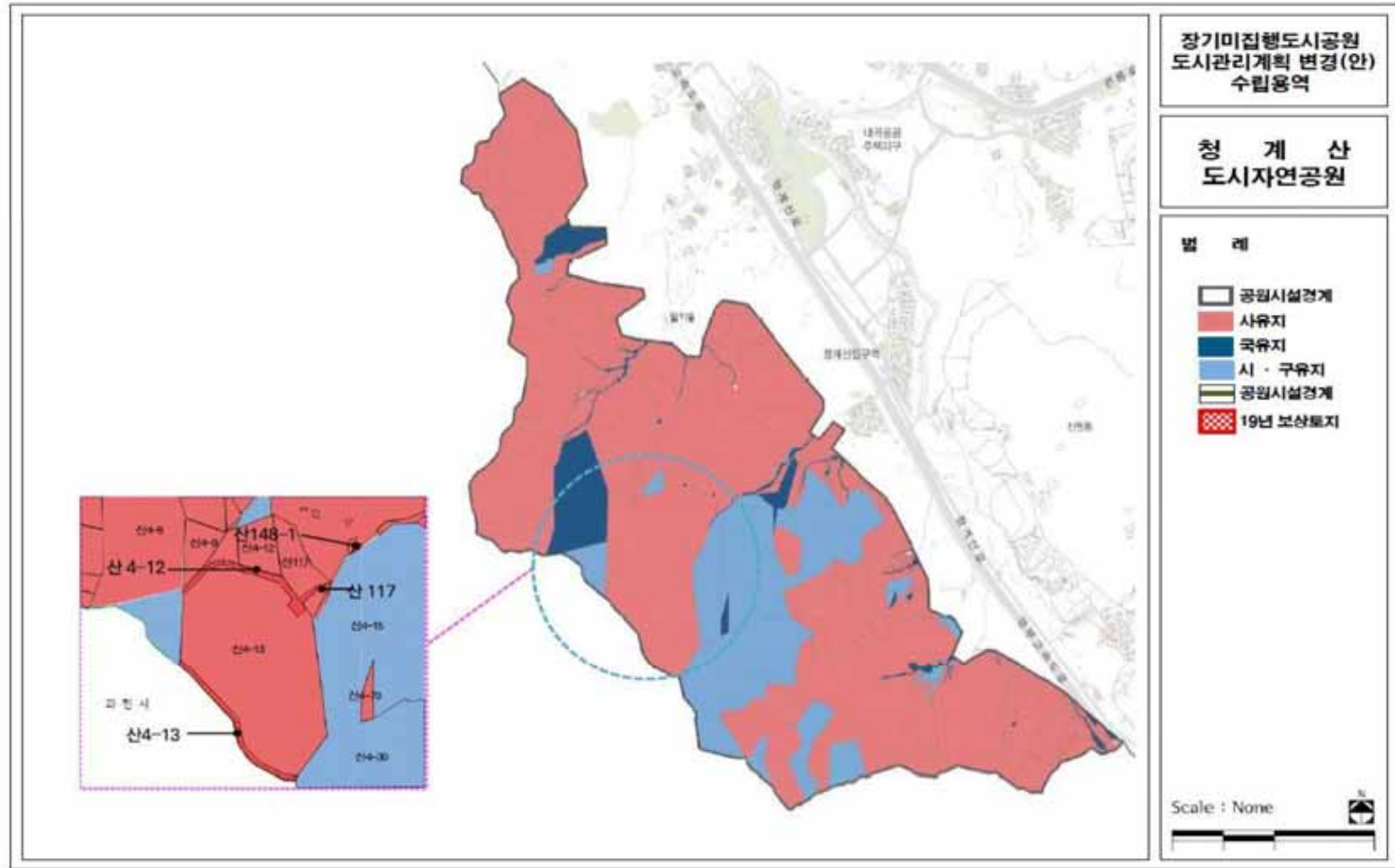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청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변경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0,377	9,536						
1 ~ 2	원지동 산4-83	임	1,546	1,5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	오정*				
	원지동 산4-84		254	254						
3	원지동 산117-2	임	1,200	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박춘*	317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7 소만마을 6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41-14 일우테라스 102동 ***호	김영*	7735/25785			
4	원지동 148-1	답	694	694	8727 우드워드 코트 랜초 쿠파롱가 캘리포니아 91730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207동 ***호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안규*				
5 ~ 6	원지동 산44-1	임	450	45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4558 나파 이스트힐드아베뉴41**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2604 일빈 크로브 부로슴 *번지				선우 **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92101 산디아고 웨스트 하버 드라이브 700번지 아파트 ****				선우 **	1/6				
	3,750		2,909	미합중국 뉴저지주07078 인벨니스 코트쇼트힐스 *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마릴랜드주 21202 벨티모아 사우스 프리지덴트-가 250번지 유니트***	선우**	1/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4552 카사-트로벨리 파인빌 서클****번지	선우*	1/6				
7	원지동 421	전	83	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이용*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대*	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원*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건*	2/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춘*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훈*	2/16			
8	원지동 산33-2	임	1,400	1,400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56*	최명*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2길 *	정승*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호* 개발 주식회 사	3/5			
9	원지동 산4-86	임	1,000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이상*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김연*	1/2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서초구고시 제2020 - 256호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20호(1997.04.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 43-6번지 일대의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0-1497호(2020.10.15.)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변경)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등 5필지
-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경 전: 3,456㎡
- 2) 변경 후: 3,368㎡

라. 주요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2020-254호, 2020.06.29.)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내 면적 보상

마.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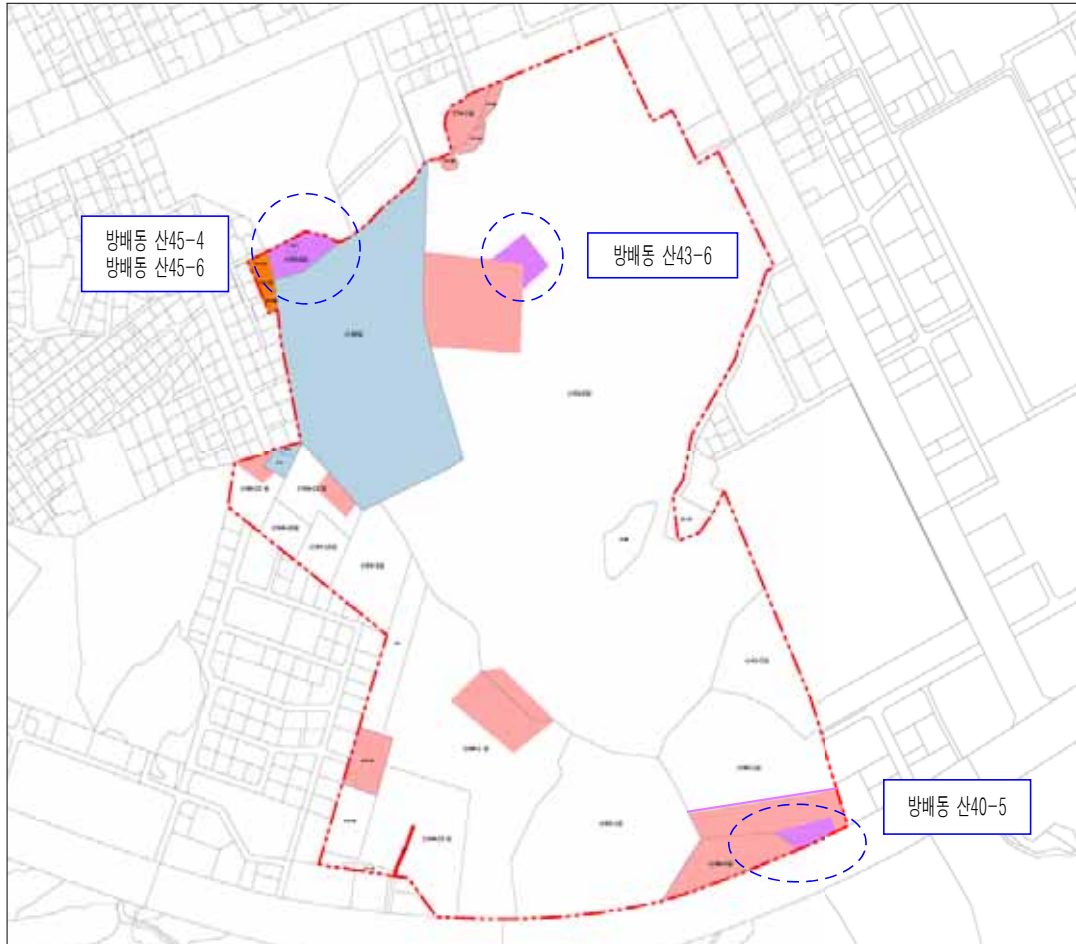
차.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4필지		132,678.0	3,368.0						
1	방배동 산43-6	임	130,193.0	883.0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	1			
2	방배동 산45-4	임	99.0	99.0	학교법인서울** 학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	1			
3	방배동 산45-6	임	1,647.0	1,647.0	학교법인서울** 학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9길 **	1			
4	방배동 산40-5	임	739.0	739.0	학교법인**학원	서울 강남구 선릉로 ***	1			

보상토지 용지도



서초구고시 제2020 - 258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2-94호(2002.03.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0-1506(2020.10.15.)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1번지 등 10필지
-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1번지 등 1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경 전: 11,946.8㎡
- 2) 변경 후: 11,867.0㎡

라. 주요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2020-254호, 2020.06.29.)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내 면적 보상

마.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20년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변경 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0필지		620,393.0	11,946.8						
1	방배동 산31	임	5,629.0	5,629.0	이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동 ****호	992/6149			
					안철*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 ***동 ***호	661.16/6149			
					조상*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5바길 **, ***호	1498.62/6149			
					조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 ***동 ***호	1498.61/6149			
					조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번길 ***~**	1498.61/6149			
2	방배동 산32	임	1,478.0	1,478.0	정진*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	1			
3	방배동 산32-1	임	901.0	901.0	정진*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	1			
4	방배동 249-1	답	317.0	317.0	학교법인**학 원	서울 강남구 선릉로 ***	1			
5	방배동 248	답	239.0	239.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에이동 ***호	1			
6	방배동 248-2	답	51.0	51.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에이동 ***호	1			
7	방배동 248-3	답	305.0	305.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에이동 ***호	1			
8	방배동 산92-1	임	609,196.0	2,560.8	이세*	서울 용산구 장문로*가길**	146010.39/62 0543			
					이세*	서울 성북구 성북동 ****~****	127756.64/62 0543			
					이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142362.91/62 0543			
					이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3길 ***~**, ***호	3327.75/6205 43			
					박해*	언더우드 예비뉴 노스벤처비씨브이*케이*에스*	3327.75/6205 43			
					이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5962.215/620 54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이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5962.215/620 543			
					이혜*	서울 강남구 학동로**길 **, ***동 ***호	5962.215/620 543			
					학교법인**학 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	49137.2/6205 43			
					이세*	서울 중구 동호로**나길 *	128099.25/62 0543			
					박혜*	언더우드 예비뉴 노스벤쿠버 비씨브이*케이*에스*	2634.465/620 543			
9	방배동 산30-2	임	200.0	200.0	김가*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길 *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지상권
10	방배동 산26-38	임	2,077.0	266.0	김양*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길*, ***동 ****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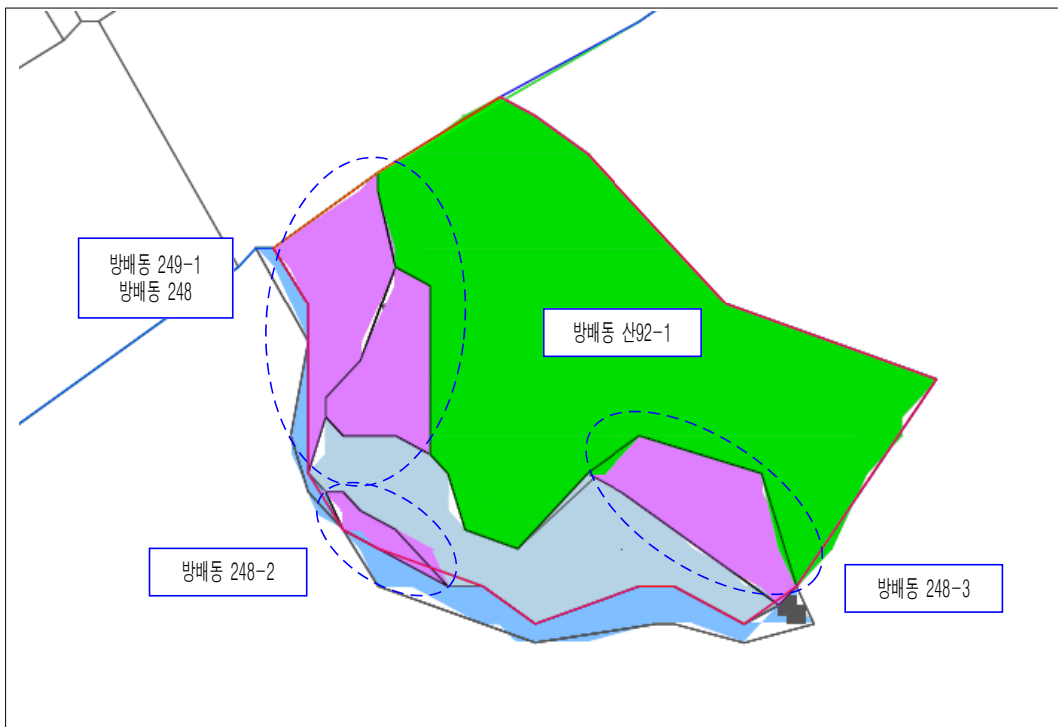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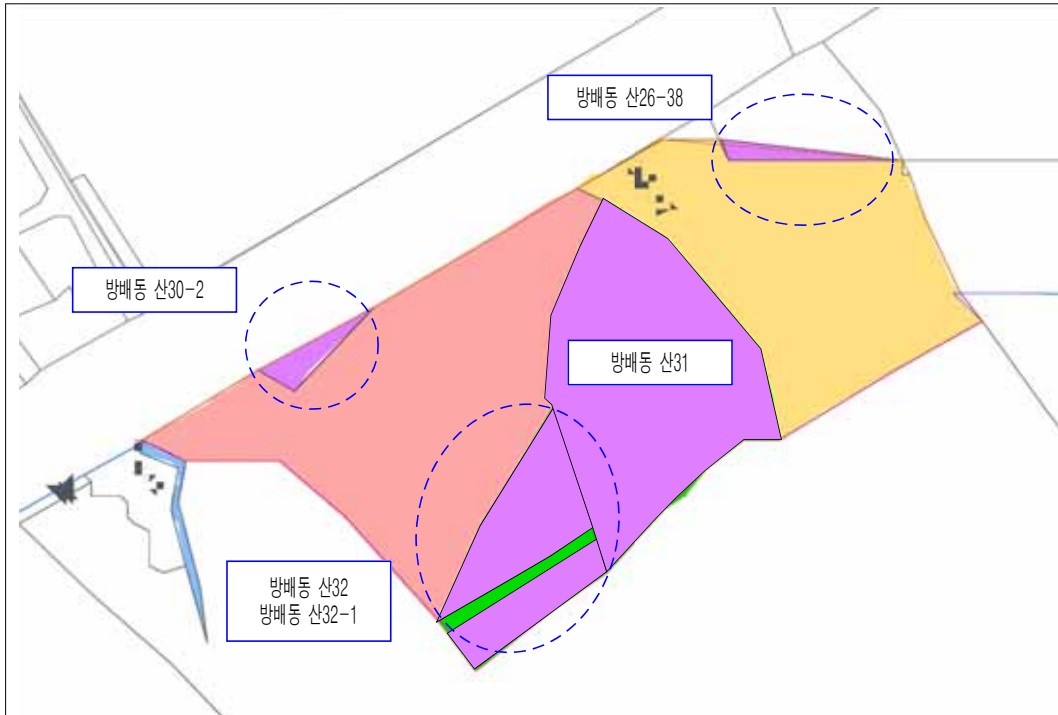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0필지		620,393.0	11,867.0						
1	방배동 산31	임	5,629.0	5,629.0	이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동 ****호	992/6149			
					안철*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 ***동 ***호	661.16/6149			
					조상*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5바길 **, ***호	1498.62/6149			
					조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 ***동 ***호	1498.61/6149			
					조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번길 **-*	1498.61/6149			
2	방배동 산32	임	1,478.0	1,478.0	정진*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	1			
3	방배동 산32-1	임	901.0	901.0	정진*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	1			
4	방배동 249-1	답	317.0	317.0	학교법인**학 원	서울 강남구 선릉로 ***	1			
5	방배동 248	답	239.0	239.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아파트 에이동 ***호	1			
6	방배동 248-2	답	51.0	51.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아파트 에이동 ***호	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방배동 248-3	답	305.0	305.0	김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아파트 에이동 ***호	1			
8	방배동 산92-1	임	609,196.0	2516.0	이세*	서울 용산구 장문로*가길**	146010.39/620 543			
					이세*	서울 성북구 성북동 ****-****	127756.64/620 543			
					이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142362.91/620 543			
					이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3길 ***-*, ***호	3327.75/62054 3			
					박혜*	언더우드 예비뉴 노스벤쿠버비씨비*케이*에스*	3327.75/62054 3			
					이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5962.215/6205 43			
					이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	5962.215/6205 43			
					이혜*	서울 강남구 학동로**길 **, ***동 ***호	5962.215/6205 43			
					학교법인**학 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	49137.2/62054 3			
					이세*	서울 중구 동호로**나길 *	128099.25/620 543			
					박혜*	언더우드 예비뉴 노스벤쿠버 비씨비*케이*에스*	2634.465/6205 43			
9	방배동 산30-2	임	200.0	200.0	김가*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길 *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지상권
10	방배동 산26-38	임	2,077.0	231.0	김양*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길*, ***동 ****호	1			

※ 지적분할 등으로 지번 및 면적 변경될 수 있음

보상토지 용지도



강남구고시 제2020 - 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승인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원동 611-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1.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가.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나. 주택건설사업의 명칭 :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주체의 성명 : 현대건설개포컨소시엄(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나. 사업주체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3.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

가. 변경전 : 2017.12. ~ 2021.7.

가. 변경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나. 사업개요 :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15개동 1,9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면적	층수	동수및세대수
변경전	64,598.4㎡	28.8%	336.99%	364,194.25㎡	지하4층~지상35층	15개동 1,996세대
변경후	변경없음					

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0. 12. 24. (사업계획승인일 : 2017.12.12.)

5.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3호(2017.07.06.)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의 기부채납되는 커뮤니티지원시설에 대하여 여건변화(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준공으로 필요성 저감) 및 주민채감형 생활SOC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를 주민요구 생활서비스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10 - 공무원8단지

구분	계 획 지 점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강남구 일원동 611-1		
특별계획구역 면적	•73,447.4㎡	좌동	
획지(계획대지) 면적	•64,598.4㎡	좌동	
공공시설 면적	•11,446.4㎡	좌동	
공공시설 비율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13.5% 내외	좌동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기반시설 계획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500.6㎡ - 공원(1,501㎡-소공원 대체)	좌동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7,348.4㎡ - 연결녹지 폭15m(영동대로변)(면적 : 4,126.1㎡) 계획 - 소공원 1개소(개원길변) 면적 : 361.3㎡ 계획 - 폭7.5m 도로(개원길) 계획 및 개원길 · 개포동길 · 영동대로변 가감속 차로 설치 (면적 : 2,861㎡)	좌동	
	•시설기부채납 환산 면적 : 2,597.4㎡ - 공공청사(창업지원센터), 체육시설(실내체육관) : 연면적 6,630.9㎡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시설기부채납 환산 면적 : 2,597.4㎡ - 공공청사, 체육시설 : 연면적 6,630.9㎡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계 획 지 침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A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동	
		허용 용도 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공공청사, 체육시설)	좌동	
	건폐율		•50% 이하	좌동	
	용적률 ^{주1)}	기준	•230% 이하	좌동	
		허용	•280% 이하	좌동	
		상한	•280% 이상	좌동	
	높 이		•최고층수 35층 이하 •저층구간(7층 이하) : 개원길변 폭25m •저층구간(10층 이하) : 우성7차 단지변 폭30m	좌동	
배치	건축관계선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좌동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좌동	
	보행동선		•대모산입구역, 중앙광장,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좌동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좌동	
	자전거도로		•영등대로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폭3m 이상) •개원길, 개포동길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 1.5m이상)	좌동	
	근린광장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좌동	

주1)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의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4항에 의거 용적률을 별도 적용함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보행동선·근린광장·섬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임대아파트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의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기반시설 계획 중 기부채납시설의 세부용도 삭제	◦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범위내 세부용도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유연성 확보

5)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③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없음

2)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10 허용용적률 : 변경없음

A.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변경)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기정	변경
패키지 인센티브	장기전세 주택공급	필수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이상	30.14% (계획지침 25% + 위원회심의의견 5%)	최동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필수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 조 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할 것	건축계획시 반영	최동
	커뮤니티 지원시설	필수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300세대 이상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 -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지역갤러리, 문화센터 등 - 사업시행인가 전 시설의 종류, 운영 및 관리 등을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설치규모 - 연면적 6,630.89㎡ (기준 : 6,444.21㎡ 이상)	최동
				●시설종류 - 공공청사(청업지원센터),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시설종류 - 공공청사(문화센터 등),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운영방식 - 부속토지지분을 포함하여 강남구 제공	최동
	에너지 효율 건축물	필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86점 이상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인증	건축계획시 반영	최동

구분	완화항목	완화 조건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기정	변경
	친환경 건축물	필수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 평지붕 등으로 옥상 녹화 가능한 부분은 전면 녹화할 수 있도록 계획 • 전이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 설치 • 환경친화적인 외부 창호계획 •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의 설계기준 충족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충족	건축계획시 반영	좌동
	신재생 에너지사용	선택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건축계획시 반영	좌동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패키지인센티브 완화항목인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세부용도 (창업지원센터→문화센터 등) 변경	◦ 여건변화(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준공으로 필요성 저감) 및 주민제감형 생활SOC 확충 필요성(생활 편의시설 요구) 증가에 의해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를 주민요구 생활서비스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 특별계획구역 10 상한용적률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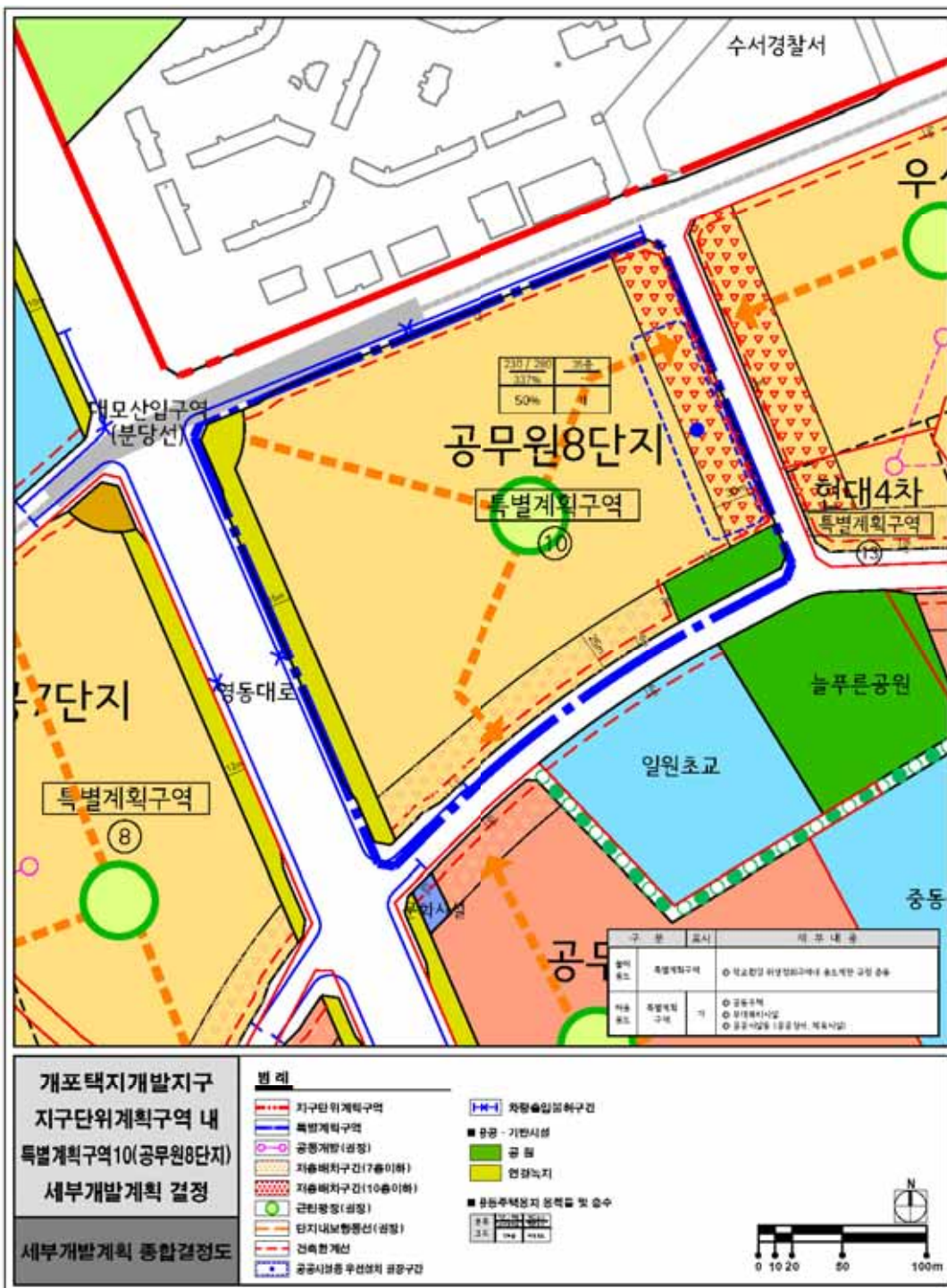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변경없음,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을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강남구청 제1별관 1층 ☎ 02-3423-6092), 개포2동 주민센터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변경없음



구 공 고

종로구공고 제2020 - 149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종로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3년이내)		2단계(3년이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총계	221	427,794	187	366,543	34	61,251	-
		391,870		63,180		328,690	
도로	207	384,360	182	355,890	25	28,470	집행간주 (160개소) 1단계포함
		138,967		57,940		81,027	
주차장	8	25,366	1	585	7	24,781	-
		81,415		1,124		80,291	
공원	6	18,068	4	10,068	2	8,000	-
		171,488		4,116		167,372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1	도로	신영동 214-41 ~ 신영동 231	4	82	328	'22~' 24	1,410	-	1,410	-	1,410	-	-		500	610	300		2038	
2	도로	신영동 160-3 ~ 신영동 165	6	223 (197)	1,077	'21~' 23	-	-	-	-	-	-	-						2037	
3	도로	부암동 29-2 ~ 부암동 92-4	4~6	247	1,550	'26이후	745	-	745	-	745	-	-					745	2035	
4	도로	부암동 197 ~ 부암동 191-13	4	129	736	'26이후	95	-	95	-	95	-	-					95	2035	
5	도로	평창동 247-5 ~ 평창동 260-32	6	93	584	'26이후	495	-	495	-	495	-	-					495	2035	
6	도로	평창동 260-6 ~ 평창동 260-40	4	45	177	'26이후	200	-	200	-	200	-	-					200	2035	
7	도로	평창동 260-2 ~ 평창동 260-6	4	17	79	'26이후	90	-	90	-	90	-	-					90	2035	
8	도로	부암동 185-39 ~ 부암동 185-30	3~4.5	105	381	'26이후	593	-	593	-	593	-	-					593	2035	
9	도로	홍지동 129-11 ~ 부암동 390-1	3~6	100	282	'26이후	430	-	430	-	430	-	-					430	2035	
10	도로	부암동 185-15 ~ 홍지동 129-5	4	125	526	'26이후	808	-	808	-	808	-	-					808	2035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1	도로	홍지동 47-9 ~ 홍지동 36-4	6	40	213	'26이후	695	-	695	-	695	-	-						695	2033	
12	도로	구기동 139-34 ~ 구기동 139-34	8	37	303	'21~' 23	-	-	-	-	-	-	-							2033	
13	도로	부암동 270-3 ~ 부암동 329-11	6	55	359	'21~' 23	-	-	-	-	-	-	-							2031	
14	도로	신영동 158-4 ~ 신영동 162-2	6~7	134	883	'21~' 23	-	-	-	-	-	-	-							2029	
15	도로	평창동 532 ~ 평창동 349-1	8	1,020 (181)	10,077	'21~' 23	-	-	-	-	-	-	-							-	
16	도로	평창동 433 ~ 구기동 17-21	8	2,843 (2,684)	26,331	'21~' 23	-	-	-	-	-	-	-							-	
17	도로	평창동 66-158 ~ 평창동 463	12	300 (239)	3,884	'21	496	-	496	248	248	-	-	496						-	
18	도로	평창동 424 ~ 평창동 424	12	254 (177)	3,839	'21~' 23	-	-	-	-	-	-	-							-	
19	도로	평창동 453-1 ~ 평창동 114-3	6	240 (35)	2,487	'21~' 23	-	-	-	-	-	-	-							-	
20	도로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8	326 (50)	2,539	'21	2,662	-	2,662	1,331	1,331	-	-	2,662						-	
21	도로	평창동 433 ~ 평창동 425-3	6	760 (539)	4,971	'21~' 22	1,317	-	1,317	658	659	-	-	658	659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22	도로	평창동 417-5 ~ 평창동 425-2	5	310 (163)	1,735	'21~' 22	802	-	802	401	401	-	-	401	401					-	
23	도로	평창동 423 ~ 평창동 425-4	5	260 (111)	1,761	'21~' 22	1,332	-	1,332	666	666	-	-	666	666					-	
24	도로	부암동 175 ~ 신영동 118	10	500 (157)	4,309	'21~' 23	-	-	-	-	-	-	-							-	
25	도로	평창동 99-7 ~ 평창동 99-7	6	110	649	'21~' 23	-	-	-	-	-	-	-							-	
26	도로	평창동 103-1 ~ 평창동 99-18	8	85	998	'21~' 23	-	-	-	-	-	-	-							-	
27	도로	평창동 206(207-1) ~ 평창동 38	6	170	1,087	'21~' 23	-	-	-	-	-	-	-							-	
28	도로	신영동 34(구기동 216-1)~구기동 184(120-1)	12	1,390 (541)	6,694	'21~' 23	-	-	-	-	-	-	-							-	
29	도로	신영동 34(구기동 183-4) ~ 구기동 184(120-1)	12	1,390 (158)	3,238	'21~' 23	-	-	-	-	-	-	-							-	
30	도로	구기동 139-8 ~ 구기동 139	8	103	815	'21~' 23	-	-	-	-	-	-	-							-	
31	도로	구기동 146-2 ~ 구기동 139-16	10	88	1,144	'21~' 23	-	-	-	-	-	-	-							-	
32	도로	구기동 160-4 ~ 구기동 139-31	7	45	314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33	도로	부암동 175(134-2) ~ 신영동 118(151-2)	8	140	1,261	'21~' 23	-	-	-	-	-	-	-							-	
34	도로	옥인동 47-357 ~ 옥인동 47-512	4	279	1,116	'21~' 22	2,810	-	2,810	2,810	-	-	-	1,700	1,110					2039	
35	도로	신교동 2-139 ~ 옥인동 47-424	4	112	448	'21~' 22	600	-	600	600	-	-	-	300	300					2039	
36	도로	필운동 137-4 ~ 필운동 50	10~13	237	2,829	'26이후	1,798	-	1,798	-	1,798	-	-						1,798	2036	
37	도로	세종로 100-1 ~ 세종로 113-2	12	85	1,055	'21~' 23	-	-	-	-	-	-	-							2033	
38	도로	사직로(대로1-40) ~ 내자동길(중로1-202)	10	105	1,049	'21~' 23	-	-	-	-	-	-	-							2031	
39	도로	필운동 283-4 ~ 내자동길(중로1-202)	4	21	85	'21~' 23	-	-	-	-	-	-	-							2031	
40	도로	교남동 10 ~ 교남동 8-2	11	35	363	'21~' 23	-	-	-	-	-	-	-							2026	
41	도로	효자동 25 ~ 효자동 200	8	385	1,345	'21~' 23	-	-	-	-	-	-	-							-	
42	도로	옥인동 19-33 ~ 옥인동 34-1	8	615	1,834	'21~' 23	-	-	-	-	-	-	-							-	
43	도로	통의동 49-1 ~ 통의동 35-84	6	125	729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44	도로	누하동 221-2 ~ 누하동 220-1	6	20	140	'21~' 23	-	-	-	-	-	-	-	-						-	
45	도로	효자동 40 ~ 효자동 50-7	6	150	525	'21~' 23	-	-	-	-	-	-	-	-						-	
46	도로	통의동 35-53 ~ 통의동 53	4	30	125	'21~' 23	-	-	-	-	-	-	-	-						-	
47	도로	누상동 166-134 ~ 누상동 166-222	4	46	189	'21	135	-	135	67	68	-	-	135						-	
48	도로	적선동 30 ~ 적선동 29-2	6	30	189	'21~' 23	-	-	-	-	-	-	-	-						-	
49	도로	가회동 65-2 ~ 삼청동 35-208	6	446	3,055	'21~' 22	8,185	-	8,185	4,092	4,093	-	-	6,092	2,093					-	
50	도로	팔판동4-7~삼청동 150-1	4	10	37	'21~' 23	-	-	-	-	-	-	-	-						-	
51	도로	팔판동(삼청동125-6)~삼청동 125-6	12	150	1,974	'21~' 23	-	-	-	-	-	-	-	-						-	
52	도로	신문로1가 23 ~ 도렴동 28-7	15	410	6,645	'21~' 23	-	-	-	-	-	-	-	-						-	
53	도로	세종로 155-4 ~ 당주동 128-12	15	320	5,247	'21~' 23	-	-	-	-	-	-	-	-						-	
54	도로	신문로1가 57-2 ~ 내자동 214-1	15	400	6,160	'21~' 23	-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55	도로	신문로1가 33 ~ 당주동 145-3	6~8	136	1,080	'21~' 23	-	-	-	-	-	-	-							-	
56	도로	사직동 311-2 ~ 신문로2가 1-59	6	220	917	'21~' 23	-	-	-	-	-	-	-							-	
57	도로	세종로동 204-1 ~ 당주동 23-5	10	76	835	'21~' 23	-	-	-	-	-	-	-							-	
58	도로	당주동 15-8 ~ 당주동 23-5	10	72	693	'21~' 23	-	-	-	-	-	-	-							-	
59	도로	당주동 37-8 ~ 당주동 23-4	8	65	541	'21~' 23	-	-	-	-	-	-	-							-	
60	도로	무악동 46-1727 ~ 행촌동 171-1	4	100	442	'21~' 23	-	-	-	-	-	-	-							-	
61	도로	청운동 73 ~ 청운동 52-2	5~8	250	2,254	'21~' 23	-	-	-	-	-	-	-							-	
62	도로	신문로1가 155-4 ~ 신문로1가 158-1	8~12	98	915	'21~' 23	-	-	-	-	-	-	-							-	
63	도로	청운동 2-78 ~ 청운동 37-6	6~10	277	1,248	'21~' 23	-	-	-	-	-	-	-							-	
64	도로	사직동 262-58 ~ 사직동 293-4	4	137	643	'21~' 23	-	-	-	-	-	-	-							-	
65	도로	청운동 89-10 ~ 청운동 110-4	15	300	4,668	'21	535	-	535	267	268	-	-	535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66	도로	행촌동 1-152 ~ 행촌동 1-16	6	21	159	'21~' 23	-	-	-	-	-	-	-							-	
67	도로	신문로2가 1-357 ~ 행촌동 1-16	4~5	17	89	'21~' 23	-	-	-	-	-	-	-							-	
68	도로	소격동 56 ~ 계동 1-1	15~20	1,140	18,107	'21~' 23	-	-	-	-	-	-	-							-	
69	도로	공정동 43 ~ 청운동 89-30	7~8	180	1,647	'21~' 23	-	-	-	-	-	-	-							-	
70	도로	사직동 209-4 ~ 신문로2가 1-34	11	360	4,435	'21~' 23	-	-	-	-	-	-	-							-	
71	도로	사직동 9 ~ 신문로2가 1-43	12~20	257	4,164	'21~' 23	-	-	-	-	-	-	-							-	
72	도로	내수동 71-1 ~ 당주동 128-12	4~14	490	3,945	'21~' 23	-	-	-	-	-	-	-							-	
73	도로	신문로1가 5-4 ~ 신문로1가 115-2	12	52	684	'21~' 23	-	-	-	-	-	-	-							-	
74	도로	적선동 109-2 ~ 내자동235-3	15	166	2,626	'21~' 23	-	-	-	-	-	-	-							-	
75	도로	사직동 산1-54 ~ 사직동 산1-24	10	972	10,520	'21~' 23	-	-	-	-	-	-	-							-	
76	도로	인사동 231-2 ~ 인사동 72	6	129	886	'21~' 23	-	-	-	-	-	-	-							2039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77	도로	이화동 28-33 ~ 이화동 61-8	6	85	566	'21~' 23	-	-	-	-	-	-	-							2038	
78	도로	충신동 25-3 ~ 충신동 10-4	4	148	640	'21~' 23	-	-	-	-	-	-	-							2038	
79	도로	종로3가 45-4 ~ 충무로4가 125	4~19	850 (170)	2,276	'21~' 23	-	-	-	-	-	-	-							2034	
80	도로	장사동 182-3 ~ 장사동 233-11	8	221	1,750	'21~' 23	-	-	-	-	-	-	-							2034	
81	도로	장사동 74 ~ 장사동 83-2	6	86	507	'21~' 23	-	-	-	-	-	-	-							2034	
82	도로	장사동 221-3 ~ 장사동 212-1	6	70	420	'21~' 23	-	-	-	-	-	-	-							2034	
83	도로	종로3가 162-1 ~ 종로3가 45-4	6	19	119	'21~' 23	-	-	-	-	-	-	-							2034	
84	도로	장사동 47-5 ~ 장사동 57-1	6	79	503	'21~' 23	-	-	-	-	-	-	-							2034	
85	도로	장사동 41-2 ~ 장사동 26-2	6	78	473	'21~' 23	-	-	-	-	-	-	-							2034	
86	도로	장사동 204-1 ~ 장사동 193	6	55	355	'21~' 23	-	-	-	-	-	-	-							2034	
87	도로	장사동 106-2 ~ 장사동 1	4	219	863	'21~' 23	-	-	-	-	-	-	-							2034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88	도로	인사동 193-1 ~ 인사동 167-1	3~4	65	246	'21~' 23	-	-	-	-	-	-	-							2033	
89	도로	인사동 218 ~ 관훈동 198-55	6~13	110	911	'21~' 23	-	-	-	-	-	-	-							2033	
90	도로	인사동 231-2 ~ 인사동 220-1	4	69	283	'21~' 23	-	-	-	-	-	-	-							2033	
91	도로	인사동 207 ~ 인사동 215-1	4	62	263	'21~' 23	-	-	-	-	-	-	-							2033	
92	도로	인사동 30-1 ~ 낙원동 284-9	15	85	1,987	'21~' 23	-	-	-	-	-	-	-							2033	
93	도로	낙원동 47-2 ~ 익선동 131-1	8	127	1,126	'26이후	1,543	-	1,543	-	1,543	-	-						1,543	2033	
94	도로	명륜 1가 15 ~ 명륜3가 1-1069	8	494	4,128	'26이후	4,163	-	4,163	-	4,163	-	-						4,163	2029	
95	도로	효제동 273 ~ 효제동 233-2	6~8	207	1,278	'21~' 23	-	-	-	-	-	-	-							2028	
96	도로	연건동 187-1 ~ 효제동 126-2	10~12	301	3,160	'21~' 23	-	-	-	-	-	-	-							2028	
97	도로	효제동 122 ~ 효제동 117-1	6~8	60	400	'21~' 23	-	-	-	-	-	-	-							2028	
98	도로	효제동 133-7 ~ 효제동 175-1	8~16	272	3,047	'21~' 23	-	-	-	-	-	-	-							2028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99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287	1,767	'21~' 23	-	-	-	-	-	-	-							2026	
100	도로	소로2-A ~ 소로3-동송5	6	108	660	'21~' 23	-	-	-	-	-	-	-							2026	
101	도로	소로3-동송1 ~ 소로3-동송5	6	132	815	'21~' 23	-	-	-	-	-	-	-							2026	
102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90	547	'21~' 23	-	-	-	-	-	-	-							2026	
103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2	6	90	563	'21~' 23	-	-	-	-	-	-	-							2026	
104	도로	소로2-C ~ 소로3-동송11	6	200	1,257	'21~' 23	-	-	-	-	-	-	-							2026	
105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5	6	202	1,226	'21~' 23	-	-	-	-	-	-	-							2026	
106	도로	소로2-동송1 ~ 동송동 1-111	6	27	170	'21~' 23	-	-	-	-	-	-	-							2026	
107	도로	소로2-동송1 ~ 소로3-동송6	6	91	564	'21~' 23	-	-	-	-	-	-	-							2026	
108	도로	소로2-A ~ 소로3-동송6	6	116	842	'21~' 23	-	-	-	-	-	-	-							2026	
109	도로	낙원동 290-1 ~ 낙원동 213-2	6~12	100	594	'21~' 23	-	-	-	-	-	-	-							2026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10	도로	종로5가 503-24 ~ 종로5가 231-1	9	112	988	'24~ '26	3,363	-	3,363	-	3,363	-	-				700	1,000	1,663	2026	
111	도로	효제동 175-1 ~ 효제동 248-1	6	361	1,892	'24~ '26	16,680	-	16,680	-	16,680	-	-				4,000	6,000	6,680	2026	
112	도로	이화동 9-318 ~ 종로6가 1-44	6~10	730	5,703	'24~' 25	5,737	-	5,737	-	5,737	-	-				2,295	3,442		2025	
113	도로	관철동 28-9 ~ 관철동 25	4	66	236	'24~' 25	6,813	-	6,813	-	6,813	-	-				3,000	3,813		2025	
114	도로	관수동134-1~ 관수동 119-1	4	133	546	'24~' 25	5,743	-	5,743	-	5,743	-	-				2,000	3,743		2025	
115	도로	관수동 159-2 ~ 관수동 157-1	4	66	241	'24~' 25	2,770	-	2,770	-	2,770	-	-				1,000	1,770		2025	
116	도로	묘동 38-2 ~ 외룡동 42	6	493	3,318	'23~' 24	14,040	-	14,040	-	14,040	-	-			6,000	8,040			2024	
117	도로	익선동 131-1 ~ 외룡동	8	158	1,307	'21~' 23	-	-	-	-	-	-	-							2024	
118	도로	광로2-A ~ 대로2-59	10	257	3,009	'21~' 23	-	-	-	-	-	-	-							-	
119	도로	소로2-C ~ 이화동 149-1	8	631	5,145	'21~' 23	-	-	-	-	-	-	-							-	
120	도로	연건동 209 ~ 연건동 128	10	250	740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21	도로	광로 2-A ~ 소로 2-B	8	180	1,473	'21~' 23	-	-	-	-	-	-	-	-							-	
122	도로	동송동 31-2 ~ 동송동 25-7	8	220	1,740	'21~' 23	-	-	-	-	-	-	-	-							-	
123	도로	이화동 4-14 ~ 이화동 12-2	6	237	1,569	'21	695	-	695	347	348	-	-	695							-	
124	도로	광로 2-A ~ 동송동 31-22	10	75	941	'21~' 23	-	-	-	-	-	-	-	-							-	
125	도로	권농동 120-2 ~ 권농동 170-3	6	176	1,130	'21~' 23	-	-	-	-	-	-	-	-							-	
126	도로	명륜3가 74-1 ~ 명륜4가 198-3	6	330	2,128	'21~' 23	-	-	-	-	-	-	-	-							-	
127	도로	명륜3가 55-1 ~ 명륜2가 138-5	8	470	6,605	'21~' 23	-	-	-	-	-	-	-	-							-	
128	도로	을지로 2가(낙원동 260-4) ~ 낙원동 175-1	15	224	3,457	'21~' 23	-	-	-	-	-	-	-	-							-	
129	도로	익선동 5 ~ 익선동 34-8	4	160	314	'21~' 23	-	-	-	-	-	-	-	-							-	
130	도로	연지동 168 ~ 종로5가 124-4	6~10	281	2,052	'21~' 23	-	-	-	-	-	-	-	-							-	
131	도로	효제동 27-1 ~ 효제동 107	6	160	590	'21~' 23	-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32	도로	충신동 136-11 ~ 충신동 179-4	10	163	1,595	'21	667	-	667	333	334	-	-	667						-	
133	도로	이화동 107-1 ~ 충신동120	8	188	1,387	'21~' 23	-	-	-	-	-	-	-							-	
134	도로	연지동 246 ~ 연지동 270	6	193	416	'21~' 23	-	-	-	-	-	-	-							-	
135	도로	이화동 10-3 ~ 충신동 27-36	6	385	1,871	'21~' 23	-	-	-	-	-	-	-							-	
136	도로	인사동 72 ~ 관훈동 74-1	10~12	690	8,222	'21~' 23	-	-	-	-	-	-	-							-	
137	도로	관수동 104-2 ~ 관수동 120	6	93	161	'21~' 22	5,970	-	5,970	2,985	2,985	-	-	2,549	3,421					-	
138	도로	을지로 2가(낙원동 260-4) ~ 낙원운동장(관수동 91-4)	15	371	2,958	'21~' 23	-	-	-	-	-	-	-							-	
139	도로	종로5가 8-5 ~ 종로5가 7-3	4	16	67	'21	715	-	715	358	357	-	-	715						-	
140	도로	종로5가 120-2 ~ 종로5가 120-2	6	35	197	'21~' 23	-	-	-	-	-	-	-							-	
141	도로	해화동 10-19 ~ 해화동 13-10	6	121	657	'21~' 23	-	-	-	-	-	-	-							-	
142	도로	명륜2가 (231) ~ 명륜1가 31-3	12	968	8,553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43	도로	명륜1가 101-1 ~ 명륜1가 46-18	8	330	1,012	'21~' 23	-	-	-	-	-	-	-							-	
144	도로	명륜2가 115-2 ~ 명륜2가 8-1	6	258	560	'21~' 23	-	-	-	-	-	-	-							-	
145	도로	혜화동광장(111-1) ~ 성북동고개(5-137)	15	930	11,769	'21~' 22	2,910	-	2,910	1,455	1,455	-	-	1,274	1,636					-	
146	도로	명륜1가 33-19 ~ 명륜1가 88	6	225	323	'21~' 23	-	-	-	-	-	-	-							-	
147	도로	혜화동 15-121 ~ 혜화동 15-15	6	365	2,187	'21~' 23	-	-	-	-	-	-	-							-	
148	도로	인사동 247 ~ 인사동 219-1	12	162	2,045	'21~' 23	-	-	-	-	-	-	-							-	
149	도로	공평동 66 ~ 인사동 232	15	221	3,324	'21~' 23	-	-	-	-	-	-	-							-	
150	도로	인사동 231 ~ 종로2가 10	12	86	1,062	'21~' 23	-	-	-	-	-	-	-							-	
151	도로	청진동 48-5 ~ 청진동 54-3	8	192	1,641	'21~' 23	-	-	-	-	-	-	-							-	
152	도로	청진동 19 ~ 청진동 59-1	12	108	1,215	'21~' 23	-	-	-	-	-	-	-							-	
153	도로	청진동 246-4 ~ 청진동 191-1	12	93	1,135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54	도로	종로1가 39-4 ~ 청진동 208-1	15~17	234	4,158	'21~' 23	-	-	-	-	-	-	-							-	
155	도로	종로1가 23-1 ~ 청진동 203-3	15	216	3,621	'21~' 23	-	-	-	-	-	-	-							-	
156	도로	청진동 258-1 ~ 청진동 138-1	15	111	1,746	'21~' 23	-	-	-	-	-	-	-							-	
157	도로	수송동 80-6 ~ 견지동 110-62	20	240	5,282	'21~' 22	5,058	-	5,058	2,529	2,529	-	-	3,000	2,058					-	
158	도로	중학동 19-2 ~ 수송동 147	11~15	194	2,494	'21~' 23	-	-	-	-	-	-	-							-	
159	도로	청진동 215-4 ~ 청진동 188	4	24	78	'21~' 23	-	-	-	-	-	-	-							-	
160	도로	서린동 82 ~ 서린동 42-8	7	112	919	'21~' 23	-	-	-	-	-	-	-							-	
161	도로	공평동 194-9 ~ 인사동 195	8	72	561	'21~' 23	-	-	-	-	-	-	-							-	
162	도로	공평동 9 ~ 관훈동 198-55	11~20	173	2,586	'21~' 23	-	-	-	-	-	-	-							-	
163	도로	외룡동 94-2 ~ 권농동 171-9	6~7	56	356	'21~' 23	-	-	-	-	-	-	-							-	
164	도로	명륜3가 1-1317 ~ 명륜3가 1-1317	4~6	142	661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65	도로	창신동 328-30 ~ 창신동 330-94	6	90	527	'26이후	9,055	-	9,055	-	9,055	-	-						9,055	2034	
166	도로	송인동 248 ~ 송인동 296-19	6	112	698	'26이후	3,463	-	3,463	-	3,463	-	-						3,463	2027	
167	도로	송인동 211-9 ~ 송인동 211-3	6	99	658	'26이후	2,403	-	2,403	-	2,403	-	-						2,403	2027	
168	도로	송인동 200-10 ~ 송인동 228-5	6	250	1,655	'26이후	940	-	940	-	940	-	-						940	2027	
169	도로	송인동 217-10 ~ 송인동 217-1	6	88	514	'26이후	1,608	-	1,608	-	1,608	-	-						1,608	2027	
170	도로	송인동 1383-2 ~ 송인동 206-2	6~8	257	1,722	'26이후	620	-	620	-	620	-	-						620	2027	
171	도로	송인동 297 ~ 송인동 242-7	6	73	480	'26이후	1,838	-	1,838	-	1,838	-	-						1,838	2027	
172	도로	송인동 72-185 ~ 송인동 178-53	2~4	14	61	'22	340	-	340	-	340	-	-		340					2022	
173	도로	창신동 458-5 ~ 창신동 418-1	4	135	592	'22	10,418	-	10,418	-	10,418	-	-		10,418					2022	
174	도로	창신동 438-78 ~ 창신동 436-14	6	68	400	'22	5,175	-	5,175	-	5,175	-	-		5,175					2022	
175	도로	송인동 81-15 ~ 송인동 76-2	13.5	51	692	'21~' 23	-	-	-	-	-	-	-							2021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76	도로	송인동 102-1 ~ 송인동 96-2	5~6	53	304	'21~' 23	-	-	-	-	-	-	-							2021	
177	도로	송인동 107-1 ~ 송인동 72-61	6~8	130	964	'21~' 23	-	-	-	-	-	-	-							2021	
178	도로	창신동 701-3 ~ 창신동 674-3	6	53	324	'21~' 23	-	-	-	-	-	-	-							-	
179	도로	창신동 74-1 ~ 창신동 247	12	78	1,096	'21~' 23	-	-	-	-	-	-	-							-	
180	도로	송인2동 1433 ~ 송인2동 206-20	4	205	744	'21~' 23	-	-	-	-	-	-	-							-	
181	도로	송인동(송인동 102-8) ~ 신당동(송인동 234-7)	10~18	270	4,118	'21~' 23	-	-	-	-	-	-	-							-	
182	도로	송인동 1499 ~ 송인동 206-13	8	28	188	'21~' 23	-	-	-	-	-	-	-							-	
183	도로	송인동 288-1 ~ 송인동 316-2	5~6	220	1,536	'21~' 23	-	-	-	-	-	-	-							-	
184	도로	송인동 1050 ~ 송인동 435	8~12	437	5,160	'21~' 23	-	-	-	-	-	-	-							-	
185	도로	송인동 190-2 ~ 송인동 547(181-11)	6~8	140	1,165	'21~' 23	-	-	-	-	-	-	-							-	
186	도로	송인동 759 ~ 송인동 742-1	8	66	530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87	도로	창신동 595-327 ~ 창신동 595-327	6~8	100	615	'21~' 23	-	-	-	-	-	-	-							-	
188	도로	송인동 16-1 ~ 송인동 7-41	3~5	120	394	'21~' 23	-	-	-	-	-	-	-							-	
189	도로	창신동 615-45 ~ 창신동 23-735	6	348	2,252	'21~' 23	-	-	-	-	-	-	-							-	
190	도로	창신동 17-49 ~ 창신동 20-38	6	94	564	'21~' 23	-	-	-	-	-	-	-							-	
191	도로	창신동 627-49 ~ 창신동 627-85	6	515	2,758	'21	8	-	8	4	4	-	-	8						-	
192	도로	창신동 615-263 ~ 창신동 570-4	8	725 (296)	6,011	'21~' 23	-	-	-	-	-	-	-							-	
193	도로	창신동 639-55 ~ 창신동 635-1	4	114 (84)	375	'21~' 23	-	-	-	-	-	-	-							-	
194	도로	송인동 546 ~ 송인동 852-1	6	150	511	'21~' 23	-	-	-	-	-	-	-							-	
195	도로	송인동 435-4 ~ 송인동 559-1	5	115 (80)	331	'21~' 23	-	-	-	-	-	-	-							-	
196	도로	창신동 427-3 ~ 창신동 455-7	4	115	474	'21~' 23	-	-	-	-	-	-	-							-	
197	도로	창신동 601-2 ~ 창신동 601-9	4~6	138	699	'21~' 23	-	-	-	-	-	-	-							-	

연번	사업 · 시설 부분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198	도로	송인동 20-61 ~ 송인동 5-27	6	140	908	'21~' 23	-	-	-	-	-	-	-							-	
199	도로	송인동 20-136 ~ 송인동 20-126	6	48	286	'21~' 23	-	-	-	-	-	-	-							-	
200	도로	창신동 17-47 ~ 창신동 20-31	4	95	439	'21~' 23	-	-	-	-	-	-	-							-	
201	도로	창신동 23-818 ~ 창신동 23-825	5~7	81	451	'21~' 23	-	-	-	-	-	-	-							-	
202	도로	송인동 55-17 ~ 송인동 53-23	6	24	149	'21~' 23	-	-	-	-	-	-	-							-	
203	도로	송인동 56-232 ~ 송인동 56-229	4	87	373	'21~' 23	-	-	-	-	-	-	-							-	
204	도로	송인동 446 ~ 송인동 839	4~6	370	2,715	'21~' 23	-	-	-	-	-	-	-							-	
205	도로	송인동 872 ~ 송인동 58-593	4	296	1,276	'21~' 23	-	-	-	-	-	-	-							-	
206	도로	송인동 58-593 ~ 송인동 765	6	297	1,886	'21~' 23	-	-	-	-	-	-	-							-	
207	도로	송인동 181-8 ~ 송인동 178-57	4	61	267	'21~' 23	-	-	-	-	-	-	-							-	
208	주차장	부암동81-11 외 4필지			585	'21	1,124	-	1,124	562	562	-	-	1,124						-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209	주차장	종로5가413일원			2,328	'26이후	35,788	-	-	-	-	35,788	-						35,788	-	
210	주차장	부암동251-7 외 7필지			471	'24	453	-	453	-	453	-	-			453				-	
211	주차장	부암동370-12			598	'26이후	2,800	-	2,800	1,400	1,400	-	-						2,800	-	
212	주차장	삼청동25-1			8,000	'26이후	8,250	-	8,250	4,125	4,125	-	-						8,250	-	
213	주차장	가회동210 일대			5,000	'26이후	15,000	-	15,000	7,500	7,500	-	-						15,000	-	
214	주차장	회동2 일대			8,000	'26이후	15,000	-	15,000	7,500	7,500	-	-						15,000	-	
215	주차장	효자동196-2			384	'26이후	3,000	-	3,000	1,500	1,500	-	-						3,000	-	
216	공원	부암동251-8 (부암1소공원)			1,448	'22	1,500	-	1,500	-	1,500	-	-		1,500					-	
217	공원	부암동303-1 (부암동어린이공원)			1,122	'22	1,208	-	1,208	-	1,208	-	-		1,208					-	
218	공원	관철동45-5 (보신각근린공원)			4,735	'22	859	859	-	-	-	-	-		859					-	
219	공원	부암동336-2 (부암2소공원)			2,763	'22	549	-	549	-	549	-	-		549					-	
220	공원	창신동400-4 (송인지구단위계획 내 근린공원(2))			3,515	'24~' 25	73,186	-	73,186	-	73,186	-	-				36,593	36,593		-	

연번	사업 · 시설 부문	위치(사업명)	규모			사업 기간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1	'22	'23	'24			'25	'26 이후
221	공원	송인동1435 (송인지구단위계획 내 근린공원(3))			4,485	'24~' 25	94,186	-	94,186	-	94,186	-	-				47,093	47,093		-	

※ () : 지구단위구역 내 시설

다. 관련도서 : 생략. 끝.

용산구공고 제2020 - 13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용산구 고시 제1997-7호(1997.03.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46호('18.5.3.)로 실시계획 고시된 아래 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구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 기간
용문동 38-176~38-192 도로확장공사	용문동 38-176 ~ 38-192간	도로확폭 (B=3→8m, L=38m)	용산구청장	용산구 고시 1999-제7호 (1997.03.25.)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용산구공고 제2020 - 13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29호(2001.07.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127호('19.9.5.)로 실시계획 고시된 아래 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구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 기간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문배동 40-5~7-31 도로개설공사	문배동 40-5~7-31간	도시계획사업 B = 8m L = 86m	용산구청장	서울시고시 제229호 (2001. 7. 1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성동구공고 제2020 - 1460호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9-1000호(2019.9.26.) 및 제2019-1220호(2019.11.28.)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18차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성 동 구 청 장

가. 구 역 명 :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재정비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금호동3가 332,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25,106	-	25,106	지구 중심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금호2·3가동 주민센터, 금호4가동 주민센터

마. 열람내용 :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바.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본 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음

사. 의견제출기관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 02-2286-5562)

성동구공고 제2020 - 1461호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8-66호(2018.1.2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성 동 구 청 장

가. 구 역 명 :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	-	증) 156,805	156,805	-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마장동 주민센터

마. 열람내용 :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바.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본 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음

사. 의견제출기관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 02-2286-5562)

동대문구공고 제2020 - 14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9호(2009.3.26.)로 결정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15-97호(2015.12.3.)로 결정(변경)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36,221	증) 34.4	36,255.4	서고시 2009-119호 (2009.3.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①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원	• 면적변경 : 36,221㎡ → 36,255.4㎡ 증) 34.4㎡	•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도로 (소로 3-1호선) 일부 편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36,221	증) 34.4	36,255.4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	-	1,594.0	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265	-	15,265.0	42.1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	-	405.0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57	증) 34.4	18,991.4	52.4	

주) (*) 도로(소로 3-1호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단순 증가.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변경없음)

②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공지	동대문구 전농동 150-1번지	2,287	감) 420	1,867	동고제1호 (98.1.9)	-
기정	②	공공공지	동대문구 전농동 103-320번지	432	-	432	서고시제2009-119호 (09.3.2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축소 2,287㎡ → 1,867㎡ 감) 420㎡	사회복지 시설(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조성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축소

③ 공공·문화체육시설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동대문구 전농동 146번지 일원	704	증) 454.4	1,158.4	180/200	60	20	동고시제1호 (98.1.9)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면적 확대 704㎡ → 1,158.4㎡ 증) 454.4㎡	- 동대문구 관내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립어르신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면적 확대

■ 사회복지시설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건폐율계획	용적률계획	높이계획
60% 이하	기준 : 180% 이하 / 허용 : 200% 이하	20m 이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변경없음)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없음)

③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변경)

구분	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 보차혼용통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4m	-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4m	결정도 참조
	썸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이상)가능] - 지정 위치 : 1개소	- 최소면적 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이상)가능] - 지정 위치 : 1개소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2개소(폭 4m)	
	보차혼용통로	-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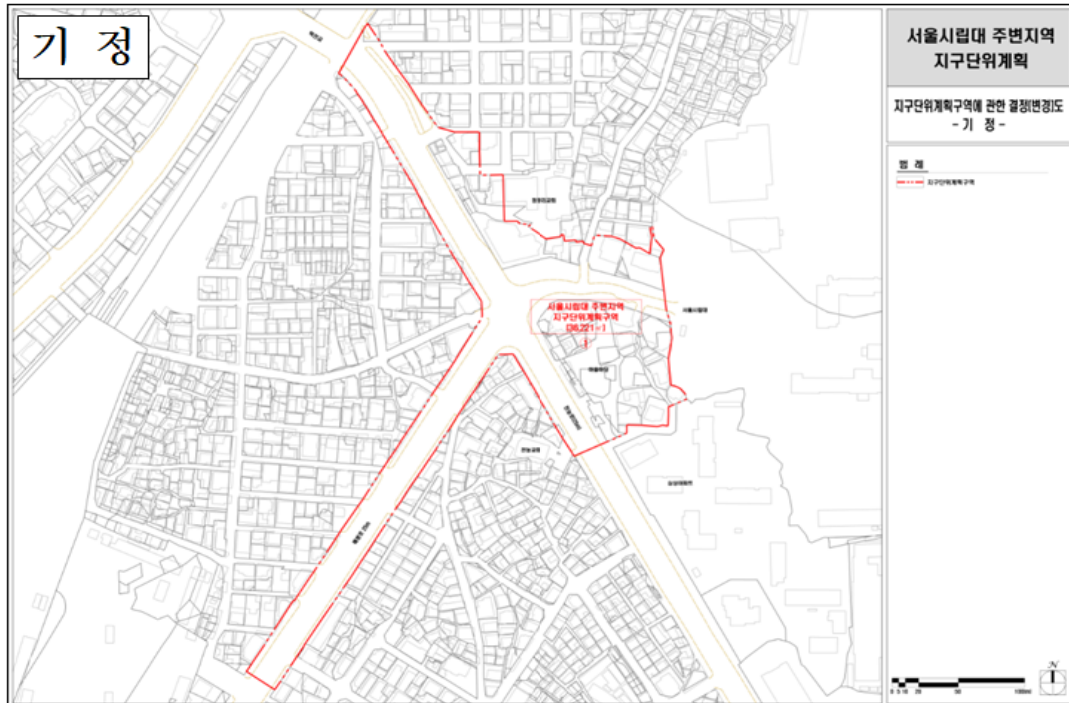
(4)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금회 변경사항 외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없음

- 이하 여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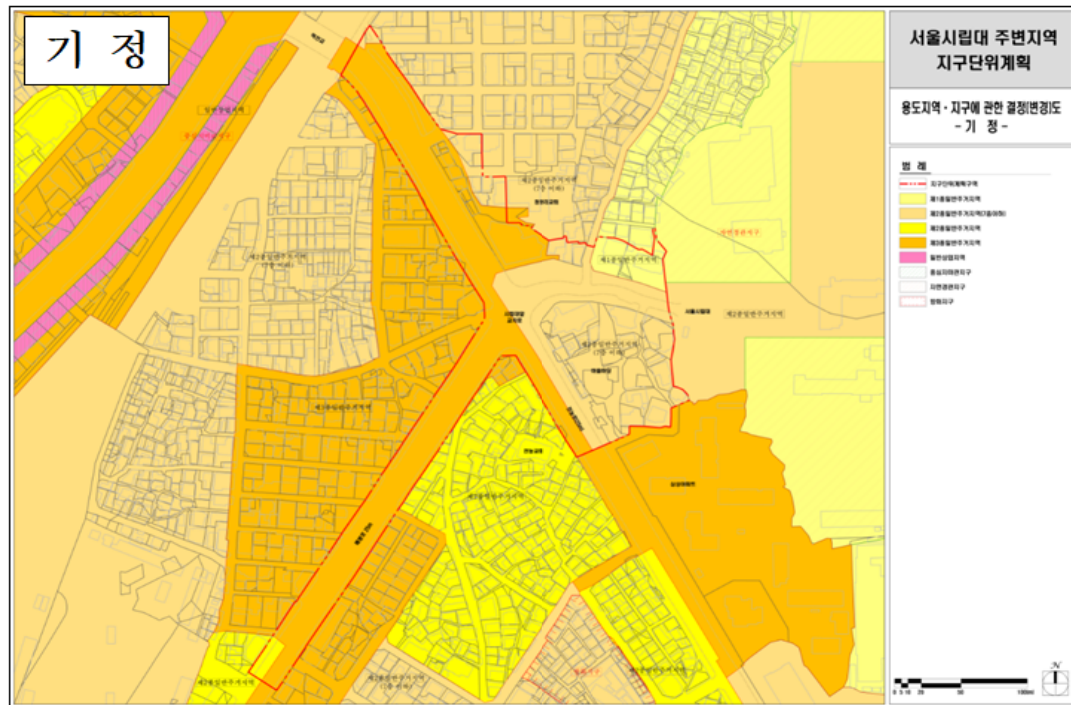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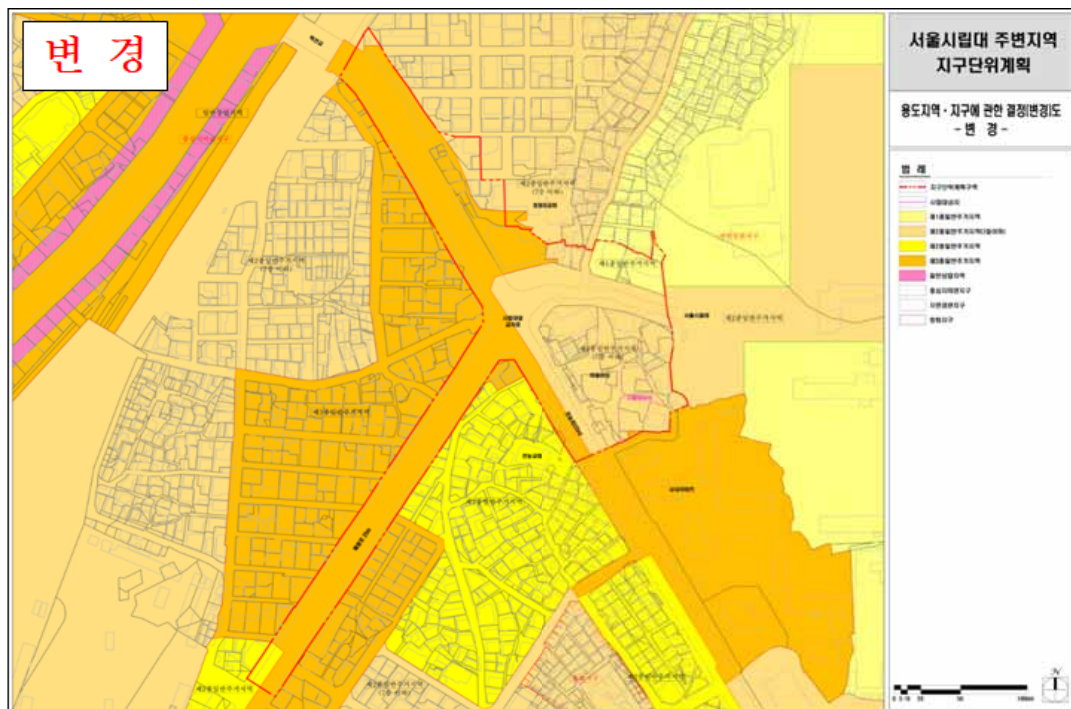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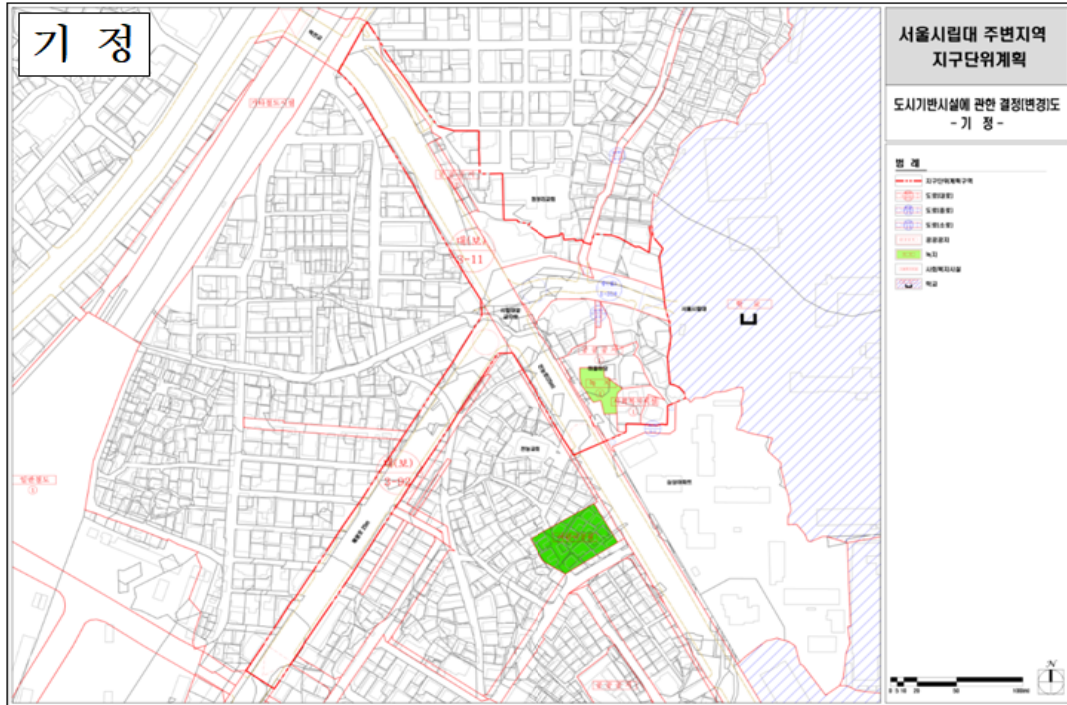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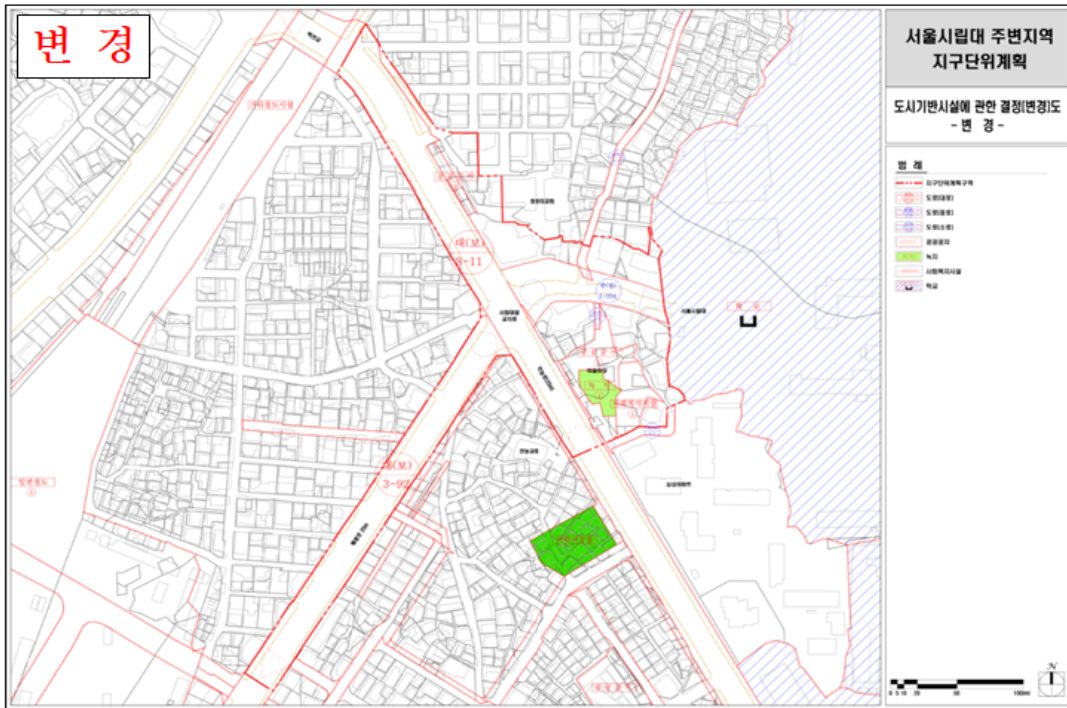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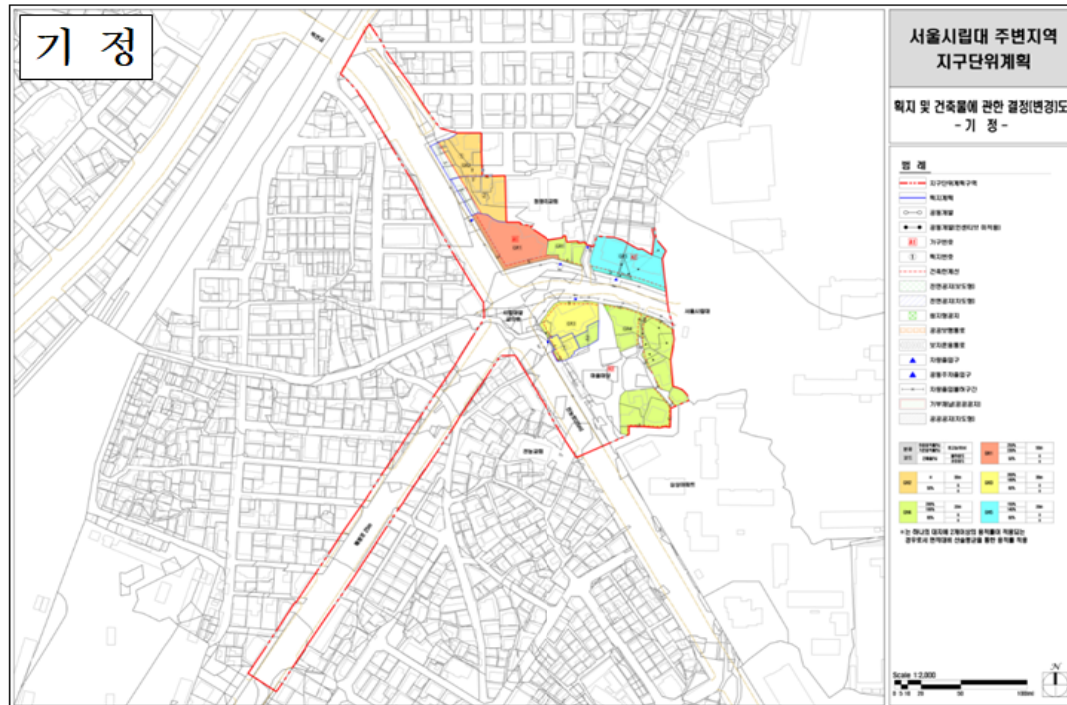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나. 구역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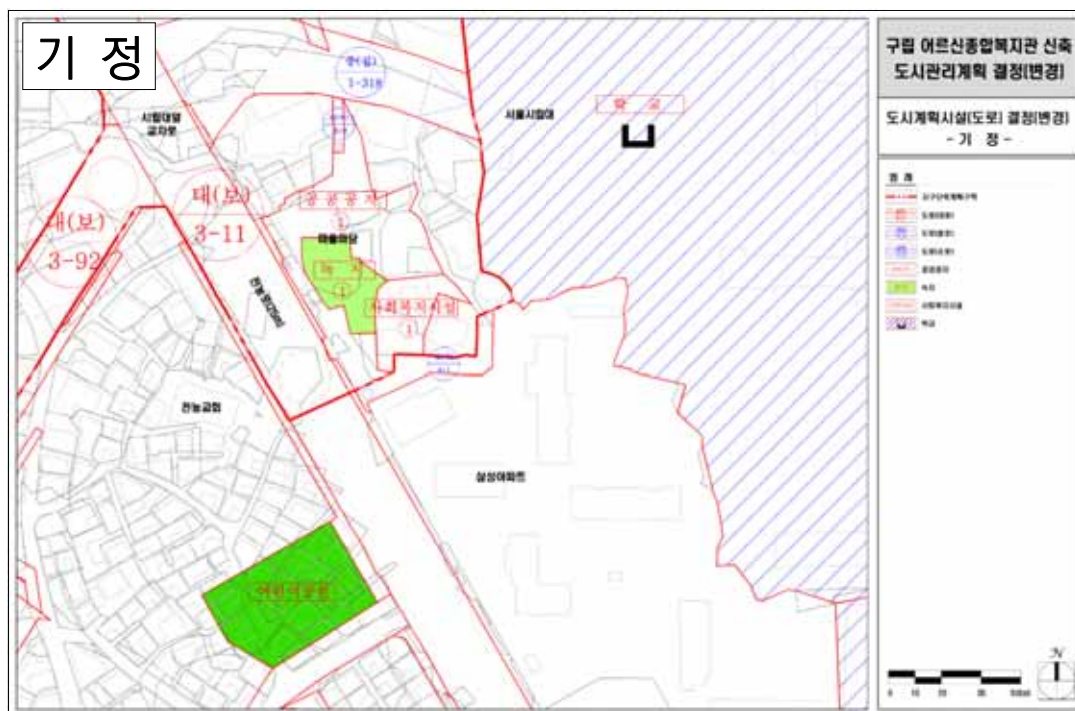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0	전능동 141-49	전능동 155	일반 도로	서고시102 (95.4.18)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70	전능동 141-49	전능동 155	일반 도로	서고시102 (95.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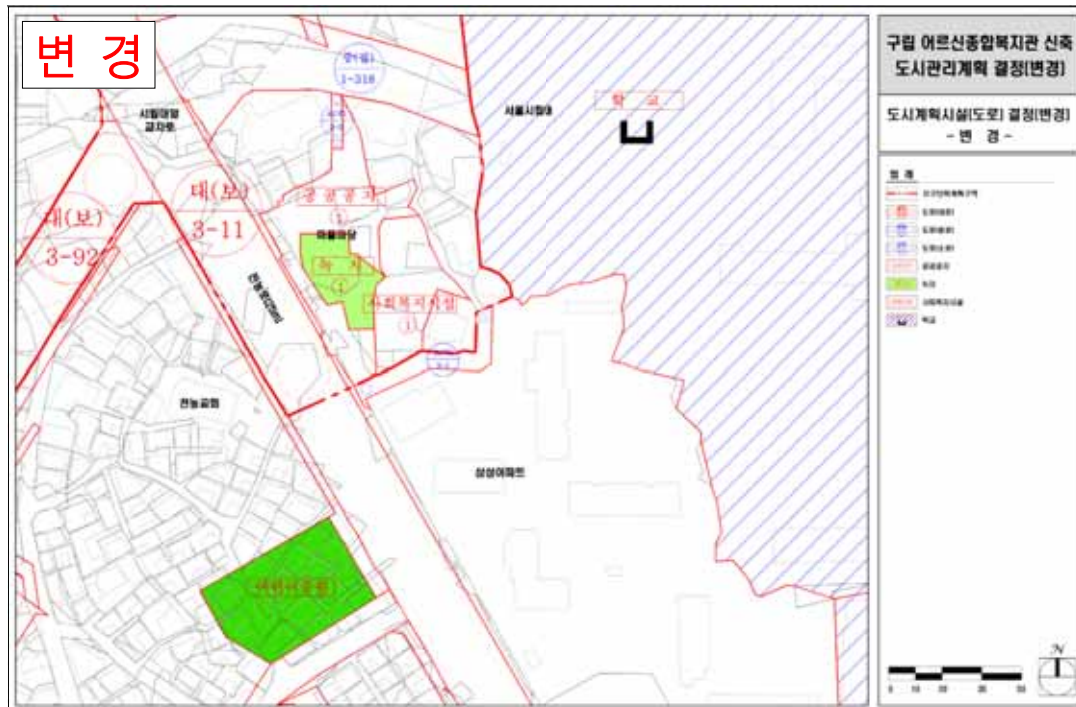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소로3-1	○ 선형변경 - 위치 : 전능동 155-2 - 면적 : 481.3㎡ → 446.9㎡ (감 34.4㎡)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사회복지시설 편입) 따른 부정형 일부 구간 선형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기정) (안)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안) 도>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946)

마.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같음)

바. 본 변경(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강서구공고 제2020 - 1941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5호(2012.10.25.)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01월 14일
 2.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656 / FAX.02-2620-0468)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105,762	증)13	105,775	서고 제2012-285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증)13㎡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변경없이 구역면적 정정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5,762	증)13	105,775	100.0	1970.10.26. 건고 638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105,762㎡ → 105,775㎡ (증 13㎡)	•용도지역 변경없이 구역면적 정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보호 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신월, 공항, 마곡, 화곡, 가양, 신정	57,931,000 (105,762)	1977.4.22 서고 120호	()는 구역내
변경	보호 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신월, 공항, 마곡, 화곡, 가양, 신정	57,931,000 (105,775)	1977.4.22 서고 120호	()는 구역내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구	변경사유
-	신월, 공항, 마곡, 화곡, 가양, 신정	공항시설보호지구	•구역면적 정정에 따른 구역내 면적 변경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1	30~34.5	주간선 도로	6,500 (185)	양화교(광16) 마곡동 52-10	개화동시계 마곡동 25-7	일반 도로	1971.4.7. 건고 198호	양천길
기정	중로	2	509	15	국지 도로	278	가양동 92-9	가양동 47-1	일반 도로	2012.10.25. 서고 285호	-
변경	중로	2	509	15	국지 도로	270	가양동 92-9	가양동 47-1	일반 도로	2012.10.25. 서고 285호	
기정	중로	3	503	12	국지 도로	506 (315)	가양동 89-22	가양동 26-23	일반 도로	1976.2.20. 서고 35호	탐산길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270 (140)	가양동 134-2	가양동 145-1	일반 도로	1976.9.3. 서고 211호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509		- 도로선형 및 연장 변경 - 연장 : 278m → 270m	도로 일부구간 선형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	증) 4,209	4,20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4,209㎡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인 주거재생과 협의결과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 사업부지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 주차장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건폐율	용적률	층	면적(㎡)	비고(관리청)
신규	주차장	가양동 146-5일대	60% 이하	400% 이하	지하2층 ~ 지상1층	부지면적 : 4,209㎡ 연 면 적 : 3,850㎡	별도부지 (서울특별시장)

- 1) 주차장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2)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면적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 공원	가양동 146-5일대	3,958	감) 3,958	-	2012.10.25. 서고 285호	
폐지	②	공원	소공원	가양동 92-1일대	1,333	감) 1,333	-	2012.10.25. 서고 285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인 주거재생과 협의결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공원 보다는 주차장 수요가 있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
②	소공원	•소공원 폐지	•산업부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공원을 폐지하고 대지 내 공개공지 계획으로 대체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도서관	도서관	가양동 81-1일대	1,150	감)1,150	-	2012.10.25. 서고 285호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서관	•도서관 폐지	•기존 가양1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계획 배제로 도서관 추가 도입 필요성 감소에 따른 폐지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가양동 81-1일대	888	감)888	-	2012.10.25. 서고 285호	

○ 사회복지시설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폐지	사회복지시설	888	60%이하	400%이하	수평표면 해발57.86m	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폐지	•산업부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업집적시설 계획에 따라 산업부지 내 건축물로 조성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면적(㎡)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주택 및 산업부지	A1	28,656	감)28,656	-	가양동 92-1 일대	공동주택지
	A2	25,525	감)25,525	-	가양동 47-2 일대	공동주택지
	B1	19,644	증)29,512	49,156	가양동 100-1 일대	산업부지
	B2	17,256	증)28,641	45,897	가양동 63-1 일대	산업부지
기반시설	공원1	3,958	감)3,958	-	가양동 146-5 일대	어린이공원
	공원2	1,333	감)1,333	-	가양동 92-1 일대	소공원
	도서관	1,150	감)1,150	-	가양동 81-1 일대	-
	사회복지시설	888	감)888	-	가양동 146-5	-
	도로	7,352	감)839	6,513	구역내	-
	주차장	-	증)4,209	4,209	가양동 146-5 일대	공영주차장

○ 변경사유서

1.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의 소프트화로 인해 준공업지역에 공장이전적지가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재생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공동주택 개발로 산업기반이 약화되어 서울의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과 창의적인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산업부지로 변경하여 서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맞춰 마곡지구와 연계하여 창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2. 2012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기부채납시설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기정

구분	공동주택지	산업부지	비고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전시장 - 연구소 - 공장 - 방송통신시설 ●산업지원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목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연장 - 판매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 훈련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운동시설 중 가목(목외골프연습장제외) ※ 산업 및 준산업시설의 산업지원시설은 전체 산업시설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20%이내 적용	

구분		공동주택지	산업부지	비고											
용도	1층 권장용도	-	●1층 권장용도 -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밀도 관련	건폐율	●40% 미만	●60% 미만	조례 60%이하											
	용적률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210%</td><td>230%</td><td>250%</td></tr></table>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차량진출입 제한		-	●양천길에서 차량진출입을 제한	도면참조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 10m ●산업부지 연접부 : 6m ●도로변 : 6m	●양천길 연접부 : 5m ●공동주택 연접부 : 10m ●도로변 : 3m, 6m	도면참조											
	공개 공지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양천길 및 중로2-509번	도면참조											
공공보행 통로		-	●공동주택 연접부에 보행축 조성 (B=4m 이상)	도면참조											
높이		●최고고도지구 - 수평표면 : 해발57.86m 미만 원추표면 :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적용											

(2) 변경

구분		산업부지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주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차장 제외) ●방송통신시설 ※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 단, 기숙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최동	

구분		산업부지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1층 권장 용도	●1층 권장용도 -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좌동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좌동												
밀도 관련	건폐율	●60% 미만	좌동 (B1 : 59.95% / B2 : 59.74%)												
	용적률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300%</td><td>400%</td><td>460%</td></tr></table>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B1 : 459.98% / B2 : 459.96%)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460%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460%													
건축물 형태 및 색채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및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준용	좌동												
차량진출입 제한		●양천길에서 차량진출입을 제한	좌동	도면참조											
지하공동개발		●산업부지 B1, B2 (지하연결통로 등 계획을 통하여 지하공간 연결)	좌동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주거지 및 학교 연결부 : 10m ●양천길 연결부 : 5m ●도로변 : 3m, 6m	좌동	도면참조											
	공개 공지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양천길 및 중로2-509번	좌동	도면참조											
공공보행통로		●산업부지 내 동서방향 보행축 조성 (B=4m 이상, 건축계획과 연동하여 선형 및 위치 조정)	좌동	도면참조											
높이		●「공방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 적용 - 수평표면 : 해발57.86m 미만 원추표면 :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좌동 (B1 : 해발57.5m / B2 : 해발63.5m)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적용											

○ 변경사유서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지를 산업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지 계획 삭제
2. 2012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계획을 현행 법령 및 현재 상황에 맞게 최신화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한 용도 허용용도에 추가 단, 기숙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3. 산업부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계획 추가
4. 지하공간 연결을 통하여 날씨 등 기후영향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하공동개발 사항 추가
5. 공동주택지 삭제에 따른 산업부지 공개공지 계획 내용 변경 (위치지정 추가)
6. 공동주택지 삭제에 따른 산업부지 공공보행통로 계획내용 변경
7.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33호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표현 삭제

4. 관계도서 및 도면 : 생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자문 및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영등포구공고 제2020 - 20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영 등 포 구 청 장

□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구분	계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3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7	28,077	126,893	17	28,077	126,893
도로	15	16,721	106,684	15	16,721	106,684
공원	2	11,356	20,209	2	11,356	20,209

□ 단계별집행계획(2단계)

연번	분 류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집행 계획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공사비	계		
1	도로	신길동 263-37~ 321-1	2023~	8	103	824	5,310	189	5,499	신길재촉 지구단위계획	2
2	도로	영등포동4가 419-14~419-11	2023~	15	50	750	8,629	165	8,793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2

연번	분 류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집 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공사비	계		
3	도로	영등포동 3-119~ 423-57	2023~	8	80	640	3,408	137	3,545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2
4	도로	영등포동4가 1-38~ 432-39	2023~	8	60	480	1,653	112	1,765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2
5	도로	신길동 430-22~ 427-17	2023~	4	46	184	1,359	42	1,401	신길동지구 단위계획	2
6	도로	신길동 2862~ 3574-15	2023~	6	26	156	738	38	775	신길재촉 지구단위계획	2
7	도로	신길동4902-16~ 4092-5	2023~	6	97	582	2,279	131	2,410	신길재촉 지구단위계획	2
8	도로	영등포동7가 76~75-3	2023~	10	43	430	2,637	97	2,734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9	도로	영등포동5가40-4~영등포 동5가105-1	2023~	15	178	2,670	20,785	585	21,371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10	도로	영등포동5가 41-21 ~ 영등포동5가 20-62	2023~	15	88	1,320	12,155	287	12,442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11	도로	영등포동5가 111 ~ 영등포동5가 41-2	2023~	15	153	2,295	20,265	507	20,772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연번	분 류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집 계 행 획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공사비	계		
12	도로	영등포동5가33-134-영 등포동5가18-8	2023~	15	156	2,340	18,507	513	19,020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13	도로	영등포동5가33-29-영등 포동5가16-1	2023~	12	121	1,452	742	285	1,027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14	도로	영등포동5가 13-1~13-1	2023~	12	69	828	4,405	214	4,618	영등포재정비촉 진계획	2
15	도로	신길동 424-3~ 340-1	2023~	8	155	1,240	223	288	511	신길재정비촉진 계획	2
16	공원	영등포동1가11-25일대 (영등포동1가35)	2023~	-	-	6,780	17,769	1,444	19,213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2
17	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895일대 (메낙골근린공원)	2023~	-	-	57,703	-	996	996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부)	2

※ 관계 자료 및 도면(생략)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등포구공고 제2020 - 2049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49호('79.9.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42호('00.12.19.)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3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2020. 12. 31. ~ 2021. 01. 14.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9)

3) 열람내용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

- 명 칭: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61.5㎡

-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입구: 61.5㎡(엘리베이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김상범)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2020년 12월 14일

바.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정거장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5번 출입구간 엘리베이터 설치로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

사.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4개월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당산동3가	270-2	도	462.4㎡	61.5㎡	서울특별시		
합 계				462.4㎡	61.5㎡			

-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 내 모든 철도시설물은 교통공사로 무상귀속
차. 공사 구간 및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 결정: 붙임 1 참조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로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부분확대)



동작구공고 제2020 - 1864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2-49호(2012. 4.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0호(2012. 4.1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182호(2020.12. 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되어, 같은 고시 제2012-116호(2012. 9. 9.)로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188호(2020.12.10.)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아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18,346㎡
 - 도로신설 ▮ 소로 3-2 : 폭 6m, 연장 149m
 - └ 소로 3-3 : 폭 6m, 연장 65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성 명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홍진근
5.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무상귀속 공공시설(수협→동작구)

시설의 종류	지번 (원래지번)	지목 (원래지목)	면적(㎡)		소유자 (원래소유자)	비고
			공부상 (원래면적)	편입 (원래면적)		
도로(소로3-2)	노량진동 334-2 (13-25)	도로 (대)	898.9 (898)	898.9 (898)	동작구청 (수협중앙회)	
도로(소로3-3)	노량진동 334-1 (13-24)	도로 (대)	394 (398)	394 (398)	동작구청 (수협중앙회)	
합 계			1292.9 (1,296)	1,292.9 (1,296)		

－ 사업시행자 무상양도 공공시설(서울시→수협)

시설의 종류	지번 (원래지번)	지목 (원래지목)	면적(㎡)		소유자 (원래소유자)	비고
			공부상 (원래면적)	편입 (원래면적)		
도로	노량진동 334 (13-12)	대 (도로)	40,173.6 (58)	58 (58)	수협중앙회 (서울시)	
합 계			40,173.6 (58)	58 (58)		

※ 대지확정측량 후, 신규등록 예정 토지의 표시이며, ()는 현재, 지적공부 상 토지의 표시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시장 : 수산물도매시장

소재지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26	대	8,206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334	대	40,173.6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23	대	12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13	대	8,910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21	도	456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20	도	24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11	대	353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6	대	20,375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7-5	잡	324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8-8	잡	96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9-2	잡	473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13-12	도	58	서울시							
합계	11필지		39,229			1필지		40,173.6			

- 도로 : 소로3류

소재지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24	대	398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334-1	도	394	동작구		소로3 -3
	13-25	대	898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334-2	도	898.9	동작구		소로3 -2
합계	2필지		1,296			2필지		1,292.9			

※ (기정) 현재, 지적공부 상 토지의 표시, (변경) 대지확정측량 후, 신규등록 예정 토지의 표시

7.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02-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공고 제2020 - 18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7호(2014. 7.3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166호(2020.11.12.)로 변경되었으며, 동작구고시 제2020-199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드림스퀘어 진입도로 연장공사』에 대하여
2.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2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드림스퀘어 진입도로 연장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6m, 연장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당초) 김현숙 외 105명 대표자 김현숙(서울. 동작구 노들로2길 9-3외 10필지)

- (변경) 김현숙(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 806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1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성명	주소		
동작구 노량진동	13-27	대	36	36	김현숙	용산구 이태원로 217, 806호		

사.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후, 관리청(동작구)에 무상귀속

아.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공사설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서초구공고 제2020 - 1936호

공시송달공고
(말죽거리근린공원,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고시 제2019-112호(2019.0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20-33호(2020.02.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 송달불능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1.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안내, 2차, 3차
 - 가. 계약기간 : 2020. 10. 12.(월) ~ 11. 20.(금)
 - 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수탁보상부
 - 다. 계약내용 : 손실보상금 협의계약

4. 공시송달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서울시 서초구양 재동	산46-4	임야	1,761	198/42.8 62	이0일	주민등록주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34, 0동 0호(본동, 신동아아파트)' 로 3회에 걸쳐 협의 안내하였으나 미송달
	산46-5	임야	1,806	198/42.8 62		
	산47-3	임야	9	1/8	정0영	주민등록주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61, 0동 0호 (광장동, 광장현대아파트)' 로 3회에 걸쳐 협의안내하였으나 미송달
	산47-4	임야	53	1/8		
	산47-3	임야	9	1/8	정0원	주민등록주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61, 0동 0호 (광장동, 광장현대아파트)' 로 3회에 걸쳐 협의안내하였으나 미송달
	산47-4	임야	53	1/8		
	산46-4	임야	1,761	관계인	양0영	소유자 사망, 주민등록주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레로 110, 0호' 로 3회에 걸쳐 협의 안내하였으나 미송달
	산46-5	임야	1,806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0. 12. 31. ~ 2021. 1. 14.)
6.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3410-7626(토지)/7629(지장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서초구고시 제2019-94호(2019.05.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20-40호(202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 송달불능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안내, 2차, 3차
 - 가. 계약기간 : 2020. 10. 12.(월) ~ 11. 20.(금)
 - 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수탁보상부
 - 다. 계약내용 : 손실보상금 협의계약
4. 공시송달자
 - 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서울시 서초구서초동	산139-6	임야	130	1/2	이0숙	주민등록주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3길 18, 세종빌라 0동 0호 (방배동)' 로 3회에 걸쳐 협의보상 안내하였으나 미송달
서울시 서초구방배동	산31-1	임야	520	1,498.61/6,149	조0영	주민등록주소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0-0 (별내동)' 로 3회에 걸쳐 협의보상 안내하였으나 미송달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0. 12. 31. ~ 2021. 1. 14.)
6.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3410-7626(토지)/7629(지장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청계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고시 제2019-90호(2019.05.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20-32호(2020.02.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 송달불능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안내, 2차, 3차
 - 가. 계약기간 : 2020. 10. 12.(월) ~ 11. 20.(금)
 - 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수탁보상부
 - 다. 계약내용 : 손실보상금 협의계약
4. 공시송달자
 - 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서울시 서초구원지 등	421	전	83	1/16	이O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상
서울시 서초구원지 등	421	전	83	3/16	문O식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상
서울시 서초구원지 등	421	전	83	2/16	문O식	소유자 사망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0. 12. 31. ~ 2021. 1. 14.)
6.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3410-7626(토지)/7629(지장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 2020 - 1937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공시송달공고

서초구고시 제2019-91호(2019.05.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초구고시 제2020-39호(202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내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 송달불능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1.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안내, 2차, 3차
 - 가. 계약기간 : 2020. 10. 12.(월) ~ 11. 20.(금)
 - 나.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수탁보상부
 - 다. 계약내용 : 손실보상금 협의계약
4. 공시송달자
 - 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86-3	임야	2,721	관계인	한O동	주민등록주소지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0-0' 로 3회에 걸쳐 협의 안내하였으나 미송달

나. 지장물

○ 물건소유자 : 미상 ○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 미상 ○ 물건내역 :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수량	비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효령로 28길 16	무허가건축물 (판넬/편넬)	17.25	1	
		기타이전물량 2.5t		1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0. 12. 31. ~ 2021. 1. 14.)
6.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3410-7626(토지)/7629(지장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공고 제2020 - 2425호

도시계획시설(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안)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36호(2017.4.2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31-1번지 일원

나. 공원면적: 216,050.6㎡

다. 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마. 관계도서: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서류

바.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사. 기 타: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총 괄 표 (위치 : 강남구 도곡동 산 31-1번지 일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254,648	22,252	3	1,893.83	6,104.79	8	216,050.6	20,641.5	3	1,893.83	6,104.79	2	감) 1,610.5㎡
기 반 시 설	소계	12,408	12,408					26,037.3	11,738.3					감) 669.7㎡
	도로	7,675	7,675					21,698.0	7,399.0 (14,299.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장	4,733	4,733					4,339.3	4,339.3					
조경시설		1,303	1,303				2	1,442.5	1,442.5					증) 139.5㎡
휴양시설		4,467	4,467				2	3,258.0	3,258.0				1	감) 1,209.0㎡
운동시설		2,823	2,823	1	812.83	987.79	2	2,814.3	2,814.3	1	812.83	987.79	1	감) 8.7㎡
편의시설		184	184	1	72	72		322.0	322.0					증) 138.0㎡
교양시설		1,067	1,067	1	1,009	5,045		1,067	1,067	1	1,009	5,045		
관리시설							2							
녹지및기타		232,396						181,110.1						
공 원 시 설 을 (법정 40% 이하)		22,252 / 254,648 × 100 = 8.73%						20,641.5 / 216,050.6 × 100 = 9.55%						
공 원 건 폐 율 (법정 10% 이하)		1,893.83 / 254,648 × 100 = 0.74%						1,821.83 / 216,050.6 × 100 = 0.84%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운동시설 (법정 20%)		2,823 / 22,252 × 100 = 12.69%						2,814.3 / 20,641.5 × 100 = 13.63%						

2. 시설조서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54,648	22,252		3동	1,893.83	6,104.79	8			216,050.6	20,641.5						
기반시설	소계			12,408	12,408								26,037.3	11,738.3						
	도로			7,675	7,675								21,698.0	7,399.0 (14,299.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산책로)			(7,675)	(7,675)								(7,399.0)	(7,399.0)						
	광장	가		4,733	4,733						가		4,339.3	4,339.3						
	진입광장	가-1	산29-49 임	(884)	(884)						가-1	산29-46 임	(884.0)	(884.0)						
	부진입광장	가-2	산43 임	(1,735)	(1,735)						가-2	산39-3임	(1,475.9)	(1,475.9)						
	중앙광장	가-3	산29-14 임	(932)	(932)						가-3	산29-14 임	(932.2)	(932.2)						
	다목적 광장	가-4	산6-18임	(1,182)	(1,182)						가-4	산6-18임	(1,047.2)	(1,047.2)						
조경시설	소계			1,303	1,303					2			1,442.5	1,442.5						
	화단	나	산43 임	803	803						나	산39-3임	964.4	964.4						
	폭포		산43 임	500	500						카	산39-3임	496.1	496.1						
	파고라	①				목재				1									(폐지)	
	쉼터	②				목재				1									(폐지)	
휴양시설	소계			4,467	4,467					2			3,258.0	3,258.0						
	휴게소	다		4,467	4,467						다		3,205.0	3,205.0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소1	다-1	산43 임	(163)	(163)						다-1	204-1임	(163.2)	(163.2)						
	휴게소2	다-2	산179임	(765)	(765)						다-2	산32-3임	(257.0)	(257.0)						
	휴게소3	다-3	산179임	(337)	(337)						다-3	산32-3임	(209.3)	(209.3)						
	휴게소4	다-4	산6- 18임	(810)	(810)						다-4	산6-41임	(627.5)	(627.5)						
	휴게소5	다-5	산6- 18임	(562)	(562)						다-5	산6-18임	(375.7)	(375.7)						
	휴게소6	다-6	산6- 16임	(450)	(450)						다-6	산6-16임	(11.5)	(11.5)						
	휴게소7	다-7	산31- 3임	(1,125)	(1,125)						다-7									(폐지)
	휴게소8	다-8	산31- 1임	(165)	(165)						다-8	산31-1임	(70.0)	(70.0)						
	휴게소9	다-9	204	(90)	(90)						다-9	산31-3임	(89.2)	(89.2)						
	정자	㉓				목재				1		산32-6임	53.0	53.0	목재				1	
	장의자					목재				1										(폐지)
	휴게소10										다-10	산6-18임	(138.7)	(138.7)						(신규)
	휴게소11										다-11	산6-16임	(751.8)	(751.8)						(신규)
휴게소12										다-12	산31-3임	(511.1)	(511.1)						(신규)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2,823	2,823		1동	812.83	987.79	2			2,814.3	2,814.3						
	다목적운동장	라	산6-18임	753	753					1										(폐지)
	배드민턴장	마		1,677	1,677		1동	812.83	987.79		마		1,957.6	1,957.6		1동	812.83	987.79		
	배드민턴장2	마-2	산34-5임	(750)	(750)						마-2	산32-3임	(459.1)	(459.1)						
	실내배드민턴장3	마-3	204	(927)	(927)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1동	812.83	987.79		마-3	204공	(927.0)	(927.0)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1동	812.83	987.79		
	배드민턴장4										마-4	산30임	(147.2)	(147.2)						(신규)
	배드민턴장5										마-5	산6-41임	(424.3)	(424.3)						(신규)
	체력단련센터	바	산179-2임	393	393	목재				1	바	산32-6임	856.7	856.7						
편익시설	소계			184	184		1동	72	72				322.0	322.0						
	약수터	자	산31-3임	22	22						자	산30-1임	21.8	21.8						
	창고및화장실	5-2	산31-3	120	120	목재	1동	72	72											(폐지)
	주차장	6	204	42	42						6	204공	300.2	300.2						
교양시설	소계			1,067	1,067		1동	1,009	5,045				1,067.0	1,067.0		1동	1,009	5,045		
	문화회관	4	산29-13임	1,067	1,067		1동	1,009	5,045		4	산29-13임	1,067.0	1,067.0		1동	1,009	5,045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2										(폐지)
	공원등									1										(폐지)
	휴지통					스텐				1										(폐지)
녹지 및 기타	소계			232,396									181,113.0							
	녹지			232,396									181,113.0							

3. 도로조서

◎ 공원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032	7,675				
변경					5,350	7,399				
신규	중로	소 계			597	(14,299)				
	중로		4-1	13	553	(12,343)	중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도시 계획 도로
	중로		4-2	45	44	(1,956)	중로	부지경계	녹지	
당초	산책로	소 계			5,032	7,675				
변경					4,753	7,399				
당초	산책로		4-1	1.5	105	158	산책로	농구장	산책로4	
변경	산책로		4-1	2.0	86	172	산책로	실내배드민턴장3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2	1.5	126	189	산책로	부진입광장2	산책로4	
변경	산책로		4-2	2.0	133	279	산책로	부진입광장2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3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22	
변경	산책로		4-3	1.5	168	256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22	
당초	산책로		4-4	1.5	282	42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2	
변경	산책로		4-4	1.5	247	37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3	
당초	산책로		4-5	1.5	105	157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변경	산책로		4-5	1.5	51	76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6	1.5	97	145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변경	산책로		4-6	1.5	72	10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당초	산책로		4-7	1.5	210	315	산책로	산책로3	휴게소3	
변경	산책로		4-7	1.5	97	146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9	1.5	30	45	산책로	산책로4	휴게소3	
변경	산책로		4-9	1.5	19	29	산책로	산책로4	휴게소2	
당초	산책로		4-11	1.5	97	145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4-11	1.5	22	3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산책로		4-12	1.5	247	370	산책로	휴게소2	체력단련쉼터	
변경	산책로		4-12	1.5	198	298	산책로	휴게소2	체력단련쉼터	
당초	산책로		4-13	1.5	15	22	산책로	휴게소2	휴게소3	
변경	산책로		4-13	1.5	13	19	산책로	산책로12	휴게소3	
당초	산책로		4-14	1.5	37	55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5	
변경	산책로		4-14	1.5	13	2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15	1.5	444	666	산책로	배드민턴장2	산책로26	
변경	산책로		4-15	1.5	312	47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26	
당초	산책로		4-16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15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4-17	1.5	15	22	산책로	산책로16	휴게소8	
변경	산책로		4-17	1.5	18	27	산책로	산책로16	휴게소8	
당초	산책로		4-18	1.5	225	33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5	
변경	산책로		4-18	1.5	207	3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19	1.5	120	180	산책로	산책로18	5-2차고 및 화장실	
변경	산책로		4-19	1.5	181	271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41	
당초	산책로		4-20	1.5	288	432	산책로	배드민턴장3	자-약수터	
변경	산책로		4-20	1.5	139	209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9	
당초	산책로		4-21	1.5	37	55	산책로	산책로15	체력단련쉼터	
변경	산책로		4-21	1.5	23	34	산책로	산책로15	체력단련쉼터	
당초	산책로		4-22	1.5	60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3	
변경	산책로		4-22	1.5	63	97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3	
당초	산책로		4-23	1.5	127	190	산책로	부지경계	체력단련쉼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4-23	1.5	36	54	산책로	부지경계	체력단련센터	
당초	산책로		4-24	1.5	60	9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5	
변경	산책로		4-24	1.5	31	4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5	
당초	산책로		4-25	1.5	195	292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변경	산책로		4-25	1.5	83	125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4-26	1.5	15	2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5	
변경	산책로		4-26	1.5	152	227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25	
당초	산책로		4-27	1.5	30	45	산책로	휴게소4	산책로15	
변경	산책로		4-27	1.5	44	67	산책로	휴게소4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28	1.5	67	100	산책로	체력단련센터	산책로15	
변경	산책로		4-28	1.5	29	44	산책로	체력단련센터	산책로15	
당초	산책로		4-29	1.5	187	280	산책로	산책로15	휴게소5	
변경	산책로		4-29	1.5	202	302	산책로	산책로15	휴게소5	
당초	산책로		4-30	1.5	37	55	산책로	휴게소5	산책로31	
변경	산책로		4-30	1.5	30	46	산책로	휴게소5	휴게소11	
당초	산책로		4-31	2.0	52	104	산책로	산책로30	휴게소6	
변경	산책로		4-31	2.0	35	72	산책로	산책로30	휴게소6	
당초	산책로		4-32	1.5	45	67	산책로	휴게소5	산책로36	
변경	산책로		4-32	1.5	54	80	산책로	휴게소5	산책로37	
당초	산책로		4-33	1.5	112	168	산책로	배드민턴장4	산책로36	
변경	산책로		4-33	1.5	138	208	산책로	산책로41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4-34	1.5	15	22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7	
폐지			4-34							
당초	산책로		4-35	1.5	190	285	산책로	산책로34	중앙광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4-35	1.5	217	326	산책로	산책로19	중앙광장	
당초	산책로		4-36	1.5	344	516	산책로	중앙광장	산책로37	
변경	산책로		4-36	1.5	328	493	산책로	중앙광장	산책로37	
당초	산책로		4-3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36	휴게소6	
변경	산책로		4-37	1.5	28	42	산책로	산책로36	휴게소6	
당초	산책로		4-38	1.5	330	495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6	
변경	산책로		4-38	1.5	69	110	산책로	산책로37	도자구역	
당초	산책로		4-39	1.5	7	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8	
변경	산책로		4-39	1.5	26	3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8	
당초	산책로		4-41	1.5	20	30	산책로	휴게소7	배드민턴장4	
변경	산책로		4-41	1.5	36	53	산책로	산책로35	산책로33	
당초	산책로		4-42	1.5	42	63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35	
변경	산책로		4-42	1.5	61	91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35	
당초	산책로		4-43	1.5	34	51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36	
변경	산책로		4-43	1.5	25	37	산책로	문화회관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4-44	2	168	336	산책로	산책로31	휴게소4	
변경	산책로		4-44	2	220	441	산책로	휴게소11	휴게소4	
당초	산책로		4-45	1.5	50	75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0	
변경	산책로		4-45	1.5	46	68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0	
신규	산책로		4-46	1.5	69	104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9	
신규	산책로		4-47	1.5	61	9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4	
신규	산책로		4-48	1.5	25	38	산책로	산책로47	산책로44	
신규	산책로		4-49	1.5	32	47	산책로	산책로44	산책로29	
신규	산책로		4-50	1.5	87	131	산책로	산책로29	산책로33	

[illegible]

강남구공고 제2020 - 2426호

도시계획시설(광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안)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호(1990.3.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60호 (2014.4.2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광평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산10-1번지 일원

나. 공원면적: 10,746.90㎡

다. 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마. 관계도서: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서류

바.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사. 기 타: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산10-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19,782.00	18,074.41	5동	782.09	782.09	2	10,746.90	0.0					감) 18,074.41㎡
기 반 사 설	소계	12,638.75	12,638.75					-	-					감) 12,638.75㎡
	도로	9,855.00	9,855.00					-	-					
	광장	2,783.75	2,783.75					-	-					
조경시설		249.44	249.44					-	-					감) 249.44㎡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4,744.60	4,744.60	4동	404.47	404.47		-	-					감) 4,744.60㎡
편익시설		64.00	64.00				2	-	-					감) 64.00㎡
관리시설		377.62	377.62	1동	377.62	377.62		-	-					감) 377.62㎡
녹지 및 기타		501,707.59						10,746.90						
시 설 율 (법정 40%)		(18,074.41㎡/519,782.00㎡) × 100% = 3.48%						(0.0㎡/10,746.9㎡) x 100% = 0.00%						
건 폐 율 (법정 20%)		(782.09㎡/519,782.00㎡) × 100% = 0.15%						(0.0㎡/10,746.0㎡) x 100% = 0.00%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법정 20%)		(0.0㎡/18,074.41㎡) × 100% = 0.00%						(0.0㎡/0.0㎡) × 100% = 0.00%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19,782.00	18,074.41		5동	782.09	782.09	2			10,746.90	-						
기 반 시 설	소 계			12,683.75	12,683.75								-	-						
	도로			9,855.00	9,855.00								-	-						
	광장	가		2,783.75	2,783.75								-	-						
	입구광장	가-1		466.32	466.32								-	-						(폐지) 도자구역
	사당앞광장	가-2		296.83	296.83								-	-						
	종회당앞 광장	가-3		2,020.60	2,020.60								-	-						
조경 시설	소 계			249.44	249.44															
	전통연못	나		249.44	249.44								-	-						(폐지) 도자구역
교 양 시 설	소 계			4,744.60	4,744.60		4동	404.47	404.47											
	도청	다	수서동 산10-1번지	207.87	207.87	목재	1동	101.70	101.70				-	-						(폐지) 도자구역
	사당	라	수서동 산10-1번지	1,035.76	1,035.76	목재	2동	170.26	170.26											(폐지) 도자구역
	재실	마	수서동 산10-1번지	132.51	132.51	목재	1동	132.51	132.51				-	-						(폐지) 도자구역
	묘역	바		3,368.46	3,368.46								-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광평대군묘	바-1	수서동 산10-1번지	1,657.36	1,657.36								-	-						
	무안대군묘	바-2	수서동 산10-1번지	708.75	708.75								-	-						
	영순군묘	바-3	수서동 산10-1번지	591.98	591.98								-	-						
	이유묘	바-4	수서동 산10-1번지	410.37	410.37								-	-						
관 리 시 설	소 계			377.62	377.62															
	종회당	사	수서동 산10-1번지	377.62	377.62	목재	1동	377.62	377.62				-	-						(폐지) 도자구역
편 의 시 설	소 계			64.00	64.00					2										
	광평대군 입구문	아	수서동 산10-1번지	64.00	64.00								-	-						(폐지) 도자구역
	종회당입구문		시설지구내			석재				1										
	안내판		시설지구내			목재				1										
녹지 및 기타		소계			501,707.59								10,746.90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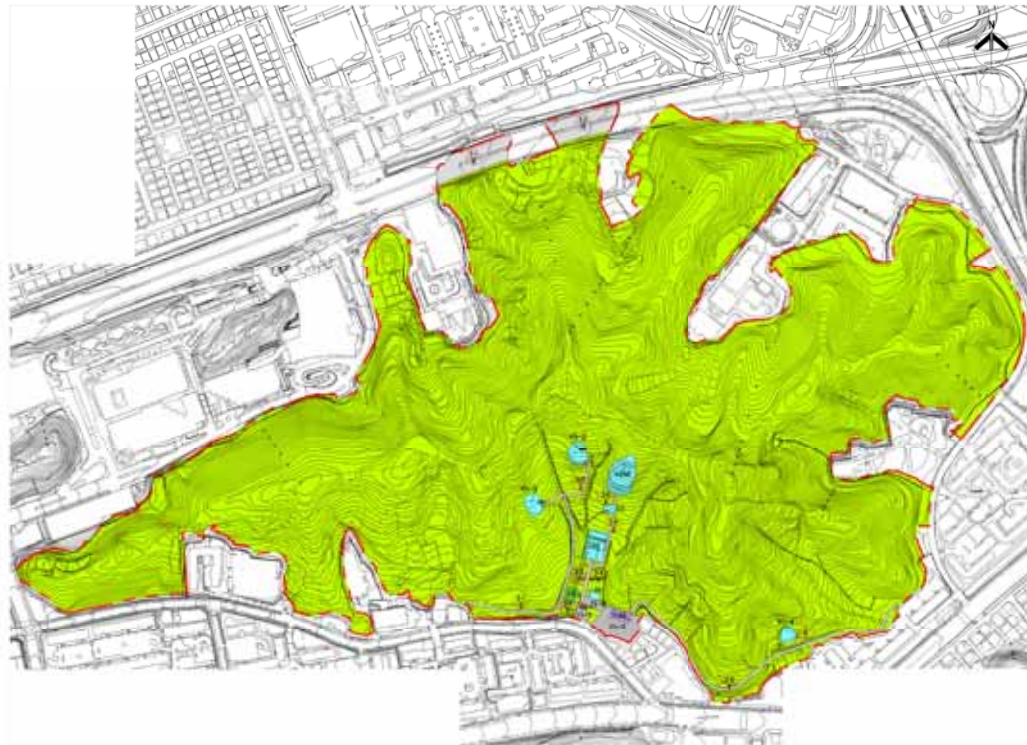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기정				1,320.5	9,855.0		-	-	
	변경				0.0	0.0				
당초	대로	계			197.0	6,501.0				
변경					0.0	0.0				
당초		2	1	33.0	106.0	3,498.0	연결도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폐지 (도자구역)
폐지					-	-				
당초		2	2	33.0	91.0	3,003.0	연결도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폐지					-	-				
당초	소로	계			1,097.5	3,328.0				
변경					0.0	0.0				
당초		3	1	3.0	306.0	918.0	진입로	부지경계	소3-7	폐지 (도자구역)
폐지					-	-				
당초		3	2	3.0	31.5	94.5	연결도로	소3-1	소3-4	
폐지					-	-				
당초		3	3	2.0	26.0	52.0	연결도로	소3-1	소3-4	
폐지					-	-				
당초		3	4	4.0	61.5	246.0	연결도로	광평대군입구문	사당	
폐지					-	-				
당초		3	5	3.0	87.5	262.5	연결도로	소3-4	도청	
폐지					-	-				
당초		3	6	3.0	13.0	39.0	연결도로	도청	광평대군묘	
폐지					-	-				
당초		3	7	3.0	101.0	303.0	연결도로	영순군묘	무안대군묘	
폐지					-	-				
당초	3	8	3.0	471.0	1,413.0	연결도로	종회당	부지경계		
폐지				-	-					
당초	산책로	계			26.0	26.0				
변경					0.0	0.0				
당초		1	1.0	26.0	26.0	산책로	소3-8	이유묘	폐지 (도자구역)	
폐지				-	-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SCALE=1/2,500

광평근린공원



■ 별첨

구분	이름	면적	부지면적(㎡)	서울특별시(㎡)	공적용(㎡)	비고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기타시설	조각	7,142.00	7,142.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각	1,400.00	1,400.00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2,500

광평근린공원



■ 범례

구분	구분명	면적	비율	비고
1	기초생활수급자	12,748.0	-	
2	서울광역수급자	12,748.0	-	
3	서울광역수급자	12,748.0	-	
4	도시지역농림수확면적	12,748.0	-	

강남구공고 제2020 - 2427호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안)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84호(2017.3.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호(2019.6.2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574-8번지 일원

나. 공원면적: 34,874.70㎡

다. 변경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마. 관계도서: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서류

바.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사. 기 타: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574-8번지 일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3,534.90	5,249.34		124.7	124.7	51	34,874.70	2,830.61		124.7	124.7	31	감) 2,418.73㎡
기반 시설	소 계	3,763.66	3,763.66					1,631.18	1,631.18					감) 2,132.48㎡
	도 로	3,714.77	3,714.77					1,582.29	1,582.29					
	광 장	48.89	48.89					48.89	48.89					
조 경 시 설		484.43	484.43					484.43	484.43					
유 희 시 설								-	-					
휴 양 시 설		629.63	629.63				46	343.38	343.38				26	감) 286.25㎡
교 양 시 설								-	-					
운 동 시 설		95.62	95.62				5	95.62	95.62				5	
편 익 시 설								-	-					
관 리 시 설		276.00	276.00		126.86	126.86		276.00	276.00					
녹지 및 기타		98,285.56	98,285.56					32,044.09						
시 설 율 (법정 40%)		(5,249.34 / 103,534.90) × 100 = 5.07%						(2,830.61/ 34,874.70) × 100 = 8.12%						
건 폐 율 (법정 10%)		(124.7 / 103,534.90) × 100 = 0.12%						(124.7 / 34,874.70) × 100 = 0.36%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법정 20%)		(95.62 / 5,249.34) × 100 = 1.82%						(95.62 / 2,830.61) × 100 = 3.38%						

2)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합 계				103,534.90				124.7	124.7	156.11	51			34,874.70	2,830.61						31	
기반 시설	소 계			3,763.66										1,631.18	1,631.18							
	도 로	소로		924.10								소로		924.10	924.10							
		산책로		2,790.67								산책로		658.19	658.19							
	진입 광장	가 자곡동512-3	48.89									가 자곡동512-3	48.89	48.89								
조경 시설	소 계			484.43										484.43	484.43							
	초화원	나 자곡동 512-11,12,13	484.43								나 자곡동 512-11,12,13	484.43	484.43									
휴양 시설	소 계			629.63							46			343.38	343.38						26	
	휴게 공간	다-1	자곡동 산 48-12	9.75								다-1	자곡동 산 48-12	9.75	9.75							폐지 (도자구역)
		다-2	자곡동512-13	72.37								다-2	자곡동512-13	72.37	72.37							폐지 (도자구역)
		다-3	자곡동512-5	39.45								다-3	자곡동512-5	39.45	39.45							폐지 (도자구역)
		다-4	자곡동574-9	52.48								다-4	자곡동574-9	52.48	52.48							폐지 (도자구역)
		다-5	자곡동574-2	17.39																		폐지 (도자구역)
		다-6	자곡동 산 50-12	41.84																		폐지 (도자구역)
		다-7	자곡동 산 50-11	16.05																		폐지 (도자구역)
		다-8	자곡동 산 50-11	46.74																		폐지 (도자구역)
		다-9	자곡동 산 50-9	132.73																		폐지 (도자구역)
		다-10	자곡동496-1	31.50																		폐지 (도자구역)
		다-11	자곡동512-27	93.30								다-11	자곡동512-27	93.30	93.30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휴양 시설	데크 설터	라-1	자곡동512-12	41.89							라-1	자곡동512-12	41.89	41.89									
		라-2	자곡동512-3	34.14							라-2	자곡동512-3	34.14	34.14									
	사각 파고라	①	자곡동512-13 자곡동 산50-9 자곡동512-27	(18.66)						3	①	자곡동512-13 자곡동 산50-9 자곡동512-27									2		
	등의자	②	공원 전지역	(0.96)						43	②	공원 전지역										24	
유흥 시설	소 계																						
	유흥 공간																						
	바디 실업																						
	파워 프레스																						
	폴 웨이트																						
	레그 프레스																						
	트위 스트																						
운동 시설	소 계			95.62						5			95.62									5	
	체력단련 공간	마-1	자곡동512-19	66.25							마-1	자곡동512-19	66.25										
		마-2	자곡동512-19	29.37							마-2	자곡동512-19	29.37										
	바디 실업	③	자곡동512-19							1	③	자곡동512-19										1	
	파워 프레스	④	자곡동512-19							1	④	자곡동512-19										1	
	폴 웨이트	⑤	자곡동512-19							1	⑤	자곡동512-19										1	
	레그 프레스	⑥	자곡동512-19							1	⑥	자곡동512-19										1	
	트위 스트	⑦	자곡동512-19							1	⑦	자곡동512-19										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리 시설	소 계			276.00										276.00	276.00							
	공원 관리소	바	자곡동512-10	276.00	276.00			124.7	124.7	156.11		바	자곡동512-10	276.00	276.00			124.7	124.7	156.11		
녹지 및 기타	소 계			98,285.56										32,044.09								
	녹 지			98,285.56										32,044.09								

3. 도로조서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합 계					3,714.77				
변경					1,055.20	1,582.29				
기정	소로	소 계			594.30	924.10				
기정		3	1	1.8	121.80	219.24	진입로	대상지외곽	소로 3-11	
기정		3	2	1.5	35.30	52.95	진입로	대상지외곽	소로 3-1	
기정		3	3	1.5	46.40	69.60	보행로	소로 3-1	소로 3-13	
기정		3	4	1.2	33.30	39.96	보행로	소로 3-3	소로 3-6	
기정		3	5	1.0	10.60	10.60	보행로	소로 3-4	소로 3-6	
기정		3	6	2.0	22.70	45.40	보행로	소로 3-9	소로 3-3	
기정		3	7	1.0	8.50	8.50	보행로	소로 3-6	휴게공간 다-2	
기정		3	8	1.2	27.90	33.48	보행로	소로 3-6	소로 3-13	
기정		3	9	1.2	56.40	67.68	보행로	소로 3-1	소로 3-13	
기정		3	10	3.0	4.00	12.00	보행로	소로 3-11	공원관리소 바	
기정		3	11	2.0	34.10	68.20	진입로	대상지 외곽	소로 3-9	
기정		3	12	1.8	42.10	75.78	보행로	소로 3-11	소로 3-13	
기정		3	13	1.5	79.90	119.85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3	
기정		3	14	1.8	25.50	45.90	보행로	소로 3-13	휴게공간 다-4	
기정		3	15	1.2	27.40	32.88	보행로	휴게공간 다-4	소로 3-13	
기정		3	16	1.2	18.40	22.08	보행로	소로 3-15	소로 3-1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산책로	소 계			2,229.55	2,790.67				
변경		소 계			460.9	658.19				
기정		3	1	1.5	112.30	168.45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	
기정		3	2	1.5	241.70	362.55	산책로	광장 가	휴게공간 다-8	
변경		3	2	1.5	209.20	313.80	산책로	광장 가	도자구역	
기정		3	3	2.0	10.80	21.60	진입로	대상지 외곽	산책로 3-2	
기정		3	4	1.2	95.70	114.84	진입로	대상지 외곽	산책로 3-2	
변경		3	4	1.2	74.40	89.30	진입로	도자구역	산책로 3-2	
기정		3	5	1.2	139.50	167.40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5							
기정		3	6	1.2	100.60	120.72	산책로	휴게공간 다-6	휴게공간 다-3	
변경		3	6	1.2	54.20	65.04	산책로	도자구역	휴게공간 다-3	
기정		3	7	1.2	116.90	140.28	산책로	휴게공간 다-7	휴게공간 다-6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7							
기정		3	8	1.2	18.90	22.68	산책로	휴게공간 다-8	휴게공간 다-7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8							
기정		3	9	1.2	114.70	137.64	산책로	휴게공간 다-9	휴게공간 다-8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9							
기정		3	10	1.2	138.40	166.08	산책로	휴게공간 다-10	휴게공간 다-9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0							
기정		3	11	1.3	3.70	4.81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1							
기정		3	12	1.2	98.20	117.84	산책로	휴게공간 다-5	산책로 3-6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산책로	3	13	1.2	431.10	517.32	산책로	산책로 3-14	휴게공간 다-5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3							
기정		3	14	1.2	61.90	74.28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8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4							
기정		3	15	1.2	105.60	126.72	산책로	산책로 3-16	산책로 3-14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5							
기정		3	16	1.2	134.60	161.52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9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6							
기정		3	17	1.2	287.90	345.48	산책로	산책로 3-18	산책로 3-16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7							
기정		3	18	1.2	17.05	20.46	진입로	대상지 외곽	휴게공간 다-10	폐지 (도자구역)
폐지		3	18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1,200

세곡근린공원



■ 범례

구분	구분명	면적	면적(㎡)	면적(㎡)	비고
기타시설	조경	1,000.00	1,000.00	1	조경
	조경	1,000.00	1,000.00	1	조경
	조경	1,000.00	1,000.00	1	조경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주요시설	4,000.00	4,000.00	4	주요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기타시설	1,000.00	1,000.00	1	기타시설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잠실대교)	선박 3척	중량물 운송	2020.12.29. ~ 2020.12.31.	2020. 12.24.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인천해양 경찰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야적장~여의도 한강파출소)	선박 13척	준설공사	2020.12.28.~ 2021.1.25.	2020. 12.24.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미래조선기술(대표 한재형)
3. 점용자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107, 비취맨손 10-309
4. 점 용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행주대교 상류 남단)
4. 점 용 목 적 : 유선장 대체건조를 위한 하천점용
5. 점 용 면 적 : 1,000㎡
6. 점 용 기 간 : 2021. 1. 1. ~ 2021. 3.31.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췌서울메리모나크 (대표 구길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9(한강)	유선장 1,347㎡	유선사업	2021. 1. 1. ~ 2021.12.31.	2020. 12. .
			관로매설 53㎡	전기, 상·하수도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리모나크 (대표 구길용)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마포대교~ 영동대교	선박 2척 - 동력 1척 - 구조선 1척	유선사업	2021. 1. 1. ~ 2021.12.31	2020. 12.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리모나크 (대표 구길용)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마포대교~영동대교	선박 2척 - 동력 2	마리나사업	2021.1.1 ~ 2021.12.31	2020. 12.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3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86(한강)	유선장 1,699㎡	유선사업	2021. 1. 1. ~ 2021.12.31.	2020. 12. .

사업소공고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0 - 32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0.12.31. ~ 2021. 1.1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1.14. ~ 2021. 1.27.(14일)
6. 수령방법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28	김*호,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번길 ** *동***호 (사우동, 삼성골드빌라)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30	신*카드(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여의도동, 현대캐피탈빌딩)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32	엄*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릉로 *** (화도읍, 삼청장미*차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33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번길 ** (태평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38	진*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삼로 ** ***동***호 (소사본동, 소사sk view아파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40	이*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길 *** (미아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51	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길 ** 가동***호 (선단동, 현대빌라)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2	003853	연*규	바퀴가있는동력장치를이용 하여차도외의장소에 출입하는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길 **-* (본동)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 - 39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2동 383-1번지
 - 면 적 : 당초 2.53㎡, 변경 3.3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 설치
 - 내 역 : 위령비 및 벤치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11.21.~2024.06.30.(허가일로부터 1개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 - 40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6-1, 487-320, 139, 138번지
(변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6-1, 487-320, 139, 138, 487-166번지
 - 면 적 : (당초) 영구 12,111㎡
(변경) 영구 12,128.1㎡, 일시 2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당초) 광역상수관로 매설
(변경) 광역상수관로 매설 및 밸브실 신설
 - 내 역 : (당초) 상수도관 매설 D1500 L=3,196m
(변경) 상수도관 매설 D1500 L=3,196m, 밸브실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영구
(변경) 영구(허가일로부터 1개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 - 4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도화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4번지~양천구 목동 518번지
 - 면 적 : 영구점용 921㎡, 일시점용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수관로 설치
 - 내 역 : 도수관로 설치 419m(D=1,800mm, 압입추진) 및 도달구 1식
5. 점용기간 : 2016.02.17. ~ 2021.02.16.
6. 공사기간 : (당초) 2016.02.17.~2020.12.31.
(변경) 2016.02.17.~2021.02.16

정 정

성북구고시 제2020-2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850호(1986.1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9-93호(2009.10.15.)로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51호(2020.4.9.)로 실시계획작성 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 2020-66호(2020.5.7.)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된 【늘푸른길 확장사업(3차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늘푸른길 확장사업 (3차구간)	돈암동 산7-1 ~ 돈암동 산11-293	· B = 6→10m · L = 35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850호 (1986.11.29.)	

1) 변경사유 : 최초 결정고시일자 오기 정정

2)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850호(1996.11.26.)→서울특별시고시 제1986-850호(1986.11.2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변경없음) : 따로붙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2241-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늘푸른길 확장사업(3차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돈암동 산11-307	임야	372	372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동 ***-*				산11-293에서 분할
2	성북구 돈암동 산7-15	임야	473	473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동 ***-*				산7-1에서 분할
3	성북구 안암동5가 126-42	임야	32	32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가 *-*				
4	성북구 안암동5가 126-90	임야	127	127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가 *-*				126-31에서 분할
5	성북구 안암동5가 126-55	임야	15	15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가 *-*				
6	성북구 안암동5가 126-32	임야	7	7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가 *-*				
7	성북구 안암동5가 126-91	학교용 지	268	268	학교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가 *-*				126-28에서 분할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